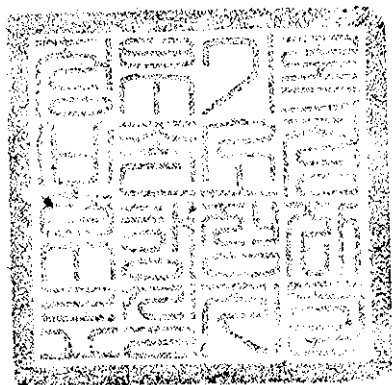


韓國輸出入銀行五年史



머 리 말

當行은 197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唯一한 中長期輸出信用 專擔金融機關으로 發足하여 이제 創立 5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經濟는 經濟開發計劃을 着手한 以來 工業化를 통한 輸出主導型의 成長政策 推進으로 그간 어려운 國內外經濟環境을 克服하고 自立經濟의 確立과 近代化를 向하여 눈부신 發展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가 걸어온 成長過程은 결코 平坦하지만은 않았읍니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石油波動과 資源問題의 抬頭,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強化에 따른 輕工業製品 輸出伸張의 限界 그리고 최근 겪고 있는 國際收支問題등이 바로 우리나라 經濟가 겪어야할 陣痛의 問題들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試鍊을 克服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우리나라 經濟의 重化學工業으로의 構造轉換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對外去來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當行이 設立된 것입니다.

創立后 지난 5년간 當行은 우리나라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를 뒷받침하고자 延拂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中長期信用의 供與와 그리고 政府를 代行한 輸出保險業務를 수행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の 促進을 이룩하는데 적지않은 寄與를 하여왔다요 생각합니다.

이제 創立 5周年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重化學工業發展과 그 軌를 같이 하면서 成長해온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한 「韓國輸出入銀行五年史」를 發刊하여 지난날을

되새겨 보는 한편 앞으로의 當行의 進路를 再定立하는 하나의 指針으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本冊子가 政府關係機關 및 關聯產業界에 多少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輸出을 중심 으로한 우리나라 重化學工業의 該간의 發展推移와 그리고
이를 金融面에서 支援하고 있는 當行의 役割에 대한 認識을 높히는데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1981년 7월 1일

韓國 輸出入 銀行 長

李 泰 浩

目 次

第一章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

第1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背景	3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經緯	8
1. 中長期延拂輸出金融專擔機關設立論議	8
2. 法の 制定	11
3. 業務의 代行	12
4. 第1次 法の 改正	13
5. 設 立	13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立法精神	17
1.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	17
2. 對外經濟協力의 促進	18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改正	20
1. 第1次 改正	20

2. 第2次 改正	24
-----------------	----

第二章 韓國經濟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韓國經濟의 重工業化 推進과 對外去來擴大	29
1. 經濟開發 始發期 (1962~66년)	29
2. 高度成長期 (1967~73년)	33
3. 石油波動과 産業構造 轉換期 (1974년 이후)	39
4. 産業構造 高度化를 통한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의 促進과 當行의 役割	51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 設立以前의 中長期輸出金融業務	54
1. 當行法の 制定	54
2. 當行業務의 韓國外換銀行에 의한 代行	55
3. 當行의 發足	59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과 業務基盤의 擴充	63
1. 序	63
2. 經營體制의 確立	64
3. 業務의 多樣化	66
4. 業務의 內實化	68
5. 資金의 調達 및 供給	71
6. 輸出保險業務	77
第4節 重化學輸出增進과 韓國輸出入銀行의 役割	80
1.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와 韓國輸出入銀行	80

2. 當行의 長期政策方向	83
---------------------	----

第三章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第1節 政策決定機關	89
1. 運營委員會	89
2. 理 事 會	93
3. 任 員	95
4. 主要諮問委員會	96
第2節 機構 및 職制	98
1. 機 構	98
2. 職 制	117

第四章 韓國輸出入銀行의 業務

第1節 概 觀	123
1. 主要業務內容	123
2. 國際金融技法의 導入과 開發	126
第2節 資金의 供給	140
1. 概 觀	140
2. 輸出資金貸出	144
3. 直接貸出 및 轉貸借款	176

4. 海外投資資金貸出	185
5. 其他 附帶業務	193
6. 主要延拂輸出支援制度의 變遷	198
第3節 資金의 調達	217
1. 概 觀	217
2. 資本金	217
3. 國內借入	219
4. 海外資金의 調達	220
5. 資金調達의 問題點과 長期的 調達方向	228
第4節 調査 및 法規業務	231
1. 概 觀	231
2. 國別信用度評價業務	234
3. 經濟調査業務	241
4. 國際契約書의 法的檢討	244
第5節 輸出保險 業務	246
1. 輸出保險制度의 沿革	246
2. 輸出保險의 運營	256
3. 輸出保險의 業績	265
4. 輸出保險基金	276
5. 輸出保險業務의 國際化	281
6. 向後展望	287

第五章 韓國輸出入銀行의 運營

第1節 業 務 計 劃.....	291
第2節 綜合運營計劃.....	296
1. 綜合運營計劃의 樹立	296
2. 審查分析	296
第3節 財 務 管 理	297
1. 資産과 負債.....	297
2. 利益과 그 處分	301
3. 綜合豫算	305
第4節 人 事 管 理	308
1. 人事管理	308
2. 研 修	312
3. 福祉・厚生	315
第5節 事 務 合 理 化.....	318
1. 事務改善	319
2. 事務電算化 및 事務機械化	320
第6節 金融淨化 및 其他	321
1. 金融淨化運動	321
2. 새마을運動	323

3. 安全管理	324
---------------	-----

附 錄

1. 銀行日誌 및 主要經濟措置年表	329
2.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349
3. 歷代 部署長	351
4. 機構 및 組織	354
5. 主要 統計	363
6. 法 令	380

第一章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

第1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背景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經緯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立法精神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改正

第一章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

第1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背景

休戰成立以後 1950년대를 통해 주로 美國의 經濟援助에 크게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安定基盤을 構築할 수 있었던 韓國經濟는 1960년대초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對内外 兩面에서 오는 与件上的 급격한 변동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對内的으로는 4.19義拳와 5.16軍事革命 등 일련의 政治社会的인 大變革을 겪는 가운데서 당시 一貫性を 결여한 經濟施策으로 말미암아 經濟는 衝擊과 沈滯를 면치 못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美國의 對外援助政策의 一大轉換으로 援助規模가 縮小되는 한편 援助条件이 硬化됨으로써 産業生産活動이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와같은 불리한 對内外 与件속에서 우리나라 經濟가 당면하였던 最大의 課題는 國際収支를 改善하고 国内經濟의 安定과 成長을 조화있게 달성하여 自立經濟의 基盤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1961년 5.16革命으로 執權한 당시 革命政府는 經濟政策의 重点을 종래의 安定優先政策으로부터 擴張優先政策으로 급격한 方向轉換을 하였다. 즉 革命政府는 1962년부터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2-66년)에着手하였고, 同計劃에 따라 基幹産業과 輸入代替産業의 育成, 財政投融資을 통한 外部經濟의 扩充, 활발한 外資導入을 통한 施設投資의 増大, 輸入原資材의 供給増大 등 과감한 工業化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自立經濟達成의 關鍵이 되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이룩하기 위해 강력한 輸出指向政策을 채택함으로써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 期間中の 經濟成長은 当初 目標成長率을 크게 상회하는 年平均 8.3 %에 달하였고 특히 鎔工業部門의 成長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輸出에 있어서는 量的擴大와 더불어 構造面에서도 質的改善을 보이는 등 과거 外國援助에 의존하던 우리나라經濟가 自立體制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어 1967 년부터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自立經濟確立을 목표로 한 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실시하였고 특히 製鐵, 石油化學, 金屬 및 機械工業 등 重化學工業의 점진적인 추진과 國際收支改善을 위한 輸出增大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第2次 5 個年計劃이 시작된 1967 년부터 우리나라經濟는 급속한 輸出伸張에 主導되어 高度成長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輸出 및 外資導入의 量的擴大와 더불어 經濟의 開放化가 여러 部門에서 급속히 진전되었고 金融國際化에 대비한 金融制度의 改編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對外貿易去來 側面에서는 國內商社의 海外市場開拓을 적극 支援하여 輸出振興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과도적인 金融 및 外換管理體系를 正常化함으로써 앞으로 國內進出이 예견되는 外國銀行과 資力, 對外信用 및 技術面에서 自主的인 立場에서 競爭할 수 있는 國內 外換業務態勢를 整備하기 위하여 外換業務를 主導하는 金融機關의 設立이 절실히 要請되었다. 이에 따라 1967 년 1 월에는 韓國銀行이 잠정적으로 취급하던 外換, 輸出入業務등 對民間業務를 引受하여 外國換業務專担銀行으로서 韓國外換銀行이 設立되었고 같은 해 5 월 부터는 美國의 「체이스·맨해튼」銀行을 필두로 外國銀行의 國內進出이 시작되었다.

1960 년대 후반 특히 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시작된 1967 년부터 우리나라 經濟는 高度成長을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重化學工業政策이 강력히

추진되었던 第3次 5個年計劃期間중인 1973년까지 지속되어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經濟는 成長率이 年平均 10.9%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高度成長은 國內의 消費需要增大와 設備投資增大 그리고 輸出需要增大에 그 主要因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工業化進展과 더불어 당시 世界的인 景氣上昇에 힘입어 輸出이 급격히 伸張되어 輸出은 持續的 高度成長을 뒷받침한 큰 要因이 되었었다. 國內産業은 특히 製造業에 있어서 鉄鋼, 機械, 電子, 造船, 石油化學등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증대되는 등 그 構造에 있어서 高度化됨은 물론 商品輸出에 있어서도 유례없는 증가를 시현하였고 상품수출 構造에 있어서도 중래 鉅・水産業 위주에서부터 工產品의 比重이 늘어나 1973년에는 그 比重이 80%를 상회하기에 이르는 등 현저한 高度化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고도성장을 배경으로하여 政府는 1973년 8월 重化學工業化의 本格的 推進과 한편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增大를 통해 1980년대초에 1人당 國民所得 1,000「달러」와 輸出目標 100억「달러」達成이라는 비약적인 国力伸張을 다짐한 “우리經濟의 長期展望”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3년 하반기부터 世界經濟가 成長鈍化趨勢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10월의 中東戰에서 發端된 「아랍」產油國의 일방적인 石油禁輸와 油價의 4倍引上을 계기로 본격적인 不況局面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美國, 유럽諸國, 日本을 비롯한 主要先進諸國의 經濟는 대폭적인 國際收支의 逆調와 「인플레이」의 昂進 및 失業率의 上昇과 함께 負 내지 零의 成長을 나타내었으며 그밖에 產油國을 제외한 거의 모든 國家도 景氣沈滯속의 物價急騰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現象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各國經濟의 昏迷는 國際金融市場의 不安과 더불어 國際收支防禦를 위한 특히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傾向의 抬頭를 招來함으로써 世界交易 또한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國際經濟情勢의 急變은 海外依存度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 經濟에 生産, 物價, 雇傭, 國際收支 등 經濟全般에 걸쳐 前例없이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즉 國民總生産面에서는 輸出伸張勢의 鈍化 및 投資를 중심으로 한 內需不振으로 經濟成長率이 1974년중에는 전년의 절반水準인 8.0%로 떨어졌다. 또한 對外去來面에서는 輸出이 크게 鈍化된 反面 硬直的인 輸入構造와 主要資源의 國際價格昂騰 등으로 輸入額은 大幅 擴大됨으로써 前例없는 貿易收支 逆調現象을 보였다.

이와같이 輸出不振과 國內需要의 低調로 그 成長勢가 급격히 鈍化되었던 우리나라의 經濟는 1975년에 들어와서도 상반기까지 계속 沈滯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5년 하반기이후 先進國의 景氣回復과 함께 回復勢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나라 經濟는 輸出의 急伸張과 함께 1976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高度成長期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197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韓國經濟는 다시 팔목할만한 好調의 樣相을 보이게 되었는데 우선 經濟成長率이 1962년 經濟開發計劃을 着手한 이래 최고로 높은水準인 15.1%에 달하였으며 對外去來面에 있어서도 輸出需要의 急伸張을 반영, 전년중에 1,887백만「달러」에 이르렀던 經常收支赤字가 1976년중에는 314백만「달러」로 크게 축소되어 國際收支上의 改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1950년대이래의 世界經濟의 輸出與件面의 變化와 우리나라의 輸出構造上의 變化側面을 보기로 하자.

먼저 世界의 輸出與件變化를 보면 1950년대부터 先進國은 輸入需要는 旺盛하나 現金支給能力이 없는 開發途上諸國에 대하여 中長期延払輸出去來方式에 의한 資本財의 販路擴大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는 延払輸出金融條件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輸出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先進國을 중심으로 한 世界各國의 輸出競爭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인 商品輸出爲主의 短期的인 方式으로서는 우리나라 輸出의 持續的伸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한편 우리나라의 輸出構造가 相對的으로 低位에 머무르고 있는點, 그리고 輸出市場의 開拓 및 安定的인 確保의 必要性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一定資本財를 相對國에 扶植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經濟協力關係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長期的인 輸出政策으로 전환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따라 1968년 政府는 최초로 延拓輸出計劃을 세웠으며 이와 관련하여 延拓輸出支援資金의 確保 및 運用과 担当機關의 指定 또는 新設 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리하여 1969년 7월 28일 中長期信用에 의한 輸出入과 海外投資등에 관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資本財의 販路擴大와 經濟交流의 增進을 기하는 한편 우리나라 産業構造 및 輸出構造의 高度化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韓國輸出入銀行法」을, 동년 10월에는 同施行令을 각각 制定 公布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아직까지 國內産業構造上의 与件이 未成熟하였고 또한 所要財源調達이 부진하였을 뿐 아니라 中長期信用에 의한 資本財輸出入実績이 微微하였으므로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은 일단 延期시키기로 하는 한편 同 業務를 韓國外換銀行이 兼營적으로 代行토록 하였다.

그러나 政府의 輸出主導의 成長政策追求와 관련된 重化學工業育成施策에 따라 1975년 하반기부터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重化學工業分野의 發展이 있는 후에 輸出入銀行을 設立하기보다는 輸出入銀行을 먼저 設立하고 輸出入銀行을 통한 과감한 資金支援을 통하여 重化學工業 育成을 本格化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특히 당시로서 1980년대초에 100억「달러」 輸出目標達成

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重工業製品의 輸出을 확대시킬 必要가 보다 時急하여졌고 이를 위한 中長期 延払輸出支援專担金融機關의 設立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6년 4월 8일 政府는 드디어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方針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1976년 7월 1일에는 韓國輸出入銀行이 正式으로 發足하게 되었다.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經緯

1. 中長期延拂輸出金融 專擔機關 設立論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第1,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輸出規模가 더욱 擴大되고 輸出産業構造가 高度化하여 1960년대의 單純勞動集約的인 輕工業為主에서 점차 技術 및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으로 전환되기 시작함과 때를 같이하여 政府의 開發政策 또한 重化學工業育成이라는 방향으로 굳어지자 이와같은 重化學製品 즉 資本財의 輸出을 뒷받침할 中長期延払輸出金融을 전담할 專門銀行設立의 必要性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따라서 1969년도에 있는 輸出入銀行法の 制定·公布는 이와같은 당시의 与件造成과 經濟開發에 대한 政府의 뚜렷한 方向設定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中長期延払輸出金融을 支援하기 위한 方案이 구체적으로 論議·檢討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第1次 輸出振興擴大會議時 延払輸出을 통한 重化學製品의 輸出振興을 기하라는 大統領의 特別指示가 있고난 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政府의 關係部처 가운데 財務部는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確立方

案”을, 商工部는 “中長期延払輸出振興方案”을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財務部가 제시한 “中長期輸出支援金融制度 確立方案”의 內容은 特別法の 制定에 의하여 中長期延払輸出支援金融 專担機構로서 輸出入銀行을 설립하되 당시로서는 取扱業務量이 적고 政府出資의 조속한 실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이의 設立을 일단 保留하고 이후 延払輸出額이 一定規模에 달하여 業務量이 확대 될 때까지 당분간 韓国外換銀行이 대행하되 必要資金은 政府로부터 財政資金을 貸下받아 운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商工部の “中長期延払輸出振興方案”의 內容은 中長期延払 輸出振興法을 제정하되 財政資金과 中長期延払輸出振興基金으로 資金을 확보하고 이의 운용에 있어서 船積前에는 輸出契約書에 의거 対象品目の 生産 내지 製作에 필요한 原資材의 輸入資金과 生産 또는 製作資金을 融資토록 하고 船積後에는 中長期延払輸出金融으로 융자하되 担当機關으로는 第1案으로서 韓國銀行 또는 韓国外換銀行이 이를 담당케 하거나 또는 第2案으로서 별도의 獨立 機構를 設立하여 延払輸出振興基金을 운용토록 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 당시 財務部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그후 制定·公布된 韓國輸出入銀行 法の 根幹이 된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의 主要骨字는 다음과 같다.

가. 目 的

中長期延払輸出金融을 담당함으로써 外國市場開拓과 貿易增進을 통한 對外經濟 交流를 促進함.

나. 性 格

全額 政府出資에 의한 特殊法人으로 하며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은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치 않음.

다. 資本金

300 억원

라. 任 員

總裁 1 人 (法制定時 銀行長으로 바뀜)

副總裁 1 人 (法制定時 專務理事로 바뀜)

理事 5 人이내, 監事 1 人

마. 業 務

① 国内業者에 대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및 其他製品 輸出資金의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② 国内業者에 대한 技術提供資金의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③ 外国政府 및 外國人에 대한 輸入資金, 技術導入資金의 貸出

④ 延払輸出에 필요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物資輸入資金의 国内業者에 대한 貸出 또는 어음의 割引

⑤ 国内業者에 대한 海外事業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貸出

⑥ 前 ①, ②, ④, ⑤의 貸出에 관련된 業務의 保證

⑦ 其他 附帶業務

⑧ 資金의 調達方法

㉓ 政府가 出資하는 資本金

㉔ 政府, 外国金融機關 및 國際金融機關 으로부터의 借入

㉕ 外国通貨表示의 輸出入金融債券發行

바. 業務의 制限

- ① 銀行 기타 国内金融機關과의 競争禁止
- ② 貸出, 割引 및 保証은 그 償還, 支給, 履行期間이 6월이상, 5년 이내인 것에 限함. 다만 船舶, 鐵道車輛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品目에 대해서는 10년 까지 延長할 수 있음.
- ③ 借入 및 外債發行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の 10 倍로 함.

사. 損益金の 處理

- ① 純利益의 100 分の 50 은 積立하고 殘餘利益은 政府의 一般歲入으로 納入함.
- ② 純損失은 積立金으로 充當하고 不足分은 政府가 補填함.

아. 經過措置

-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 까지 韓国外換銀行이 이 業務를 담당하되, 이를 韓国外換銀行의 本業務와 分離된 獨立會計로 함.
- ②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동시에 韓国外換銀行에 대한 貸下金은 이를 政府出資로 代替토록 함.

2. 法の 制定

앞에서 說明한 延拓輸出支援方案을 다 각도로 검토한 政府는 外國의 경우 대부분의 資本財輸出国이 資本財輸出을 위한 專担金融機關을 두고 있다는 점과 延拓

輸出支援業務의 내용이 특수하고 전문적일 뿐아니라,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專担機構로서 輸出入銀行을 설립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財務部가 제시한 韓國輸出入銀行法案을 採択, 이를 國務會議審議를 거쳐 1969년 초에 國事議 第 343 号로 國會에 제출하였다.

이 法案은 같은해 6월 國會財務委員會의 審議時 提案內容에 대한 一部修正을 거쳐 7월 10일 國會本會議에서 通過되었으며 1969年 7월 28일에 法律 第 2122 号로 正式 公布되었다. 또한 뒤이어 이 法에 의거한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이 大統領令 第 4099 号로 같은 해 10월 6일에 制定・公布되었다.

3. 業務의 代行

그러나 政府는 同法의 經過措置에 明示된 바와같이 당시 國內의 産業與件과 政府의 財政形便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中長期延払輸出活動이 활발해 질 때까지는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을 일단 보류하고 同 業務를 韓國外換銀行으로 하여금 代行케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外換銀行은 이의 專担部署로서 同行內에 中長期信用部를 신설하고 政府로 부터 1억원의 財政資金을 貸下받아 1969년 10월 29일부터 業務를 개시하였다.

이 中長期信用部는 1971년에 인도네시아의 山林資源開發을 위한 海外投資資金 388백만원을 貸出한것을 기점으로 1972년에 1,158백만원, 1973년에 1,563백만원, 1974년에 2,320백만원을 지원 함으로써 매년 그 業務가 伸張되었으며, 1975년 7월 1일에 와서는 中長期信用部를 輸銀企劃部和 輸銀業務部로 擴大 改編함으로써 장차 輸出入銀行設立을 위한 準備作業에 착수하였다.

4. 第1次 法の改正

그러나 韓国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立法時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나 미비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重化学製品 延払輸出의 증가로 延払輸出金融에 대한 需要가 팽창하여 増資의 必要性이 절실하게 되자 政府는 1974년 12월 26일 韓国輸出入銀行法을 改正하여 이를 法律 第2736号로 公布하였다. 이때의 改正으로 韓国輸出入銀行의 設立目的에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供与가 추가되게 되었고, 法定資本金이 300 억원에서 1,500 억원으로 増額되었으며, 理事会를 폐지하고, 대신 臨時運營委員會制度를 도입하였다.

뒤이어 政府는 改正된 法の 내용에 맞추어 施行令을 改正하고 1975년 2월 28일 이를 大統領令 第7561号로 公布하였다.

5. 設 立

가. 設立委員會의 構成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이 끝난 1970년대 초반부터 重化学工業製品의 延払輸出이 급속도로 伸張되자 과감한 資金支援을 위하여 獨立機構로서의 輸出入銀行의 設立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었다.

이에 政府는 1976년 4월 8일 韓国輸出入銀行의 設立指針을 발표하였고, 4월 10일에는 韓国輸出入銀行設立을 위한 設立委員會를 위촉하여 韓国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를 正式으로 構成하였다.

당시의 設立委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設立委員名單

委嘱年月日	區 分	姓 名	職 位
1976. 4. 10	委 員 長	南 相 晋	財務部次官
1976. 5. 14	"	趙 忠 勲	財務部次官
1976. 4. 10	副委員長	河 永 基	韓國銀行 副總裁
"	委 員	高 炳 佑	財務部 財政次官補
"	"	朴 弼 秀	商工部 商易次官補
"	"	河 東 善	財務部 理財局長
"	"	鄭 寅 用	財務部 國際金融局長
"	"	洪 完 模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1976. 5. 14	"	宋 仁 相	韓國輸出入銀行長
"	"	李 泰 浩	韓國輸出入銀行 理事

나. 設立委員會事務局의 發足

1976년 4월 10일 設立委員會는 設立事務局長에 崔鍾岳氏를 任命하는 한편 韓國外換銀行職員中 12名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設立委員會事務局을 구성하고 그 事務室을 韓國外換銀行內의 輸銀企劃部에 설치하여 設立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設立事務의 遂行

한편 設立委員會와 設立事務局이 構成되자 다음과 같이 設立事務를 遂行하였다.

(1) 設立費豫算案의 編成, 承認 및 借入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1일 第2次會議에서 設立費豫算案을 編成하고 동년 6월 10일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았으며 6월 16일 豫算額中 一部인 355백 만원을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借入하였다.

(2) 定款의 作成 및 承認

設立委員會는 第2次會議에서 韓國輸出入銀行의 定款을 作成 完了하여 6월 10일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았다.

(3) 本店所在地의 決定

1976년 6월 1일 第2次會議에서 韓國輸出入銀行의 本店所在地를 서울特別市中區 陽洞 286번지 (大字「센타빌딩」 16층)로 할 것을 決定하였다.

라. 韓國輸出入銀行의 任員任命

法 第11條에 의거 1976년 5월 12일자로 初代銀行長에 宋仁相氏가 任命된 데 이어 동년 6월 1일에는 理事에 李泰浩氏와 元裕敏氏 그리고 監事에는 朴鼎在氏가 各各 任命 됨으로써 當行의 初代任員陣이 구성되었다.

마. 第1回 出資金 納入

法 第4條의 規定에 의거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登記를 위한 資本金 納入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1976년 6월 17일 - 韓國銀行이 現金 200억원을 出資

② 1976년 6월 17일 - 韓國外換銀行의 韓國輸出入銀行앞 既貸出債權

300억원을 出資로 轉換措置

(3) 1976년 6월 21일 - 財務部는 이상과 같은 出資納入을 確認

바. 設立登記 및 設立公告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21일자로 法附則 第2條 第3項 및 施行令 第2條에 의거 서울民事地方法院에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登記를 완료하고 동년 6월 22일자로 그 內容을 "서울신문"에 게재하여 公告하였다.

사. 設立事務의 引繼 및 設立經過報告

1976년 6월 23일 設立委員會는 法附則 第2條 第3項에 의거 韓國輸出入銀行長에게 設立事務一切를 인계하였으며 第3次會議에서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에 관한 綜合經過報告書를 作成하여 이를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함으로써 그 임무를 終了하였다.

아. 業務開始日의 指定 및 韓國輸出入銀行의 發足

1976년 6월 25일 財務部長官은 法施行令 第34條의 規定에 의거 韓國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하였으며 이 날자로 當行이 正式으로 發足하게 되었다.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立法精神

韓國輸出入銀行法の制定은 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유사한 專担機關을 設立・運營하고 있는 世界の 여러 先進資本財輸出國家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中長期延払輸出에 대한 金融支援을 專門化시킴으로써 資本財輸出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이것은 資本財輸出이 그 性格上 單位당 去來額에 있어 巨額일 뿐 아니라 輸出相對國이 대부분의 경우 國際収支事情이 어려운 開發途上國이므로 불가불 長期低利의 延払去來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반면에 또한 이는 短期的 商業的인 貿易金融이나 일부 特殊銀行의 中長期施設投資金融으로는 적절하게 지원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와같이 當行은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製品 輸出促進을 위한 하나의 必要條件으로 設立되었는 바, 이제 이러한 當面의 政策的側面을 떠나 當行法이 指向하고 있는 기본적인 設立理念 내지 立法精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

1962년부터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國內의 國民經濟規模 및 資源賦存條件上 필연적으로 對外指向의 成長戰略 다시 말하면 輸出 擴大를 통한 國民經濟의 成長發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第1次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經濟는 주로 섬유産業을 비롯한 輕工業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輸出商品構造에 있어서도 輕工業製

品이 그 大宗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輕工業製品은 본질적으로 所得彈力性이 낮을 뿐 아니라 그 輸出에 있어서도 先進輸入國의 保護貿易主義, 後發開途國의 追擊등 國際貿易環境上의 制約으로 인하여 더 이상 擴大될수 없는 限界性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絶對生産能力의 擴大와 雇傭水準의 持續的提
高를 통한 國民經濟의 安定的인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經濟는 필연적 으로
高度의 技術集約的인 重化學工業 중심으로의 産業構造의 改編이 요청되었으며, 이
는 또한 國內經濟規模와件에서 오는 限界性으로 重化學製品의 海外市場確保가 그
前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當行은 바로 이러한 重化學製品輸出을 위한 海外市場確保에 있어 가장 重要한
要素가 되는 競爭力있는 中長期金融의 供與를 위하여 設立되었다.

이렇게 볼때 이의 設立法인 韓國輸出入銀行法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産業構
造高度化를 통한 重化學製品의 輸出促進과 이를 통한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 다
시 말하면 貿易立國과 함께 重化學立國의 意志를 그 立法精神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2. 對外經濟協力の 促進

다음으로 當行法은 第1條에서 보는 바와같이 重化學製品의 輸出뿐만 아니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함
을 그 두번째 立法精神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重化學輸出増大를 위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라는 궁극적인 目標을 달

성하기 위하여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重化学工業建設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로 인한 資源消費量이 늘어남에 따라 資源의 効率的인 確保 手段으로서 海外資源의 開發輸入문제는 우리經濟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世界賦存資源의 地域的偏在와 그 有限性, 資源「내쇼날리즘」의 高潮와 國際大資本에 의한 世界資源의 寡占化 現象등을 감안할때 國內賦存資源의 缺乏으로 資源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와같은 資源의 長期安定的確保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經濟는 종래의 통상적인 貿易去來를 통한 單純輸入에 의하여 資源을 調達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資源保有國에의 直接投資등을 통한 開發輸入으로 資源調達方式을 전환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開發輸入은 비단 資源輸入先의 多邊化를 통한 所要資源의 長期安定的 確保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投資相對國에 대하여 施設財등 重化学製品의 誘發輸出을 가능케 하는 利点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海外投資에 의한 資源의 開發輸入은 과거 1960 년대에 우리經濟가 취했던 강력한 輸出「드라이브」政策과 같이 우리의 일방적인 利潤追求만으로는 實現不可能하여 대부분이 開發途上國인 이들 資源保有國에 대한 資本供與 및 技術移轉등을 통한 經濟開發協力등 投資受容國의 利益을 保障하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論理는 重化学製品의 單純輸出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형태의 對外經濟交流에 있어 交易相對國과의 雙務的이고도 互惠的인 原則위에서의 對外經濟協力を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인 行動理念으로 삼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經濟構造자체가 기본적으로 對外指向的인 동시에 對外依存的이므로 우리의 모든 對外經濟行動은 相對國과의 利益의 均霑 내지 相互利益의 享有라는 原則에 입각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經濟의 存立基盤

은 결국 상실되고 만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對外經濟協力の 促進은 그 자체가 手段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追求하여야 할 理想과 目標로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 經濟의 繁榮과 發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戰後의 國際經濟秩序가 指向하여 온 各國間의 자유로운 貿易 및 資本去來와 國際經濟協力を 통한 世界經濟의 發展이라는 基本理念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當行法이 對外經濟協力の 促進을 立法精神으로 하고 있는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다.

第4節 韓國輸出入銀行法の 改正

1. 第1次 改正(法律 第2736号 1974. 12. 26 公布)

가. 改正趣旨

1969년 7월 28일 法律 第 2122 号로 制定 公布된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當行의 業務는 當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同法 附則 第3條에 의거하여 韓國外換銀行이 當行의 業務를 代행해 오고 있었는 바, 그 代行業務遂行過程에서 당초 立法時에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미비된 事項이 나타남과 아울러 重化學製品延払輸出의 급증으로 增資의 必要性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當行法은 1974년 12월 26일, 그 第1次 改正을 보게 되었다.

나. 主要改正内容

(1) 目的條項의 修正 (第 1 條)

当行의 設立目的에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供与를 추가하였다.

(2) 法定資本金의 增資 및 出資者의 多辺化 (第 4 條)

종래 法定資本金은 300 억원으로서 政府가 全額出資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500 억원으로 늘리고, 出資者가 政府로 국한되었던 것을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및 銀行法 第 3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그리고 輸出業者의 团体와 國際金融機構도 出資할 수 있도록 出資者를 多辺化하였다.

(3) 理事会制度의 廢止 및 運營委員會의 新設 (第 10 條~第 10 條의 6)

当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의 決定機構인 理事会를 廢止하는 대신에, 当行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는 運營委員會를 新設하였다.

(4) 業務 (第 18 條)

(가) 技術提供資金을 貸出하기 위한 前提인 技術提供의 概念에 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を 포함시켰다. (第 1 項 第 2 号)

(나) 輸入資金, 海外事業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受惠範圍를 擴大調整하였다. (第 1 項 第 4 号, 第 5 号, 第 6 号)

(다) 다음 各号의 貸出業務를 新設하였다. (第 1 項 第 7 号, 第 8 号, 第 2 項)

- ① 外國政府等에 대한 出資資金貸出
- ② 外國政府等에 대한 對韓決濟資金貸出
- ③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
- ④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

(5) 資金借入先의 多辺化 (第 19 條)

当行의 資金借入先을 종래 政府, 外國金融機關 및 國際金融機構로 한정하고 있었

으나 여기에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 3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등 国内金融機關과 外国政府를 추가하였다.

(6) 輸出入金融債券發行의 多樣化 및 保證條項新設 (第 20 條)

종래 外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만 發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제한을 풀어 元貨表示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 (外国에서 發行하는 경우에는 韓國外換銀行도 가능)가 保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業務計劃承認節次의 變更 (第 22 條)

業務計劃에 대한 財務部長官의 承認節次中 종래에는 國務會議의 審議 및 大統領의 承認을 받기에 앞서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同 諮問節次를 생략하였다.

(8) 貸出金償還期間等の 延長 및 調整 (第 25 條)

(가) 第 18 條 第 1 項資金의 償還期間等を 종래의 6월 이상 5년 이내에서 6월 이상 10년 이내를 原則으로 하도록 改正하고 10년까지 延長할 수 있던 例外規定을 20년까지로 擴張하였다.

(나) 第 18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및 對外經濟協力資金)의 貸出期間은 20년 이내로 規定하고 同 資金의 貸出限度를 明示하였다.

(9) 利益金の 處理方法變更 (第 36 條)

종전에는 法定積立金を 100 分の 50으로 하고 残余利益金は 政府의 一般歲入으로 納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法定積立金を 100 分の 20으로 하고,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대한 優先配當根拠條項을 두었으며 残余利益金は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10) 余裕金の 運營方法 追加 (第 38 條)

余裕金の 運營方法이 종전에는 國債의 保有 및 韓國銀行에의 預入으로 국한되었던

것을 其他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方法으로도 運營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附 則

(가) 當行의 設立時까지 韓國外換銀行의 當行業務代行에 관한 規定의 內容을 일부 補完하였다.

(나) 韓國外換銀行의 當行 業務代行期間中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設置·運營하도록 하였다.

(12) 其他 一部 表現 및 文言整理를 하였다.

다.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의 第 1 次 改正 (大統領令 第 7561 號, 1975.2.28 公布)

1974 年 12 月 26 日 法律 第 2736 号로 改正公布된 當行法에 따라 關聯條文을 改正하였으며 그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1) 融資對象製品의 指定方法變更 (第 13 條)

종래에는 輸出金融을 받을 수 있는 製品中 産業施設以外의 것은 一定한 品目中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指定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이 單獨으로 指定하도록 하였다.

(2) 融資對象重要物資의 指定 (第 14 條)

輸入金融을 받을 수 있는 重要物資의 種類를 종래에는 一定한 品目中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合意하여 指定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現行과 같이 個別的으로 列挙하였다.

(3) 海外投資資金貸出要件을 보다 구체적으로 提示하였다. (第 15 條)

(4) 法 第 18 條 第 2 項의 適用을 받는 主要資源의 範圍를 구체적으로 明示하였다. (第 15 條의 2)

(5) 償還期間等の 特例條項에서 船舶, 鐵道車輛 등 列挙된 表現을 삭제하고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특히 長期間이 필요하다고 運營委員會가 認定하는 것에 한하여 20년까지 支援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다.

(6) 優先配当率이 利益金の 100 分の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明示하였다. (第 17 條의 2)

(7) 附 則

(가) 韓国外換銀行이 當行業務를 대행하는 경우, 그 業務 및 會計處理에 있어서 韓国外換銀行法에 의한 業務 및 會計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明文化하였다.

(나) 韓国外換銀行이 當行業務를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各 事業年度의 利益金은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行의 計算으로 積立하도록 規定하였다.

(8) 其他 一部 表現 및 文言整理를 하였다.

2. 第 2 次 改正(法律 第3022号 1977. 12. 19 公布)

가. 改正趣旨

그간 國內 重化學工業基盤의 擴充과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資本財輸出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게 되자 1976년 7월 1일자로 當行이 正式으로 設立· 發足하였으며 차이에 當行의 規模와 機能을 확대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金融을 支援하고자 當行法은 1977년 12월 19일 그 第2次 改正을 보게 되었다.

나. 主要改正內容

(1) 目的條項의 修正(第 1 條)

第 1 條에서 정하고 있는 “中長期 信用에 의한 輸出入”은 代金支給 및 回收가 延
払方式에 의하여 決済되는 것으로 制限的으로 解釈될 수도 있는 바, 第 18 條 第 1
項의 1 号 및 4 号 각각에서 規定하고 있는 輸出과 輸入은 第 25 條 第 2 項의 規定
에 따라 信用條件(延払)뿐만 아니라,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 월 이 상이면
代金決済가 一覽払條件인 경우도 取扱을 想定하고 있으므로 兩規定 사이의 解釈上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第 1 條의 “中長期 信用에 의한”이란 文句를 삭제하였다.

(2) 法定資本金의 増資(第 4 條)

延払輸出 및 当行 資金支援所要의 拡大趨勢에 비추어 종래의 法定資本金 1,500
억원을 5,000 억원으로 増額하였다.

(3) 理事会新設(第 9 條의 2)

当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도록 理事会를 設置하여 신속하고 책임있
는 經營体制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4) 運営委員会委員 1 人追加(第 10 條의 2 第 1 号의 2 新設)

当行業務와 관련된 對外去來에 따른 外交的 影響에 대한 檢討와 現地公館과의 有
機的連絡 등 機能을 강화하고자 運営委員会委員으로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
서 指名하는 者 1 人을 추가하였다.

(5)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및 對外 經濟協力資金貸出時 運営委員会議決을 얻도
록 하였다.(第 18 條 第 2 項)

(6) 其他 “貸付”를 “貸出”로 変更하는 등 一部 表現 및 文言整理를 하였다.

第二章 韓國經濟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韓國經濟의 重工業化 推進과 對外去來擴大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 設立以前의 中長期輸出金融業務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과 業務基盤의 擴充

第4節 重化學輸出增進과 韓國輸出入銀行의 役割

第二章 韓國經濟發展과 韓國輸出入銀行

第1節 韓國經濟의 重工業化 推進과 對外去來擴大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을 段階別로 区分한다면 解放以後부터 6.25 動亂까지의 經濟混亂期를 거쳐 대체로 6.25 動亂부터 1958년까지는 援助中心의 戰後復興時期로 볼 수 있겠으며 1958년부터 1961년까지는 援助中心體制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른 自立經濟로의 이행을 위한 摸索期로, 그리고 1962년 이후 부터는 開發計劃의 수행을 통한 急成長期로 区分해 볼 수도 있겠다.

여기서는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년 이후부터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과 관련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對外去來의 擴大過程을 ① 綜合的인 開發計劃이 着手됨으로써 自立經濟의 摸索期에 해당될 수 있는 1962년 부터 1966년까지의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과 ② 1960년 후반 즉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7년부터 세계적인 石油波動이 있었던 1973년까지의 高度成長期 그리고 ③ 그 이후의 石油波動과 産業構造轉換期 즉 1974년 이후 부터 현재에 이르는 期間으로 区分하여 概觀하고자 한다.

1. 經濟開發 始發期(1962~66년)

1962 ~ 66 年期間은 韓國經濟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

을 이룩한 時期이다. 이 期間中에 처음으로 自立經濟基盤을 마련하기 위한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着手, 推進됨으로써 우리나라 經濟는 앞으로의 跳躍을 위한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가.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推進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천에 옮겨진 綜合計劃으로서의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모든 社會經濟的 惡循環을 是正하고 自立經濟의 達成을 위한 基盤을 構築” 할 것을 그 基本目標로 하였는데 國土가 협소하고 人口과밀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資源의 効率的 配分과 工業化를 통한 産業의 近代化가 時急한 課題이었으므로 1962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第1次計劃期間을 目標達成의 準備段階로 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에 經濟政策의 重點을 두었다.

- ① 電力·石炭 등 「에너지」供給源의 確保
- ② 農業生産力の 增大에 의한 農家所得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의 是正
- ③ 基幹産業의 拡充과 社會間接資本의 充足
- ④ 遊休資源의 活用 특히 雇傭의 增大와 國土의 保全 및 開發
- ⑤ 輸出増大를 주축으로 하는 國際収支의 改善
- ⑥ 技術의 振興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있어서는 우선 國民總生産(1961년 不變市場價格 基準)이 과거 3년간 平均値의 2倍인 7.1%씩 成長하며 産業別로는 1次産業 및 3次産業이 각각 年平均 5.6%와 4.4%로 成長하는데 비해 2次産業은 年平均 14.8%씩 成長함으로써 2次産業의 構成比가 基準年度의 18.2%에서 34.8%로, 3次産業은 45.7%에서 39.1%로 낮아져 産業構造의 近代化가 이

루어지도록 計劃하였다.

國際收支面에서는 商品輸出이 急速히 늘어나 目標年度에는 基準年度の 約 4.2 倍인 137.5 백만「달러」에 달하도록 計劃하였으며 意慾的인 開發計劃의 遂行에 따라 投資用 施設材 및 原資材를 중심으로 輸入이 계속 증가하는 한편 無償援助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經常收支는 計劃期間中 總 4 億「달러」에 달하는 赤字를 기록할 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投資의 最優先順位를 製造業에 둠으로써 工業化를 통한 經濟開發計劃을 指向한 點과 不足한 市場을 海外에서 찾고 이를 통해 外換供給을 늘리는 등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 즉 外延의 成長政策이라는 點은 主要한 特徵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第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經濟自體에 投影된 開發意慾과 國內外与件 變化로 인하여 1 次, 2 次年度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施行過程에서의 錯誤를 없애기 위해 補完計劃을 작성할 必要를 낳았고 이로써 成長率에 있어서는 原計劃의 7.1 % 成長率을 補完期間(1964 - 66) 동안 5 %로 縮小 調整하였고 投資計劃도 수정었다.

나. 工業化의 始動

第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中 우리나라經濟는 年平均 8.5 %의 높은 成長率(1965 不變市場價格基準)을 시현하였는데 이와같이 높은 成長実績은 計劃前의 5 年間(1957 - 61)의 年平均성장률 5.4 %에 비하여 3.1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 次産業은 期間中 年平均 15.0 %의 成長을 시현함으로써 經濟成長을 主導하였으며 이에 따라 基準年度인 1960 년에 1 次産業 35.2 %, 2 次産業 19.2 % 및 3 次産業 45.6 %의 産業構造가 1966 년에는 1 次産業 31.7 %, 2 次産

業 25.7 % 및 3次産業 42.6 %로 改善되었다.

2次産業의 높은 成長은 計劃期間中 輸出産業과 輸入代替産業이 集中育成되고 外資導入에 의한 高率의 投資가 製造業部門에 投入되고 애로요인이 되었던 社會 間接資本部門에 대한 投資増大로 인하여 製造業의 成長環境이 改善된 데 기인하였는바 同期間中에 精油, 肥料, 시멘트, 화학섬유, 전기기기 등 輸入代替産業과 輸出産業은 크게 育成되었다.

다. 貿易의 擴大와 國際收支

1958년 이후 美國은 自國의 國際收支逆調를 改善하기 위하여 「바이·아메리칸」(Buy - American)政策을 強化하였고 특히 1961년 9월에는 軍事 및 經濟援助의 嚴格한 分離 및 經濟援助優先과 종래의 無償援助로부터 開發借款에로의 移行등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對外援助法」을 公布實施함으로써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經濟安定과 成長을 뒷받침하여 온 美國의 對韓援助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轉換期를 맞이하여 政府는 經濟政策의 重點을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주축으로 하여 적극적인 開發擴大政策으로 지향하고 특히 輸出을 強力히 支援함으로써 經濟의 自立化에 필요한 外換을 自力으로 조달토록 하는 한편 變動換率制의 實施 및 貿易의 自由化등 점진적인 開放體制로의 移行에 力點을 두었다. 특히 賦存資源이 貧弱한 가운데 國土面積에 比하여 過密한 人口를 가진 우리나라 經濟는 무엇보다도 國際的 分業에 立脚한 工業化施策이 絶실히 要請되었고 이에 따라 對外去來는 필연적으로 擴大되지 않을 수 없었다.

1次 5個年計劃期間中 政府는 輸出을 最大限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經濟開發에 必要한 각종 施設材를 우선적으로 導入케 함으로써 國內生産力提高에 노력하는 한편 종래 輸入의 大宗을 이루었던 각종 消費財 輸入을 最大한 억제하였다. 그 결

과 우리나라의 商品輸出은 計劃期間中 刮目할 만한 伸張을 보였으며 国内生産活動도 크게 제고되었다.

즉 1950 년대를 통하여 輸出은 年平均 20 백만「달러」内外의 미미한 実績에 지나지 않았으나 第1次5個年計劃의 3次年度인 1964년에는 商品輸出이 우리나라 史上 처음으로 1억「달러」水準을 上廻하게 되었고 1次5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1966년에는 250 백만「달러」로 늘어 나 計劃期間中 商品輸出은 年平均 43.9%라는 類例없는 높은 伸張率을 기록하였다.

한편 同期間中 輸出構造도 크게 變化되어 1962년 1次產品의 輸出 비중이 79.4%, 工產品輸出 비중이 20.6%이던 것이 1964년에는 각각 50.4%, 및 49.6%로 兩產品의 비중이 거의 均衡을 이루었으며 計劃의 最終年度인 1966년에는 工產品輸出 비중이 總輸出의 61.9%, 1次產品輸出은 總輸出의 38.1%로 나타나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構造的改善이 뚜렷하였다.

第1次計劃期間中 우리나라의 國際收支面에서의 特徵은 貿易規模의 擴大, 輸出增大에 의한 對外去來面에서의 自立度 提高, 海外借款의 導入에 의한 國際流動性 및 外換事情의 好轉등으로 要約될 수 있으며 특히 輸出의 急伸張뿐만 아니라 그 構造가 工產品 中心으로 개선된 점과 輸入에 있어서는 消費財 내지 原材料 輸入에서 輸入代替産業 및 輸出産業育成을 위한 資本財로 그 構造가 바뀌었다는 點도 특징이라 하겠다.

2. 高度成長期(1967~73년)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을 통하여 基礎産業施設과 社会間接資本의 扩充, 輸出의 促進 등으로 工業化의 基盤을 갖추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自立經濟의 確立을 促進하기 위한 第2次經濟開發計劃(1967 - 71년)을 추진하였고, 이어 第2次計劃까지는 輸出入代替部門이었던 中間財 및 施設材 生産部門을 輸出戰略部門으로 전환하고 重化學工業部門을 開發戰略産業部門으로서 本格的인 育成을 하려는 第3次經濟開發計劃(1972 - 76년)을 계속하여 實施하였다.

특히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7년부터 世界的인 「에너지」波動으로 成長勢가 꺾인 1974년 以前까지의 7년동안은 우리나라 經濟가 급속한 輸出伸張과 投資増大의 뒷받침 등에 主導되어 年平均 10.9%(1975년不變市場 價格基準)라는 高度成長期를 맞이하였다고 보겠다.

이 時期에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過程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工業成長과 함께 輸出의 급속한 伸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第2次 經濟開發計劃의 1次年度인 1967년에 320백만「달러」에 불과하던 商品輸出이 1973년에는 3,225백만「달러」에 달하여 6년동안에 무려 10倍以上 増加함으로서 成長을 主導하였다. 이것은 연평균 45.6%의 획기적인 성장율로서 第1次計劃期間동안의 43.9%를 능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同期間中 世界輸出増加率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世界輸出總額中 우리나라 輸出額의 比重도 1966년의 0.14%에서 1973년에는 0.62%로 크게 높아졌다.

가. 成長指向 및 輸出主導型 開發政策의 推進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化學, 鉄鋼 및 機械工業을 健全하여 工業高度化의 기틀을 확립하는 한편 工業生産을 増加하며 획기적인 國際收支改善의 基盤을 굳히기 위하여 輸出을 目標年度인 1971년에 7억「달러」(商品輸出: 5.5억「달러」)을 달성하고 輸入代替를 促進하는 등의 課題를 설정하였다.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이어 工業化를 本格的으로 着手한 점은 第2次計劃의 두드러진 特徵이라 할 수 있겠으며 製造業을 內需産業에서 輸出 및 輸入代替産業으로 轉換하는 한편 중래의 輕工業 중심에서 業種間 補完性이 큰 石油化学工業 등 重化学工業部門의 集中的인 開發에 力點을 두어 製造業에서의 重化学工業비중을 1971년에 33.5%로 高度化시키도록 計劃하였다.

國際收支改善과 關聯하여 輸出의 增大는 2次計劃에 있어서도 계속 重要的 政策方向이었으며 1971년의 商品輸出 目標를 550百萬「달러」로 策定하여 1967~71년 평균 17%로 伸張함으로써 그 規模가 基準年度의 3倍以上에 이르도록 計劃하였다. 또한 輸出商品의 構造에 있어서도 工產品의 比重을 1965년의 62.0%에서 1971년에는 74.0%로 끌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2년에 시작된 第3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에 있어서는 計劃期間中 年平均成長率은 8.6%로서 第2次計劃期間의 年平均成長率 11.6%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여 成長과 安定의 均衡을 도모코자 하였는데 특히 鉦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年平均 13%의 成長을 目標로 하는 한편 鉄鋼, 機械, 石油化学工業 등 重化学工業의 건설로 工業構造의 深化를 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産業構造(1970년 不變市場價格基準)는 1970년에 1次産業 28.4%, 2次産業 21.7%, 3次産業 49.9%에서 目標年度인 1976년에는 각각 22.4%, 27.9%, 49.7%로 工業化를 深化시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促進코자 하였다.

한편 政府는 1973년 1월 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長期的인 輸出增大를 構造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重化学工業을 적극 育成할 方針을 밝히는데 이어 同年 8월에는 “우리經濟의 成長展望”이라는 長期開發計劃을 作成하여 1981년까지 製造業의 生産을 1972년에 비해 약 4倍 擴大하여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同期間중 23.3%에서 34.0%

로 높일 것을計劃하였다. 그중에서도 金屬, 機械, 電子, 造船, 石油化學 등과 같은 前後方聯関效果가 크고 人力 및 技術集約的인 重化學工業部門을 集中育成함으로써 計劃期間中 重化學工業이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35.2%에서 51.0%로 높임과 동시에 重工業製品의 輸出増大를 뒷받침하고 自立的 産業構造를 擴充하고자 하였다.

나. 高度成長의 示顯

이러한 經濟開發計劃을 背景으로 1967년부터 第1次 「에너지」波動期가 시작되는 1973년까지 우리나라 經濟의 成長推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上の 經濟成長目標은 당초 7%로 책정하였으나 經濟成長率은 同期間中 이를 크게 上廻하는 10.5%의 實質成長을 거두었고 1967 ~ 73年中 平均 10.9%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産業別로 볼 때 특히 製造業은 이 기간동안에 年平均 22.1%의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었고 社会間接資本과 「서어비스」部門도 11.8%의 높은 年平均成長率을 示顯함으로써 國民經濟의 高度成長을 사실상 主導하였다. 반면 農林·水産業部門에서는 年平均 2.8%의 成長率로 여타部門에 비해 低成長을 보였는데 이는 不順한 氣候條件에 基因하였다.

同期間中 이와같이 高度成長을 示顯할 수 있었던 것은 國內의 消費需要의 증대와 設備投資의 확대 그리고 輸出需要의 増大에 主因을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輸出의 급격한 伸張은 지속적 高度成長을 가져온 가장 큰 要因이었고 이기간 중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高度成長은 높은 投資率에 의해 뒷받침되었는 바, 이와같이 高投資率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國內貯蓄이 増大된데도 原因이 있지만 海外貯蓄이 投資財源의 상당부분을 담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高度成長과 함께 동기간중 産業構造(1970년 不變市場價格基準)도 크게 高度化되어 農林·水産業의 比重이 1973년에 26%로 1966년에 비해 9.4%「포인트」나 낮아진 반면 鎡工業의 比重은 1966년의 20.1%에서 1973년에는 27.1%로 7%「포인트」가 높아졌다.

한편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期로 特徵지워지는 이 期間에는 經濟의 安定基盤構築을 위한 적극적인 經濟調整이 병행되기도한 時期였다. 즉 1971년 하반기 이후 안으로는 그간의 高度成長과 開放經濟化過程에서 파생된 産業間 不均衡과 企業體質의 弱화 등 諸般構造的 險路要因이 顯在化되고 밖으로는 계속된 國際通貨의 不安과 世界的인 「인플레이션」의 만연 등 海外經濟與件이 악화되어 韓國 經濟는 상당한 試練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政府는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3일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을 公布하였는 바 이 緊急命令으로 당시 우리나라 經濟의 構造的 脆弱點을 改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企業體質改善措置가 취하여짐으로써 企業의 財務構造가 현저하게 改善되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不況局面에 있던 不景氣도 好況으로 접어들게 되자 1972년 후반부터는 商品輸出의 急增을 先導要因으로하여 전반적인 國內景氣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1973년에는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 施行 이래 가장 높은 14.9%의 高成長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다. 對外去來의 擴大

1967~71년중의 對外去來実績을 보면 輸出은 年平均 35%의 높은 伸張勢를 유지하여 1971년에는 計劃値의 2배나 초과한 1,132백만「달러」에 달하였고 輸入도 年平均 27%나 늘어나 1977년에는 2,179백만「달러」에 달하였다. 그

결과 貿易収支赤字幅은 計劃上의 規模를 크게 上廻하였고 이러한 赤字를 배우기 위해서는 長期資本導入의 増大가 不可避하였다.

이러한 輸出伸張趨勢는 1972 ~ 73년중에도 지속되어 1973년중에는 輸出이 史上 最高의 増加率인 95.2%로 30억「달러」선을 넘어섰으나 貿易外収支와 移轉収支가 큰 變動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貿易収支赤字는 毎年 5억「달러」 이상의 長期資本導入에 의해 補填되었으며 對外去來規模의 拡大勢에 맞추어 外換保有高는 10억「달러」선을 돌파하였다.

1967 ~ 73年中 이와같은 輸出의 加速的인 伸張은 高投資와 함께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지대한 寄与를 하였다. 즉 同期間中 우리나라의 國民總生産은 年平均 10.9%의 高成長을 기록하였는데 輸出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重인 輸出依存度는 1967년 13.7%에서 1973년에는 33.5%로 크게 높아졌으며 成長寄与率面에서도 1967년의 20%대에서 1973년에는 65%로 높아짐으로써 명실공히 輸出主導型 高度成長의 面貌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 時期에 우리나라는 輸出의 量的擴大와 더불어 商品構造面에서도 큰 進展을 이룩하였다. 즉 同期間中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추진하여온 纖維, 合板, 신발, 假髮 등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의 輸出體制를 더욱 공고히 하여 國際的인 比較優位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1970년대초부터는 重化學工業製品의 開發을 적극 推進함으로써 工產品輸出構造가 高度化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에 66.5%를 점하였던 工產品輸出比重은 1973년에는 87.2%로 높아졌다. 그리고 輕工業製品의 總輸出에 대한 比重이 1966년의 56.3%에서 1973년에는 63.4%로 제고되었으며, 1966년에는 10%内外의 미미한 水準에 머물렀던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도 1972년부터 政府의 적극적인 重化學工業育成政策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73년에는 23.8%로 높아졌다.

主要品目別 輸出動向을 보면 金屬鉍物魚, 介類 및 同製品을 주축으로하는 1次産品の 輸出이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工産品에서는 輸出大宗品인 纖維, 合板, 신발類의 3個品目이 여전히 높은 輸出伸張勢를 보여 期間中 10倍内外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同期間中 가장 급속한 增加를 기록한 品目은 鉄綱과 電氣機械였는데 鉄綱製品은 1967년에 2백만「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73년에는 189백만「달러」로 6년사이에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電氣機械도 비교적 勞動 및 技術集約的인 電子製品을 중심으로 40倍 以上 增加하였다.

한편 同期間中 輸出市場構造를 보면 總 輸出対象國家가 1967년의 71個國에서 1973년에는 121個國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같은 輸出対象國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輸出의 主要 地域別 構成推移에 있어서는 美國과 日本 2個國에 대한 輸出比重이 1967년의 69.4%에서 1970년에는 75.4%로 증가하였다. 이에 政府는 1971년부터 적극적인 輸出多邊化政策을 推進하여 1973년에 이들 두 나라에 대한 輸出比重이 70.2%로 다소 낮추었으나, 기본적으로 輸出市場構造의 偏重性은 이렇다할 만큼 크게 改善되지 못하였다.

3. 石油波動과 産業構造 轉換期(1974년 이후)

가. 1974년 이후의 經濟概況

1973년 下半期부터의 成長鈍化추세에 더하여 그해 10월의 「아랍」産油國의 石油禁輸와 油價引上으로 世界經濟는 不況局面에 진입하였고 産油國을 제외한 거의 모든 國家에 있어 景氣沈滯속의 物價急騰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現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의 우리나라 經濟도 輸出不振과 國內需

要의 低調로 그 成長이 급격히 鈍化되었고 1975년 上半期까지는 계속 沈滯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石油波動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 堅持된 緊縮政策으로 「인플레이」가 진정됨에 따라 主要先進국이 서서히 景氣振作策을 실시함으로써 世界經濟의 不況이 점차 回復의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1974년말에 있었던 元貨 平価切下の 효과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輸出需要의 部分的 回復에 힘입어 1975년 下半期以來 우리나라 景氣도 점차 上昇局面으로 접어들었다.

여하간 1975년 우리나라 經濟는 7.1%의 實質成長을 이룩하였고 특히 商品 輸出은 物量基準으로 19%가 늘어 연중의 国内經濟活動을 主導하였다. 이와같은 輸出需要의 回復과 더불어 輸入抑制措置 및 原資材輸入價格의 安定으로 貿易 收支 또한 前年보다 266백만「달러」가 改善된 1,671백만「달러」의 赤字를 보였다.

1976년에 들어와 우리나라 經濟는 世界經濟의 景氣回復을 바탕으로 急増한 輸出需要에 힘입어 1975년 下半期 以後의 점진적인 景氣回復勢에서 뚜렷한 擴張勢로 轉換되었다. 그 결과 1976년중 經濟成長率은 1962년 經濟開發計劃을 着手한 以來 최고로 높은 수준인 15.1%에 달하였으며 對外去來에 있어서도 輸出需要의 急伸張을 反映, 75년중에 1,887백만「달러」에 이르렀던 經常收支赤字가 1976년중에는 314백만「달러」로 크게 축소 改善되었다.

이와같이 1976년부터 다시 本格的인 高度成長을 보이게 된 우리나라 經濟는 1977년중에도 前年 下半期以來 지속된 先進諸國經濟의 成長鈍化와 輸入規制強化등 對外貿易環境의 惡化에도 不拘하고 적극적인 市場開拓活動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増大努力에 따른 輸出의 증가와 활발한 投資活動에 힘입어 1976년에 이어 10%를 넘는 高度成長을 지속함으로써 1인당 GNP가 1,000「달러」에 接近하게 되었다. 또한 對外去來面에서도 前年부터 石油波動의 충격을 극복하고

현저한 개선을 보였던 經常收支가 輸出 100억「달러」達成과 함께 海外建設用役收入 및 觀光收入의 好調로 그동안의 慢性的인 赤字에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小幅 黒字로 反轉됨으로써 國際收支의 劃期的 改善이라는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韓國經濟는 그동안 추구해 온 長期目標의 일부를 달성한 셈이지만 海外部門을 통해 급팽창한 通貨와 더불어 國內投資活動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國內經濟活動이 과열의 상태에서 混沌을 빚어내고 物価가 急上昇하는 등 國內經濟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가운데 1979년에는 OPEC의 급작스런 油価大幅引上으로 第2의 石油波動을 겪게 되었다. 그간 國內에서 누적된 物価上昇圧迫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海外로부터의 「인플레이」要因이 加勢되어 우리 경제의 安定基盤을 위협하게 되어 더이상 高度成長만을 추구할 수가 없었으며 輸出과 投資등 經濟政策의 基本方向을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9년 4월 정부는 우리나라 經濟政策의 方向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經濟安定化綜合施策을 발표하였는 바 同施策의 核心은 投資 특히 重化学工業投資의 調整과 輸出「드라이브」의 緩和에 있었으며 지금까지 經濟政策의 優先的 目標였던 成長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安定基盤을 견고히 다지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었다. 重化学工業建設에 있어서는 一部業種의 過剩施設로 인하여 稼動率이 低調한 한편 重化学工業投資에 대한 大規模資金支援이 輕工業部門에의 資金供給을 압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長期的으로 對外競爭力이 취약한 業種, 施設過剩 또는 重複投資業種, 自己資本投入比率이 낮은 事業에 대하여는 投資를 연기 또는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1980년도에도 重化学工業의 内実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部門別 投資計劃을 再調整하는 한편 運轉資金支援을 擴大함으로써 그동안 重複投資로 야기된 과도한 競争 및 낮은 稼動率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規模의 經濟化 및 專門化를 통해 國際競爭力을 강화하도록 努力하였다.

要約컨데 1974년 이후 우리나라 經濟는 石油波動期 및 産業構造轉換期經濟에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1974년 이후의 韓國經濟의 成長을 中心으로 하여 重工業化 및 對外去來의 擴大過程을 연도별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年度別로 본 重化學工業化와 對外去來擴大

먼저 1970년대 前半의 世界經濟與件을 보기로 한다.

1970년 以來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1971년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世界經濟는 1973년 中반에 와서는 다시 過熱景氣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各國은 緊縮政策을 取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이러한 主要國의 緊縮政策의 余波에 따라 世界經濟의 成長勢가 鈍化됨과 때를 같이하여 발발한 10월 6일의 中東戰은 OAPEC (「아랍」石油輸出國機構)의 석유 무기화를 다시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이른바 第1次 石油波動은 世界經濟의 鈍化추세를 가일층 加速化시켰다.

이로써 1974년 연중을 통하여 OECD先進諸國의 GNP는 OECD 發足 이래 가장 낮은 약 0.3% 成長을 시현하는 등 世界經濟는 不況의 底辺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勞動需給이 극도로 弛緩되어 失業率은 戰後 최고수준으로 높아졌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특정지어질 만큼 연중 景氣沈滯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또한 加速化되었다. 한편 「오일달러」의 還流遲延에서 비롯된 國際流動性의 不足,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등 輸入抑制를 中心으로 한 各國의 國際收支防衛 施策의 강화, 그리고 國際金利의 高金利化現象 및 國際金融市場의 不安 등이 겹쳐 世界交易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國際經濟情勢의 變動은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 經濟의 여러 부문에 걸쳐 전례없는 영향과 衝擊을 미쳤다. 1974년중 國民總生産을 보면 輸出伸張勢 鈍化 및 內需低調에 따라 成長主導部門인 鎡工業의 成長率이 그전해의 28.6%에서 15.2%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도 5.0%의 低成長에 머물러 연중 實質成長率은 1973년수준에 비해 半減된 8.0%로 鈍化하였다. 그런

대 製造業의 成長을보면 輕工業部門이 12 %의 伸張에 그쳤는 반면 重化學工業部門은 大單位工場建設에 따른 生産能力扩充과 輸出需要의 堅調에 힘입어 鉄鋼, 船舶, 電子 등 原材料와 耐久生産財의 生産이 늘어나 21 %라는 비교적 높은 伸張率을 보였다.

연중 對外去來는 先進諸國의 景氣下降에 따른 海外需要減退로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온 輸出의 높은 伸張勢가 鈍化한 반면 輸入依存度가 높은 産業構造下에서 主要資源의 國際價格昂騰을 반영, 輸入規模가 대폭 擴大됨으로써 國際收支는 다시 심한 逆調現象을 露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經常收支赤字가 前年の 309 백만「달러」에서 2,023 백만「달러」로 대폭 惡化되었다. 이와같이 經常收支의 赤字幅이 과거 어느 해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1972-73년의 改善局面으로부터 逆調局面으로 逆轉되었고 貿易外去來가 최초로 赤字를 시현한 점등은 特記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 74 년 중 商品輸出(通關基準)은 4,460 백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38 %가 증가하였는 바 이와같은 輸出增加추세는 연중의 海外景氣沈滯를 감안하고 볼때는 상당한 輸出伸張勢라고 볼 수 있겠다.

연중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전년의 伸張率 89 %에서 크게 鈍化된 18 % 증가에 머무름으로써 總輸出에 대한 비중은 전년의 63 %에서 54 %로 낮아진 반면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鋼板, 鉄鋼管, 船舶 등의 輸出好調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91 %의 높은 伸張率을 보임으로써 總輸出에 대한 비중은 전년의 24 %에서 33 %로 높아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主要輸出品目の 輸出額順位에서도 纖維, 合板 등 輕工業製品의 순위가 1970 년 이후 점차 하강하고 있는 반면 鋼板, 電氣機器 등 重化學製品은 1969-71 년경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構造가 1970 년대에 들면서 輕工業위주에서 점차 重化學工業위주로 移行하는 構造的 轉換期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1975 년에 들어와 우리나라경제는 上半期까지는 계속 沈滯局面을 지속하였으나

下半期 이후 輸出需要의 회복에 主導되어 점차 好轉되었으며 前年度에 대폭 惡化되었던 國際收支도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율은 지난해 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연간 7.1%라는 비교적 높은 實質成長을 이룩하였다.

成長主導部門인 製造業成長率は 크게 鈍化되었는데 製造業中에서는 輕工業部門이 輸出大宗品目인 合板과 皮革製品 등의 輸出好調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높은 13.5%의 伸張을 보였으나 重化學工業部門은 전년의 20.9%를 크게 하회하는 11.5%의 伸張에 머물렀다.

對外去來面에서도 輸出增加率が 전년의 38%에서 11%로 대폭 鈍化하였으나 輸入增加率が 수입억제조치와 原資材 輸入價格의 안정으로 3.4% 증가에 그침으로써 貿易收支赤字는 지난해 보다 266 백만「달러」가 개선된 1,671 백만「달러」를 실현하였고 經常收支赤字는 지난해의 2,023 백만「달러」에서 1,887 백만「달러」로 약간 줄어드는데 그쳤으나 長短期資本導入이 순조로워 外換保有額은 연말현재 1,542 백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연중 輕工業製品의 輸出은 2,916 백만「달러」로 前年比 21%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重化學工業製品 輸出은 1,276 백만「달러」로 前年比 13%나 크게 減少함으로써 1970 년대에 접어들어 점차 重化學工業製品 위주로 構造的 轉換을 하던 우리나라 輸出構造的 高度化가 일시 停滯되는 現象을 보이기도 하였다.

1976 년의 우리나라 經濟는 世界經濟의 景氣回復을 바탕으로 급증한 輸出需要에 힘입어 1975 년 下半期 이후의 점진적인 景氣回復勢에서 뚜렷한 擴張勢로 전환되는 가운데 製造業의 成長率이 지난해의 13%에서 23%로 크게 높아지는 등 연간 15.1%의 記錄的 實質成長을 이룩하였다.

製造業中에서는 重化學工業이 주로 電氣機器, 鉄鋼 등을 중심으로한 輸出伸張에

따라 지난해의 11.5%를 크게 상회하는 6%의 伸張을 이룩하였으며 輕工業도 重化學工業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伸張勢가 지난해보다 上昇하였다. 이에 따라 製造業構造는 輕工業의 構成비가 53.6%에서 53.2%로 약간 낮아진 반면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46.4%에서 46.8%로 약간 높아졌다.

對外去來는 지난해 下半期이후 改善되어 왔는데 연중에 輸出이 급신장한 위에 輸入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함으로써 貿易收支는 획기적인 改善을 보였다. 즉 商品輸出(通関基準)은 主要先進國의 景氣回復과 輸出市場多邊化 및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促進努力 등 對外与件好轉으로 연중 7,715 백만「달러」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52%가 증가하였고, 實質基準으로도 36%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工產品에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比重이 船舶, 鉄鋼製品, 電子 등의 輸出伸張을 반영하여 總輸出의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연중에 있어서 輸出은 主要 交易相對國의 經濟擴張勢를 크게 능가하는 急成長을 成就하는 등 1973년 말 이래의 石油波動과 그에 뒤따른 世界經濟의 沈滯로 야기된 경제적 충격과 교란要因을 克服함으로써 經常收支의 획기적인 改善에 기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經濟는 資源波動의 영향에 대한 中期的 調整을 끝내고 非產油開途國으로서는 드물게 正常的 成長軌道를 되찾은 나라가 되었으며 1977년부터 시작된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수행을 위한 成長과 安定의 基盤을 構築하였던 것이다.

1977년의 우리나라 經濟는 前年 下半期이래 지속된 先進諸國 경제의 低成長率과 對外貿易環境의 惡化에도 불구하고 輸出의 증가와 활발한 投資活動에 힘입어 지난해의 高水準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10.3%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高度成長을 지속하는 한편 經常收支의 均衡을 達成하였다.

지난해에 22.6%成長하여 經濟成長을 주도하였던 製造業은 연중 그 成長率이

14.4 %로 크게鈍化되었는데 이는 輕工業의 伸張率이 섬유, 의류, 合板 등 수출업종의 부진으로 지난해의 17.5 %에서 9.5 %로 낮아졌고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도 鉄鋼製品, 電氣機器 등의 伸張이 低調하여 그 成長率이 지난해의 28.6 %에서 19.5 %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중 輕工業의 構成比는 51.5 %로 낮아진 반면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48.5 %로 높아졌다.

지난해에 石油波動的 衝擊을 극복하고 현저한 改善을 보였던 對外去來는 연중 貿易收支의 赤字減縮, 貿易外收支의 黒字反轉 등에 따라 그동안 慢性的인 赤字를 면치 못하던 經常收支가 史上 처음으로 근소하나마 黒字로 전환되었고, 수출이 100 억달러를 上廻하는 등 그 構造的 側面에서 調期的인 改善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특히 1977 년중 우리나라의 輸出은 世界貿易의 1 %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順位面에서도 世界 17 位の 輸出國家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世界の 貿易國家의 隊列에 들어서게 되었다. 즉 商品輸出 (通関基準)은 先進國의 景氣回復遲延과 輸入規制 등의 강화 등 不利한 對外條件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市場開拓活動과 重化學製品의 輸出增大努力으로 100.5 억「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工業品中에서는 輕工業製品의 총수출에 대한 比重이 58 %에서 53 %로 낮아진 반면 重化學工業製品의 比重은 특히 船舶, 金屬製品 등 重工業製品의 輸出好調로 前年の 30 %에서 33 %로 높아졌다.

輸出對象國別로는 主要交易相對國인 美國과 日本의 比重이 지난해의 32 %와 23 %에서 각각 31 % 및 21 %로 낮아진 반면 其他地域의 比重은 상승하여 輸出市場의 多邊化가 더욱 진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中東地域의 比重은 전년의 9 %에서 12 %로 크게 늘어났다.

1978 년에 들어와서 主要先進諸國經濟는 成長鈍化추세가 계속된데다 高率失業狀態의 持續으로 保護貿易主義傾向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國際通貨不安마저 再燃

됨으로써 世界交易의 伸張率도 低水準에 머무르는 등 世界經濟는 全般的으로 그 鈍化勢가 加速되었다. 이러한 不利하여진 世界經濟與件에도 不拘하고 1978 年중 우리나라經濟는 內需의 急速한 擴大와 輸出의 꾸준한 伸張에 힘입어 前年보다 다소 높은 11.6 %의 實質成長을 이룩하였고 1人當 國民總生産도 美「달러」貨로 환산하면 去年의 965 「달러」에서 1,279 「달러」로 늘어났다.

製造業은 去年의 14.4 %보다 훨씬 높은 20.7 %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年과 같이 年중의 經濟成長을 主導하였는데 이중 重化學工業生産은 활발한 投資活動과 耐久消費財需要의 급속한 增大 및 輸出의 꾸준한 伸張에 뒷받침되어 26.4 %나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輸送用機器, 電氣機器, 一般機械, 1次鉄鋼製品 등의 増産이 두드러졌다.

연중에는 輸出이 꾸준한 伸張을 보였으나 國內景氣의 急上昇으로 輸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貿易収支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經常収支도 다시 크게 惡化되게 되었다.

1978 年중 商品輸出 (通關基準)은 127 억「달러」에 달하여 名目基準으로는 前년대비 27 %, 物量基準으로도 14 %의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輸出伸張은 대외적으로 海外景氣回復의 低調와 「엔」貨 強勢에 따른 對日原資材輸入가격의 상승 및 各국의 對韓輸入規制措置強化등 여러가지 輸出與件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輸出商品의 高급화와 重化學工業製品輸出基盤의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市場開拓努力 등이 이루어진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前년대비 35 %의 높은 신장율을 보여 年중의 輸出増大를 주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總輸出에서 占하는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의 비중은 前년의 33 %에서 35 %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철강제품수출의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국제철강수출가격의 상승, 「엔」貨 강세등으로 日本의 철강제품수

출이 부진함에 따라 美国 및 「유럽」의 對韓輸入需要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1979 년 중 主要先進國經濟는 기초적으로는 1976 년 이래의 완만한 回復局面을 지속하였으나 제 1 차 石油波動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란의 政變으로 인한 原油需給의 불균형과 油價의 대폭인상등 또다시 제 2 차 石油波動이 발생함에 따라 全世界的으로 「인플레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成長勢가 더욱 鈍化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成長鈍化와 함께 輸入需要가 減退한데다 慢性的인 高失業으로 保護貿易主義傾向이 지속되어 世界交易도 不振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海外經濟條件의 惡化에 對処하여 國內「인플레이」의 昂進을 最少化하고 持續的인 成長基盤을 굳히기 위하여 對內的으로는 綜合的인 經濟의 安定化政策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와같은 安定化施策의 効果가 본격적으로 波及되고 海外景氣의 沈滯로 輸出이 부진한데다가 產油國의 거듭되는 油價引上과 「10·26 事態」등의 不安要因이 겹쳐 하반기의 景氣가 急速한 後退를 보임으로써 연간성장율이 지난해의 11.6 %에서 6.4 %로 낮아졌다.

製造業生産에 있어서는 輕工業이 지난해 수준을 크게 밑돈 6.2 %의 伸張에 그쳤으며 重化學工業도 그 成長率이 前年の 26.4 %에서 13.0 %로 낮아졌다. 그러나 重化學工業은 연중에도 輕工業成長을 앞지름으로써 工業構造面에서 重化學工業比重이 前년의 48.8 %에서 51.2 %로 높아졌다.

연중 정부는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을 長期的인 安定成長基盤의 構築에 두고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 多岐적인 施策을 추진하였다. 특히 需要不足과 資金難의 加중으로 인해 一部 重化學工業이 不實化될 우려성마저 있고 그동안 重化學工業에 대한 급속한 投資擴大가 輕工業部門에 대한 資金供給을 圧迫하여 民生과 關聯된 輕工業部門에서는 部分的인 供給隘路가 惹起되고 있는 點들을 勘案하여 重化學工業에 대한 投資

計劃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輕工業部門에 대한 支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重化學工業部門에서는 未着工된 計劃事業은 물론 이미 建設中에 있는 事業이라도 장기적으로 對外競爭力이 현저히 떨어지는 事業과 施設過剩 또는 重複投資로 不實化될 가능성이 큰 事業 그리고 自己資金投入比率이 낮은 事業에 대해서는 그 投資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도록 하였다.

연중 對外去來는 輸出이 主要先進國의 景氣沈滯와 輸入規制의 지속으로 伸張勢가 크게 鈍化된 반면 輸入은 主要原資材價格의 上昇 등으로 높은 增加勢를 지속함으로써 貿易 및 經常收支의 逆調現象이 한층 심화되었다.

연중 상품수출(通關基準)은 15,055 백만「달러」로서 지난해의 輸出增加率 26.5%를 크게 밑도는 18.4%증가에 그쳤으며 동 증가도 대부분 輸出價格上昇에 힘입은 것으로서 輸出物量基準으로는 오히려 전년수준을 다소 하회하였다.

이와같이 수출이 저조하였던 것은 우선 對內的으로 國內物價上昇으로 인하여 國際競爭力과 採算性이 악화된 데다가 物價安定을 위하여 일부품목에 대한 輸出規制措置가 취해졌고 또한 對外的으로도 世界景氣沈滯와 油價波動에 따른 海外需要不振 및 先進諸國의 輸入規制 등으로 輸出与件이 불리해진 데 기인한 것이다.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前年對比 30.2%가 늘어난 5,819 백만「달러」로 비교적 好調를 보여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지난해의 35.1%에서 38.6%로 높아졌다. 그중 鐵鋼製品은 浦項綜合製鐵등의 設備擴張과 國內需要不振에 따른 輸出轉換등으로 輸出物量이 크게 늘어나 전년수준의 倍에 가까운 1,052 백만「달러」의 輸出実績을 기록하여 그 伸張勢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작년중 51.5%나 늘어났던 船舶輸出은 1978년 하반기이래의 海外造船景氣의 불황으로 지난해보다 35.5% 감소한 517 百萬「달러」에 머물렀다.

1979년 하반기부터 景氣沈滯現象을 나타내기 시작한 우리나라經濟는 1980년 들어 第2次 石油波動의 傾向이 本格的으로 波及된데다 日氣不順으로 인한 農作物의 凶作과 一時的인 社會不安등 經濟外的 要因마저 겹쳐 國民總生産이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5.7%라는 負의 成長과 심한 物價上昇 및 國際收支不均衡을 經驗하였다.

製造業成長에 있어서는 輕工業部門이 2.0% 伸張한 반면 지난해중 10%이상 成長하였던 重化學工業部門은 投資需要의 不振과 耐久消費財需要의 減退로 3.9% 감소하였다.

對外去來面에서는 輸出이 비교적 着實한 伸張勢를 유지하였으나 原油輸入價格이 크게 오르고 國際高金利와 外債累增으로 對外支給利子が 大幅 늘어남에 따라 經常收支赤字가 크게 擴大되었다.

연중 商品輸出(通関基準)은 17,505백만「달러」로서 지난해의 輸出增加率 18.4%를 다소 하회하는 16.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物量面에서는 연중의 換率流動化措置에 힘입어 競爭力이 다소 회복된 데다 國內需要不振에 따른 수출여력 증대로 지난해의 0.9%감소에서 10.6% 증가로 전환되는 회복세를 보였다.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은 전년보다 25.2%증가로 호조를 보여 7,287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지난해의 39%에서 42%로 높아졌다. 品目別로는 化工品, 鉄鋼, 機械類 등의 그간의 設備擴張과 國內需要不振으로 수출공급 여력이 늘어남에 힘입어 好調를 보였으며 지난해에 不振했던 船舶수출도 세계적인 造船景氣의 회복으로 活氣를 띠었고 「플랜트」輸出도 470백만「달러」의 実績을 記錄하였다. 그러나 重化學製品중에서도 人件費負擔이 비교적 높은 組立加工形態의 電子製品은 전년에 비해 크게 저조하였다.

4. 産業構造 高度化를 통한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의 促進과 當行의 役割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4 년이후의 우리나라 産業構造轉換期를 통한 重化學工業育성과 輸出主導經濟成長政策의 推進은 그간 일부 重化學工業部門의 調整등 試行錯誤도 없지 않았지만 1970 년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와 輸出構造를 다 같이 高度化시키는 構造轉換을 가져왔다.

즉 먼저 産業構造面에서는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1971 년의 39 % (不變價格基準)에서 1980 년에는 53 %로 크게 提高되었고 이와같은 重工業化를 뒷받침 하기 위한 固定投資率도 1970 년대 前半의 25 %수준에서 1980 년에는 32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다음 輸出構造面의 變化를 보자. 먼저 輸出總額은 1973 年の 32 億「달러」에서 1980 년에는 175 億「달러」로 늘어나 1974 ~ 80 년간 우리나라의 輸出은 연평균 28 %의 伸張勢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1977 년부터는 우리나라의 輸出이 世界貿易에서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世界 20 位以內的 輸出國家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輸出增加에 발맞추어 진행된 國內경제면의 産業構造轉換政策은 對外去來面에서는 輸出構造의 高度化로 반영되었다. 즉 工業產品輸出에서 차지하는 重化學工業製品의 比重이 1973 年の 불과 27.3 %에서 1980 년에는 46.2 %로 急増되었는바 化學肥料, 「시멘트」등 化學製品과 鉄鋼, 金屬製品, 電子, 電氣機械,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自動車등의 重工業製品의 輸出을 中心으로 1980 年の 重化學製品輸出額은 73 億「달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1970 년대 中半이래 重化學工業製品輸出이 急増됨에 따라今後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立國 그리고 貿易立國의 意志를 뒷받침 하는 한편 延拓輸出을 金融制度面에서 支援하여 國際競爭力을 強化함으로써 重工業製品의 輸出을 促進하고자 韓

國輸出銀行이 設立되게 된 것이다. 즉 1976년 7월 우리나라의 中長期延払輸出金融 專担銀行으로서 當行이 創立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重工業製品輸出은 새로운 轉換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商品輸出構造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輕工業製品으로부터 重化學工業製品爲主로 移行되어 매년 重工業化率이 增大되어 왔었고 한편 1973년 말의 石油波動以後 先進工業國의 貿易政策이 新保護主義로 급선회하고 자원보유국에서는 資源民族主義가 澎湃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輕工業製品分野에 있어서 後發開途國의 國際競爭力이 增大되는등 世界各國의 輸出競争 또한 날로 激化되어 國際貿易環境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對外條件의 變化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輸出은 勞動集約的이고 所得彈性이 낮은 輕工業製品中心의 短期的인 輸出方式으로써는 國際競爭力의 限界등 금후의 非약적인 輸出擴大에 制約을 보이게 되었으며 더욱이 產油國과 開發途上國의 왕성한 資本財輸入需要를 고려할때 막대한 資本과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資本財의 輸出을 통한 輸出의 擴大와 輸出市場의 多邊化 및 安定化가 더욱 절실히 要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플랜트」, 機械, 船舶등의 資本財輸出에 있어서는 輸入國이 大部分 資本이 貧弱한 後發開途國일 뿐만 아니라 輸出代錢의 決濟期間이 長期이며, 去來가 主로 延払輸出의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고, 輸出單位가 巨額인 點 때문에 莫大한 財政資金으로 뒷받침 되는 中長期延払輸出金融의 支援專担銀行의 設立이 事實상 불가피 하였던 것이다.

中長期信用에 의한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을 促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當行은 設立以後부터 1981년 5월末現在까지 貸出承認基準으로 總 1조 2,782억원, 貸出執行基準으로 總 1조 1,100억원의 資金을 供與하였으며 이 가운데 86% 以上이 輸出資金으로 支援됨으로써 重工業製品의 輸出促進을 뒷받침 하였다.

특히 船舶과「플랜트」의 경우同期間中 9,279억원과 1,410억원의 貸出承認実績을 보였다. 그리하여 船舶의 경우 1976년부터 輸出이 本格化되기 시작하였는 바 1976년以來 年度別 船舶輸出은 1976년에 277백만「달러」, 1977년 526백만「달러」, 1978년 801백만「달러」, 1979년 515백만「달러」, 1980년 618백만「달러」를 각각 記録함으로써 지난 5년간 船舶輸出總額은 2,737백만「달러」에 달하였다. 한편「플랜트」輸出의 경우는 當行의 延払輸出金融支援과 併行하여 1979년 産業設備輸出促進法の 制定을 契機로 急増되기 시작하였는 바 1979년의 187백만「달러」, 1980년의 469백만「달러」등 지난 5년간 10억「달러」를 넘는「플랜트」輸出을 記録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지난 5년간 重工業製品의 輸出이 높은 水準을 記録하게 된 것은 이를 위한 金融面에서의 支援이 가능하였던 사실에 기인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해「플랜트」輸出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反映하여 最近 當行의「플랜트」部門에 대한 수출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1980년 한해만도 대출승인 規模가 481억원에 이르고 있어 今後 이 부문은 輸出伸張 및 生産・所得・雇傭 増大등 国民經濟効果面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輸出主導型 成長國들인 西獨과 日本의 例와 같이 우리도 輸出主導型 成長을 持續하고 産業構造의 深化를 통하여 自立經濟의 基盤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今後에도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가 필수불가결하다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볼 때 金후의 當行의 機能은 더욱 重要해지고 그 役割도 또한 더욱 증대되어 갈것이다.

第2節 韓國輸出入銀行 設立以前の 中長期輸出金融 業務

1. 當行法の 制定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60년대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經濟는 第1, 2次 經濟開發計劃을 중심으로 近代化에 주력한 결과 世界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높은 經濟成長을 示顯하고 있었다. 그러한 高度成長의 과정에서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더불어 輸出의 비약적인 伸張을 주축으로하는 對外去來面の 發展은 淸々할만한 것이었다.

한편 추후 예상되는 輕工業製品 爲主의 輸出増大의 限界性, 1960년대말 이래의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傾向의 抬頭, 對內的으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 必要性 등은 重化學工業의 育成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런데 重化學工業의 育성과 함께 同製品의 輸出을 확대함으로써 輸出主導型 成長政策을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는 中長期信用供與에 의한 重工業製品의 輸出과 海外投資 등의 支援을 專担할 專門 金融機關 設立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政府는 이와같이 中長期信用 支援에 의한 重工業製品의 輸出擴大와 海外投資를 促進시키고자 1969년 7월에 韓國輸出入銀行法을 制定하였고, 이어 같은 해 10월에 當行法 施行令과 當行 業務方法書도 制定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延託金融支援에 의한 重工業製品의 輸出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에 中長期性 金融을 支援하는 制度的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2. 當行業務의 韓國外換銀行에 의한 代行

그러나 政府는 國內의 産業与件과 財政形便, 그리고 中長期信用에 의한 資本財 輸出実績이 아직 미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을 일단 延期시키기로 하고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에 의거하여 韓國外換銀行에 中長期信用部를 設置하여 그 業務를 代行케 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外換銀行은 1969년 5월 29일 그 專担部署로서 中長期信用部를 新設하여 延払輸出 金融財源으로 政府로부터 1억원의 財政資金을 貸下받아 同年 10월 29일부터 業務를 代行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韓國外換銀行 中長期信用部는 延払輸出金融支援業務의 膨脹에 따라 1975년 7월 1일 中長期信用部를 輸銀企劃部 및 輸銀業務部로 擴大 改編하여 1976년 7월 1일 當行 発足時까지 滿 6년 8개월간 當行의 業務를 代行하였는 바 以下에서는 同 代行期間中 當行의 業務実績을 概觀하여 보기로 한다.

가. 主要業務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에 의거하여 韓國外換銀行이 政府로부터 貸下金을 받아 延払輸出支援金融을 運用토록 規定하고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第2條에 의한 延払輸出 金融業務는 延払輸出과 輸出目的物の 生産期間 및 建設工期가 長期인 中長期性金融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主要業務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國內業者에 대한 輸出資金貸出 또는 同資金貸出에 대한 어음의 割引
- ② 國內業者에 대한 海外技術資金貸出 또는 同資金貸出에 대한 어음의 割引
- ③ 우리나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하는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

- (4) 国内業者에 대한 主要物資의 輸入資金貸出 또는 同資金貸出에 대한 割引
- (5) 国内業者에 대한 海外事業 및 海外投資資金 貸出
- (6) 外国政府 등에 대한 出資資金 및 對韓決濟資金 貸出
- (7) 国内業者에 대한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 貸出
- (8) 国内業者 外国人 등에 대한 對外經濟協力資金 貸出

나. 業 績

(1) 資金調達

当行의 法定資本金은 当初의 300억원에서 늘어나 1,500억원으로 策定되어 있었으나 設立以前이기 때문에 資本金 納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韓國 外換銀行은 当行의 業務를 代行하기 위한 資金을 주로 政府貸下金, 國民投資基金 借入 및 韓國外換銀行貸与金 등으로 調達하였다.

그중에서도 政府貸下金은 當時 当行業務資金의 主調達源이었다. 延拓輸出規模의 擴大에 따라 政府의 貸下金規模도 꾸준히 膨脹하여 1975년말에는 56.5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1975년부터 서서히 延拓輸出이 本格化되게 되자 國民投資基金을 借入하기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1975년 6월 韓國銀行의 韓國外換銀行 出資金 500억원 중에서 当行資金을 借入運用할 수 있도록 措処되었다.

(2) 資金運用

当行이 設立되기 이전 韓國外換銀行이 運用하여온 当行 資金에 대한 需要는 輸出資金과 海外投資資金의 2種 밖에 되지 않았는데 輸出資金은 1971년부터 支援되어 왔다. 또한 支援規模에 있어서도 初期에는 우리나라 對外去來의 未成熟과 延拓輸出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미미한 水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時間이 지남에 따라 對外去來가 활발해지고 政府의 延拓輸出支援도 強化되면서 1972년

부터 支援規模가 膨脹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는 그 膨脹速度가 加速化되었다. 代行期間中の 當行業務実績은 <表Ⅱ-1>과 같다.

<表Ⅱ-1>

輸出入銀行資金 運用実績 ¹⁾

(단위 : 백만원)

年度 区分	輸 出 資 金		海外投資 資 金	貸出金回収	年末貸出 残 額
		船 舶 資 金			
1971	-	-	388	-	388
1972	1,158	793	-	98	1,448
1973	1,563	1,563	-	103	2,908
1974	1,568	1,312	752	890	4,338
1975	27,057	21,500	32	1,503	29,924
1976.6월말	13,593	9,955	2,394	1,290	44,621
總 計	44,939	35,123	3,566	3,884	52,389 ²⁾

註 : 1) 輸銀資金貸出 및 國民投資基金貸出만 包含

2) 總貸出規模로서 輸出資金貸出, 海外投資資金貸出 및 貸出金回収分の 再貸出을 合한 것임.

輸出資金은 1972년 4월 勝利機械製作所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織機 155臺 延払輸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335백만원이 貸出된 이래 纖維機械, 木材機械, 鐵道車輛 및 貨車와 電話交換施設 등의 輸出에 이르기까지 그 支援幅이 점차 擴大되어 왔다. 그러나 大部分의 延払輸出資金은 船舶輸出에 融資되었다. 總輸出資金의 거의 80%에 이르렀던 船舶資金은 油槽船 2隻, 貨物船 28隻, 漁船 15隻의 延払輸出支援金融에 사용되었다.

< 表 II - 2 >

代行期の 韓国輸出入銀行計定年度別 推移

(단위 : 백만원)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6월말)
資 産								
(流動資産)								
韓銀預置金	-	691.9	1,621.7	1,349.8	67.4	35.8	65.4	423.4
貸 出 金	0.3	-	443.3	1,447.9	2,908.0	4,338.6	29,923.7	44,620.7
輸銀資金貸出	-	-	387.6	1,447.9	2,908.0	4,338.6	25,923.7	41,620.7
国民投資基金貸出	-	-	-	-	-	-	3,000.0	3,000.0
外換銀行貸出	0.3	-	55.7	-	-	-	-	-
有 価 証 券	99.7	748.8	887.0	163.3	-	600.0	245.0	-
其 他	-	86.6	-	-	-	-	19.7	-
資 産 総 計	100.0	1,527.3	2,952.0	2,961.0	2,975.4	4,974.4	30,253.8	45,044.1
負債 及 資本								
(流動負債)								
借 入 金	100.0	1,527.3	2,950.0	2,950.0	2,950.0	4,950.0	29,800.0	14,300.0
政府貸下金	100.0	1,500.0	2,950.0	2,950.0	2,950.0	4,950.0	5,650.0	5,355.0
国民投資基金借入	-	-	-	-	-	-	3,000.0	3,000.0
外換銀行借入	-	27.3	-	-	-	-	21,150.0	5,945.0
其 他	-	-	2.0	11.0	25.4	24.4	353.2	-
(資 本)								
当期純利益	-	-	-	-	-	-	100.6	643.5
積 立 金	-	-	-	-	-	-	-	100.6
資 本 金	-	-	-	-	-	-	-	30,000.0
負債 及 資本 総 計	100.0	1,527.3	2,952.0	2,961.0	2,975.4	4,974.4	30,253.8	45,044.1

海外投資資金은 1971년 7월 東和企業株式會社の 인도네시아에 대한 山林開發 合作投資에 388백만원이 貸出된 이래 비록 그 規模는 작았지만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主 代行期間中 同資金은 인도네시아의 山林開發 合作投資에 總 1,140 백만원이 貸出된 이외에도 모로코와의 遠洋漁業合作投資에 32백만원, 노르웨이의 船舶傭船에 2,394백만원이 融資되었다.

當行資金이 支援된 延拓輸出對象國을 보면 歐美先進國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및 中南美의 開發途上國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同資金中 아프리카의 가봉과 中南美의 파나마에 대한 延拓輸出支援은 우리나라의 同地域에 대한 輸出擴大施策의 橋頭堡 役割을 담당하였다.

3. 當行의 發足

가.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 構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69년 10월 29일부터 當行業務를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기 시작한 이래, 延拓輸出과 海外投資에 支援規模가 점차 擴大되어감에 따라 政府는 1976년 4월 8일 當行의 獨立 發足方針을 결정하였다.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 第2條 第1項, 同法施行令 第32條 第2項에 의거 財務部長官은 同年 4월 10일자로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를 委嘱,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當時 設立委員會 委員名單은 第一章2節을 参照)가 構成됨으로써 設立事務는 本格的으로 進行되기 시작하였다.

나.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의 設立事務處理

1976년 4월 12일 設立委員會는 第1次會議를 개최하고 設立事務遂行에 필요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制定하였다. 設立委員會의 組織 運營과 業務處理의 節次 등에 관해 필요한 事項을 規定한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規程」과 設立委員會 事務局의 組織 運營과 業務處理의 節次 및 要領 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한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事務局規程」을 제정하였다. 또한 設立에 따른 經費의 合目的인 使用을 위하여 그 處理節次 등을 規定한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 經理規程」을 制定하였다.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事務局의 人員 및 構成〕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規程 第5條에 의하여 設立委員會事務의 효율적인 處理를 위하여 設立委員會內에 事務局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1976년 4월 10일 設立委員會는 事務局長에 崔鍾岳氏를 任命하는 한편 韓國外換銀行 職員 12名을 事務局職員으로 委嘱하였다. 同事務局은 事務局內에 業務別로 第1班부터 第4班까지 4個業務班이 編成되었는데 當時 構成員 및 業務分掌內容은 다음과 같다.

事務局長	崔 鍾 岳
次 長	朴 鳳 洙

班 및 業務分掌	當 担
第1班 設立委員會議事	班長 田 桂 寿
業 務 移 管	尹 竜 武
豫 算	安 昌 竜
決 算	
渉 外	

第2班	定	款	班長	鄭	東	豪
	業	務		吳	成	光
	諸	規		朴	潔	培
第3班	資	本	班長	金	聞	漢
	設	立		李	炳	世
	公	告				
第4班	庶	務	班長	李	鶴	柱
	人	事		黃	宗	淵
	會	計		金	炳	天
	調	達				
	其	他				

또한 1976년 6월 1일 韓國輸出入銀行設立委員會는 第2次會議에서 韓國輸出入銀行定款(案)의 作成 및 韓國輸出入銀行設立費豫算(案)을 編成하여 同年 6월 10일 財務部長官으로부터 許可 및 承認을 받았다. 韓國輸出入銀行設立費豫算規模는 437백만원이었던 바, 當行 設立事務를 마칠 때까지 總 351백만원이 設立事務에 支出되었다.

다. 當行의 創立

이러한 設立委員會의 活動과 竝行하여 政府에서는 1976년 5월 12일 當行의 初代行長에 宋 仁相氏를 임명한데 이어 同年 6월 1일에는 理事에 李泰浩氏와 元裕敏氏 그리고 監事에는 朴鼎在氏를 任命하였다.

이어 韓國輸出入銀行法 第4條에 의거 韓國輸出入銀行의 設立登記를 위하여 資

本金 納入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즉 1976년 6월 17일 韓國銀行은 資本金 200억원을 當行에 納入하였으며, 韓國外換銀行은 當行앞 既貸出債權 300억원을 出資로 轉換하였다. 또한 同年 6월 2일에 政府는 該간의 政府貸下金 53.55억원을 出資로 轉換하였다.

이에따라 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21일 서울民事地方法院에 當行의 設立登記를 完了하고 同年 6월 22일 서울新聞에 이를 掲載하여 公告하였다. 이어 韓國輸出輸入銀行法 附則 第2條 第4項의 規定에 의거 1976년 6월 23일 創業費 및 開業準備費豫算의 執行(同日 현재 支出原因行為畢 殘額을 포함한 계속 執行權 등)과 設立事務 一切가 設立委員長으로부터 當行 銀行長에게 引繼되었다.

이와같이 任員任命, 定款承認, 資本金納入 및 設立登記가 完了되는 등 當行 設立에 필요한 諸般措置가 完了되자 1976년 6월 25일 財務部長官은 法施行令 第34條의 規定에 의거 當行의 業務開始日을 1976년 7월 1일로 지정하였다.

이리하여 當行 銀行長은 1976년 7월 1일 該간 當行의 業務를 代行하여온 韓國外換銀行長으로부터 當行業務를 移管받았다. 이로써 當行은 同日부터 서울特別市 中區 陽洞 286番地 大宇「센터빌딩」 16층에서 任職員 80名과 3部 1室의 機構로 重化学工業製品의 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 등에 대하여 延拓資金을 支援하는 國內 유일의 中長期延拓金融支援 專担金融機關으로서 正式 發足を 보게 되었으며, 當行의 發足으로 우리나라는 一方的인 資本導入國에서 部分的인 資本供與國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輸出輸入銀行設立委員會는 1976년 6월 23일 設立事務를 當行에 移管함으로써 事實상의 設立作業을 마무리짓고 1976년 7월 20일 第3次會議에서 「韓國輸出輸入銀行設立事務綜合經過報告書」의 採択과 이의 對政府 報告를 끝으로 設立事務를 마쳤다.

第3節 韓國輸出入銀行의 創立과 業務基盤의 擴充

1. 序

當行은 1969년 7월 28일 當行法 制定後 6년 8개월간의 韓國外換銀行에서 의 當行 業務代行期를 거쳐 1976년 7월 1일 創立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經濟는 1974~75년의 石油波動의 試鍊을 비교적 순조롭게 克服하고 과거의 高度成長勢를 회복해 가고 있었으며 自力成長構造의 실현을 목표의 하나로 하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經濟의 自力成長構造의 실현은 대내적으로는 産業構造의 高度化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國際收支의 改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기간중 着手되어 온 重化學工業의 本格的인 育成과 이의 輸出産業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에 있어 필수적인 競爭要素라고 할 수 있는 中長期延払輸出金融支援을 본격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으로써 開發途上國 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中長期延払輸出金融 專担機關으로서 當行을 創設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當行의 創立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資本導入國에서 탈피하여 資本財 輸出 및 海外投資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對外經濟協力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經濟 및 金融制度上 획기적인 일이었다. 더욱기 當行 設立後 반년만인 1977년 1월 1일부터는 大韓再保險公社가 대행하여 오던

政府의 輸出保險業務를 承繼반응으로써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資本財의 中長期延払輸出 및 海外投資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当行은 設立後 지난 5년간 草創期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資本財 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中長期延払輸出資金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一絲不亂한 經營體制를 確立하는 한편 각종 支援制度의 도입과 새로운 金融技法의 導入개발 및 支援条件, 節次 등의 꾸준한 개선을 통하여 業務의 多樣化와 内実化를 도모하여 왔다. 또한 資金의 適期供給을 위하여 当行은 財源의 확보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当行業務는 質的, 量的으로 急伸張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經濟의 重工業化와 輸出의 지속적인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2. 經營體制의 確立

1976년 11월 24일 大統領令 第8284号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規程”에 의거 外國에 대한 無償援助, 延払輸出, 投資 및 技術協力에 관한 重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한 副總理겸 經濟企劃院長官을 議長으로 하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가 經濟企劃院에 설치되었다. 同委員會의 설치로 当行은 同委員會가 每年 審議・決定한 年度別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에 의한 当行業務의 基本運用方向과 重要政策 決定事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77년 12월 第2次 当行法改正으로 法定資本金이 1,500 억원에서 5,000 억원으로 증액됨과 동시에 当行業務의 經濟外交的 次元에서의 중요성을 감안 当行의 업무운영, 관리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運營委員會

委員으로 外務部長官이 指名하는 1人이 추가 됨으로써 運営委員會가 補強되었다. 또한 韓国外換銀行의 当行 業務代行期였던 1974년 12월 第1次 当行法改正時 運営委員會가 新設됨에 따라 폐지되었던 理事会制度도 다시 부활되어 当行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케 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있는 經營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当行은 또한 설립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銀行長 諮問機關으로서 各種 委員會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설립직후인 1976년 8월에는 与信 및 其他 主要業務를 審議하기 위한 融資審議委員會가 설치되었는 바, 당초 同委員會는 與信關係業務뿐만 아니라 기타의 主要業務에 대하여도 審議하여 銀行長의 諮問에 응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77년 7월 融資審議委員會要綱이 改正되어 与信關係業務만을 審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同年 8월에는 与信關係業務 이외의 主要業務를 審議할 業務審議委員會가 설치되었는 바, 同年 12월 第2次 当行法改正으로 理事会制度가 다시 設立될 때까지 理事会機能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同年 9월에는 역시 銀行長 諮問機關의 하나로 国別信用度評價委員會가 설치되었는 바 同委員會의 설치를 계기로 中長期延払輸出金融 및 海外投資를 供与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支援対象国에 대한 信用度(Country risk) 評價業務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当行業務가 확대됨에 따라 機構·組織도 11次에 걸쳐 改編, 拡大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설립당시 3部1室2課에 불과하던 当行 機構는 크게 拡張되어 現在 本部에 9部5室 15課 그리고 1個国内出張所와 6個国外事務所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任職員數도 설립당시에는 任員 4名, 職員 76名 計 80名에 불과하였으나 1981년 5월말 현재 任員 8名, 職員 454名 計 462名으로 설립당시와 비교하여 5배이상 增加되었다.

3. 業務의 多樣化

當行 業務의 代行期間중 當行의 資金支援業務는 주로 船舶輸出支援을 中心으로한 輸出資金 貸出과 海外山林開墾, 船舶備船을 지원키위한 海外投資資金貸出業務에 국한되어 취급되었으나 1976년 當行 創立과 함께 그 이후 當行의 業務는 크게 多樣化되어 왔다.

즉 當行은 설립 이듬해인 1977년에 海外建設工事와 관련 최초로 技術提供資金을 취급케 되었으며, 한편 1978년 4월 및 6월에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 基本運營方針과 同取扱規程을, 그리고 1979년 8월 및 9월에는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과 同取扱規程을 각각 마련함으로써 1979년부터는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貸出業務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貸出業務는 이미 先進國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制度로써 이의 導入은 우리나라 金融의 國際化라는 측면에서 劃期的일 뿐만 아니라 同方式에 의한 貸出에 있어서는 外國의 購買者가 직접 借主가 됨으로써 國內輸出企業의 財務構造健全化에도 기여케 되었다. 특히 轉貸借款의 경우에는 小規模去來를 지원함으로써 海外의 새로운 市場을 개척, 우리나라 商品의 潛在需要를 개발 支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意義를 갖는 것이었다.

또한 1979년 11월에는 業務方法書에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Co-financing) 實施를 위한 根拠條項을 신설하여 1980년 1월 및 2월에 協調融資에 대한 基本運營方針과 協調融資取扱規程을 각각 마련함으로써 國內에서는 처음으로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을 대상으로 國內金融機關과 協調融資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協調融資制度의 도입으로 當行은 한정된 財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出企業은 先進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資本財 輸出을 위한 所要資金 全額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7월 및 1981년 2월의 業務方法書 改正에 따라 協調融資制度는 輸出 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資金에 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協調金融機 關도 대폭 확대되어 外國金融機關과도 協調融資가 가능하게 되었다.

協調融資制度의 도입과 더불어 1980년 7월부터 當行은 輸出用 原資材延払輸入 을 위한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導入業務도 취급하게 되었는 바, 同業務 의 취급으로 종래에는 一覽払條件으로 輸入해 오던 輸出用原資材를 長期低利의 延 払條件으로 輸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國際收支防禦에도 기여하게 되었을 은 물론 當行資金負擔도 輕減되게 되었다.

한편 國民經濟上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요하는 資源開發事業을 지원키 위한 主 要資源開發支援資金 貸出業務를 취급키 위하여 1981년 5월에는 業務方法書에 이 에대한 基本融資條件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當行貸出業務에 수반되는 債務保證業務도 확대되어 왔는데, 1977년 3월 및 9 월부터 先受金還給保證과 契約履行保證業務를 각각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1 년 2월부터는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實施에 따른 對外支給保證業務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當行은 當行法 第30條에 의거 外國換管理法和 貿易去來法을 적용함에 있 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의거 當行은 1976년 10월 財務部長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甲類外國換銀行으로서의 業務를 취급케 되었으며 業務의 範圍는 當行業務關聯 外國換業務로 制限되었다. 이에따라 當行은 當行業務 와 관련된 輸出入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8 년 5월부터는 當行內國信用狀業務를 그리고 1979년 11월부터는 産業設備輸出債

進法 및 同施行令에 의거 위탁된 国内生産機資材의 搬出確認 및 外国機資材의 輸入承認業務를 취급케 되었다.

4. 業務의 內實化

当行은 설립 후 支援條件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새로운 金融技法을 도입함으로써 業務의 內實을 기하여 왔다.

当行資金의 融資對象去來要件 및 融資條件은 輸出 등 對外去來의 國際競爭力이 강화되고 資金支援效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國際去來慣行을 감안하여 여러차례 변경되어 왔다.

当行이 취급하고 있는 貸出業務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輸出資金貸出의 融資對象去來要件 變更內容을 보면, 先受金 및 延払期間은 종래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1977년 1월부터는 이를 品目別, 金額別로 구분하여 적용케 되었으며, 1979년 1월부터는 延払代錢償還期間이 5년을 초과하는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및 電氣機器 등 主要支援對象品目の 長期延払輸出去來에 대하여는 인도후 2년 이내의 据置期間을 인정할수 있게 되었다.

当行貸出利率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오던 融資對象去來의 延払金利도 1979년 1월부터는 引渡後金融 貸出利率이 상으로 규정됨으로써 当行貸出利率에 連動케 되었으며, 延払代錢 償還에 대한 支給保証은 당초 輸入國政府機關 또는 外國一流銀行의 것만 인정되었으나 1977년 1월부터는 輸入國金融機關의 것도 인정케 되었다.

또한 輸出品目の 단계적인 國產化를 촉진키 위하여 当行은 1977년부터 船舶, 部品類 등에 대하여 外資材依存率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1978년 5월에는

“ 1978年度 輸銀運營指針 ” (1978.3.5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 의거 運營委員會가 當行資金支援對象 全品目에 대한 基準外資材依存率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플랜트」輸出의 경우에는 外資材依存率을 산정함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고 또한 業種別로 차등을 두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므로 “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 ” (1979.6.15 運營委員會)에서 이를 반영 「플랜트」業種別로 國產機資材率을 설정하여 운용케 되었다.

한편 1977년 1월 業務方法書 改正으로 運營委員會 議決을 얻는 경우 一部の 基準未達去來도 예외취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1979년 8월 業務方法書 改正時에는 이를 완화하여 理事会 議決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當行의 融資條件도 매년 변경되어왔는 바, 그 主要內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輸出資金貸出의 融資比率은 1977년 1월부터 品目別로 구분하여 적용케 되었는데 1979년 1월에는 産業施設,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 등 주요지원대상 품목의 融資比率은 종전의 80%범위내에서 90%범위내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1980년 1월 18일 引渡後金融에 대한 協調融資實施로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當行의 引渡後金融融資比率은 종전대로 80%범위내로 다시 인하되었다. 1980년 7월 10일부터는 協調融資對象金融이 확대실시케 됨에 따라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前金融에서의 元貨所要資金은 當行이, 그리고 外貨所要資金은 協調金融機關이 취급케 됨과 동시에 當行의 引渡後金融 融資比率은 품목구분없이 일률적으로 70%범위내로 인하되었고 技術提供後金融 및 海外投資資金貸出의 融資比率도 이에 맞추어 각각 종전의 80%범위내에서 70%범위내로 變更 인하되었다. 한편 技術提供前金融의 融資比率은 1981년 2월 6일부터 「플랜트」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当行의 설립직후인 1976년 7월 31일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与受信金利에 대한 전면적인 인상, 조정과 함께 一般 輸出支援金利가 년 8%로 확정됨에 따라 当行의 貸出利率도 1976년 8월 2일 종전보다 上向調整되는 한편 金利 構造도 전면 개편되었는 바, 国産機資材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에 있어 원貨資金과 外貨資金의 貸出利率이 다르게 정해졌으며 延払支援條件의 점진적인 개선을 위하여 引渡後金融 貸出利率도 融資期限別로 차등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当行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資本財輸出의 國際競争力強化를 위하여 1977년 이후 融資承認된 거래의 경우에는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 元貨所要資金과 引渡後金融에 대하여 暫定的으로 년 7%의 利率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이와같은 暫定金利의 적용은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高金利趨勢를 감안 1980년 1월 18일부터 중단되었으며, 이와함께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利率은 引渡前金融 元貨所要資金 貸出利率과 같이 년 8%가 적용케 되었다. 그리고 종전까지 引渡後金融 貸出利率에 준하였던 技術提供後金融, 海外事業資金貸出 및 海外投資資金貸出의 경우에는 引渡前金融 外貨所要資金 貸出利率과 같이 外國換管理 規程에서 정한 中長期外貨資金融資의 基準金利가 적용되게 되었다. 技術提供資金 貸出利率은 1981년 2월 6일부터 다시 輸出資金貸出利率에 준하도록 변경되었다.

約定手数料의 경우, 当行은 輸出企業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國際競争力を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9년 1월부터 供給者信用에 한하여 이의 징수를 면제하여 왔으나 1981년 2월 6일부터는 특히 船舶輸出의 過熱受注競争에 따른 先契約事例를 방지하기 위하여 供給者信用에 대하여도 다시 約定手数料를 징수케 되었다.

当行은 對外去來 특히 債務負擔能力이 취약한 開發途上國과의 대규모거래에 대하여 長期低利資金을 지원하는 당행업무성격상, 貸出危險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대출업무운영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하여 支援対象國의 債務償還能力評価를 중심으로

한 国別信用度 評價業務를 開發導入하게 되었으며, 한편 当行資金 支援対象去來가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됨에 따라 選別支援을 강화함으로서 資金支援效果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支援事業의 国民經濟的效果分析業務도 開發・導入케 되었다.

国別信用度 評價業務는 先進外國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当行이 처음으로 開發・導入케 됨으로써 現在와 같이 定着되기 까지에는 여러차례의 試行錯誤를 거치게 되었다. 즉 1977년 12월 20일 第3次 国別信用評價委員會에서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마련된 国別信用度評價 및 与信限度算定을 위한 3次試案이 채택됨으로써 同業務가 본격화되었다. 그후 다시 1年余를 거쳐 1979년 2월 4次 試案을 마련, 評價技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同業務는 비로서 定着化段階에 이르게 되었다.

支援事業에 대한 国民經濟的效果分析業務는 1979년 7월 支援「프로젝트」의 国民經濟的 效果分析 模型試案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80년 12월부터 개별지원사업에 대한 經濟的妥當性分析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5. 資金의 調達 및 供給

가. 資金 調達

当行은 設立後 급증하는 資金需要에 원활히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長期安定的인 財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그러나 調達possible한 国内財源의 한계로 当行은 財源의 상당부분을 海外借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当行의 納入資本金은 설립 당시에는 55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政府 및 韓國銀行의 出資가 계속 이루어져 1981년 5월말 현재 2,44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

다. 그러나 1977년 12월 第2次 当行法改正으로 당초의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増額된 法定資本金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急増하는 当行資金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導入한 海外借入規模가 증대함에 따라 調達資金總額에서 차지하는 資本金의 比重은 매년 激減되어 1980년에는 11.1%에 불과하게 되었다.

資本金 이외의 国内財源으로는 国民投資基金貸下金, 韓國銀行外貨受託金借入金 및 韓國外換銀行借入金 등이 있다.

当行은 1977년부터는 매년 300억원 (1978년은 29,684백만원)씩 国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음으로써 国民投資基金貸下金은 国内財源中 資本金 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또한 当行은 韓國銀行으로부터 1977년에 延払輸出支援用으로 2억「달러」 그리고, 1979년에 轉貸借款用으로 50백만「달러」의 外貨受託金 借入限度를 배정받았으나 그간 우리나라의 經常収支惡化로 可用保有外換이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1977년에 34.5백만「달러」를 借入한 이후 延払輸出支援用限度의 사용은 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다. 또한 轉貸借款用限度의 사용도 부진하여 1980년말 현재 韓國銀行外貨受託金 借入累計額은 39.4백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치었다.

한편 当行은 韓國銀行이 韓國外換銀行에 출자한 500억원중 当行設立時 300억원을 출자하고 남은 200억원을 1977년 7월부터 1978년 4월까지 4차에 걸쳐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 借入한 바 있다.

이와같이 한정된 国内財源만으로는 급증하는 当行資金需要에 대처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当行은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의 資金調達을 모색하게 되었다. 当行은 1977년 6월 158백만「달러」상당액의 保有延払輸出어음을 國際金融市場에서 매각함으로써 海外로부터 資金을 調達하기 시작하였는 바, 1978년 12월에는 46個 國際金融機關으로 구성된 銀行借款團과 2억「달러」의 借款契約을 체결하여 1979

년 및 1980년 2년간에 걸쳐 全額을 인출, 활용하였다. 이후에도 当行의 資金需要가 계속 増加됨에 따라 海外資金調達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1981년 6월 1일 当行은 銀行借款 2억「달러」, 保有延払輸出어음 売却 2억「달러」 總 4억「달러」規模의 資金을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도입키 위한 契約을 國際金融機關들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國際高金利現象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海外借入比重의 지속적인 증대는 当行資金運營上에 逆「마진」現象을 초래케 됨으로써 이는 当行業務의 健全한 運營을 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問題點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当行은 1980년초부터 輸出用原資材 延払輸入을 위한 海外로부터의 轉貸借款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資金調達源을 多樣化하게 되었는데 1981년 2월까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公的輸出金融機關과 總額 82.1백만「달러」규모의 轉貸借款契約을 체결하였다.

나. 資金의 供給

当行의 資金支援規模는 設立後 매년 급속히 膨창되어 왔으며 取扱資金種類도 多樣化되어 왔다.

当行業務의 代行期間中에는 法上 정해진 여러가지 貸出業務 가운데 輸出資金貸出과 海外投資資金貸出만이 실제 취급되었으나 当行 設立 이듬해인 1977년부터는 技術提供資金貸出이 그리고 1979년부터는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直接貸出과 外国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이 取扱되기 시작하였다.

当行은 設立以後 1980년말까지 7,193.5억원의 資金을 支援하였는 바, 그 大宗을 이룬 것은 輸出資金貸出이었다.

輸出資金貸出의 支援對象이 되어온 것은 船舶, 「플랜트」 鐵道車輛 및 機械類 등

으로 우리나라 重工業의 發展過程이 아직 初期段階라는점에서 지금까지는 船舶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船舶에 대한 輸出資金支援額은 4,621.5 억원 (1976.7 ~ 1980.12)으로 當行의 總支援額의 64.2%를 점하였는데 同期間 當行의 資金支援에 의거 建造된 船舶은 96 隻, 總 2.3백만 G/T에 달하였으며 船種은 매우 多樣化되어 貨物船, 散物船, 高速艇, 精油運搬船, 試錐船 등 10余種에 이르고 있다.

「플랜트」에 대한 輸出資金支援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船舶다음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였는데 「시멘트·플랜트」, 海水淡水化「플랜트」, 「타이어·플랜트」 등 14個 「프로젝트」에 1,243.3억원을 支援하였다.

또한 當行은 鐵道車輛과 機械類등에 대하여도 각각 49.1억원과 195.0억원의 輸出資金을 支援하였다.

技術提供資金貸出은 1977년 가봉에서의 백화점 건설「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취급되었으나 1979년 이후 同資金에 대한 需要는 극히 부진하여 이의 資金支援總額은 135.8억원으로 저조한 実績을 나타내었다. 한편 海外投資資金貸出은 資源開發事業, 船舶의 賃貸, 製造業 등 22個의 事業에 대하여 483.4억원을 支援하였다. 이중 船舶備船에 가장 많은 資金이 支援되었으나 최근에는 鉾山開發事業 등 資源開發事業이 活潑히 推進되어 1980년 이후 이에 대한 資金支援比重이 크게 增加되었다.

當行은 1979년에 처음으로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과 轉貸借款供與業務를 취급하게 되었다.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에 의한 資金支援總額은 1980년말까지 438.8억원을 기록하였다. 直接貸出은 信用供與方式和 節次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供給者信用方式의 輸出資金貸出과 동일한 관계로 輸出資金 貸出実績에서의 品目構成과 마찬가지로 船舶輸出에 대하여 대부분의 資金이 支援되었으며 그밖에는 버스·트럭등 自動車輸出에 대하여도 일부 支援되었다.

<表Ⅱ-3>

資金別・品目別 貸出執行実績推移

(단위: 백만원)

年度別 品目別		76 (7-12)	77	78	79	80	計
輸 出 資 金	輪 船	-	130	35,983	50,216	37,996	124,325 (17.3)
	船 船	32,958	71,730	58,397	70,866	228,201	462,152 (64.2)
	鐵道車輛	507	332	-	1,085	2,982	4,906 (0.7)
	機械類其他	254	1,287	10,711	4,429	2,822	19,503 (2.7)
	小 計	33,719	73,479	105,091	126,596	272,001	610,886 (84.9)
技術 提供 資金	建設工事	-	4,640	2,224	404	-	7,268 (1.0)
	其他用役	-	2,350	3,788	-	171	6,309 (0.9)
	小 計	-	6,990	6,012	404	171	13,577 (1.9)
海外 投資 資金	資源開發	-	2,395	-	678	779	3,852 (0.5)
	設備貸与	1,223	12,879	13,311	9,725	55	37,193 (5.2)
	其 他	2,449	287	2,755	582	1,224	7,297 (1.0)
	小 計	3,672	15,561	16,066	10,985	2,058	48,342 (6.7)
直接貸出		-	-	-	19,602	24,279	43,881 (6.1)
転貸借款		-	-	-	964	1,702	2,666 (0.4)
總 計		37,391	96,030	127,169	158,551	300,211	719,352 (100.0)

註: ()안은 構成比(%)임

轉貸借款供与契約実績은 1980 년말까지 5 개국 金融機關에 20 백만「달러」로서 이중 4,659 천「달러」 상당액인 26.7 억원이 집행되었다. 轉貸借款은 小規模去來의 支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支援対象品目은 多様하여 自動車 및 同部品 등 機械類, 「플라스틱」機械 및 化学機器 등 資本財 그리고 冷延薄板 등 鉄鋼材 등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轉貸借款供与는 乗用車 등 自動車 輸出에 支援됨으로서 우리나라 自動車 輸出의 새로운 市場開拓에 큰 寄与를 하고 있다.

〈表Ⅱ-4〉

地 域 別 貸 出 承 認

(단위: 백만원)

年度別 地域別	76 (7-12)	77	78	79	80	計
유럽	8,098	46,165	18,567	226,795	4,749	304,374 (30.7)
北美				69,655	111,832	181,487 (18.3)
中南美		8,481	4,049	43,352	37,403	93,285 (9.4)
東南亞	254	18,917	117	93,360	46,814	159,462 (16.1)
中東		2,128	63,652	3,128	53,178	122,086 (12.3)
아프리카	2,736	57,999	55,086	3,496	1,980	121,297 (12.3)
大洋洲		474		4,552	3,685	8,711 (0.9)
計	11,088	134,164	141,471	444,338	259,641	990,702 (100.0)

註: () 안은 構成比(%)임.

한편 当行 設立以後 1980 년말까지 貸出承認額의 地域別分布를 보면 ,유럽이 30.7 %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으로는 北美 (18.3 %) , 東南亞 (16.1 %) , 中東 (12.3 %) , 아프리카 (12.3 %) , 中南美 (9.4 %) , 大洋洲 (0.9 %)의 順으로 되어 있다 . 유럽과 北美가 이와같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當行資金支援의 主対象品目이 되어온 船舶의 輸出이 대부분 先進國으로 輸出되고 있는데 基因하는 것이다 .

6. 輸出保險 業務

当行은 1977 년 1월 그동안 大韓再保險公社가 取扱해 오던 輸出保險業務를 承繼 받은 이래 우리나라의 輸出規模의 擴大와 더불어 격증되는 輸出保險需要에 대처코자 輸出保險基金의 增額, 輸出保險引受限度의 擴大, 新種保險制度의 導入 등 輸出保險業務基盤을 拡充해 왔다 . 뿐만 아니라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 (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 Berne Union) 에의 加盟 및 外國의 公的保險機關과 共同保險協約을 締結하는 등 輸出保險業務의 國際化 에도 힘을 기울여 当行이 代行하고 있는 輸出保險業務는 크게 伸張되어 왔다 .

保險業務承繼 당시 政府出捐金, 15 억원과 利益金轉入額 7.5 억원, 합계 22.9 억원에 불과하였던 輸出保險基金은 政府出捐金이 매년 20 억 ~ 30 억원씩 增加되는 한편 利益金도 轉入되어 1981 년 5월말 현재 153.4 억원으로 거의 7 배 가까이 增額되었다 .

이와 더불어 輸出保險引受限度도 当行의 業務承繼後 2 차에 걸친 輸出保險法改正 으로 크게 擴大되었는 바, 종전 輸出保險基金의 20 배에서 1978 년 12 월 第4次 輸

輸出保險法改正에 따라 30 배로 擴大 變更되었으며, 또한 1981년 3월 第5次 輸出保險法改正時에는 倍數限度制를 撤廢하고 매년 商工部長官이 輸出保險種目別로 引受限度를 정하여 國會의 承認을 받아 運用토록 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7년부터는 海外建設工事保險, 그리고 1979년부터는 輸出保證保險種目を 新設함으로써 輸出保險種目は 8 가지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保險事故 逆選擇의 방지, 保險料 부담의 경감 등 輸出保險의 보다 건전한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1977년 6월 輸出어음保險에 包括保險制度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을 계기로 1980년 7월부터는 輸出保證保險 그리고 1981년 1월부터는 中·長期延払輸出保險에도 包括保險制度를 도입·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當行은 輸出保險業務의 國際化에도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는 바, 1977년 6월에는 1934년 設立되어 28個國 36個 機關이 加盟하고 있는 Berne Union에 正會員으로 加盟하여 各國 輸出保險機關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78년 5월 및 1980년 6월에는 벨지움信用保證公社 (Office National du Ducroire ; OND), 네델란드 輸出信用保險会社 (Nederlandsche Credietverzekering Maatschappij N.V.; NCM)와 각각 共同保險協約을 체결함으로써 第3國과의 「플랜트」, 海外建設工事등 大型「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시 이에 따른 위험을 共同으로 担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 1981년 6월, 第38次 Berne Union 年次總會에서는 現 李泰浩銀行長이 行長의 任員被選 同聯盟 運営委員會 委員으로 被選됨으로써 우리나라 輸出保險業務의 國際的 地位는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輸出保險業務는 매년 크게 伸張되어 왔는 바 當行의 業務代行後 輸出保險種目別 保險引受実績은 <表Ⅱ - 5>과 같다.

<表Ⅱ-5>

輸出保險引受実績推移

(단위: 백만원)

年度別 種目別	1977	1978	1979	1980	計
一般輸出保險	15,362	718	869	-	15,949
輸出金融保險	2,172	1,458	1,160	245	5,035
輸出어음保險	28,440	19,546	16,546	17,090	81,622
中長期延払輸出保險	3,037	31,795	29,270	50,794	114,896
海外投資保險	1,173	2,434	6,381	7,614	17,602
委託販売輸出保險	-	-	-	-	-
海外建設工事保險	-	10,086	204,914	82,100	297,100
輸出保証保險	-	-	-	333,539	333,539
計	50,184	66,037	259,140	491,382	856,743

第4節 重化學輸出增進과 韓國輸出入銀行의 役割

1.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와 韓國輸出入銀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經濟가 高度成長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要因중의 하나를 外延的 成長政策 즉 對外指向的 輸出主導型 工業化戰略이었다고 하겠다.

1962년에 시작된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에서 政府는 投資의 最優先順位를 製造業에 둠으로써 工業化를 통한 經濟開發을 指向하여왔으며 이를 통한 수출의 증대 등 産業의 近代化過程을 거치면서 工業部門은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을 主導하여왔다. 그런데 196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工業化戰略의 기본방향은 初期의 輸入代替産業化에 이은 輕工業中心의 輸出産業化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際經濟与件의 惡化와 国内物価 및 貨金의 상승 등으로 輕工業中心의 輸出만으로는 지속적인 輸出擴大는 어렵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1973년 1월 政府는 經濟의 重工業化를 宣言함으로써 工業化戰略의 기본방향을 重化學工業의 輸出産業化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3-74년의 石油波動으로 国内外經濟与件이 급변하게 됨으로써 이의 본격적인 추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重化學工業化의 急進展으로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比率은 1972년 41.8%에서 1977년에는 50.9%로 그리고 1980년에는 53.2%로 크게 높아졌으며 또한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은 1972년의 경우 總輸出의 21.3%인 346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7,286백만「달러」로 급격히 늘어나 總輸出의 41.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表Ⅱ - 6 >

重化学工業比率

(1975 年 不變價格, 附加價值基準)

(단위 : %)

	重化学工業	輕工業
1962	25.8	74.2
1972	41.8	58.2
1976	48.6	51.4
1977	50.9	49.1
1978	53.2	46.8
1979	54.7	45.3
1980	53.2	46.8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80

<表Ⅱ - 7 >

重化学輸出比重推移

(通関基準)

(단위 : 백만원)

	總輸出	重化学輸出	構成比 (%)
1972	1,624	346	21.3
1976	7,715	2,303	29.8
1977	10,046	3,299	32.8
1978	12,710	4,467	35.1
1979	15,055	5,818	38.6
1980	17,504	7,286	41.6

資料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81. 4

이와같은 重化学工業輸出의 급신장은 거둬들인 原油価引上으로 国内外經濟与件이 크게 악화되었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도 지속적인 輸出規模의 확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先導的인 役割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國際収支의 改善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自力成長構造를 확립함으로써 高度産業社会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1980년대에 있어서는 重化学工業의 輸出産業化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政府는 重化学工業의 競争産業化를 1982년부터 추진될 第5次經濟社会開発5個年計劃의 기본전략의 하나로 삼아 目標年度인 1986년도에 가서는 重化学工業의 輸出比重을 57.2%로 높임으로써 輸出規模를 總527억「달러」로 확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對外指向의 工業化政策을 추진함에 있어 重化学工業의 育成과 이의 輸出産業化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當爲性을 찾을 수 있다. 즉 첫째, 輕工業製品은 先進各國의 保護主義傾向의 팽배와 後發開發國들의 도전으로 輸出市場의 유지와 확대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重化学工業製品은 일반적으로 成長彈力性 즉 所得彈力性이 높고 價格非彈力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지속할 수 있는 점 둘째, 重化学工業은 勞働生産性, 産業關聯效果 및 附加価値 創出面에서 効率性이 높으며 또한 이의 育成에 의해 素材, 中間財 및 資本財의 海外依存度を 낮추어 經濟自立度を 제고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成長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重化学工業을 育成 이를 輸出産業化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投資財源과 高度의 技術蓄積이 필요하며 또한 先進國들과의 직접경쟁하에 수출시장을 開拓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長期低利의 輸出信用供与와 더나가 輸出保險의 지원이 불가피한 점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重化学工業製品의 輸出은 輕工業製品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去來單

위가 巨額이며 非反復的인 점, 輸出対象국이 주로 자본이 빈약한 後進국인 점, 기술혁신적인 제품의 성격상 안정된 수출시장의 확보가 어려운 점 등으로 長期低利의 輸出信用 및 輸出保險의 지원은 1960년대이후 先進各國에 있어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競争이 날로 격화되고 있어 重化学工業製品 輸出에 있어 필수적인 競争要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支援없이 重化学工業製品 輸出은 특히 重工業이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重化学工業의 輸出産業化에 있어서 中長期延払信用의 供与와 輸出保險業務를 전담하고 있는 當行 役割은 막중한 것이며 今後 重化学工業이 우리經濟에 차지하는 比重의 増大에 따라 그 機能은 더욱 重要하여지고 한편 그 役割은 더욱 擴大되어 갈 것이다.

當行은 1976년 7월 1일 설립후 1981년 5월말까지 總 9,017.4억원의 中長期延払信用을 供与하는 한편 1977년 1월 1일 輸出保險業務 代行이후 1981년 5월말 현재 總 1조 6,000.8억원의 輸出保險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重化学工業製品의 輸出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있어 重化学工業의 競争産業化를 추진, 第5次 5個年計劃期間中 重化学工業製品 輸出을 年평균 26.6%씩 증대시켜 目標年度인 1986년에 가서는 300억「달러」水準의 重化学工業製品 輸出을 實現시키기 위하여는 當行의 機能과 役割은 한층 더 강화되고 擴大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當行의 長期政策方向

우리나라의 貿易立國과 重化学立國을 다같이 成就하려는 1980년대를 맞이하여

延拓輸出 金融支援 專担 金融機關으로서의 當行의 機能을 強化하여야 할 必要性에 대하여는 이미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長期政策을 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調達費用이 저렴하고 장기안정적인 財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先進外國의 中長期延拓信用 供與機關의 경우 財源은 주로 政府出資 및 財政資金借入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當行의 경우는 이제까지 財源의 상당부분을 國際金融市場借入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海外借入比重이 계속 증대되어 왔다. 이와같은 海外借入比重의 증대는 資金調達費用 負擔을 加重시켜 當行業務의 건전한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國際高金利下에서는 지나친 國民經濟的 負擔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國際金融市場 與件變化는 매우 유동적인 관계로 資金의 適期確保에도 차질을 가져 올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海外借入比重이 適正水準을 유지할 수 있도록 未納入 授權資本金의 조속한 出資實現과 함께 國民投資基金을 包含한 財政資金 借入方式의 制度的 裝置 마련에 努力함은 물론 對内外金利差 縮小 등 與件成熟에 발마추어 當行法上 허용되어 있는 當行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 등 國內借入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와 같은 特別輸入稅의 賦課 등을 통한 長期低利 資金의 안정적 확보등과 같은 對策도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資金調達金利와 支援金利間의 利差가 발생할 경우 이를 自動的으로 補填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資金運用의 効率性を 提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制限된 資金으로 支援效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比較優位에 입각하여 國民經濟에 미치는 綜合的인 效果가 큰 事業에 우선적으로 資金이 공급되도록 選別的인 支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 當行이 開發하여 導入段階에 있는 國民經濟的 측면에서의 支援事業의 妥當性分析技法을 더욱 발전시키는 물론 專門要員을 확보하여 技術的妥當性分析能力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支援對象國에 대한 經濟, 政治, 社會 등 각분야에 대한 調查活動을 강화함으로써 國別信用度評價에 있어 보다 확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이미 當行이 導入運營하고 있는 協調融資制度 및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資金支援을 확대·발전시켜 이를 國際水準化하여야 하겠다.

協調融資에 있어서는 國內金融機關들과는 물론 外國金融機關들과의 協調融資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當行資金負擔을 완화함으로써 輸出構造의 重化學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계속 증대될 中長期輸出信用에 대한 需要를 원활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國內金融機關의 大型化에 따라 資金支援能力은 점차 提高될 수 있을 것이므로 國內金融機關의 協調融資比率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한편 보다 長期的으로는 中短期性 輸出資金의 支援은 利差補填을 制度化함으로써 國內金融機關이 이를 專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資金支援에 있어서는 長期的으로는 國際收支의 改善 進行과 이에따른 資本自由化 條件의 成熟에 대해 元貨借款을 供與할 준비태세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로는 貸出利率, 融資期間 등 支援條件은 國際經濟環境과 우리나라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을 감안하여 이를 彈力的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先進國들간에 합의되고 있는 OECD「가이드라인」 즉 公的 中長期輸出信用 供與基準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섯째로는 일부 先進國들의 경우 公的開發援助와 中長期輸出信用을 결합하여 소위 混合信用 (mixed credit) 形態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競爭力을 提高시키고 있는 바 이를 감안 소규모부터라도 經濟協力基金을 설치하여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원할 수 없는 去來를 지원함으로써 當行業務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當行資金支援業務와는 補完關係에 있는 輸出保險業務에 있어서도 包括保險制度의 점진적인 확대와 共同保險協約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換差損保險, 「인플레이」保險 등 新種保險을 개발하여 업무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한편 保險引受에 있어 倍数限度制는 철폐되었으나 급증하는 輸出保險需要를 감안할 때 保險加入者에 대한 公信力을 強化하기 위하여는 保險基金을 보다 적극적으로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三章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3

第1節 政策決定機關

第2節 機構 및 職制

第三章 韓國輸出入銀行의 組織

第1節 政策決定機關

當行은 基本政策의 樹立과 決定機關으로서 運營委員會(法 第10條 第1項), 理事会(法 第9條의 2 第1項)를 두고 있고 特殊分野에 대한 政策決定을 위한 諮問機關으로서 各 委員會를 두고 있다.

1. 運營委員會

가. 性格

運營委員會는 當行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當行의 業務運營管理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法 第10條 第2項). 그리고 同委員會는 이러한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定을 정할 수 있다(同條 第3項). 業務運營管理에 關한 基本方針樹立機關이므로 運營委員會는 當行의 最高政策決定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同委員會의 決定은 最高執行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銀行長을 羈束하게 된다. 同委員會가 決定하는 事項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行法, 施行令, 定款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定款에 規定된 以

외의 事項에 대하여도 처리할 수 있다(定款第6條).

나. 構成

運營委員會의 構成은 當行法 第10條의 2에 規定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8명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 ① 輸出入銀行長
- ②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③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④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⑤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⑥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⑦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⑧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또한 運營委員會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參觀委員會를 두어 會議에 參席, 意見を 陳述할 수 있게 하고 있다(運營委員會 規定 第3條). 運營委員會는 위와 같이 各界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는 當行의 金融供与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協力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當行의 政策決定에 政府各部處 및 關係機關 등의 意見を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다. 變遷過程

1976年 7월 1일 當行이 設立되기까지 當行業務를 韓國外換銀行이 代행하고 있었던 期間中에는 同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두어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하였고, 關係法 規定中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은 臨時運

當委員會에 準用하도록 하였으며 同委員會 議長은 韓國外換銀行長이 겸임토록 하였다.

다만, 當行 設立準備期間中 設立事務의 처리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는 設立委員會가 代행토록 하였다.

라. 權限

運營委員會는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當行의 業務運營管理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이에 관하여는 當行法, 施行令, 定款에 구체적으로 規定되어있다. 이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끝나는 事項도 있고 財務部長官 또는 大統領의 承認을 요하는 事項도 있다.

(1) 法에 規定된 運營委員會의 權限

當行法에 規定되어 있는 委員會의 權限은 ① 定款의 變更(法 第5條 第2項), ②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요하는 主要資源의 開發業務와 對外經濟協力 資金貸出에 관한 業務(法 第18條 第2項), ③ 業務方法書의 作成 및 變更(法 第9條), ④ 殘餘利益金의 處理(法 第36條 第3號) 등으로 되어 있다.

(2) 施行令에 規定된 運營委員會의 權限

當行法 施行令에서 규정된 運營委員會의 權限으로서는 ① 法 第18條 1項 第1號의 適用을 받는 製品의 品目의 議決, ② 法 第18條 第2項 第4號의 適用을 받는 重要物資의 品目 議決, ③ 法 第18條 第1項 第6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貸出을 爲한 海外投資(5)要件 決定, ④ 法 第25條 2項 但書에 의한 貸出償還期間에 대한 特例適用에 관한 事項 등이다.

(3) 定款에 規定된 事項

當行 業務運營에 관해서는 基本的으로 定款에 定하여져 있으나 運營委員會는

定款에 정하는 以外の 事項에 대하여도 따로 정할 수 있다(定款 第6條).

(4) 其他規程에서 規定된 事項

運營委員會規程에는 上記 諸權限外에 ① 年度別業務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② 決算 및 損失補填에 관한 事項 등을 議決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5) 運營委員會에 대한 特例

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即刻的 行爲
가 필요한 경우로서 運營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運營委員會의 權限內에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고, 措置後에는 지체 없
이 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運營委員會
는 그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도록 하여(法 10條의 6), 非常時에
銀行長의 緊急措置權을 認定하고 있다.

마. 議事 및 議決方法

(1) 議長

当行法에 의하면 委員會의 議長은 輸出入銀行長이 되고,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위의 委員이 議長의 職務를 대행하도록 規定했
는데(法 第10條의 3) 運營委員會規程에는 議長代行順位를 ① 財務部委員 ②
經濟企劃院委員 ③ 商工部委員 ④ 外務部委員으로 定하고 있다.

(2) 會議의 召集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議長이 召集하고, 또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法 第
10條의 4, 定款 第17條)

(3) 議決方法

運營委員會는 在籍委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관한 會議에는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경우에는 參席하여도 상관없다. 專務理事, 理事, 監事는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지만 議決權은 없다.

2. 理 事 會

가. 性格

(1) 性格 및 發足

當行은 理事會를 두고 있는데 (法 第9條의 2) 理事會는 運營委員會 다음가는 意思決定機關으로서 當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도록 하여 運營委員會가 決定한 基本方針에 입각하여 定款에 정한 바에 따라 銀行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運營委員會의 構成員이 주로 外部人士임에 비하여 理事會의 構成員은 當行의 任員으로서 銀行의 모든 重要한 일은 우선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決定되도록 하고 있다.

當行發足當時에는 理事會가 構成되어 있지 않았으나 第1次 當行法改正時 理事會에 대한 根拠規程이 마련되어 1977年 12月 30日 銀行長, 專務理事, 그리고 3名의 理事 및 監事로서 第1回 理事會를 開催함으로써 그 機能을 發揮하기 始作하였다.

(2) 運營委員會와의 關係

運營委員會가 銀行의 基本方針을 수립하는 當行最高의 意思決定機關임에 비하

여 理事会는 銀行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하는 機關이다. 當行業務가 國民經濟的인 面에서 地극히 重要的 것임을 勘案, 순수한 當行의 立場에서 意思決定을 한 후 國民經濟全體의 立場에서 理事会의 意思決定을 조정하도록 二重의 意思決定機關을 두어 意思決定에 慎重을 기하도록 하였다.

나. 構成

理事会는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로 構成되며, 監事는 構成員이 아니나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다. 權限

理事会와 權限은 위에서 叙述한 바와같이 當行法, 施行令, 定款의 規定 및 運營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銀行業務의 重要事項을 決定한다. 業務處理에 관한 대부분의 內規를 정함으로서 事實上 銀行의 重要事項에 관한 대부분의 意思를 決定하고 있다. 理事会의 權限에 관해서는 法, 定款, 他規程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內規인 理事会規程에 정하여져 있다.

라. 議決方法

會議는 議長인 銀行長이 召集하되 構成員 過半數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2/3 以上の 賛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議長은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會議를 召集하지 아니하고 文書로서 議決할 수 있다.

3. 任 員

以上 議決機關에 대하여 執行機關인 各 任員에 관하여 간략히 叙述하면 다음과 같다.

가. 銀行長

銀行長은 當行을 代表하고 當行業務를 統理한다.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며 任期는 3年으로 重任될 수 있다. 銀行長의 關位時 後任者의 任期는 다른 任員들과 마찬가지로 任命될 때부터 前記의 任期가 시작된다.

나. 專務理事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專務理事가 職務를 대행한다. 그리고 專務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의거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任期는 3年이나 重任될 수 있다.

다. 理事

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當行業務를 分掌한다. 銀行長과 專務理事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順位에 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理事는 專務理事와 마찬가지로 銀行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하고 任期는 3年이나 重任이 可能하다.

라. 監事

監事は 当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하는데 監査業務의 性格上 獨立性を 부여하기 위하여 監事は 財務部長官이 單獨으로 任免한다. 任期는 2년이며 重任될 수 있다.

4. 主要諮問委員會

가. 融資審議委員會

融資審議委員會는 当行法 第18條에 規定된 当行의 与信業務의 수행과 관련하여 銀行長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設立된 委員會이다.

同委員會의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委員은 当該部署 担当理事(審査1部, 審査2部, 企劃部, 資金部, 海外投資調査部, 金融部, 輸出保險部, 法規室) 및 審査1部長, 審査2部長, 企劃部長, 資金部長, 海外投資調査部長, 金融部長, 輸出保險部長, 法規室長으로 구성된다. 專務理事가 關位또는 有故時에는 首席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首席理事도 有故時에는 미리 定하는 바에 의한다. 幹事는 審査1部長이 겸임한다.

同委員會는 ① 懸案 融資相談去來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去來에 대한 支援可能 与否 결정을 위한 事前檢討 ② 与信에 관한 각종 制度, 基準, 方針 등을 事前檢討하는 것을 主業務로 하고 있다.

同委員會는 各委員의 요청에 따라 수시 소집되는데 委員 과반수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委員會는 부의된 案件에 대하여 議決은 하지 않으며 委員長은 意見を 종합 解決方向을 提示한다.

銀行長과 監事は 委員會에 참석하여 意見을 진술할 수 있다. 幹事は 會議錄을 작성하여 銀行長에게 報告한다.

나.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는 當行 支援資金의 効率性を 提高하고 當行 投融資資金의 償還에 대한 安全性을 期하기 위하여 投融資對象國에 대한 信用度を 評價함을 그 主要機能으로 하고 있다.

委員會의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委員은 該當部署担当理事(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輸出保險部) 및 海外投資調查部長, 審査1部長, 審査2部長, 輸出保險部長으로 構成되며 專務理事가 有故時에는 調査担当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幹事は 海外投資調查部長이 兼任한다.

同委員會는 ① 國別信用度評價 ② 評價方法의 變更에 관한 事項 ③ 其他 國別評價와 關聯된 事項을 審議하며 審議된 結果를 銀行長의 決裁를 거쳐 確定한 후 審査1部, 審査2部 및 輸出保險部に 通報한다.

또한 同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의 事前審議를 위하여 “國別信用度評價專門委員會”를 두고 있는데 委員은 該當部署 担当次長(海外投資調查部, 審査1部, 審査2部, 輸出保險部)으로 構成되며 委員長은 海外投資調查部長이 된다.

다. 業務審議委員會

當行의 業務審議委員會는 1977년 8월 1일 銀行長 諮問機構로 設置되었으며 同委員會의 構成은 專務理事가 委員長이 되고 理事 및 本店 各部署長이 委員이 되어 다음 事項을 審議하도록 되어있다.

① 主要業務計劃의 樹立에 관한 事項

② 部署長會議에서 결정하지 못한 事項

③ 銀行長 및 委員長이 요구한 事項

同委員會의 設置 當時에는 理事會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理事會의 機能의 一部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會議召集도 每月 두번째 화요일에 개최되는 定期會議와 필요에 따라 委員長이 수시로召集하는 臨時會議로 구별하고 審議內容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理事會가 설치된 후로는 實情과 附合되지 않는 事項이 많아지게 되어 1980년 4월 23일 業務審議委員會要綱을 改定하고 會議召集은 必要時에 수시로召集토록 하였으며 審議內容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銀行長과 監事는 同委員會에 參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企劃部長을 幹事로 하여 會議召集과 會議錄을 작성케 하고 會議結果는 銀行長에게 보고된다.

第2節 機構 및 職制

1. 機 構

가. 本部

(1) 機構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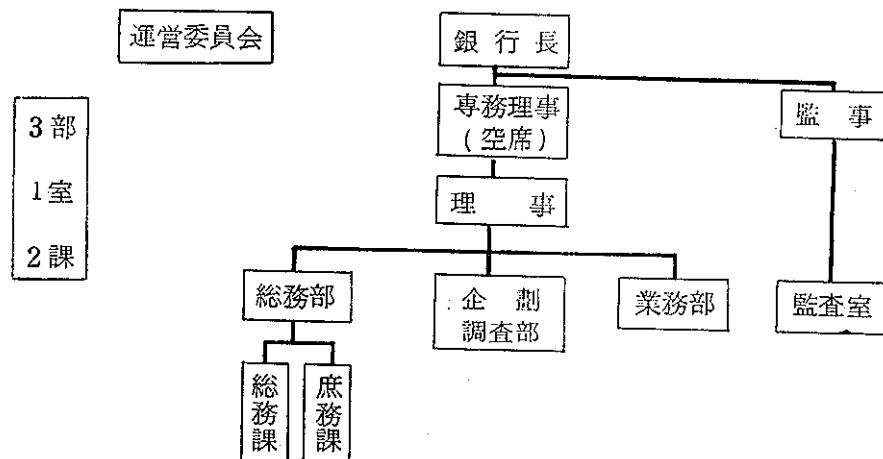
1969년 韓國輸出입銀行法의 制定, 公布로 동년 10월부터 中長期信用業務를 代行하고 있던 韓國外換銀行은 1975년 7월 1일 향후 설립될 韓國輸出입銀行業

務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中長期信用部를 輸銀企劃部와 輸銀業務部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1976년 5월에는 當行 設立節次의 一環으로 輸出入銀行法에 의거하여 위촉된 韓國輸出入銀行 設立委員會가 發足하였으며 이로부터 2個月後인 1976년 7월 1일 當行은 正식으로 창립되었다. 이때의 機構는 3部1室에 不過하였다.

創立 當時의 機構表

(1976. 7. 1.)



그러나 設立後 5년동안 重化学 延拓輸出의 증대에 따른 業務의 量的伸張과 質的深化에 발맞추어 그간 11次의 機構改編을 거쳐 當行機構와 組職은 확충을 거듭해 왔다. 그간의 變遷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創立 한달후인 1976년 8월 13일에 甲類外國換業務의 內認可가 있자 동년 11월 2일 企劃調查部內에 外換管理課를 新設하고 甲類外國換銀行의 長에게 委任된 認可 및 許可業務와 貿易外去來의 事後管理業務 및 外換關係와 貿易關係法規 등 對外去來에 관계되는 法規의 統轄業務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6년 12월 17일에는 輸出保險法이 改正됨으로써 當行이 輸出保險業務를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輸出保險業務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말까지 마쳤으며 1977년 1월 1일 大韓再保險公社와 業務引繼引受를 완료함과 때를 같이하여 當行內에 輸出保險部를 신설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동년 1월 27일에는 企劃調查部를 業務部와 海外投資調查部로, 業務部를 審査部와 金融部로 분리·개편 하였으며, 總務部內에 安全計劃課를 신설하였다.

當時의 企劃調查部는 企劃, 資金 및 調査業務 등 여러가지의 異質的인 業務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과 폐단이 많았으며 調査業務도 當行의 특수성에 맞추어 國別信用度評價 등 각종 調査分析에 관한 專門化가 요청되었다. 이에따라 企劃調查部를 業務部와 海外投資調查部로 분리, 개편하였던 것이며, 신설된 業務部內에는 企劃課, 法規課 및 資金課를 두어 企劃課는 業務計劃 및 綜合運營計劃의 樹立과 豫算編成 등의 企劃業務를 담당토록 하고, 法規課는 融資 및 重要契約書에 대한 法的審査와 業務方法書 등 주요 內規의 심사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資金課는 資金의 調達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과 計算, 損益豫想, 決算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海外投資調查部는 國內外 經濟動向調査, 地域別 經濟動向分析, 主要政策 資料의 立案, 支援 「프로젝트」에 대한 事業性分析과 國別信用度評價, 각종 情報 및 資料의 蒐集, 出版 및 弘報 등 調査 研究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또한 既存 業務部를 審査部와 金融部로 改編한 것은 當初 業務部가 與信審査와 實行을 同一部署에서 수행함으로써 與信業務의 전문화가 어렵고 業務量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능률적인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貸出

의 審査와 承認, 与信에 관한 企劃 및 与信運用指針 등의 업무는 審査部가 전담하고 貸出承認에 따른 資金의 執行과 貸出金の 回收 및 担保權의 実行 등 与信의 事後管理業務, 그리고 이와 關聯한 認證 및 輸出入・外換業務는 金融部에서 수행토록 하였다.

總務部에 安全計劃課를 신설한 것은 当行 創立에 따른 職場豫備軍運營 및 民防衛隊業務와 非常計劃과 自體防護등의 경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후 잇달아 8월 17 일에는 總務部와 輸出保險部가 확대・개편되고, 業務改善室이 신설되었다.

當時의 總務部는 總務課, 庶務課 및 새로 신설된 安全計劃課의 3課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總務課는 文書管理業務의 企劃 및 統轄과 직원의 교육, 업무훈련 및 考試 등의 職員の 研修 뿐 아니라 涉外儀典 및 政府의 주요업무에 관한 홍보활동 등 여러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業務量이 증가됨에 따라 總務課의 업무를 機能別로 細分化할 필요가 절실했으므로 文書課 및 研修課를 신설하고 既往의 總務課의 分掌業務中에서 문서관리에 관한 全般的인 業務와 涉外儀典 및 弘報活動과 새마을운동에 關連된 各種行事는 이를 분리하여 文書課에서 전담케 하고 研修課는 職員の 研修訓練과 이를 위한 業務敎本の 편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輸出保險部에서는 統轄課와 補償課를 설치하여, 統轄課는 部全體의 종합적인 企劃業務와 保險制度의 研究를 통한 新種保險開發 및 輸出保險에 관한 弘報業務를 담당토록 하고 補償課는 現地 事故調査體系를 수립하여 신속한 損害査定 및 補償業務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業務改善室을 신설하여 当行의 日常業務改善, 發展을 위해 業務規定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토록 하였다. 当行

의 各種 양식 서식 및 장표의 制定 또는 改善에 統一을 기하고 政府施策에 부응하여 庶政刷新에 관한 업무를 전담케 하였다.

다음해인 1978년 2월 28일에는 第5次 改正을 통하여 業務部の 資金課와 法規課를 각각 資金부와 法規室로 昇格, 獨立시켰다.

우선 資金부의 獨立新設은 1978년도에 이르러 船舶, 「플랜트」 등 우리나라 重化学工業製品의 延拓輸出이 증대됨에 따라서 當行의 業務量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當行資金에 대한 需要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資金의 효율적인 調達運用과 外貨資金調達을 수행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인 바 이에 따라 資金部內에 資金1課와 資金2課를 두어 資金1課는 資金需給計劃, 國內資金調達, 資金運用管理 및 計劃業務를 담당토록 하고, 資金2課는 國際金融市場에서의 「본드」 (bond) 發行, 延拓어음売却, 「뱅크·론」 導入 등 外貨資金調達 및 運用管理, 「크레스」 業務, 換對査 등을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國際契約書의 형태가 점차 複雜多岐해지고 輸出에 관련된 對外債權의 확보를 위한 法的審査業務의 必要性增大에 말맞추어 業務部 法規課를 法規室로 독립시켰는 바 法規室은 對外去來契約書에 대한 전문적인 法的審査를 철저히 하고 各種內規의 制定 및 廢止에 따른 審査를 담당토록 하였다.

1978년 8월 14일에는 審査部를 審査1部和 審査2部로 개편하였다. 당시의 審査部는 貸出審査業務와 새로운 支援制度의 開發 및 与信에 관한 綜合企劃業務를 담당하였는바 1979년부터는 購買者信用制度인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및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 業務를 취급하게 됨에 따라 審査部를 審査1部和 審査2部로 분리·개편하여 審査1部는 与信에 관한 綜合企劃業務와 供給者信用中 內國人에 輸出資金貸出, 技術提供資金貸出 및 이와 관련된 先受金還給保証 및 契約履行保証業務 등을 취급케 하고 審査2部는 前述한 購買者信用과 海外投資資

金貸出 및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 취급케 함으로써 貸出審査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였다.

1979년 4월 27 일에는 業務部 및 総務部 安全計劃課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이는 앞서 法規課 및 資金課가 독립부서로 昇格됨에 따라 業務部는 실질적으로 豫算編成 등 企劃業務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担当業務의 内容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必要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業務部를 企劃部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総務部內 安全計劃課의 명칭을 다른 金融機關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安全管理課로 변경하였다.

1979년 10월 11 일에는 任員의 庶務와 儀典 및 渉外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 개편하여 종래의 文書課業務를 담당토록 하는 한편 企劃部의 企劃課를 企劃1課와 企劃2課로 분리하였다.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 개편한 것은 設立初期에 비하여 機構가 확대되고 業務量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理事会와 運營委員會의 업무가 폭주하였으며 渉外, 儀典 등의 업무도 과다하여 한정된 文書課 人員만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企劃課의 분리는 一般企劃業務와 豫算 및 海外事務所 統轄業務를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다.

1980년 3월 15 일에는 総務部の 安全管理課를 분리하여 獨立部署로 昇格시켰다. 이는 1979년부터 当行이 乙支演習에 참가하게 되자 이를 위한 전반적인 計劃樹立 및 지휘·감독업무가 추가되어 독립된 專担部署의 신설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동년 11월 18 일에는 資金部內에 資金總括課를 신설하고 業務改善室內에 電算

班(EDPS)을 설치하였다.

資金總括課의 신설은 1980년대에 이르러 當行의 資金供給規模가 점차 확대되는데 반하여 資金의 調達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資金1課와 資金2課가 각각 分担하여 담당하고 있던 國內外金融市場動向의 深層調査와 長短期資金調達方案 釐具 등 資金調達에 관한 綜合計劃 業務를 1個課가 전담케 함으로써 특히 海外資金의 調達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기 위함이었다.

電算班의 설치는 1980년 3월 17일 第2次 業務審議會에서 檢討・決定되었는바 이는 中長期延払金融 取扱에 따른 當行의 특수성에 비추어 장기적이고 일관된 각종 統計資料의 記錄保全 및 分析和 去來相對國別 經濟動向, 投資環境 등에 관한 情報資料를 蒐集, 分析하는데 필요한 集中情報管理體制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業務審議會의 方針에 따라 當行은 동년 12월 29일 電算要員確保를 위한 增員을 財務部에 신청하여 業務改善室內에 電算班을 설치하고 電算業務의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1981년 2월 9일에는 輸出保險部를 輸出保險1部和 輸出保險2부로 분리, 개편하였다.

輸出保險業務는 當行이 이를 대행한 이래 初期에 비하여 保險金額, 支給保險金 및 海外信用調査件數 등의 業務実績이 크게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輸出保証保險 및 海外建設工事保險 등 새로운 保險種目的 開發과 包括保險方式에 의한 保險引受 實施에 따라 保險事業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體制面에서도 一部가 5個課로 構成되고 人員도 72명에 달하여 이와같이 확장된 組織을 一個部署 組織으로는 효율적으로 통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一部에 統轄課, 保險業務課 및 補償課를 두어 주로 一線業務를 담당하게 하고, 輸出保險2部에는 保險管理課와 信用調査課를 두고 制度調査

課를 신설하여 輸出保險基金의 管理 및 信用調査와 制度調査 등의 後線業務를 담당케 하였다.

(2) 現在の 機構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當行의 機構는 5년간 11次에 걸친 改編을 통하여 尙足 當時의 3部 1室 2課에서 別表의 機構圖와 같이 9部 5室 15課로 擴大되었는데 各部署의 主要 管掌業務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任員附屬室

- ① 理事会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 ② 文書管理業務의 企劃 및 統轄
- ③ 任員의 秘書 및 庶務
- ④ 對外弘報와 涉外儀典에 관한 事項

(나) 企劃部

(企劃1課)

- ① 定款, 組織管理 및 業務調整
- ② 業務計劃 및 長期計劃의 樹立統轄
- ③ 國內支店, 出張所 및 代理店의 設置, 移轉 및 閉鎖
- ④ 委任專決事項
- ⑤ 業務審議委員會에 관한 事項

(企劃2課)

- ① 年間 綜合運營計劃의 樹立 및 審査分析
- ② 豫算의 編成 및 配定
- ③ 國外支店, 出張所 및 代理店의 設置, 移轉 및 閉鎖
- ④ 國外支店 및 出張所의 業務統轄

(外換管理課)

- ① 外換 및 貿易關係 法規의 統轄
- ② 外國換業務와 관련된 諸金利, 手数料 및 外國換 売買率에 관한 事項
- ③ 外國換管理規程에서 甲類外國換銀行의 長에게 委任한 認許可에 관한 事項
- ④ 貿易外去來의 事後管理

(다) 總務部

(總務課)

- ① 職員의 任用, 賞罰, 服務 및 報酬
- ② 職員의 保健, 厚生 및 福利
- ③ 人事委員會에 관한 事項

(研修課)

- ① 職員의 教育과 業務訓練
- ② 業務教本の 編纂

(庶務課)

- ① 豫算의 執行 및 各種租稅등 公課金에 관한 事項
- ② 公告 및 登記
- ③ 業務用 動産, 不動産과 物品의 購入管理運用과 処分
- ④ 行舍의 新築 및 營繕
- ⑤ 文書의 受發, 配付와 整理

(라) 資金部

(資金總括課)

- ① 資金調達에 관한 綜合企劃
- ② 収支分析

③ 資金調達과 관련한 國際資本市場, 金融市場 및 外換市場 動向 調査

(資金 1 課)

① 元貨資金의 調達 및 管理運用

② 國債의 買入, 保有有價証券의 管理運用

③ 元貨預置金計定の 管理運用

④ 決算, 仮決算, 損益豫想의 統轄

⑤ 計定科目의 新設 및 閉鎖

(資金 2 課)

① 外貨資金의 調達 및 管理運用

② 外貨債券의 發行 및 管理

③ 外貨預置金計定の 管理運用

④ 外國銀行과의 換去來契約

⑤ 海外金融機關에 대한 信用調査

⑥ 外國換對査

(마) 海外投資調査部

① 延拓輸出政策에 관한 ゼ 卞 調査研究

② 國內外産業, 金融, 貿易, 外換市場動向 調査

③ 國別信用度 評價

④ 海外情報資料의 蒐集, 分析, 報告

⑤ 支援 「프로젝트」에 관한 經濟性 및 國民經濟的効果分析

⑥ 연차보고서와 定期刊行物 및 各種 調査資料의 発刊

⑦ 圖書 및 各種 資料의 수집구입관리

⑧ 史料의 정비보존 및 편찬

(바) 審査1部

- ① 与信에 관한 綜合計劃
- ② 輸出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③ 技術提供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④ 輸出資金貸出과 관련된 海外投資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⑤ 上記 ②, ③, ④와 관련한 融資相談, 事業性檢討, 技術調査, 担保 物件의 鑑定 및 信用調査

(사) 審査2部

- ① 海外投資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② 外國人에 대한 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③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 ④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에 관한 審査와 承認

(아) 金融部

- ① 与信의 実行, 貸出金回收 및 事後管理
- ② 貸出金事後管理에 關聯된 担保物件과 国内外企業에 대한 實態調査
- ③ 延滯貸出金の 管理 및 回收
- ④ 担保權의 実行, 与信에 관한 執行, 債權 保全節次 및 訴訟
- ⑤ 特殊債權의 管理
- ⑥ 流入物件의 管理 및 処分
- ⑦ 外國換 業務
- ⑧ 貿易去來法施行令에 의거 外國換銀行長에게 委任된 認·許可 등에 관한 業務
- ⑨ 産業設備輸出促進法施行令에 의거 當行에 委任된 搬出確認 및 輸入承認

(자) 法規室

- ① 業務에 關聯된 国内外 法規 및 契約의 解釈
- ② 融資關係契約 및 重要契約에 대한 法的審査
- ③ 法 및 施行令 改正建議案 作成
- ④ 定款 및 內規의 制定案 또는 改廢案에 대한 審査
- ⑤ 法律實務에 대한 相談指導

(차) 業務改善室

- ① 金融淨化 業務
- ② 새 마을 運動, 自然保護運動 및 社會奉仕活動에 관한 事項
- ③ 政府의 主要施策에 관한 弘報活動
- ④ 業務改善提案에 관한 事項
- ⑤ 樣式, 書式 및 報告制度의 管理改善
- ⑥ 事務電算化 및 業務機械化에 관한 事項

(카) 安全管理室

- ① 非常訓練에 관한 事項
- ② 保安業務의 指導 및 統轄
- ③ 自體防護計劃樹立 및 統轄
- ④ 職場豫備軍 및 民防衛隊員의 管理
- ⑤ 行舍保衛 및 當直에 관한 事項

(타) 監査室

- ① 業務 및 會計監査
- ② 業務에 關聯된 事故處理의 指導
- ③ 豫算執行에 관한 証憑書類의 監査

(가) 輸出保險 1 部

(統轄課)

- ① 輸出保險에 관한 諸般計劃의 樹立 및 審査分析
- ② 豫算의 編成 및 配定
- ③ 豫算執行의 事後審査
- ④ 国外事務所의 保險業務 統轄
- ⑤ 國際機構에 관한 事項
- ⑥ 輸出保險審議會에 관한 事項

(保險業務課)

- ① 保險契約의 締結 및 解除
- ② 保險의 引受限度에 관한 事項
- ③ 保險料 納付의 指定
- ④ 未經過保險料 算出
- ⑤ 保險料率에 관한 事項
- ⑥ 保險契約者와의 關聯事項

(補償課)

- ① 損害査定 및 保險金の 決定
- ② 回收金에 관한 事項
- ③ 補償審議會에 관한 事項
- ④ 補償에 관한 法的節次 및 訴訟
- ⑤ 保險事故의 事後管理

(하) 輸出保險 2 部

(保險管理科)

- ① 輸出保險基金의 運用
- ② 豫算의 執行
- ③ 決算 및 財務報告에 관한 事項
- ④ 現金出納에 관한 事項
- ⑤ 業務用 動産, 不動産과 物品의 購買管理
- ⑥ 公告, 登記 및 諸稅公課金에 관한 事項

(信用調査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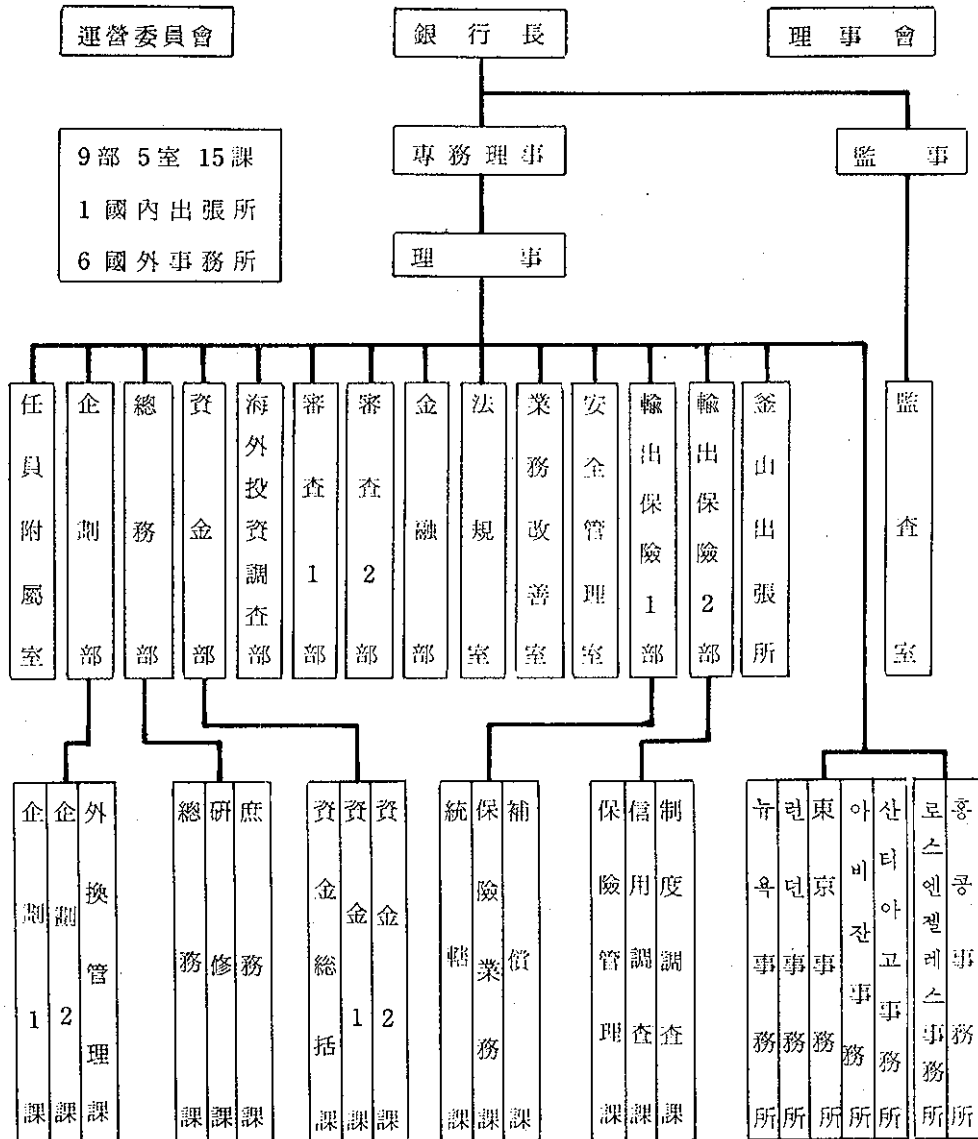
- ① 海外輸入商社 및 国内輸出商社の 信用調査
- ② 保險引受에 관련되는 外國情報 및 非常危險調査
- ③ 信用等級 賦与
- ④ 信用調査機關과의 業務提携
- ⑤ 信用調査 資料의 管理

(制度調査課)

- ① 輸出保險制度의 調査
- ② 輸出保險法令, 約款등의 研究 및 建議
- ③ 輸出保險弘報 및 制度説明會에 관한 事項
- ④ 輸出保險 刊行物 発刊
- ⑤ 業務統計 및 對外 報告

現 在 의 機 構 圖

(1981. 6. 1)



※ 산티아고事務所는 81년중 개설예정

나.出張所, 国外事務所

(1) 出張所

当行은 釜山에 1個 出張所를 두고 주로 輸出保險에 관련된 업무와 融資制度의 説明, 去來相談, 調査業務 및 其他 本店과의 連絡業務를 담당케 하고 있다.

同 出張所는 1977년 1월 1일 当行이 大韓再保險公社로 부터 輸出保險業務를 인수하였을 때 釜山地域의 輸出保險業務 수행을 위하여 함께 인수하였다. 당시의 명칭은 釜山事務所이었으나 所長에 대한 銀行長 代理權의 위임 및, 이들 행위에 수반한 등기절차의 수행 등 제반업무처리상의 便宜를 위하여 동년 6월 22일 釜山出張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国外事務所

当行은 創立 2년후인 1978년에 國際金融市場의 중심지인 「뉴욕」과 「런던」에 事務所를 설치한데 이어 輸出金融과 輸出保險去來가 빈번하거나 同業務의 수행에 必要한 地域을 선정하여 事務所를 설치하여 온 결과 현재는 「뉴욕」, 「런던」 이외에 東京, 「로스엔젤레스」, 「홍콩」, 「아이보리 코스트」국의 「아비잔」 등 6個 都市에 国外事務所를 두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81년중에는 当行 支援実績이 점증하고 있는 中南美地域에 대한 現地 經濟動向 및 投資環境調査와 對中南美地域 去來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레의 首都 「산티아고」에 事務所를 설치할 計劃이다.

当行은 融資規模의 확대와 더불어 当行 融資가 지니는 特殊性 때문에 去來相對 國의 經濟 및 投資環境에 대한 深層調査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海外에서의 資金調達業務가 점차 重要性을 더하고 있고 앞으로 外國金融機關 및 國際金融機構와의 協調融資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國際金融市場 및 支援実績이 큰 地域을 선정하여 계속 国外事務所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當行의 各 國外事務所 設立 経緯는 다음과 같다.

(가) 「뉴욕」事務所

「뉴욕」은 國際資本市場 및 國際貿易金融의 중심지이므로 當行은 海外資金調達과 有關한 國際金融 및 資本市場 動向調査와 去來先選業務를 推進하기 위하여 同地域에 대한 駐在員 派遣이 요청되자 1976년 11월 16일 財務部에 國外駐在員 派遣 承認 申請을 提出하였다. 이에 「뉴욕」駐在員 派遣 內認可가 1977년 1월 15일 있었으나 1977년 8월 8일 外國換管理規程의 改正에 따라 事務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의 開設에 따른 事務室 賃借, 現地法에 의한 承認 등 節次를 마치고 1978년 5월 25일자로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1978년 6월 1일자로 「뉴욕」所在 韓國貿易館內에 當行 「뉴욕」事務所를 正式開設하였다.

(나) 「런던」事務所

「런던」을 중심으로한 國際金融市場은 「유로달러」市場의 本拠地라 할 수 있는 國際金融 및 資本市場의 중심지인 바, 當行으로서는 특히 「뱅크 론」導入 및 外貨表示 債券發行 등 資金調達과 保有 延払어음의 売却, 金融 및 輸出保險業務에 有關한 諸情報入手 便宜等を 고려하여 同地域에 대한 駐在員 派遣 必要性이 絶실히 요청되었다. 同事務所는 「뉴욕」事務所와 같이 1976년 11월 16일 國外駐在員 派遣 承認申請에 의거 1977년 1월 15일 「런던」駐在員 派遣 內認可가 있었다. 그 후 동년 8월 8일의 外國換管理規程의 改正에 따라 10월 13일 承認內容을 「런던」事務所로 變更하고 1978년 5월 25일의 本認可를 받아 동년 6월 1일 正式 開設하였다.

(다) 「홍콩」事務所

「홍콩」事務所는 주로 輸出保險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同事務所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輸出保險事故調査 및 輸入者에 대한 信用調査를 KOTRA, 在

外公館 및 外國信用調査機關에 依賴하므로서 業務遂行上 여러가지 어려움이 야기 되었으므로 輸出保險事故등 신속, 精確한 業務處理와 各種 經濟情報 調査活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海外事務所의 設치가 요망되었다.

이에 當行은 1977년 11월 4일 香港事務所設置 內認可 申請을 財務部에 提出 하였으며 1978년 7월 26일 本認可를 얻어 9월 1일 「香港」事務所를 開設 하기에 이르렀다.

(라) 「로스엔젤레스」事務所

「로스엔젤레스」事務所는 「香港」事務所의 경우와 같이 주로 輸出保險에 관한 信用調査와 事故調査를 위하여 設립되었다.

「로스엔젤레스」는 우리나라의 D/A 「베이스」輸出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곳이며, 保險事故가 빈발하는 지역으로서 1973년부터 1976년 까지의 總事故金額중 美洲地域 사고금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同地域의 輸入業者에 대한 信用調査와 아울러 事故調査를 위하여 事務所設置가 시급히 요 청되었다.

當行은 이 地域에 事務所를 設치하되 구체적인 場所는 事務所設置 內認可後에 선정키로 方針을 정하고 1977년 8월 18일 內認可를 신청하였다. 이에대한 內認可는 「香港」 및 「아비잔」 사무소의 設置認可와 같은 날자인 1977년 11월 4일에 있었다. 이에따라 當行은 同事務所의 具體적인 設置節次를 완료하고 1978년 7월 18일 「香港」사무소와 함께 本認可를 신청하였다. 이에대한 同事務所 設置의 本認可는 「香港」사무소 本認可와 함께 1978년 7월 26일에 있었으며 1978년 8월 28일자로 事務所를 正式開設하게 되었다.

(마) 東京事務所

東京은 「싱가폴」 「香港」 등과 함께 東南亞 金融市場의 중심지로서 外貨資金

調達, 本船担保制度 등의 金融技法習得 및 海外投資情報蒐集을 위하여 東京内に 있는 約 1,000 여개의 専門調査 機關과 100 여개의 外国銀行의 支店 또는 事務所로부터 協調를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제 1 위인 日本의 造船工業과 日本輸出入銀行의 金融支援制度 및 그 発展狀況 등에 대한 情報를 入手하고, 필요시 對外債權의 安全한 管理를 위한 中絶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동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當行은 同事務所를 1978 년도중 설치하고자 1978 년 5 월 20 일 東京事務所 設置承認申請을 提出하였으나 이에 대한 內認可는 1978 년 11 월 16 일에 있었다. 當行은 同內認可내용에 따라 東京内の 事務所 設置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고 1979 년 5 월 28 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동년 6 월 19 일 同事務所를 開所하였다.

(바) 「아비잔」事務所

「아비잔」(Abidjan)事務所는 아프리카 地域에 대한 우리나라 企業의 進出을 적극 誘導하기 위해서 設置되었다.

「아비잔」은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 해안에 위치한 「아이보리 코스트」국의 首都로서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이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국가를 포함한 汎 領 아프리카 諸國에 대한 經濟 및 投資環境調査活動 및 資料蒐集이 용이한 곳이다.

當行은 1977 년 8 월 18 일 東京 및 L.A 事務所와 함께 「아비잔」사무소의 設置 內認可를 申請하여 동년 11 월 4 일 承認을 득하였다. 그러나 1978년중에 현지 중앙은행의 최종인가를 받지 못하고 지연되어 오던중 1979년 5 월초 現地에서의 設置節次를 필하고 동년 5 월 28 일 財務部の 本認可를 받아 6 월 20 일 「아비잔」事務所를 開所하였다.

2. 職 制

가. 人員

当行은 1976년 7월 1일자로 韓國外換銀行의 中長期信用部業務를 引受하여 業務를 開始하였는바, 創立當時의 人員은 任員4名, 職員 76名 合計 80 名이었다.

한편 1977년 1월 1일자로 当行이 정부의 輸出保險業務代行機關으로 지정되고 당시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게 되었는바, 引受時 同 再保險公社로부터 職員 20명이 当行에 轉入하게 되었다.

그후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重化学工業育成政策에 따라 当行도 中長期延払輸出支援金融體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既存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우수 經歷職員을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27%의 급속한 人員增加를 보게 되었다.

創立 후 5년째가 되는 1981년 5월 말현재 当行의 人的構成을 보면, 任員8名 責任者級 職員 162名, 남녀행원 200名, 고용원·기타직원 92名, 合計 462名으로서 설립당시에 비하면 5배이상으로 人員이 증가한 셈이 된다.

나. 職制

当行에 근무하는 者는 当行法과 定款에 따라 任員과 職員으로 구분된다. 任員이라 함은 銀行長, 專務理事, 監事 및 理事 등의 經營陣을 指稱하며, 職員은 本国職員과 国外事務所의 現地採用職員으로 구성한다.

本国職員은 国内에서 채용된 職員으로서 一般職員, 雇傭員 및 別定職員을 말한다.

一般職員은 銀行의 一般業務에 종사하는 1級 내지 4級の 各級 責任者와 5級 내지 6級の 行員 및 女行員으로 構成된다. 현재까지의 一般職員은 事務職만

으로 되어 있으나 当行 融資対象 「프로젝트」技術的妥當性 檢討의 必要性 增大로 인하여 앞으로는 造船, 機械, 電氣, 化學 등의 各 分野에 技術職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다.

雇員은 電氣, 電話, 運轉, 整備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技能職과 整備, 修繕, 製本, 謄寫, 文書發送 등의 勞務職에 종사하는 者로서 各 主任, 1等級 내지 4等級으로 구분한다.

別定職員은 一般職員이나 雇員으로 任用하기 부적합한 經營, 法律, 稅務, 技術 등의 雇問職과 研究員, 醫師 등의 特殊專門職, 藥師, 齒科工, 看護員 등의 醫務職 및 技術職, 體育職, 臨時職 및 圖案職 등의 特殊事務職에 종사하는 職員을 말한다.

現地職員은 現地責任者, 現地事務員 및 現地雇員으로 구분하고 있다.

当行의 職制에 의하면 本部에는 部에 部長, 室에 室長을 두어 部署長으로 하고 部署長을 補佐하며 部署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대행할 수 있도록 部 또는 室에 次長을 두고 있다. 課가 있는 部署에 대하여는 課長을 두어 그 課의 所管業務를 統轄하고 所屬職員을 指揮하도록 하고 있으며 部長, 室長 또는 課長の 有故時에 그 職務를 代行케 하기 위하여 部長代理, 室長代理 및 課長代理를 두고 있다. 그러나 当行은 이와 같은 系線組職(line position)外에 役制度(staff system)를 導入하여 任員附屬室에 秘書役, 審査1部 및 審査2부와 金融部に 審査役, 海外投資調査부와 法規室에 調査役, 監事室에 檢査役을 두고 있으며, 其他 필요한 部署에 調査役, 管理役, 技術役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国外事務所 및 釜山出張所는 各 事務所長 및 出張所長을 두어 所管業務를 統轄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하도록 하고 있으며, 次長 및 所長代理를 두어 事務所 또는 出張所の 業務를 分掌하고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の 有故時에는 分掌

業務에 관하여 그 職務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本部 各部署의 部署長은 1級 또는 2級の 本国職員으로 補하며, 次長은 2級 또는 3級の 本国職員을 任命하고 있다. 国外事務所長은 그 重要度에 따라 任命할 수 있는 幅을 넓히기 위하여 3級이상의 本国職員으로 補하도록 하고 있다. 課長은 3級の 本国職員으로 하며 秘書役, 審査役, 技術役, 部長代理, 室長代理, 所長代理는 2級 내지 4級, 調査役, 檢査役, 管理役은 1級 내지 4級인 本国職員 또는 現在責任者로 補하고 課長代理는 4級の 本国職員으로 任命하고 있다.

第四章 韓國輸出入銀行의 業務

第1節 概 觀

第2節 資金의 供給

第3節 資金의 調達

第4節 調査 및 法規業務

第5節 輸出保險 業務

第四章 韓國輸出入銀行의 業務

第1節 概 觀

1. 主要業務內容

가. 當行業務概觀

當行은 當行法에 明示된 바와같이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등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の 圓滑한 促進을 圖謀하고자 設立되었다.

當行은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業務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業務內容은 性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當行의 業務는 다른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業務로서 中長期的 性格을 가진 對外 商業去來 또는 準商業去來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같은 業務로서는 ① 資本財등 重化學工業製品의 延拓輸出과 輸出目的物의 生産期間 및 建設工事期間이 長期인 對外去來의 支援을 위한 輸出資金貸出, ② 國內技術用役의 輸出促進을 위한 技術提供資金貸出, ③ 우리나라 製品의 輸入이나 技術의 導入을 촉진하기 위하여 外國政府, 外國金融機關, 外國人에

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購買者信用方式의 直接貸出 및 轉貸借款, ④ 重要物資의 輸入을 위한 輸入資金貸出, ⑤ 海外事業의 設備 및 運轉資金 支援을 위한 海外事業資金貸出, ⑥ 重要物資 또는 主要資源의 確保와 海外市場開拓을 위한 海外投資資金貸出, ⑦ 外國法人에의 出資資金支援을 위한 外國政府등에 대한 出資資金貸出 및 ⑧ 外國政府 등에 대한 對韓決濟資金貸出이 있다.

둘째, 當行 與信에 대한 償還의 確實性 有無에서의 免責이나 貸出期間의 特例適用 및 貸出限度의 制限(法第25條業務의 制限)등의 特殊性에서 보는 바와같이 高度의 政策金融 및 經濟協力的 性格을 띠고 있는 業務(法第18條 ②項業務)로서는 ① 國民경제상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요하는 資源의 開發을 위한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과 ②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과 經濟交流 增進을 위한 對外經濟協力資金貸出이 있다.

셋째, 當行은 上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로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取扱하는 業務가 있다. 즉 ①先受金還給保證業務 ② 契約履行保證業務 및 ③外國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業務가 이에 해당된다.

以上の 業務에 대한 取扱方法을 記載한 規程으로서 業務方法書가 있다. 業務方法書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경우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1981년 5월말 현재 同業務方法書는 第29次의 改正을 보았는데, 이에 따라 當行의 業務運營上에는 많은 發展과 進歩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主要業務의 變遷

當行 設立年度인 1976년에는 貸出取扱科目이 船舶輸出支援중심의 輸出資金貸出과 船舶建造에 의한 船舶備船 및 가봉의 百貨店建設支援을 위한 海外投

資資金貸出의 두종류뿐이었으나 当行 創立 이듬해인 1977년에는 우리나라의 海外進出建設工事의 增加趨勢를 반영하여 技術提供資金貸出이 처음으로 취급되었으며, 또한 海外投資資金支援에 있어서도 山林開發 및 遠洋漁業등 資源開發을 위한 合作投資事業에 대하여 貸出이 이루어졌다.

한편 1979 년부터는,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金融支援業務를 시작하여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과 外國금융기관에 대한 轉貸借款을 최초로 취급하였다. 즉 化學物運搬船 (chemical tanker)의 輸出支援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스톨트 넬슨 그룹」 (Stolt Nielson Group) 이 리베리아에 設立한 現地法人 「스톨트 팔콘」 社 (Stolt Falcon) 등에 대한 81 백만 「달러」의 直接貸出을 3/4 분기중에 승인하였으며, "Banco Israelita de Chile" 등 3개 금융기관에 合計 20 백만 「달러」의 轉貸借款供与를 승인하였다. 当行은 이와같은 業務를 取扱케 됨으로써 外國의 直接借款 및 轉貸借款을 받기만 하던 우리나라가 輸出支援등을 위해 同借款을 供与하게 되었으며 또한 國內輸出会社에 대한 財務構造의 改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同年度에는 수출자금대출의 一環으로 6개월 이상 3년이내의 中短期 수출거래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中短期輸出資金貸出制度를 신설하여 이 業務 취급을 위한 길을 마련하였다.

특히 世界市場에서 各國의 輸出競爭이 격화됨에 따라 当行은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延払輸出資金需要에 대비하고 또한 한정된 当行資金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國內금융기관과의 協調融資制度를 마련, 이를 1980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協調融資制度의 內容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協調金融機關의 融資對象이 輸出資金貸出중 引渡後金融限度額의 20% 해당액으로만 제한되었으나 동년 7월 부터 그 實施對象을 輸出目的物の 製作資金性格을 가진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 그리고 技術提供資金貸出

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引渡後金融에 대한 協調金融機關의 協調融資比率도 20 %에서 30 %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본격적인 協調融資體制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自體調達財源 不足등으로 協調融資가 원활히 실시되지 않게 되자 外國金融機關도 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當行도 對外債務保證業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當行이 協調金融機關의 融資對象分도 併行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1.2.6.).

한편 當行은 貸出業務以外에 附帶業務도 取扱하고 있는바, 그 취급근거는 본래 當行法の 第1次改正 (1974.12.26) 으로 마련되었는바, 1977년 3월에는 先受金還給保證業務에 대하여, 1977년 9월에는 契約履行保證業務에 대하여 각각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앞에서言及한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業務는 1981년 2월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취급하고 있다.

2. 國際金融技法의 導入과 開發

가. 協調融資 (Co-financing) 制度

(1) 協調融資의 概念

協調融資 (Co-financing)란 하나의 「프로젝트」 (project)에 대하여 두개 以上の 融資機關이 資金을 分担하여 支援하는 融資方式을 말한다. 여기에서 協調融資의 意味는 2個以上の 資金源이 融資에 공동으로 참가한다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지 協調融資機關의 国籍이나 所屬등은 問題視되지 않는다. 특히 開放經濟體制下에서는 協調金融機關이 国内機關인가 外國機關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Co-financing”이란 말을 共同融資 또는 協調融資로 解釋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當行은 協調融資라는 用語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 協調融資의 形式

協調融資의 代表的 形式은 平行融資 (parallel financing) 와 合同融資 (joint financing)이다. 合同融資 (joint financing)란 協調金融機關中 하나가 幹事銀行이 되어 當該 「프로젝트」 支援을 위한 資金調達, 「프로젝트」 管理, 資金執行, 事後管理等 全般的인 管理業務를 担当하는 한편 餘他 協調金融機關은 約定한 資金만을 供給하고 위와 같은 管理業務는 幹事銀行에 위임하는 形態의 協調融資를 말한다.

한편, 平行融資 (parallel financing)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부분으로 구분하고 協調金融機關 各者가 該當部門에 소요되는 資金을 支援하며, 協調金融機關은 各己 獨立性を 갖고 各者의 支援分에 대하여 各者가 資金執行 및 管理를 擔當하는 形態의 協調融資를 말한다. 요즈음 平行融資의 一般的인 形態는 借主가 능동적으로 相對協調金融機關을 物色하여 그들중 가장 유리한 條件을 제시하는 相對를 선택하는 이른바 非組織的 平行融資(unorganized parallel financing)가 대부분이다. 協調融資形態에는 위와같은 2가지 代表的인 方式이 있으나 實際 協調融資 실시과정에서 協調金融機關의 參與時期, 參與方法등에 따라 그 形式이 一部 變形되거나 2가지 形式이 복합되어 “channel financing”, “participation financing” 및 “stand-by or umbrella type financing” 등의 여러가지 變形된 協調融資形式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다.

(3) 当行의 協調融資制度의 導入背景

当行의 立場에서 볼때 協調融資는 아래와 같은 主要 理由에서 그 必要性이 認定되고 있다.

① 延払輸出支援을 위해 長期低利資金을 供与하는데서 오는 国民經濟의 犠牲을 一部 外国에 轉嫁 (海外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時)

② 当行의 한정된 資金으로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支援

③ 国内金融機關이 協調融資에 참여하는 경우 當該国内金融機關의 對外 借入能力을 提高시키고 또한 先進國의 輸出信用供與機關들이 실시하고 있는 商業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制度를 우리나라에도 導入・定着시키게 됨.

특히 어떤 輸出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輸出用原資材를 外國의 輸出信用供與機關이 제공하는 長期低利信用으로 借入하는 경우, 国民經濟가 負擔할 犠牲을 外國에 轉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輸出用原資材의 長期低利延拂輸入은 積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必要性에 따라 当行이 協調融資制度를 導入코자한 背景 내지 沿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년 7월 当行 創立 이래 1979년까지는 当行 資金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協調融資의 必要性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또한 国内金融機關이나 外國金融機關이 当行 支援「프로젝트」의 所要資金 가운데 借主社의 自己資金 負擔 該當分에 대하여 資金을 支援한 事例는 있었으나 이와같은 形態의 協調融資는 모두 非組織的 平行融資 (unorganized parallel financing) 形態이며 실제로 当行이 主導하여 協調融資로서 추진한 例는 없었다. 따라서 1980년도 이전에 当行의 主導없이 借主社에 의해 이루어진 協調融資는 当行의 資金調達이라는 側面보다는 장래의 必要性에 대비한 知識蓄積과 協調融資를 통한 先進金融技法의

습득이라는 側面에 오히려 중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当行内에서 協調融資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은 美国의 金融用 役会社인 「컨스·인터내셔널」(Kearns International)社에 當行 業務全般에 대한 調査를 의뢰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同 調査報告書에서는 協調融資의 形式에 대한 간단한 說明이 있었을 뿐 細部 実務内容에 대한 구체적인 言及이 없었다. 그후 当行은 職員의 海外研修를 통하여 亜細亞開發銀行(ADB)등 국제개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協調融資方式과 美国輸出入銀行 및 一般 상업은행들이 취급하는 協調融資方式의 理論 및 実務에 대하여 調査한 바 있다. 이와같이 協調融資制度의 導入을 위한 事前調査研究 以後 当行이 協調融資의 具體적인 実施方案에 대하여 本格的으로 研究하여 同制度를 마련하게 된 契機는 1979년 9월 3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当行의 長期資金調達上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当行이 国内 外国換銀行과 協調融資를 실시토록 하는 방침을 결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4) 国内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

当行의 協調融資實施에 관하여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当行은 1980년 2월 26일 協調融資取扱規程을 制定하였는데, 그 主要内容은 引渡後金融에 있어 所要資金의 80%를 当行이 支援하고 나머지 20%를 韓國 外国換銀行, 5개市中銀行 또는 外国銀行 国内支店이 「LIBOR+spread」의 利率로 協調融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協調金融機關의 立場이 各기 다르고 当行과의 協調融資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여 이러한 協調融資制度 마련후의 初期부터 그 實施上에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즉 市中銀行의 경우에는 當行과의 協調融資 取扱分도 国内民間與信限度에 포함됨으로써 이는 自體固有의 業務를 위한 融資限度를 잠식한다는 理由때문에 協調融資를 기

피하였고, 한편 外国銀行 国内支店の 경우는 当行과의 協調融資에 대한 그들의 認識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協調融資을 위한 基本協定 締結에 대하여 本店의 承認을 받는 데 相当時間이 소요되어 初期의 協調融資実績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와같은 事情을 勸案하여, 한편 1980 원 6 월 13 일 경제기획원에서 關聯機關 参与下에 열린 輸出入銀行 融資財源 調達方案 會議에서 결정된 基本方針에 따라 当行의 協調融資取扱規程이 1980 년 7 월 11 일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

① 종전에는 引渡後金融에만 적용하던 協調融資를 引渡前金融에도 拡大・適用하여 当行은 引渡前金融의 元貨所要資金을 支援하고, 協調金融機關은 外貨所要資金을 支援함.

② 引渡後金融에 대한 協調融資取扱金融機關의 融資比率을 종전의 20 %에서 30 %로 引上함. 따라서 当行의 融資比率은 종전의 80 %에서 70 %로 引下됨.

③ 当行과의 協調融資에 參加할 수 있는 協調金融機關에 国内 綜合金融会社를 포함시킴.

④ 原資材 延払輸入을 위한 海外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貸出은 当行 및 外国換銀行이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함.

以上과 같이 協調融資制度가 變更된 以後에는 当行과의 協調融資에 새로이 參加할 수 있는 機關이 된 綜合金融会社들의 協調融資에 대한 参与活動이 활발하여졌고, 또한 外国銀行国内支店들도 점차 当行과의 協調融資에서의 商業性을 認識하게 되어 積極性을 띠고 있으나, 市中銀行들은 아직도 国内与信限度 問題등으로 当行과의 協調融資에 소극적이며 지금까지 参与한 実績이 없다. 1980 년 12 월말 현재 当行과 協調融資基本協定을 締結한 機關은 總 13 個로서 綜合金融会社 7 個, 外国銀行国内支店 6 個이며, 한편 協調融資가 확정된 去來는 5 件으로서 協調金融機關의 融資金額은 引渡前金融 43.9 백만「달러」, 引渡後金融 23.4

백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財務部の “中長期外貨資金融資取扱指針”에 의거 国内金融機關이 活用할 수 있는 外貨資金融資限度가 1980년 5억「달러」에서 1981년에는 10억「달러」로 増額되었으며 특히 外国銀行 国内支店들이 營業活動의 拡大를 위해서 積極参与함에 따라, 1981년에 들어와 활기를 띠어 5월말 현재 当行과 協調融資에 관한 基本協定締結機關은 23個機關에 달하고 있다.

나. 海外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導入

1980년 7월 11일 協調融資制度의 変更으로 輸出用 原資材의 延払輸入을 위한 資金이 海外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경우에는 當行의 所定融資比率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當行은 輸出用 原資材輸入을 위한 資金을 海外로부터 調達하기 위하여 덴마크의 Den Danske Bank, 스웨덴의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 Östgöta Banken, 노르웨이의 Eksportfinans 와 各各 原資材延払輸入을 위한 轉貸借款導入契約을 締結하였다. 따라서 当行支援을 받는 延払輸出去來를 위한 輸出用 原資材를 当該 轉貸借款導入国으로부터 輸入하는 경우에는 同資金을 使用케 되고, 当行은 이를 延払로 償還함으로써 이는 一覽払輸入과 對比할 때 國際収支에 寄与하게 되며, 한편 當行 資金調達도 拡大하는 效果를 주게 된다. 위 借款의 內容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1)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 Östgöta Banken의 轉貸借款

- ① 借款導入契約締結日 : 1980. 8. 20
- ② 借款金額 : 18.1 백만「달러」
- ③ 融資比率 : 輸入額の 85 %
- ④ 融資期間 : 5年

⑤ 實質借入金利 : 年 8.65 %

⑥ 償還方法 : 年 2 回 均等分割償還

⑦ 資金用途 : 대우조선공업 (주) 이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케미컬·탱커」
(chemical tanker) 4 척의 建造用 外資材輸入

(2) Den Danske Bank 의 轉貸借款

① 借款導入契約締結日 : 1980. 9. 30

② 借款金額 : 3 백만 「달러」

③ 融資比率 : 輸入額의 85 %

④ 融資期間 : 5 年

⑤ 實質借入金利 : 年 8.85 %

⑥ 償還方法 : 年 2 回 均等分割償還

⑦ 資金用途 : 대우조선공업 (주) 이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케미컬·탱커」
(chemical tanker) 4 척의 建造用 外資材 및 用役輸入

(3) Eksportfinans 의 轉貸借款

① 借款導入契約締結日 : 1980. 12. 15

② 借款金額 : Nkr 2 億 相當의 「달러」

③ 融資比率 : 輸入額의 85 %

④ 融資期間 : 3 ~ 10 年

⑤ 實質借入金利 : 年 9.39 %

⑥ 償還方法 : 年 2 回 均等分割償還

⑦ 資金用途 : 대우조선중공업 (주) 이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케미컬·탱커」
(chemical tanker) 4 척의 建造用 外資材 및 用役輸入.

※ 상기 3 件은 1980 年말현재 契約締結分の 명세인바 1981 年 2 月 6 日
Skandi naviska Enskilda Banken 과 2 次로 20 백만 「달러」의 轉貸
借款契約을 締結함.

위와 같은 輸出用原資材의 長期低利 延払輸入은 우리나라의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볼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當行이 推進해온 海外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의 變形된 한 形態로서도 成功的인 事例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條件의 原資材輸入을 위한 轉貸借款 導入이 우리나라 輸出用原資材의 大部分을 輸入하고 있는 日本 등지로 拡散된다면, 이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國益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融資技法의 開發

(1) 貸出審査書類 作成方法의 體系化

當行 設立初期의 貸出審査書類는 定形화된 樣式이 없이 去來概要, 取扱根拠規程, 貸出金額 算出根據, 輸出效果, 債權保全方法等에 대하여 一般 短期輸出金融의 審査書類와 類似하게 간략히 記述하였으며 檢討項目에 대한 統一的인 基準이 없었다. 이에 따라 與信關係委員會에 提出될 附議案의 作成方法을 統一하기 위한 “與信關係 運營委 및 融審委 附議案 作成要領”을 마련하여 1977년 9월 7일 銀行長決裁를 받아 시행하였는바, 同內容은 附議案의 表紙, 議決注文, 議決內容만을 樣式化하고 나머지 事項은 「체크·리스트」形式으로 項目만을 나열한 것이었다.

한편 貸出申請業體로부터 징구하는 貸出承認申請書類도 作成樣式이 統一되어 있지 않아서 業體의 資料作成에 時間과 努力의 浪費가 많았을 뿐 아니라 審査를 하는 當行의 立場에서도 審査의 遲延과 努力의 浪費가 많았다. 이에 輸出資金, 技術提供資金 및 輸出資金에 수반된 海外投資資金의 貸出承認申請時에 사용되는 “貸出承認申請 具備書類 樣式”이 1979년 7월 9일 銀行長決裁를 받아 실시되어 왔으며, 이어서 1979년 10월 11일에는 “直接貸出承認申請 具備書類”의

樣式, 1979년 10월 19일에는 “海外投資 및 海外事業資金用 貸出承認申請 具備書類” 樣式이 또한 制定됨으로써 業體의 貸出承認申請書類가 통일되었다.

한편 1977년 9월 7일부터 실시되어 온 “與信關係 運營委 및 融審委 附議案 作成要領”은 附議案의 表紙, 議決注文, 議決內容만을 樣式化하고 나머지는 審査役任意로 作成하는 実情이어서 역시 時間과 努力의 浪費가 많았는데, 이에 審査書類의 全項目을 標準化하는 作業을 推進하여 1979년 11월 30일 “與信關係附議案 作成要領”이 銀行長決裁로 確定되었다. 위의 與信關係 附議案 作成要領은 各種 與信關係附議案의 樣式과 作成要領을 자세히 구분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이의 制定으로 當行의 모든 與信關係附議案 作成은 統一된 形式과 一貫된 體制를 갖추게 됨으로써 同業務遂行에 効率化를 기하게 되었다.

(2) 「프로젝트」의 妥當性 檢討技法의 深化

當行이 設立初期에 支援한 「프로젝트」는 供給者信用으로서 船舶에 대한것이 全體資金支援去來의 約 80% 이상으로서 大部分을 차지하였고 其他 鐵道車輛 및 單純機械類 輸出支援去來가 일부 있었는데, 輸出代錢回収에 대비한 支給保證書を 徵求하고 融資를 取扱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事業性 檢討나 輸入者의 財務狀態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1978년 現代洋行(株)의 對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Gizan) 「시멘트 플랜트」輸出 및 大宇實業(株)의 對 수단 「타이어 플랜트」輸出, 1979년 東洋化學(株)의 對 필리핀 白「시멘트」공장건설 延払輸出 등 「플랜트」輸出的 貸出審査와 더불어 國內業體의 輸出品 製作履行能力, 自己資金 調達能力, 信用狀態에 대한 檢討 및 現地の 事業性 檢討와 관련하여 工場立地條件, 原料調達, 現地 外資導入法, 外國人投資奨励法, 製品의 市場性, 現地事業의 長期收益性 分析 및 現金흐름 分析에 의한 借入金 償還能力分析 등의 項目이 檢討됨으로써 當래의 單純 船積·引渡로 끝나

는 형태의 審査時보다 貸出審査技法面에서 發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當行 職員을 國際金融機關이나 外國의 延拓輸出支援機關에 계속 研修派遣하여 上記項目들에 대한 實務分析能力을 提高시켰고, 한편 일반적으로 先進國 開發金融機關의 貸出審査時에 檢討되고 있는 財務的 內部收益率(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FIRr) 및 經濟的 內部收益率(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의 分析에 대하여도 國內外에 研修를 통해 이를 습득하여 活用하기에 이르렀다.

즉 1981년도에는 當行 資金에 대한 需要가 急増됨으로써 當行의 資金事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選別支援의 必要性이 甚大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에는 각 「프로젝트」의 支援必要性 및 輸出效果를 서술형식으로 強調하던 方式에서 탈피하여 個個의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經濟에 대한 寄与度側面에서 客觀的인 하나의 計數的尺度로서 側定할 수 있는 方案의 提示가 要求되었으며 同 方法의 하나로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經濟的 內部收益率(EIRR) 分析方法이 採択되게 되었다. 當行 支援 「프로젝트」의 選別支援을 위한 經濟的 內部收益率은 종래 國際開發金融機關이나 輸出信用供与政策機關 등이 輸入者側의 當該國 立場에서 分析하고 있는 經濟的 內部收益率과는 그 性格이 다르다. 즉 當行이 分析하는 經濟的 內部收益率은 우리나라 企業의 輸出去來에 대한 資金支援이 우리나라 經濟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全體로서의 資金의 效率的인 活用 내지 使用이란 面에서 그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當行의 貸出審査技法은 심사서류의 標準化 및 審査項目의 細分化, 先進國金融機關의 貸出審査技法의 導入등으로 創立後 5년이 지난 1980년도를 끝내면서 外形上 어느정도 國際水準에 到達한 것으로 보이며, 1981년도부터는 各審査項目

에 대한 깊이 있는 分析方法을 모색하여 內実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情報蒐集體制의 補充과 蒐集된 情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情報管理「시스템」의 마련이 緊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새로운 融資制度의 導入

當行의 業務方法書에 의하면 11種의 各種貸出을 取扱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當行 設立年度인 1976년에는 輸出資金貸出 및 海外投資資金貸出만이 실제로 取扱되었으며, 1977 및 1978년에는 技術提供資金貸出이 追加로 取扱되었고, 1979년에는 실제취급업무가 더욱 擴大되어 轉貸借款 및 直接貸出과 같은 購買者信用을 取扱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도에도 輸出資金貸出 및 技術提供資金貸出에 있어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制度가 導入되었고, 한편 輸出用原資材의 長期低利 延払輸入을 위한 海外金融機關과의 轉貸借款 導入契約이 締結되어 실시되는 등 設立歷史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融資制度가 계속 導入 실시되어 資金供給 및 調達面에서 多様性を 갖게 되었다. 특히 轉貸借款 및 直接貸出의 供与는 當行이 새로이 실시하는 業務領域으로서 종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資金을 受惠만하던 立場에서 外國人에 대하여 直接 金融을 供与하는 立場으로 轉換됨에 따른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었으며 새로운 觀點에서 融資技法의 開發效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國內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는 商業金融機關이 延払輸出資金의 一部를 分担支援하고 있는 國際金融의 現實에 비추어 進一步한 金融技法으로 評價될 수 있다. 또 하나의 特記할 事項으로는 輸出用原資材의 長期低利 延払輸入을 위한 轉貸借款 導入을 들 수 있는데 一種의 協調融資로서의 目的을 達成한 하나의 事例로서 우리의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볼때도 가장 소망스런 金融形式으로 評價된다. 1980년말현재 11種의 貸出業務中 輸出資金貸出, 技術提供資金貸出, 海外投資

資金貸出, 外国政府 또는 外国人에 대한 貸出(直接貸出 및 轉貸借款) 및 債務保證 등 5種의 貸出이 실제로 取扱된 바 있으며 1981년 4월 27일부터는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與件을 反映하여 資源의 開發輸入을 促進키 위하여 主要資源開發支援資金貸出을 취급키로 하였으나 아직도 나머지 5種의 貸出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인 바, 향후 우리나라의 經濟가 質的·量的인 面에서 더욱 發展하고 當行의 融資財源이 擴充되는 대로 앞으로는 나머지 貸出業務도 段階的으로 실시하게 되어 中長期信用供與機關으로서의 名실상부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 延拂어음의 賣却

延払輸出에 대한 長期低利의 金融支援을 主業務로 하고 있는 當行으로서에는 이에 필요한 財源을 全額 資本金出資등의 財政資金이나, 國民投資基金借入金, 韓國銀行受託金등 政策資金으로 造成함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財政 및 金融財源의 制約으로 이와같은 方法에만 依存함은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운 實情이다. 한편, 每年 重化學製品의 輸出이 증대되어가고 있고 특히 船舶의 경우 延払輸出이 크게 伸張됨에 따라 制限된 國內資金만으로는 延払輸出支援에 필요한 資金需要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國際金融市場을 통한 海外資金調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當行이 海外資金調達方法으로 가장 처음 착안한 것은 中長期延払輸出金融을 취급하는 當行의 特殊性을 살려 當行이 担保條로 保有하고 있는 延拂어음을 賣却하는 것이었다.

延拂어음의 賣却이란, 當行이 借主社에 대한 貸出의 担保로서 징구하여 當行이 保有하고 있는 延拂어음(延払輸出代金の 担保條의 어음)을 國際金融市場에 賣却処分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거 當行은 金融支援에 필요한 資金을 직접 調達할 수 있다.

延払어음의 売却方式에는 어음의 元利金을 現価로 換算하여, 그 代錢을 一時에 支給받는 이른바 “forfaiting” 이라고 하는 割引賣却方式이 있고 또한 売却時 어음의 額面金額을 受取한 후 当該어음기일마다 어음売却契約当事者간에 約定된 延払어음상의 이자와 어음売却契約상의 이자와의 差額을 精算하는 額面売却方式의 두가지 形態가 있다.

그런데 當行이 보유하고 있는 延払어음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當行의 債權이 아니라, 形式上으로 借主社의 輸入者에 대한 債權이므로, 同어음을 할인매각하여 그 代錢으로 관련대출금을 相計回收하는 경우에 割引率이 높게되어 어음割引代錢이 관련대출금보다도 적게 되면 借主社は 未償還貸出金이 되는 同不足額을 當行에 追加支給해야하는 問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같은 問題點을 고려하여, 當行은 割引売却이 아닌 額面売却方式을 採択하여 1977년 “Scandinavian Bank Ltd., London” 및 “Dillon, Read Overseas Corp., London” 등 數個의 優수한 국제금융기관과 當行이 保有하고 있던 延払어음의 売却교섭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7년 6월, 當行은 「신디케이트」(syndicate)를 구성한 “Scandinavian Bank Ltd., London”을 포함한 11個의 국제금융기관과 총액 158백만「달러」에 달하는 延払어음을 遡求權行使不能條件 (without recourse)으로 売却하기 위한 契約을 체결한바 있다.

同契約의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 契約金額: 158백만「달러」
- 實際受領売却金額: 149백만「달러」
- 買入銀行: Scandivian Bank Ltd., London을 포함한 11개 國際金融機關
- 利率: 연 LIBOR + $1\frac{1}{8}\%$ ~ $1\frac{1}{4}\%$
- 償還期間: 7 ~ 8년
- 手数料: Management fee $\frac{3}{4}\%$, Disbursement fee $\frac{1}{8}\%$,
Commitment fee 연 $\frac{1}{2}\%$

◦ 延払어음關聯輸出者 ; 現代造船重工業(株) 및 大韓造船公社

◦ 關聯輸出品目 ; 船舶 21 隻

当行은 上記契約에 따라 1977 ~ 78 년에 걸쳐 總 149 백만「달러」에 달하는 長期外貨資金을 조달하여 貸出財源으로 사용하였는바, 同延払어음売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外貨調達方式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면에서 그 意義를 찾아볼 수 있다.

즉, 当行으로서의 財源調達の 多樣化를 이루었음은 물론, 關聯貸出金の 早期回收로 資金의 回轉率을 提高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當時에 元貨로 表示된 關聯貸出金이 早期相計回收됨으로써 当行은 換「리스크」로 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同延払어음売却은 보다 유리한 條件의 中長期外貨資金調達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즉 「신디케이트」銀行借款 (Syndicate Bank Loan) 과 같은 일반적인 長期資金調達は 支給保証이 없는 순수한 信用에 의한 借入인데 비하여, 延払어음売却은 世界 一流銀行의 支給保証이 있는 優良어음을 담보로한 借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一般的인 銀行借款에서 적용되는 「스프레드」(spread) 보다는 낮은 수준의 加算金利가 적용된다. 또한 当行은 準政府機關이라는 점이 감안되어 당사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契約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는데, 그것은 실제로 같은 시기 (1977 년 6 월)에 우리나라의 他金融機關이 海外銀行으로부터 導入한 借款의 加算金利水準($1\frac{3}{4}\%$)보다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延払어음売却은 關聯輸出業者側으로서도 여러가지 利点이 있었는데, 우선 關聯貸出金の 償還으로 負債가 감소됨에 따라 財務構造가 改善됨으로써, 對外競爭力이 強化되었고 新規借入能力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借主社인 現代重工業(株)은 향후 7 ~ 8 년에 걸쳐 回收하게 될 自己資金負擔分까지도 일시에 現金化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大韓

造船公社의 경우에는 延払어음의 表示通貨가 「스웨덴·크로네」인 것을 売却當時의 換率에 의거 美「달러」貨로 換算하여 売却하였는바, 同어음의 買入銀行에 대한 當行의 債務가 美「달러」貨表示인 반면 大韓造船公社에 대한 當行의 관련대출금은 「스웨덴·크로네」表示로 되어있어 만일 어음売却代錢으로 關聯貸出金을 相計하게되면 「스웨덴·크로네」와 美「달러」貨 사이에 발생하는 換「리스크」를 當行이 부담하게되므로 어음売却代錢으로 關聯貸出金을 相計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第2節 資金의 供給

1. 概 觀

가. 當行金融의 特性和 原則

當行資金의 支援對象輸出去來는 주로 重工業製品의 수출인 바, 이와같은 去來는 일반적으로 去來金額이 巨額이고, 한편 製造期間과 代金決濟期間이 長期임에 따라 資金의 懷妊期間도 長期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거래의 受注를 위한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는 長期低利의 金融支援이 불가피한데 一般商業金融機關은 이러한 資金需要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性格上 또는 資金의 量的面에서 限界가 있고 收支面에서도 문제점이 따른다. 또한 이와같은 延払輸出去來의 輸出相對國은 대부분 後發開發途上國이므로 政情不安 및 外換不足등에 따른 對外債務償還能力의 불투명에서 오는 危險度가 크기 때문에 순수한 상업「베이스」로 支援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되어 政府主導下의 財政資金으로 支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政策金融에 의한 支援의 必要性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當行의 貸出은 이러한 政策金融의 성격을 갖고 一般商業金融機關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取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援함으로써 民間商業金融을 量的 및 質的으로 補充하면서 延払輸出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등에 필요한 資金을 供與하여 왔다.

한편 當行의 金融은 위와같은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金融上の 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一般金融機關과 業務上 競争을 할 수 없으며

둘째, 貸出金의 償還期間이 6개월이상 10년 이내로서 中長期貸出을 취급하고 있으며

셋째, 事業妥當性を 검토하여 償還이 確實하게 認定되는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는 償還의 確實性を 規定하고 있다.

나. 關聯業界에 대한 弘報 및 指導

當行이 設立・發足된 후 草創期에는 國內의 一部企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當行業務內容을 잘 모르고 있었던 반면에 또한 延払輸出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當行은 능동적으로 業界를 지도하고 當行業務를 弘報할 必要性을 인식하고 1977년 11월 제1회 延払輸出懇談회를 挙行的으로 개최하였는바 여기에는 國內綜合貿易商社 및 當行 主要去來企業體 및 主要重化學製品製造会社와 大韓貿易振興公社 등 經濟團體들이 참석하여 當行 金融制度에 대한 解説과 당면한 國內外經濟与件에 대비한 輸出振興方案등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와같은 懇談회 개최결과 좋은 成果를 거두어 그 후에도 두차례의 延払輸出懇談회를 개

최하였으며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업체지도를 위하여 수차례의 商社別 招請懇談會도 가졌다.

한편 当行資金의 利用案内를 위하여 当行職員이 關聯團體 및 企業體에 出張하여 当行 業務에 관한 강연도 수차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내업체로부터의 대출상담이 증가되었고 当行資金에 대한 需要도 해를 거듭할수록 增大되어 왔는바, 현재는 오히려 延払輸出資金의 需要急増으로 不足되는 当行財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選別支援과 資金調達의 多様化등 措置가 필요하게끔 되었다.

다. 資金支援實績 推移

当行의 資金支援規模는 輸出資金貸出이 主宗을 이루면서 매년 상당한 増加추세를 보여왔다. <表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当行의 貸出承認實績은 1977년의 1,342 억원에서 1979년에는 무려 4,443 억원으로 2年間 3.3 배나 増加되었고 1980년에는 調達資金規模를 고려 選別支援됨으로써 前年보다 감소된 2,596 억원의 規模를 記錄하였다. 1980 년도의 경우 總貸出承認實績 가운데 96.7%가 輸出資金貸出이며, 특히 이 가운데 船舶輸出支援을 위한 貸出은 当行 總貸出承認額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船舶輸出 支援金融 比重이 높은 것은 그간 沈滯되었던 國際造船景氣가 1979년 이후 回復局面을 맞게되자 延払条件에 의한 輸出船舶의 受注가 活氣를 띠게되어 当行의 延払輸出資金利用度가 높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輸出品중에서 重化学工業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表Ⅳ-2>에서 보는 바와같이 毎年 上昇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와같은 重工業製品의 輸出을 支援해 주는 当行의 役割도 더욱 막중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当

〈表Ⅳ-1〉

資 金 支 援 實 績

(단위: 백만원)

區 分	1976		1977		1978		1979		1980		果 計	
	承認	執行	承認	執行	承認	執行	承認	執行	承認	執行	承認	執行
輸 出 資 金	5,769	33,719	105,561	73,479	119,792	105,091	371,139	126,596	251,087	272,001	853,348	610,886
技術提供資金	-	-	9,621	6,990	3,786	6,012	-	404	230	171	13,637	13,577
海外投資資金	5,319	3,672	18,982	15,561	17,893	16,066	28,187	10,985	1,504	2,058	71,885	48,342
直接貸 出	-	-	-	-	-	-	39,204	19,602	1,541	24,279	40,745	43,881
轉貸借款	-	-	-	-	-	-	5,808	964	5,279	1,702	11,087	2,666
計	11,088	37,391	134,164	96,030	141,471	127,169	444,338	158,551	259,641	300,211	990,702	719,352

1J 當行 創立前 韓國外換銀行에서의 業務代行時 貸出承認된 去來에 대한 資金執行額 포함

行은 1979 년도 부터 直接貸出과 轉貸借款도 取扱하여 1980 년말 현재 각각 407 억원 및 111 억원의 承認実績을 보였다. 한편 当行의 最近資金執行規模의 推移를보면, 1977 년 960 억원, 1978 년 1,272 억원, 1979 년 1,586 억원이며, 특히 1980 년에는 3,002 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 배의 増加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当行의 資金支援業務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量과 質에 있어 급속한 伸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表Ⅳ - 2 >

우리 나라 輸出商品構造 推移

(단위 : 백만 「달러」)

	1976		1977		1978		1979		1980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金額	%
1次商品	942	12.2	1,450	14.4	1,433	11.3	1,657	11.1	1,343	7.7
工產品	6,773	87.8	8,596	85.6	11,278	88.7	13,399	88.9	16,162	92.3
輕工業	4,470	57.9	5,297	52.7	6,811	53.6	7,580	50.3	8,476	48.4
重工業	2,303	29.9	3,299	32.9	4,467	35.1	5,819	38.6	7,686	43.9
計	7,715	100.0	10,046	100.0	12,711	100.0	15,056	100.0	17,505	100.0

資料 : 韓國銀行 年次報告書

2. 輸出資金貸出

가. 特性

当行法 第18条 第1項 1号에서 輸出資金貸出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

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확보 또는 개척에 현저히 기여하는
상품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輸出에 필요한 資金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貸出”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輸出資金貸出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国内輸出業者에 대한 貸出이므로 供給者信用(Supplier
credit)方式에 의한 貸出이다. 이에 따라 借主는 供給者 즉 国内輸出会社가
되지만 貸出金 償還을 위한 財源은 원칙적으로 購買者로부터 受領하는 輸出代錢
이 되기 때문에 信用分析에 있어 国内 借主社는 물론 外國의 物品購買者에 대하
여도 事業計劃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資本財가운데 一定品目만을 그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當行의 輸出資金貸出은 一定한 條件을 갖춘 個個의 輸出事業 내지 輸出
去來를 용자 대상으로 하는 一種의 「프로젝트·론」(project loan)으로서
本件主義를 취하고 있음이 또한 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輸出資金貸
出은 수출목적물의 製作時부터 引渡時까지의 生産 또는 輸出에 所要되는 자금
을 대출하는 引渡前金融과 輸出目的物の 引渡完了後 延払代錢의 回收完了時까지
의 대출인 引渡後金融으로 구분되어 融資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融資實績 推移

輸出資金貸出은 지금까지 當行資金支援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當行 設
立 이후 1980년말까지 貸出承認累計의 약 86%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의 輸出「드라이브」政策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技術水準의 相對的 低位로 인하여 海外進出技術用役事業이
활발치 못한 결과 技術提供資金貸出이 부진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海外投資事業
의 低調, 그리고 主要資源確保를 위한 海外投資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当行의 制限的 運用과 購買者信用 (Buyer Credit) 方式에 의한 与信制度導入의 日淺 및 이와 관련된 去來의 制限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以下 当行設立以後의 輸出資金貸出実績을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品目別 資金支援実績

輸出資金貸出承認実績을 品目別로 살펴보면 <表Ⅳ-3>에 나타난 바와같이 当行設立後 1980년말까지 船舶部門의 總輸出資金貸出에 대한 比率은 80.4%로서 이에 偏重支援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輸出資金 支援対象品目 가운데 船舶輸出去來의 受注実績比重이 餘他品目보다 실제로 컸기 때문이며, 한편 이는 우리나라의 造船工業의 比較優位가 國際市場에서 어느 의미에선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같이 船舶輸出支援金融의 比重이 높은 현상은 日本輸出銀行의 경우에도 設立初期인 1955년~1959년간 船舶에 대한 資金支援의 比重이 平均 72.7%이며 1965년~1973년간에는 58.5%로서 「플랜트」輸出에 대한 金融支援의 比重보다 훨씬 높았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사실, 「플랜트」輸出은 고도의 工業技術과 資本蓄積 및 「엔지니어링」産業등의 発達이 先行要件인 바,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은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에 따라 國際競争上 애로가 많으므로 자연히 重工業가운데 勞動集約的인 要素가 많은 一般船舶의 建造・輸出去來에 대한 支援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는 實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重工業 및 機械工業에서의 技術 및 資本蓄積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生産性이 向上되어 國際競争力이 높아짐에 따라 「플랜트」 및 機械類의 輸出에 대한 当行資金支援比重도 높아질 때에 變化될 것으로 보인다.

<表Ⅳ-3>

品目別輸出資金貸出承認実績

(단위: 백만원)

年度 品目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構成比率%
플 렌 트		-	2	3,345	2	84,182	4	5,348	6	48,148	14	141,023 16.5
船	1	5,515	8	100,865	2	22,946	26	359,648	13	197,106	50	686,080 80.4
鐵道車輛		-		-		-	1	1,747	1	2,570	2	4,317 0.5
機械類・其他	3	254	4	1,351	6	12,664	4	4,396	5	3,263	22	21,928 2.6
合 計	4	5,769	14	105,561	10	119,792	35	371,139	25	251,087	88	853,348 100.0

(2) 融資期間別 資金支援実績

重工業製品은 대개 去來金額이 크고 資本財이므로 注文生産되며 國際市場에서 延払方式으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一覽払方式으로도 輸出이 이루어지는데 특히「플랜트」및 船舶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규모가 크고 製作期間이 보통 1~2년에 달하므로 延払方式이 아닌 一覽払方式에 의한 輸出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一般商業金融機關에서는 그 性格上 資金支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當行의 資金支援이 필요한바, 아래의 <表Ⅳ-4>에서 보는 바와같이 一覽払輸出去來에 대한 當行의 資金支援実績은 當行創立後 1980년 말까지 輸出資金 貸出總額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當行資金需要의 증가에 따른 當行財源의 부족으로 選別 支援키 위하여 “一覽払去來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을 1980년 1월 별도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同指針에 의하면 一般 金融機關의 短期輸出金融으로 지원할 수 없는 償還期間 1年초과의 一覽払의 輸出去來와 「플랜트」輸出거래에 대하여만 當行이 資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地域別 資金支援実績

「플랜트」및 機械類등의 資本財輸入국은 대부분 開發途上国들이므로 資本財輸出을 지원하는 輸出資金은 주로 이들 국가가 많이 속해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中南美地域에 많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Ⅳ-5>에서 보는 바와같이 當行 創立以後 1980년 말까지 輸出資金貸出承認額은 유럽지역에 대한 것이 큰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同地域에 대한 船舶輸出支援実績이 많았던 것에 주로 基因하는데, 이와같은 理由는 원래 海運業은 先進国 특히 유럽地域 國家에서 發達되어 있어 同地域의 海運会社들이 船価가 비교적 低廉한 편이고 양호한 延払條件이 따르는 우리나라의 造船所에 新造船을 많이 発注한 때문인

<表Ⅳ-4>

期 間 別 輸 出 資 金 貸 金 承 認 實 績

(단위:백만원)

年 度 期 間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構成比例
一 覽 拂		-	4	61,818	3	63,340	4	5,767	5	47,922	16	178,847 21.0
3 年 以 下	2	74	3	423	2	174	2	545	3	545	12	1,761 0.2
3年超過5年以下	1	180	1	139	1	290	1	871	3	4,548	7	6,028 0.7
5年超過7年以下		-	3	21,376	1	4,002	3	20,673	2	3,341	9	49,392 5.8
7年超過10年以下	1	5,515	3	21,805	3	51,986	24	337,750	12	194,731	43	611,787 71.7
10 年 超 過		-		-		-	1	5,533		-	1	5,533 0.6
合 計	4	5,769	14	105,561	10	119,792	35	371,139	25	251,087	88	853,348 100.0

〈表Ⅳ-5〉 地域別輸出資金承認実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地 域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構成比%	
유 럽	1	5,515	4	28,438	1	488	11	185,298	2	4,749	19	224,488	26.3
북 미							4	44,609	6	111,832	10	156,441	18.3
중 남 미			2	9,717	2	4,004	1	39,596	1	35,862	6	89,179	10.5
동 남 아	3	254	5	17,681	1	72	13	90,460	11	43,453	33	151,920	17.8
중 동			1	928	2	62,852	3	3,128	3	51,506	9	118,414	13.9
아프리카			2	48,797	4	52,376	2	3,496	0		8	104,669	12.3
태 양 주							1	4,552	2	3,685	3	8,237	0.9
합 계	4	5,769	14	105,561	10	119,792	35	371,139	25	251,087	88	853,348	100.0

것으로 풀이된다.

다. 船舶 및 「플랜트」輸出 支援金融

최근 3개년(1978~1980년)간의 當行 總輸出資金貸出 承認実績(累計, 420 억원)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船舶輸出 支援金融(承認額 5,797 억원)으로서 이는 동 3년간 輸出資金貸出의 78.1%를 占有하고 있다. 그 다음은 「플랜트」輸出 支援金融(承認額 1,377 억원)으로서, 船舶輸出 支援金融과는 그 金額比重에 있어 큰 隔差를 보이고는 있으나 同期間中 總輸出資金貸出承認額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船舶輸出과 「플랜트」輸出은 當行 創立以來부터 輸出資金貸出의 主要 支援對象이 되어 왔음을 감안하여 以下 우리나라 全體의 船舶 및 「플랜트」의 輸出推移와 當行이 金融支援한 主要「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船舶輸出

(가) 우리나라의 船舶輸出推移

우리나라의 造船工業은 第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1967~1971년)中 政府의 重化學工業育成政策과 1970년대 초반의 世界 造船市場의 大好況에 따라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造船施設能力은 1973년까지만해도 불과 250 천 G/T로 미미한 상태에 있었으나, 現代造船所의 竣工을 契機로 급격히 늘어나 1975년에는 2,390 천 G/T가 되었고 1980년말에는 2,800 천 G/T로 확장되었다. 한편 1981년 하반기에 竣工豫定인 大宇造船所가 完工되면 總施設能力은 4,000 천 G/T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主要 大型・中型造船所는 원래 内需보다는 輸出을 위주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 一部는 世界 造船不況期에 들어설 때 建設되었기 때문에 과거 數年間 新造船의 受注量 減少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하였으나, 1979년 하반기 이후에는 新造船의 受注增加에 힘입어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年度別 船舶輸出実績 推移는 <表Ⅳ-6>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3년에는 5隻, 1,635 G/T로 미미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現代造船所의 1次工事が 完工된 해인 1974년에는 21隻, 201,832 G/T로 그実績이 急上昇되었다. 또한 1974년 이후 世界 造船不況에도 불구하고「톤」數 基準으로 볼 때 1975년부터 輸出実績은 완만한 增加勢를 나타내어 1978년에는 617,525 G/T에 달하였으나, 受注殘量の 減少에 따라 1979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한 304,107 G/T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하반기부터 受注実績이 증가함과 동시에 1980년에는 전년보다 輸出도 증가하여 464,449 G/T를 기록했으며, 1981년에는 1979년 및 80년의 受注增加에 힘입어 輸出船 建造実績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Ⅳ-6> 우리나라의 新造船 輸出実績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隻	5	21	13	53	108	68	56	27
G/T	1,635	201,832	416,003	551,294	553,660	617,525	304,107	464,449
백만달러	2.0	73.5	137.3	298.1	472.4	543.9	411.2	440.5

資料: 商工部

한편 船舶輸出이 우리나라의 總輸出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보면 <表Ⅳ

- 7 > 와 같다. 즉 1973 년 우리나라의 總輸出額 (3,225 백만「달러」) 에 대한 船舶輸出 (2 백만「달러」) 比重은 0.1 % 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상태 이었으나 1974 년부터 船舶輸出額은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바 1977 년에는 船舶輸出額이 472 백만「달러」로 급증되어 그 比重도 4.7 % 로 증가되었다. 1979 년 및 1980 년에는 1977 ~ 78 년간 受注減少등으로 各各 그 輸出実績이 411 억「달러」 및 440 억「달러」水準을 유지하였으나 總輸出의 증가로 그 比重은 各各 2.7 % 및 2.4 % 로 下落되었다. 그러나 1979 ~ 80 년에 受注殘量이 증가되어 1981 년에는 전년보다 船舶輸出実績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船舶輸出은 현재 우리나라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을 主導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數年間은 그와같은 現象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表 IV - 7 >

總輸出에 대한 船舶輸出 比重

(단위 : 백만「달러」)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總輸出 ①	3,225	4,460	5,081	7,715	10,046	12,710	15,055	17,987
船舶輸出 ②	2.0	73.5	137.3	298.1	472.4	543.9	411.2	440.5
② / ① (%)	0.1	1.6	2.7	3.8	4.7	4.3	2.7	2.4

또한 우리나라 造船工業의 世界造船市場에서의 차지하는 位置를 보면, 1980 년말 현재의 新造船 受注殘量 및 동년도중의 受注量 基準으로 우리나라는 世界 第2位國이며, 한편 동년도의 建造実績으로도 世界 第4位의 造船國으로 浮上했음을 最近의 Lloyd 統計가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世界造船 1位國인 日本과 우리나라는 技術面을 제외한量

<表Ⅳ - 8 >

船種別，当行融資承

	1976			1977			1978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貨 物 船	1	7.7	11,395	18	223.5	146,164	8	52	39,424
油 槽 船				1	18.5	2,549			
散 物 船				2	33.8	17,567	1	17.9	8,052
精 油 運 搬 船									
化 学 物 運 搬 船									
O B O 船									
高 速 艇 等				4	1.1	40,491			
漁 船									
試 錐 船									
콘 테 이 너 船									
改 造 船				1	56	2,376	3	119.9	6,970
其 他									
合 計	1	7.7	11,395	26	332.9	209,157	8	168.8	53,656

認 実 績 (1976.7 ~ 1981.4)

(단위 : 천「달러」)

1979			1980			1981			計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隻数	천 G/T	貸 出 承認額	%
2	16	11,431							25	299.2	208,414	13.5
8	273.3	139,181							9	291.8	141,730	9.2
11	504	240,617	8	504.8	171,402	4	248.4	73,460	26	1,308.9	511,108	33.0
4	97	70,281	4	34.5	22,451	5	135.5	58,178	13	267	150,910	9.8
4	69.2	108,950							4	69.2	108,950	7.0
4	178.8	117,544				3	228	75,780	7	406.8	193,324	12.5
4	7.8	36,093				2	3.9	16,883	10	12.8	93,467	6.0
2	0.5	2,008							2	0.5	2,008	0.1
			2	19	62,790				2	19	62,790	4.1
			4	24	23,475				4	24	23,475	1.5
			2	70.8	4,810	6	148.7	28,458	12	395.4	41,824	2.7
2	2.3	9,405							2	2.3	9,405	0.6
41	1,148.9	735,510	20	655.1	284,928	20	764.5	252,759	116	3,096.9	1,547,405	100.0

的인 면에서도 그 隔差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즉, 1980 년의 경우를 볼때 日本은 우리나라의 約 12 倍인 6,094천G/T를 建造한 반면, 우리나라의 実績은 522천G/T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造船工業의 技術水準은 現代造船所の 竣工을 契機로 급속히 向上되어 왔는 바, 이에 따라 <表Ⅳ-8, Ⅳ-9>에서 보는 바와같이 輸出船種이 최근에는 多樣化되었고 輸出對象國도 多邊化되었다. 反面에 아직도 特殊船舶에 대한 設計 및 造船技術에 있어서는 外國에 전적으로 依存하고 있으며, 造船關聯工業도 發展初期段階에 있어 船種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主要機資材의 外資材依存度가 높은바, 이러한 點들은 國產機資材의 品質向上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課題라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低賃金을 바탕으로 한 比較優位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것이므로 造船工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을 감안, 앞으로는 船舶의 設計 및 建造技術水準의 提高와 船舶用機資材의 國產比率提高 및 品質向上으로 海外依存度를 減少시킴과 동시에 新型船開發 및 附加價值가 높은 特殊船舶建造에도 적극 進出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世界的인 造船國이 될 수 있도록 育成·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當行의 船舶輸出 金融支援 狀況

當行 創立以後 1980 년말까지 船舶輸出支援을 위한 貸出承認累計額은 6,860 억원으로서 이는 同期間의 當行의 總貸出承認累計額 9,907 억원에 대한 69.2 %를 차지하며, 한편 總輸出資金貸出承認累計에 대하여는 무려 80.4 %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船舶受注時期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年度別 船舶輸出支援을 위한 貸出承認額이 특히 1979 년에 대폭 급증한 것은 그간 世界造船不

<表Ⅳ-9>

船舶輸出地域別，融資承認実績（1976.7～81.4）

(단위: 천「달러」)

	1976 (7～12)		1977		1978		1979		1980		1981 (1～4)		計
	貸出承認額	%	貸出承認額	%	貸出承認額	%	貸出承認額	%	貸出承認額	%	貸出承認額	%	
노美			2,368	1.1	2,430	4.5	270,270	36.7	3,120	1.1	90,900	36.0	369,106
버뮤다			17,567	8.4			92,169	12.5	106,470	37.4	34,736	13.7	233,375
홍인도									54,348	19.1	55,330	21.9	127,245
스리랑카			40,491	19.4			119,752	16.3	22,904	8.0	28,329	11.2	170,985
아프리카	11,395	100.0					47,524	6.5			16,883	6.6	104,898
아프리카							39,858	5.4					51,253
아프리카			2,549	1.2									2,549
아프리카			20,960	10.0									20,901
아프리카			24,670	11.8					3,231	1.1			27,901
아프리카			100,534	48.1									100,534
아프리카					3,740	7.0							3,740
아프리카					8,062	15.0							8,062
아프리카					39,424	73.5							39,424
아프리카							2,008	0.3					2,008
아프리카							19,751	2.7					19,751
아프리카							9,405	1.3	1,690	0.6			11,095
아프리카							52,963	7.2					52,963
아프리카							81,810	11.1					81,810
아프리카									8,288	2.9			8,288
아프리카									50,470	17.7			50,470
아프리카									10,932	3.8			10,932
아프리카									23,475	8.3			23,475
아프리카											11,072	4.4	11,072
아프리카											5,509	2.2	5,509
아프리카	11,395	100.0	209,157	100.0	53,656	100.0	735,510	100.0	284,928	100.0	252,759	100.0	1,547,406
합													100.0

況에 따른 受注量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主要 造船所들이 1979년 하반기 造船 景氣의 回復勢로 受注增加 기미가 보임에 따라 造船所의 作業量確保를 목적으로 低船價 및 中長期延拂條件등과함께 적극적으로 受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船舶輸出 支援을 위한 當行의 延払輸出資金은 船舶輸出의 國際競争力을 一面 提高시켜 船舶의 輸出増大에 크게 기여했으며 따라서 造船工業의 發展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當行의 輸出船 建造 및 延払輸出支援資金의 融資條件은 世界造船 및 船舶金融市場의 變化에 따라 創立後 여러번 變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第2節 第6項에서 說明되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以下, 當行이 金融支援한 去來 가운데 특징적인 3個의 主要 船舶輸出去來에 대하여 去來推進經緯, 去來條件, 貸出內容, 國民經濟的 意義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現代重工業(株)의 對 나이지리아 國營海運會社에의 多目的貨物船 11隻

輸 出 :

이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가 國策事業의 하나로 추진하는 船舶輸入計劃에 現代造船重工業株式會社(후에 現代重工業株式會社로 商號變更함)가 參與, 船舶을 建造・輸出코자 함에 따라 當行이 資金을 支援한 事業으로서, 輸出契約金額이 138,905천「달러」로 當時로서는 當行이 資金支援한 輸出去來中 가장 큰 大型輸出去來이었고, 또한 이에 대한 當行의 貸出額도 1억「달러」以上이 되었다.

한편 本件 契約締結이 이루어진 1977년을 전후한 연대는, 世界造船市場의 극심한 不況期이었는데도 불구하고 本件輸出去來의 代金決済方式은 유리한 一覽払決済方式이었다는데도 그 特徵이 있다 하겠다.

이 件 輸出去來의 支援을 위한 貸出은 1977년 9월 20일 運營委員會에서

承認되었는데 우선 去來概要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船種은 多目的貨物船(multipurpose cargo vessel)으로 總 11隻이며, 9隻은 12,000 DWT, 2隻은 16,000DWT 級規模이고, 購買者는 政府이나 國營海運会社인 “Nigerian Shipping Line Ltd.”가 代行者로 되었으며, 船舶引渡日字는 契約締結後 약 1년 2개월후인 1978년 10월 31일에 最初船舶을 引渡기로 하고 每 1~2개월간격으로 各 船舶을 1隻씩 引渡하여 最終船舶은 1980년 2월 15일에 引渡하는 條件이었다. 한편 代金決済條件은 船舶引渡時까지 建造工程에 따라 全額決済되는 條件으로 契約締結時에 契約金額의 9.53%, 竜骨配置時 40.47%, 進水時 35.0%, 引渡時 15.0%를 支払하는 유리한 條件이었다. 한편 輸入國인 나이지리아는 本件契約締結當時에는 OPEC 會員國中 第7位産油國, 아프리카에서의 第1位産油國으로서 1974년 이후 世界的인 油價引上에 따른 막대한 石油收入(年間 95억「달러」水準)을 背景으로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해 왔다. 이 件 船舶發注도 社會間接資本의 補充에 力點을 둔 第3次 國家開發 5個年計劃(1975.4~80.3)事業의 一環으로 추진된 事業이었으며, 當時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와는 國交關係가 없었음(北僞와는 1976.5.25 國交樹立, 우리나라와는 그 후인 1980.2.22 國交樹立)에도 對外的으로 非同盟 中立 外交路線과 經濟的 開放主義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 發注한 것이다.

한편, 이 輸出去來는 代金決済方式이 一覽払決済條件이므로 當行 支援資金의 回收期間이 短期가 되므로 資金의 回轉率을 높여주게 됨은 물론, 輸出增大, 새로운 船舶輸出市場開拓과 雇傭增大 및 關聯産業에의 波及效果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나이지리아와 우리나라의 關係를 增進시키는데 그 意義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나이지리아는 石油價 引上에 따른 막대한 石油収

入에 힘입어 의욕적인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였으나, 反面에 國民經濟의 石油依存度가 過度하게 높아 國際石油市場變動에 대하여 취약한 면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1977년 하반기부터 英國의 北海, 美國의 「알래스카」油田이 본격적으로 開發됨으로써 世界石油市場에 輕質油의 供給이 증가되어감에 따라 販売競爭이 과열되자 1978년에는 輕質油인 나이지리아 石油의 生産과 收入이 減少(OPEC 會員국가운데 종전 7位에서 10位生産國으로 下落)되었다. 또한 이나라는 의욕적인 開發計劃의 推進등으로 對外債務의 急増과 國際收支 및 財政上의 어려움을 겪게되어 3次 5個年計劃을 修正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本件事業計劃도 修正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政府는 船舶輸入代錢을 나이지리아産 原油로 決済할 것을 輸出者인 現代重工業(株)에 제의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當時精油施設로는 이의 처리가 不適合하여 現代重工業(株)은 부득이 長期間 協商끝에 船舶 11隻의 總輸出代錢 138,905 천「달러」가운데 3隻의 26,902 천「달러」해당액을 2.5년의 延払條件으로 契約條件을 修正키로 合議한 후 當行에 이에 대한 承認을 申請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當行은 위의 延払部門에 대하여 輸出保險에 付保하는 條件으로 1979년 12월 12일에 이를 承認하였다.

위 契約變更에 따른 貸出條件變更 承認申請 當時에 11隻中 6隻이 이미 引渡되어 그 代錢 75,966 천「달러」가 決済되어 있었던 狀態였는데, 契約上 認定되는 불가피한 事由로 인하여 이 件「프로젝트」의 船舶引渡日字는 当初豫定보다 遲延되어 실제로 最初船은 1979년 3월 20일에, 最終船은 1980년 11월. 5일에 引渡完了되었는바, 本件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와의 關係增進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② 大字實業(株)의 對노르웨이 「케미컬·탱커」(chemical tanker) 4隻

貸与販売方式에 의한 延払輸出 :

이 「프로젝트」에 대한 当行의 貸出은 30 백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 規程에 의한 当該年度の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에 따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의 支援方針 決定 (1979.12.20)을 얻은 후 1979년 12월 31일 運営委員會 議決로 貸出承認이 이루어졌다. 貸出限度額은 引渡前金融이 108,956 천 「달러」이며, 引渡後金融은 120,648 천 「달러」로서 融資比率 90 %를 초과한 實際所要資金 全額을 支援키로 하였다.

本件 延払去來의 特記할 事項은, 이 去來는 지금까지 当行이 資金支援한 船舶延払輸出去來와는 달리 貸与販売 (hire purchase) 방식에 의한 輸出로서 先受金이 없고 延払代錢 元利金償還全額에 대한 銀行支給保証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貸与販売方式은 貿易去來法에서는 賃貸借方式에 의한 輸出로 간주된다.

去來概要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本件契約은 1979년 12월 27일에 締結되었으며, 輸出目的物은 21,500 DWT級 「스테인레스·스틸」 化學物質運搬船 (stainless steel chemical tanker) 4隻으로서 契約金額은 168 백만 「달러」나 되는 비교적 巨額去來이다.

한편 이 契約金額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船舶輸出 契約書와는 달리, 船価以外에 利子が 포함된 것으로서 隻當基準으로 볼때, 實際船価는 30,265천 「달러」이며, 이를 元金으로하여 延払金利 7 %, 延払期間 10년으로 한 元利金 均等償還方式에 의한 元利金合計額 (隻當 42,000 千 「달러」)을 契約金額으로 한 것이다. 이 契約金額은 備船料의 形態로 隻當 每月 350 천 「달러」씩 10年間 總 120回 分割償還케 되는 것이며 同期間內 代錢償還이 完了된 후에는 備船者에게 船舶所有權이 移轉된다.

또한 이 去來는 특히 先受金이 없어 儲船者의 契約履行을 保證하기 위해 建造期間중에는 隻當 2,200 萬「달러」의 L/C 를 購買者側으로부터 徵求하고 儲船期間중에는 當該 船舶의 国籍이 우리나라 国籍이므로 當行은 이에 第1順位 船舶根抵當權을 設定함과 동시에 引渡後 最初5년간에는 儲船料 一部에 대하여 銀行支給保證등을 취득하는 條件으로 되어 있다.

本件 輸出船舶의 儲船者 즉, 購買者인 노르웨이의 “Odfjell Group” 과 “Westfal - Larsen ” 社는 液化物質의 輸送을 전문으로 하는 國際海運会社로서 1973 年 이래 “Odfjell/Westfal-Larsen Tankers Ltd.” 를 설립하여 「케미컬·탱커」를 공동으로 運營하고 있는바, 이 會社는 世界3大 「케미컬·탱커」保有會社중의 하나이다.

원래 노르웨이는 傳統海運國으로 總船腹量基準으로 1979 年 말 현재 世界6位國이며 한편 「케미컬·탱커」의 保有面에서는 世界1位國으로서 1979 年 말 현재 627 萬 G/T 를 보유하여 世界全體의 約30 %를 점유하고 있었다.

本件 船舶建造者인 大宇造船(株)은 1978 年 9 月 26 日 設立되어 大韓造船公社가 建造하고 있던 玉浦造船所를 동년 10 月 1 日에 引受하여 現在까지 最大船 1,000 萬 DWT 를 建造할 수 있는 「메인·도크」(main dock)를 完工한 후 1981 年 4 月현재 工程의 90 %이상 進척되었으며 竣工은 今年 9 月말 경으로 計劃하고 있는데 年間 建造能力은 1,200 萬 G/T 規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大宇造船(株)은 海外로부터 本件船舶을 최초로 受注함으로써, 造船所를 건설해가면서 적기에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傳統先進海運國으로 부터 船舶建造를 受注함으로써 世界造船市場에서 우리나라 造船所로서의 大宇造船(株)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키게 되었음은 물론, 船舶 建造에 대한 技術이 蓄積됨에 따라 大型 造船所로서의 跳躍基盤을 구축할 수 있게되는 效果를 얻게되었다.

大宇造船(株)은 本件 船舶建造를 위하여 노르웨이의 “Det Norka Veritas”
社와 技術提携를 하였고, 한편 過去에 大韓造船公社가 「케미컬·탱커」를 建
造輸出한 실적이 있어 国内技術도 상당부분 利用可能하므로 建造技術上의 애
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船舶의 契約書上 引渡豫定日은 最初船의 引渡期日이 契約發効日로 부터
26個月이내로 되어있고 餘他船舶은 每 3개월 간격으로 引渡하도록 되어 있으
나 大宇造船(株)은 当初부터 早期引渡計劃을 세운후 1980년 6월 24일에 最
初船에 대한 着工을 시작한 후 建造中에 있다. 1981년 4월말 현재 号船別 建
造工程의 進捗度를 보면 대략적으로 第1号船은 50%, 2号船은 48%, 3号船
은 竜骨配置, 4号船은 着工段階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大宇造船(株)이
同社造船所의 竣工과 함께 이들 船舶을 引渡할 때에는 外國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 造船工業發展을 선양하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大宇實業(株)의 美国 “Reading & Bates Exploration Co.” 앞 半
潛水式 試錐船 2隻 延払輸出:

最近 世界各國이 主要에너지源인 石油開發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試
錐船 建造도 增加趨勢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船舶建造史上 国内造船所가
半潛水式 試錐船 (semi-submersible drilling rig)을 建造·輸出한 것
은 大韓造船公社가 1974년 最初로 덴마크로부터 受注하여 1977년 輸出
(20,630천「달러」)한 이후 이번 大宇實業(株) 受注件(受注契約書는 大宇實業
(株)이나 建造者는 大宇造船(株)임)이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本件은 建造者인 大宇造船(株)으로서도 1979년 12월말경에 노르웨이로부터
受注한 「케미컬·탱커」4隻의 延払輸出去來에 뒤이은 第2의 受注去來로서 契
約은 1980년 5월 9일(修正契約 1980.7.3)에 締結되었다. 한편 當行은 1980년

12월 6일 運営委員會에서 이에 資金을 支援키로 承認을 하여 引渡前金融으로 40,730천「달러」, 引渡後金融으로 62,790천「달러」를 支援키로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當行이 1980년부터 国内金融機關과 協調融資를 취급함에 따라, 이 件 去來에 대하여는 協調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으로써 協調金融機關의 引渡前金融에 대하여는 40,000천「달러」와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26,910천「달러」 및 同 利子の 限度内에서 保證키로 한 것이다.

本件 去來의 概要를 살펴보면, 輸入者는 美国의 “Reading & Bates Exploration Co.”로서 同社는 石油·가스生産開發会社이며, 현재 20餘個所の 海洋에서 石油試錐活動을 進行中인 健全한 会社로서 알려져 있다.

同 試錐船 2隻의 輸出代錢支払條件을 보면, 輸出契約金額은 112,125천「달러」의 巨額으로서 先受金率は 契約額の 20%이고 殘餘 延払代錢은 引渡後 2년째되는 날 初回償還을 開始하여 每6개월마다 總13回 元金均等分割償還하는 條件이며 延払期間은 8년, 延払金利는 年8%이다.

本件 契約에 의하면, 第1号船 引渡豫定期日は 1982년 8월 13일이내이고 第2号船은 1983년 2월 13일이내가 되겠으나 大宇造船(株)은 第1号船을 1981년 2월 1일에 着工한 후 早期引渡計劃을 수립하여 第1号船은 1982년 3월 31일에, 第2号船을 1982년 6월 30일에 竣工, 引渡할 計劃으로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世界 各国은 石油開發을 위해 石油試錐活動을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향후 相当期間동안 試錐船에 대한 需要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當行은 本件 輸出에 대한 資金을 支援해줌으로써 試錐船의 設計 및 建造技術에 있어 아주 빈약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造船所에 대하여 실제 建造經驗을 통한 技術習得 機會를 부여하고 技術을 蓄積해 나가도록 하여 이에대한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造

船工業界도 앞으로는 이와같은 附加価値가 높은 特殊船 建造部門에 적극 進出하여야 하겠고 또한 建造上에 海外依存度を 대폭 낮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試錐船의 建造經驗이 없고 技術이 부족한 大宇造船(株)은 실제로 本件 試錐船建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海外로부터 技術導入을 추진하였다. 즉

① 美國의 “Friede & Goldman International, Inc.”와 契約을 圖面 및 仕様書(一般配置圖, 船體構造圖, 配管圖等)와 生産計劃에 대한 「콘설턴스」分野에 관한 用役契約締結.

② 美國의 “Santa Fe Engineering Services Co.”와 生産을 위한 設計圖面作成 및 中堅技術者 2人의 造船所 滞在등에 관한 契約締結.

③ 노르웨이의 “Det Norske Veritas” 및 英國의 “A & P Appledore, Ltd.”와의 主要生産工程計劃(中堅 「엔지니어」 2人, 2週間 造船所파견) 및 詳細生産工程計劃(大宇側 「엔지니어」 6人 파견훈련)등을 위한 用役契約 締結.

위와같은 事實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造船所의 試錐船 建造技術은 海外依存도가 극히 높은 바, 이런 의미에서 本件「프로젝트」를 計劃대로 수행하게 될 때에는 建造經驗 및 技術習得으로 世界 試錐船 建造市場에서 우리나라 造船工業의 地位를 어느정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大宇造船(株)에 뒤이어, 現代重工業(株)도 최근에 試錐船建造를 受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플랜트」輸出

종래 우리나라 經濟는 輕工業中心의 輸出増大를 통한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왔으나 先進國의 新保護貿易主義 抬頭와 先進國 및 先發開發途上國과의 치열한 國際競爭등 輸出環境의 變化로 우리나라는 輕工業中心의 輸出構造가 一面 限界에 달하게 됨에 따라 重化學工業製品 및 「플랜트」輸出의 増大必要性이 절실하게 요

청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은 아주 小規模이지만 1973년에 (株)勝利機械製作所의 對아프카니스탄 人絹織物工場의 輸出履行이 그 嚆矢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플랜트」輸出規模가 점차 확대되고 「플랜트」輸出에 대한 認識 및 重要性이 증대됨에 따라 政府는 1978년 12월에 産業設備輸出促進法(法律 第3123号, 1978.12.5)을 制定하여 「플랜트」輸出에 있어서 認·許可節次上의 混同을 제거하고 国内輸出会社間의 受注를 위한 過當競争을 막기 위한 諸般措置 및 「플랜트」의 概念定立등 「플랜트」輸出에 관하여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同法에 의한 「플랜트」 및 「플랜트」輸出의 定義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産業設備(「플랜트」)라 함은 鎡業, 製造業, 電氣·가스業, 放送·通信業을 當爲하기 위하여 設置되는 機械 및 裝置와 大統領令(第9316号)이 정하는 設備¹⁾를 말하며, 단 海外建設工事와 함께 一括 發注되는 設備는 제외한다. ② 「플랜트」輸出이라 함은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国内生産機資材比率에 적합한 一定規模(FOB 價格으로 100 천「달러」이상 相当額)以上の 産業設備輸出과 産業設備와 함께 技術用役 및 施工을 포괄적으로 輸出하는 것을 의미한다.

同法이 制定되기 以前에는 우리나라의 「플랜트」輸出에 대한 公式的인 實質集計가 없어 그 實質推移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73년부터 1977년 까지 「플랜트」輸出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技

註 1) : 大統領令이 定하는 設備라 함은 ① 鐵鋼材 構造設備 ② 水上構造設備 ③ 公害防止設備 ④ 用水處理設備 및 海水 淡水化設備 ⑤ 冷凍 및 冷蔵設備 ⑥ 空氣調和設備 ⑦ 貯藏「탱크」 및 貯藏 其他 設備 ⑧ 送油設備 ⑨ 定置式 運搬荷役設備 ⑩ 定置式 建設用設備 ⑪ 試驗研究設備를 말한다.

<表Ⅳ - 10>

當行支授「플랜트」輸出去來의 業種別 貸出承認實績

(단위: 백만원)

	1976		1977		1978		1979		1980		果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構成比%
鋼 管			1	139					1	5,422	2	3.9
織 維									1	791	1	0.6
시멘트					1	55,142	1	1,784			2	40.4
製材・合板							2	1,250	1	2,613	3	2.7
타이어					1	29,040					1	20.6
通 信			1	3,206							1	2.3
海水・淡水							1	2,314	1	38,393	2	28.9
其 他									2	929	2	0.6
合 計			2	3,345	2	84,182	4	5,348	6	48,148	14	100.0

<表Ⅳ - 11>

當行支援「플랜트」輸出去來의 輸出對象國別 貸出承認實績

(단위: 백만원)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金 額	件數	構成比%
인도네시아							2	1,250	1	2,613	3	2.7
필리핀			1	3,206			1	1,784			2	3.5
스리랑카									2	1,519	2	1.1
태국									1	201	1	0.2
사우디아라비아					1	55,142	1	2,314	2	43,815	4	71.8
케냐			1	139							1	0.1
수단					1	29,040					1	20.6
합 計			2	3,345	2	84,182	4	5,348	6	48,148	14	100.0

術水準의 低位와 輸出産業構造의 脆弱으로 그 実績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政府의 重化学工業育成等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부터 輸出産業構造의 改編이 이루어져가고 또한 1976년 7월에 當行이 重化学工業製品의 輸出支援 專擔銀行으로 發足되면서 「플랜트」輸出支援을 위한 金融도 활발히 이루어져 최근에는 「플랜트」輸出去來件數도 다소 增加趨勢에 있다. 그러나 한편 「플랜트」輸出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플랜트」輸出을 위한 国内技術 및 資本蓄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엔지니어링」技術도 初期段階에 있으므로 開發途上國의 産業發展段階에 맞는 輕工業部門 「플랜트」輸出이 尖端技術 및 大規模「플랜트」部門輸出보다는 現段階에서는 市場性이 有利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當行 發足以來 「플랜트」輸出支援을 위한 貸出承認實績은 1977년 33억원, 1978년 842억원, 1979년 53억원, 1980년 481억원에 달하는 바 當行이 金融支援한 4個의 主要 「플랜트」輸出去來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株) 現代洋行의 沙우디아라비아 「시멘트·플랜트」輸出

위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할 당시 (1976.9)에 사우디아라비아는 第2次 産業開發計劃 (1976 - 1980)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社會間接資本의 未備가 經濟開發의 隘路要因이 되어 왔으므로 同部門에 대한 開發擴充에 計劃의 優先順位를 두었다.

이러한 開發計劃의 추진에 따라 「시멘트」需要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이 당시 同國의 「시멘트」의 国内自給率은 29%에 불과하여 「시멘트」需要를 대부분 輸入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政府는 經濟開發推進에 소요되는 「시멘트」供給計劃의 일환으로 石灰石 賦存地域인 東西部地域에 日産 5,000톤 規模의 「시멘트」工場을 建

設할 것을 確定하고 1975년 9월 同工場建設을 추진하기 위하여 「南部地方 시멘트工場 設立 委員會」(Southern Province Cement Work Institution Committee)를 構成하였으며 同委員會에서 「南部地方시멘트會社」(Southern Province Cement Company : S.P.C.C)를 설립하여 「시멘트」工場建設에 대한 國際入札을 실시하였다. 同國際入札에 (株)現代洋行은 世界屈指의 「시멘트」工場建設會社인 美國의 「휠러」(Fuller)社와 「콘소시움」을 形成, 應札하여 發注處인 S.P.C.C로 부터 日産 2,500 M/T規模의 「시멘트·플랜트」를 總契約額 235백만「달러」에 落札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본건「프로젝트」는 (株)現代洋行과 美國의 「휠러」社와의 「콘소시움」에 의한 「턴-키」(turn-key)方式의 「플랜트」輸出件으로서 總契約金額 235백만「달러」中 (株)現代洋行은 208.8백만「달러」(89%), 「휠러」社는 26.2백만「달러」(11%)의 金額比率로 이루어 졌다. 本件의 代金決済方式은 契約직후에 先受金 20%, 殘餘代錢 80%는 既成高拂條件으로 L/C에 의거 受領하는 有利한 去來條件이었으며, 工事遂行方法은 主要機資材와 技術은 「휠러」社가 提供하고 기타 모든 工事遂行에 대하여 發注者側「콘설턴트」인 벨지움의 ERI 社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土木建設工事は (株)現代洋行의 系列企業인 漢拿建設社에 下請을 주었다.

本件「플랜트」輸出에 대한 當行 金融支援對象額(1978.7.8 貸出承認)은 借主社側 契約額 208,800천「달러」中 先受金 40,932천「달러」를 공제한 殘額의 80%인 134,294천「달러」에서 現地金融限度 20,000천「달러」를 감한 114,294천「달러」에 달하였다.

本件은 契約當時 우리나라 最大規模의 「플랜트」輸出이었고 當行 設立以來 單一去來에 대한 最多資金支援件으로서 우리나라 國民經濟에 대한 寄與度가 높은 去

來로 기대되었다. 즉 本件 輸出로 豫想되는 外貨稼得率은 57.3 %, 国内資材 및 国内費用은 103,037 천「달러」로 雇傭効果와 關聯産業에 대한 波及効果가 크며 世界屈指의 「시멘트」工場建設業體인 美國의 「윌러」社와의 技術提携로 技術習得의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本件 「시멘트」工場の 建設期間中 우리나라 国内經濟與件의 변화와 이에 따른 政府의 重化學工業調整으로 1979 년 상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차례에 걸쳐 (株)現代洋行의 社主가 變動되고 商號가 變更되는 등 會社經營의 一貫性 缺如와 現場管理能力의 缺如, 人力不足 및 資金投入不足現象이 招來되어 그간 「프로젝트」의 工事進行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株)現代洋行은 商號가 韓國重工業(株)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새로운 經營자에 의해서 운영케 됨으로써 同社는 1981 년 2 월 21 일자로 本工事의 契約当事者들과 本件 「프로젝트」建設工期를 1981 년 12 월 23 일 (当初契約工期 1981.9.22) 까지 延長키로 合意하였다. 한편 同社는 所要資金不足分을 大株主인 韓國電力(株)의 現金出資와 關聯金融機關인 韓國産業銀行 및 韓國外換銀行의 貸出金의 資本轉入과 當行 未執行貸出金의 執行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所要資金調達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 바, 1981 년 2 월말 現在 82 %工事進捗을 보이고 있는 本件 「프로젝트」는 所定期日까지 工事を 完了, 引渡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大宇實業(株)의 對수단「타이어·플랜트」輸出 및 海外投資事業

수단은 社會間接資本의 미비로 經濟開發에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이러한 經濟開發의 制約條件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고자 1977 년부터 第3次6個年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輸送,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擴充에 重點投資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開發計劃推進에 따른 道路網의 擴充과 陸上運送量의 증가는 이 나라의 「타이어」需要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단은 工

業基盤의 脆弱으로 本件 「타이어·플랜트」輸出契約 當時까지 「타이어」生産工場이 없었으며 国内 所要量を 全量 輸入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수단政府는 「타이어」工場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大宇實業(株)은 1970년대 중반부터 수단을 아프리카市場開拓의 前進基地로 선정하여 現地実情에 맞는 各種 「플랜트」輸出을 計劃推進하고 있었는데 本件 「타이어·플랜트」도 이러한 計劃推進의 成果라고 할 수 있다.

大宇實業(株)은 1977年 3月 수단의 「타이어」工場設立計劃에 대한 資料를 入手하였으며 同国 「니메리」(Niemeiri) 大統領을 통하여 政府로부터 「타이어」工場 独占設立權을 갖고 있는 수단實業家 「압도·라보」(Mr. Abdo Rabo)를 紹介받아 「타이어·플랜트」輸出可能性을 摸索하였고 곧이어 兩者間에 「타이어·플랜트」建設을 위한 合作投資에 관한 基本原則에 合意를 보게 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概要를 보면, 수단側 合作先인 「압도·라보」는 財力이 豊富한 實業家이나 「타이어·플랜트」를 建設할 技術이나 經營能力이 없기 때문에 大宇實業(株)과 50:50의 比率로 14백만「달러」規模의 現地合作會社(ITMD:

International Tire Manufacturing & Distributing Co.)를 設立하고 大宇實業(株)은 同合作會社에 年産 25萬本 生産能力의 「타이어·플랜트」를 輸出價額 88백만「달러」에 輸出하는 去來이다. 또한 合作投資契約에 의거 工場運營에 있어서 經營, 技術, 生産, 販賣의 전반에 걸쳐 大宇實業(株)이 担当하도록 되어 있으며, 輸出契約에 의거 工場稼動時 大宇實業(株)이 계속적으로 原資材를 供給하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原資材輸出이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当行金融支援(1978.9.9 貸出承認)은 大宇實業(株)投資分 7백만「달러」의 80%인 5.6백만「달러」의 海外投資資金貸出과 「타이어·플랜트」輸出價額 88백만「달러」중 先受金(15%) 13백만「달러」를 공제

한 殘額 75 백만「달러」의 80 %인 60 백만「달러」의 輸出資金貸出로서 当行 支援總額은 65.6 백만「달러」에 이른다. 이와같은 当行金融支援의 惠澤을 받아 同工事は 순조로이 進行되었으며 오히려 当初 契約工期보다 1년여나 단축하여 1980년 3월에 完工를 보게 되었다.

이 「타이어플랜트」輸出의 우리나라 國民經濟에 대한 効果를 보면 · ① 大規模 「플랜트」輸出의 經驗體得 ② 「플랜트」建設에 필요한 各種 原資材, 機械部品, 建設裝備등을 供給하는 關聯産業에 대한 波及效果和 初期段階에 있는 「엔지니어링」産業의 育成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③ 대부분의 機械設備製作이 大宇重工業(株)을 비롯한 国内「메이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國產機械化促進에 기여하였고 ④ 工場稼動時 필요한 原資材, 消耗品 등을 大宇實業(株)이 供給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이어」原材料 등의 長期安定的 輸出市場確保가 기대되며 ⑤ 높은 外貨稼得率(82.1%)로서 外貨獲得效果를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나라는 취약한 經濟構造위에서 開發計劃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輸入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輸出伸張率이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最近 經常收支赤字幅이 확대되고 外換事情이 좋지 않으며 對外債務가 累積되어 있어 對外債務償還의 어려움에 直面해 있는 것이 問題点이라 하겠다.

(다) 新興機械製作所의 對인도네시아 合板「플랜트」輸出

인도네시아는 鑛山資源, 農産資源, 林産資源 등 풍부한 資源保有國家로서 과거 인도네시아의 資源開發은 주로 外國人投資에 의하여 이루어졌었다.

특히 林産資源이 外國人投資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伐採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政府는 国内 林産資源保護를 위하여 1974年以後 外國人投資를 規制해 왔으며 新規外國人投資를 금지시켰다. 또한 木材加工産業育成을 목적으로 原木輸出을 억제하고 製材木, 合板 등 木材加工品輸出을 장려하여 왔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는 ASEAN 諸國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原木을 輸入하여 合板등을 만드는 木材加工産業이 크게 발달하였고 또한 合板은 우리나라의 主要 輸出商品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原木輸入은 1978 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原木輸入의 58 %, 1980 년에는 45 %로서 아직도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原木輸出抑制로 그 比重은 점차 減少趨勢에 있다.

이와같이 林産資源保有國인 인도네시아가 原木輸出을 억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原木確保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林産資源保有國에 資本과 技術을 投入하여 直·合作形態로 木材加工業分野에 進出해서 原木을 안정적으로 確保해야할 必要性이 절실하게 되었다. 本件 (株)新興機械製作所의 對인도네시아 合板「플랜트」輸出은 이와같은 原木確保方案의 좋은 實例라 하겠다.

本件 「프로젝트」의 輸出者인 (株)新興機械製作所는 購買者인 인도네시아의 「포로디사」(P.T Porodisa Trading & Industrial Co.) 社와 1975년 製材機 延拂輸出去來를 契機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1979년 8월에 本件 合板「플랜트」建設에 관한 商談이 시작된 후 동년 10월에 同「포로디사」社의 社長이 來韓하여 우리나라 合板業界 視察後 본격적으로 去來商談이 推進되어 1980년 3월 6일에 月産 4,300 m^3 , 契約金額 5,500 千「달러」規模의 合板「플랜트」輸出契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本件 「프로젝트」에 대한 當行 金融支援(1980.4.22 貸出承認)은 契約金額 5,500 千「달러」중 先受金(20%) 1,100 千「달러」를 공제한 殘額 4,400 千「달러」에 대한 90%(「플랜트」輸出에 대한 當行 融資比率이 1979년 1월 12일자로 종래의 80%에서 90%로 확대됨)인 3,960 千「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當行 金融支援에 힘입어 1980년 10월 31일에 이 合板「플랜트」工事は 完工을 보게 되었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本件 合板「플랜트」延拂輸出은 우리나라의 機械類 輸出效果 및 原木確保에 기여한 去來로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라) 現代綜合商事(株)의 沙우디아라비아 脫鹽水設備輸出

海水淡水化「플랜트」는 中東, 아프리카, 中南美등 年間 降雨量이 극히 적은 地域의 國家에서 需要가 증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第2次經濟開發計劃期間(1975.7~1980.6)中 總容量 4,853 백만 G.P.D (Gallon Per Day) 規模의 海水淡水化「플랜트」에 대한 新規 및 增設計劃을 추진하여 왔으나 計劃事業이 지연되어 1974~84 년으로 이월 되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海水淡水化「플랜트」建設計劃의 一環으로 사우디海水淡水化公社(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가 國際「콘소시움」(5 個國 6 個業體參加)과 858 백만「달러」規模의 發電所 및 海水淡水化工事契約을 締結하였으며 「콘소시움」一員인 프랑스의 SIDEM社가 그 중 219,164 천「달러」規模의 海水淡水化工事を 受注하였다.

SIDEM社는 同海水淡水化工事を 現代建設(株)에 下請을 주었으며 同工事は SIDEM 社가 技術을 제공하고 現代建設(株)이 設備의 製作 및 施工을 담당하는 工事이다. 또한 現代建設(株)은 同社 사우디아라비아支社인 AL-KHOBAR支社를 통하여 同工事の 一部인 脫鹽水設備(89,085 천「달러」)製作을 現代綜合商事(株)에 發注하였고 이를 受注한 現代綜合商事(株)은 同設備의 製作을 現代重工業(株)에 의뢰하여 현재 當行의 金融支援을 받아 設備製作中에 있다.

本件「프로젝트」의 代金決済條件은 既成高拂條件이며, 契約직 후에 受領되는 先受金은 契約金額의 20 %이다. 한편 當行의 貸出承認은 1980년 2월 28일 이루어졌는 바 金融支援額은 借主社인 現代綜合商事(株)가 受注한 89,085 천「달러」規模의 脫鹽水設備中 先受金 17,817 천「달러」를 공제한 殘額 71,268 천「달러」

에 대한 90 %인 64,141 천「달러」에 이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当行 支援対象「프로젝트」部門은 現代建設株式會社가 프랑스 SIDEM社로부터 受注한 사우디海水淡水化工事遂行에 소요되는 一部 脫塩水設備를 現代綜合商事株式會社가 再下請받아 現代重工業株式會社에 製作依頼한 것인 바, 프랑스 SIDEM社의 技術支援으로써 現代重工業株式會社가 製作・供給하게 됨으로써 国内關聯産業에의 波及効果와 外貨獲得効果(外貨稼得率 79.9 %, 国産機資材使用率 62.5 %)가 기대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試圖되는 脫塩水設備製作輸出이므로 이 「프로젝트」가 完工될 때에는 同分野의 施設製作에 대한 技術習得 및 技術蓄積이 이루어 진다는 점과 이에 의거 향후 이와같은 設備의 輸出도 기대할 수 있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直接貸出 및 轉貸借款

가. 直接貸出

(1) 直接貸出의 意義

直接貸出(Direct Loan)은 当行이 우리나라로부터 商品을 輸入하고자 원하는 外國의 購買者에게 同 商品을 購入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直接 貸與하여 주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本章에서 說明되고 있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Relending Facility)과 함께 購買者信用制度(Buyer Credit Scheme)라 하는데 이 制度는 商品의 延拂輸出을 위하여 国内供給者 또는 輸出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貸與하여 주는 供給者信用制度(Supplier Credit Scheme)에 대응되는 概念이기도 하다.

美国, 英國등을 비롯한 歐美先進國의 國際金融取扱銀行에서는 이와같은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延拂輸出이 輸出支援金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日本輸出

入銀行의 경우 1980년도 總貸出承認額의 30.8%가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한 金融支援이었다.

(2) 直接貸出制度和 供給者信用制度의 比較

이와같은 直接貸出方式을 供給者信用方式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國內輸出者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輸出商品의 引渡時까지 輸出代錢의 全額을 現金으로 支給받게 되므로 一覽拂輸出去來方式이 된다. 둘째, 供給者信用方式에 의하는 경우 當行의 借主는 輸出者가 되므로 延拂輸出을 위한 借入金이 輸出者의 財務諸表上에 長期固定負債의 증가로 나타남에 반하여 購買者信用方式에 의하는 경우에는 海外購入者가 直接 當行의 借主가 되고 輸出者는 物品引渡時까지 代錢을 全額 受領하므로 결과적으로 輸出者의 財務構造가 改善된다. 셋째, 融資에 수반되는 債權保全 및 貸出金 回收 등 모든 責任은 當行이 全的으로 担保하게 되므로 輸出者는 아무런 負擔없이 輸出契約의 履行에만 전념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한편 購買者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當行으로부터의 直接貸出方式에 의한 輸入은 일종의 公共借款의 導入이 되므로 自國內의 稅制에 따라서는 源泉稅등 課稅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商品을 싸게 구입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둘째, 輸出者가 物品 引渡前까지 輸出代錢을 全額 受領하게 됨을 이유로 하여 購買者는 價格協商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서 誘導해 갈수 있는 利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支援하는 當行의 입장에서 볼때는 첫째, 當行이 直接 外國의 借主와 融資에 관한 協議을 하므로 外國一流銀行의 支給保證등 當行이 요구하는 條件에 따라 融資協定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債權保全에 보다 徹底를 기할 수 있으며, 둘째,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가 용이하여 外國輸入者에게 所要資金의 一定比率(예컨대 先受金 20%, 延払金額에 대한 협조융자비율 30%인 경우, 當行融資額은 輸出契

約額의 56%)만을 当行 融資로서 充当케할 수 있으므로 当行 融資의 効率性を 높일 수 있게 되고, 세째, 이러한 協調融資金은 協調融資銀行인 外國金融機關의 自體 責任 아래 外國 購買者가 直接 借主가 되어 추진되므로 供給者信用에 의한 外國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時에 当行이 保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對外債務負擔이란 점도 야기되지 않게 된다. 이외에도 購買者信用의 金利가 현재 供給者信用에 비하여 약 0.5%「포인트」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当行의 收支面에서도 또한 유리하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앞으로는 購買者信用에 대한 金融技法을 보다 發展・補完시켜 이 상과 같은 長點을 살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直接貸出制度의 導入 沿革

直接貸出制度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歐美先進國에서 주로 利用되고 있는 先進金融技法으로 이를 当行이 導入한 것은 美國輸出入銀行, 英國輸出信用保證局(E CGD) 및 日本輸出入銀行 등의 直接貸出制度를 그 「모델」로 하여 1979년 8월 22일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 基本運營規程」을 制定하고, 동년 9월 20일 同 取扱規程을, 동년 11월 19일 標準融資協定書樣式을 制定함으로써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当行은 1979년 11월 21일 최초로 外國人에 대한 直接輸出을 承認하게 되었다.

(4) 直接貸出 供與實績과 支援效果

当行이 直接貸出制度를 導入한 후 施行期間이 日淺함에 따라 현재까지 취급한 直接貸出은 모두 3件(1979년 1件, 1980년 2件)에 불과하며 이들 貸出에 수반한 去來의 總輸出契約額도 146,810천「달러」, 当行 總貸出額은 86,334천「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表Ⅳ - 12 >

直接貸出 支援実績

(1980년 12월말 현재)

(단위 : 천「달러」)

輸 出 者	目的物	輸 入 国	輸入者 (借主)	契約額	融資額	備考
大韓造船公社	케미컬 탱커 6 隻	라이베리아	Stolt Falcon 社 外 5 個社 (実船主 : 노르 웨이의 Stolt Niel- son Group)	144,000	81,000	'79.11.21 (本承認)
大宇實業 (株)	버스 50 臺	아 이 티	Valliers Auto Sales S.A.	1,560	1,334	'80. 2. 9 (")
現代綜合商事 (株)	트럭 250 臺	파 라 과 이	Credicar S.A	1,250	1,000	'80.12.19 (")

이 가운데 최초의 直接貸出은 1979년 11월 21일 承認된 (承認額 81,000천「달러」) 大韓造船公社의 32,000 DWT級 液體化學物運搬船 (chemical tanker) 6隻 (輸出契約額, 隻當 24,000천「달러」, 合計 144,000천「달러」)의 輸出支援을 위한 라이베리아의 Stolt Falcon 社外 5個社 (各社가 1隻씩 購入) 에 대한 貸出이다. 이들 借主社는 世界最大의 便宜置籍國인 라이베리아에의 便宜置籍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特殊貨物 輸送專門海運會社인 「스톨트·넬슨·그룹」 (Stolt Nielsen Group) 이 라이베리아에 設立한 會社들이므로 実船主이자 實際借主는 「스톨트·넬슨·그룹」이 된다. 따라서 同 直接貸出의 形式上의 受惠國인 라이베리아에의 經濟的 効果는 會社 및 船舶의 登録手數料과 噸稅 등의 徵收外에는 別無하다고 하겠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은 直接貸出制度가 갖는 輸出者 및 當行側의 유리한 立場에서 巨額의 輸出去來를 成就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同貸出의 意義가 컸다. 当初 同 輸出去來는 供給者信用方式에 의한 貸出이었으므로 輸出者인 大韓造船公社는 當行의 借主인 관계로 輸出代錢을 延払條件으로 受領하게 되었기 때문에 同社는 장기적으로 資金負擔을 갖게되었으나, 이와같이 直接貸出로

변경됨으로써, 同 船舶의 購買者가 直接 借主가 됨과 동시에 當行의 既貸出金은 輸出者인 大韓造船公社의 當行에 대한 負債償還에 充當됨으로써 輸出者의 財務構造가 크게 개선되게 되었다.

다른 2件의 直接貸出은 아이티와 파라과이에 대한 「버스」 및 「트럭」의 輸出支援을 위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같이 直接貸出이 갖는 意義는 어느 의미에서 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大字実業(株)의 「버스」 50台(大型 40臺, 中型 10臺) 輸出支援을 위한 아이티의 「벨 리어·자동차판매회사」(Valliers Auto Sales S.A)에 대한 直接貸出件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小額去來이었으나 去來目的物의 높은 國産化率로 인하여 外貨稼得率이 높았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티의 大衆交通手段의 現代化에 기여함으로써 兩國間의 經濟協力關係를 增進시켰다는데에 더 큰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즉 종전까지 아이티에는 정상적인 大衆交通手段이 없이 「픽·업」 등이 交通手段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交通手段의 現代化에 대한 國民의 여망이 높았고 同國 大統領도 그 당시 이를 改善키로 公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大衆交通手段의 現代化라는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同 直接貸出은 輸入者인 “ Valliers Auto Sales S.A ” 社가 借主이나 同社는 輸入버스 全量을 政府에 納品함으로써 실제로 償還財源은 政府豫算에 計上되어 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4年間 400臺 정도의 버스를 추가로 導入하여 全國에 大衆交通網을 형성할 계획에 있다 하는바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나라와의 經濟協力을 더욱 강화하고 車輛輸出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라과이의 “ Credicar .S.A ” 社에 대한 直接貸出은 現代綜合商事(株)의 1톤 「트럭」 250台 輸出支援을 위한 것으로 同件 輸出은 「트럭」을 半組立 (Semi-Knock-

down) 狀態로 輸出하는 것이므로 輸入者側 立場에서 볼 때 運送 및 組立費用을 節減할 수 있었다. 또한 本件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開發途上國에 이러한 形態로서의 輸出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同 車輛을 輸入한 파라과이의 自動車販賣會社 “Credicar S.A”는 同 車輛을 組立하여 國內 農場經營者 및 商工人에게 販賣할 計劃인 바, 이러한 用途로 미루어 보아 同 直接貸出은 小額去來이지만 파라과이의 商工業發達과 流通構造改善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버스」와 「트럭」의 輸出支援을 위한 위 2件의 直接貸出은 비록 그 金額은 크지 않으나 中南美諸國에의 車輛輸出 나아가서는 機械類 「플랜트」輸出의 基盤을 造成하였고 同地域과의 經濟協力強化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나. 轉貸 借款

(1) 轉貸借款의 意義

當行이 取扱하고 있는 轉貸借款 (Relending Facility)은 小規模의 去來單位로 輸出되는 資本財의 海外市場開拓을 촉진하기 위하여 輸入者의 去來銀行인 信用 있는 外國金融機關에 當行이 與信限度 (Credit line)를 供與하고, 同 借主銀行으로 하여금 同資金의 最終受惠者인 自國內의 韓國產資本財輸入者에게 資金을 轉貸토록 하는 輸出金融支援制度로서 일종의 購買者信用 (Buyer Credit)이며 對外借款의 한 形態라 하겠다.

따라서 轉貸借款의 當行借主는 輸出相對國의 銀行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輸出者는 物品의 引渡時까지 輸出代錢의 金額을 回收하는 反面에 當行은 借主銀行으로부터 借款協定條件에 따라 延拂로 回收하게 된다. 한편 輸入者는 輸入物品代錢을 自

國의 銀行에 延拂로 償還하는 利點을 갖게 된다.

이와같이 轉貸借款은 金融供與가 實務的으로 困難한 資本財의 小規模去來의 圓滑한 輸出支援에 主眼點을 두고 있다는 點에서 資本財의 大規模 中長期去來를 支援하는 直接貸出制度 및 輸出資金貸出去來와는 相互補完의 關係를 갖고 있다 하겠다.

(2) 轉貸借款制度의 導入 및 發展經過

當行의 轉貸借款制度는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轉貸借款取扱規程”(1978.4.14 制定) 및 “外國金融機關의 轉貸借款取扱에 對한 基本運營方針”(1978.6.16 制定)이 制定된후 다른 金融制度보다는 비교적 늦게 1978年 下半期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후 施行過程에서 발생된 問題點을 반영하여 계속 制度改善을 추진하여 왔다.

대폭적인 制度改編은 1980年 2월 및 3월에 上記 基本運營方針 및 取扱規程을 廢止하고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轉貸借款 基本運營規程과 取扱規程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졌다.

主要變更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融資承認節次를 與信限度設定段階와 融資承認段階로 二元化함으로써 借主銀行의 與信限度를 우선 設定한후 融資承認節次를 밟도록 하였고, 기본적인 融資協定書內容도 크게 簡素化하였으며

둘째, 한정된 輸出支援資金의 効率性を 提高시키기 위하여 支援對象 品目の 範圍를 축소하여 原則的으로 當行 본래의 支援對象品目 즉 輸出資金貸出의 支援對象品目과 같게 했으며,

셋째, 支援對象品目を 輸出資金 融資對象品目으로 局限시킴에 따라 融資對象 個別去來要件 및 融資條件도 改正하였는데, 즉 先受金은 品目に 구별없이 10% 以上으로 하고, 融資金의 償還期間은 品目別・輸出價額別로 最長 5年以內에서 差

等適用하며, 外資材依存率要件도 輸出資金貸出의 경우와 같도록 하였다.

그후 1981년 3월중 上記 基本運營規程이 一部改正되었는 바, 그 主要内容은, 첫째, 供与対象金融機關이 중전에는 対象国 金融機關으로 制限되었으나 対象国所在 金融機關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 範圍를 対象国所在 外国金融機關까지 擴大하였으며 둘째, 先受金要件을 強化하여 중전의 10%以上에서 15%以上으로 하였다.

(3) 轉貸借款 供與實績과 支援效果

当行은 1979년 2월 6일 칠레의 "Banco Israelita de Chile"와 우리나라 商品購買資金은 2,000천「달러」의 與信限度設定協定을 締結하였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가 外国의 金融機關에게 轉貸借款을 供與한 最初의 事例이기도 하다. 当行은 1981년 4월말까지 上記 件을 비롯하여 모두 5件, 20,000천「달러」의 轉貸借款을 5個의 外国金融機關에 供與키로 協定을 締結하였으며 칠레의 1個銀行에 대하여는 3,000천「달러」의 轉貸借款供與에 대한 豫備承認을 完了한 후 協定締結의 準備段階에 있는 바, 以上 内容은 <表Ⅳ-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Ⅳ-13> 轉貸借款供與協定 締結現況
(1981년 4월말 현재)

		(단위 : 천「달러」)		
借主國	借主銀行	與信限度	協定締結日	備考
칠레	Banco Israelita de Chile	2,000	1979. 2. 6	
자마йка	Bank of Jamaica	5,000	1979. 2. 9	1981.6.8 修正協定締結
태국	Thai Farmers Bank	5,000	1980. 1. 28	
자유중국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5,000	1980. 6. 2	
이집트	Cairo Far East Bank	3,000	1981. 1. 28	
칠레	Banco de Chile	3,000	-	豫備承認

以上の 轉貸借款은 그 資金의 用途가 모두 相對國의 우리나라로부터의 資本財

輸入資金支援을 目的으로 한 것이므로 이 制度는 우리나라 重化學工業 育成 및 同 製品의 輸出增大政策에 符合됨은 물론 이들 資金에 의한 去來는 여러 件의 小規模去來에 사용됨으로써 去來對象品目이 다양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다양화에도 기여케 된다. 즉 當行은 타이랜드에의 「프라스틱」機械 및 化學機械 등의 資本財, 칠레에의 自動車 및 同 部品을 포함한 機械類, 自由中國에의 冷延薄板 등의 鐵鋼材등의 輸出支援을 위한 轉貸借款을 供與함으로써 다양한 種類의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을 支援한 것이다. 한편 타이랜드의 경우 同國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資本財를 日本으로부터 輸入함으로써 輸入先의 多邊化를 摸索하고 있으므로 當行의 轉貸借款供與를 계기로 同國에의 資本財輸出이 견증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自由中國에의 鐵鋼材 輸出을 위한 轉貸借款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鐵鋼材 輸出市場인 美國이 새로이 鐵鋼材 輸入規制를 함에 따른 우리나라 輸出市場의 多邊化라는 요청에도 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自由中國으로 輸出되는 鐵鋼材가 自由中國의 鐵鋼材 輸入의 約 6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때 向後 輸出의 餘地가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同 轉貸借款은 同國에의 鐵鋼材 輸出增大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도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以外에도 자마이카의 中央銀行인 “The Bank of Jamaica” 와의 轉貸借款協定은 同國이 「카리브」共同體(CARICOM)의 主軸「멤버」이고 非同盟調整委員國이므로 「카리브」地域 및 第3世界에서의 同國의 影響力을 감안할 때 經濟協力내지 關係增進의 效果가 크다 하겠다. 또한 이집트의 韓·이집트合作銀行인 카이로 極東銀行(Cairo Far East Bank)에의 轉貸借款의 供與는 借主銀行을 韓·이집트 經濟協力の 窓口로서 활용하고 阿洲 및 中東地域 進出企業에 대한 金融支援「센타」로서의 同 銀行의 役割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同 銀行을 적극 支援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그 意義가 크다 하겠다.

4. 海外投資資金貸出

가. 海外投資의 概觀

海外投資는 일반적으로 投資動機를 基準으로 市場確保型, 資源確保型, 勞動力確保型, 海外立地活用型, 經濟協力型 및 多国籍企業型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거의 없고 한편 經濟開發을 위한 外貨獲得源으로서 輸出에 대한 依存度가 매우 높아 外換管理規程에서도 海外投資의 類型과 投資要件 및 投資業種등을 制限的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當行의 경우 韓國輸出入銀行法 및 同法施行令에 의거 다음과 같은 事業을 海外投資資金의 支援對象으로 하고 있다.

- ① 重要物資 또는 主要資源의 確保에 寄与한다고 認定되는 投資事業
- ② 外國과의 經濟協力 增進에 寄与한다고 認定되는 投資事業
- ③ 海外僑民의 經濟的 地位向上에 寄与한다고 認定되는 投資事業
- ④ 其他 海外 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外貨獲得에 크게 寄与하는 投資事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海外投資支援制度의 導入과 發展

海外投資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國民經濟的인 側面에서 主要資源이나 重要物資의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위하여도 아주 緊要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를 長期低利의 制度金融으로 최초 支援하게 된 것은 1971년 인도네시아의 山林資源開發을 위한 資金支援이 그 嚆矢라 하겠다.

이 支援資金은 當行發足前에 當時 當行業務代行機關이었던 韓國外換銀行 “中長期信用部”에서 취급되었으며, 以後 中長期延払輸出業務의 擴大에 따라 當行이 發足할 때까지 山林開發과 遠洋漁業 및 船舶傭船등에 海外投資資金貸出로서 總 5

件, 41.7 억원을 融資承認하였다.

当行 発足以後 海外投資資金貸出業務는 当行 業務方法書와 外国換管理規程의 一部 및 貸出承認節次規程에 의하여, 그리고 그 支援의 政策的인 方向은 毎年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정하는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에 의거 淸 급하게 되 었는바 지금까지는 海外投資資金貸出業務가 餘他 貸出業務보다 활발한 편은 아 니었으나 앞으로는 同 業務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 海外投資資金貸出制度의 運用

(1) 海外投資資金의 形態

当行이 支援하고 있는 海外投資資金은 海外 現地法人에 대한 出資金 및 出資資 金貸出을 통한 直接投資와, 外國人에 대한 設備貸与에 所要되는 資金支援등으 로서 구체적인 形態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法人에 出資(株式取得 包含) 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 金.

둘째,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外國人이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貸出하기 위한 資金.

셋째,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必要한 長期 資金을 貸出하기 위한 資金.

네째, 海外投資事業의 定型的인것은 아니나, 外國法人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 (그 設備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資材로 充当되는 것) 의 貸与에 必 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도 当行 海外投資資金의 支援對象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海外投資事業에 대한 資金支援業務는 現在 当行에서만 유일하게

취급하여 왔으나, 1980년부터는 海外鉍物資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韓鉍業振興公社가 海外資源開發基金을 마련하여 部分的으로 当行 支援対象事業에 대한 協調支援基盤을 造成하고 있다.

(2) 融資実績

海外投資資金貸出은 1976년 7월 1일 当行이 発足되기 이전에 当行業務代行機關이었던 韓國外換銀行(中長期信用部)에서도 融資実績이 있었으나 本格的인 資金支援은 <表Ⅳ-14>와 같이 当行이 発足한 1976년부터 1979년까지로서

<表Ⅳ-14>

海外投資資金 貸出承認実績

(단위: 천「달러」)

年度 業種	1971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製造業											3	5,787	5	1,352	2	2,261
水産業					2	32*			1	4,000			1	400		
資源開發事業	1	651*	1	1,225					2	2,205			1	51,748		
設備貸與(船舶)							2	11,779	1	34,169	2	31,184	1	4,737		
其他							1	5,654								
總計	1	651*	1	1,225	2	32*	3	17,433	4	40,374	5	36,971	8	58,237	2	2,261

註: *는 단위 백만원임.

支援事業件數와 融資金額は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고, 支援事業의 形態도 山林 및 鉍物資源開發事業, 水産業, 輸出市場確保를 위한 製造業, 船舶貸與 등으로多樣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国内外 經濟与件의 전반적인 沈滯에 따라 国内業體의 投資意慾이 위축됨으로써 当行의 海外投資資金 支援実績도 「플랜트」 輸出에 수반

되는 現地 合作法人出資와 資源開發投資에 대하여 2件에 2,261천「달러」의 저조한 実績에 그쳤다.

특히, 重点支援対象인 資源開發投資事業이 부진했던 理由는 첫째, 資源民族主義가 강화됨에 따라 投資対象국인 資源保有국들이 自國의 資源開發을 위한 外國人投資에 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 投資業體들이 海外投資에 대한 經驗不足등으로 海外投資事業推進에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데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政府次元에서 資源保有국과 적극적인 外交・經濟協力을 추진함과 동시에 海外公館, 貿易館, 大韓鉅業振興公社 및 각종 專門技術用役機關들이 서로 有機的인 支援協調體制를 구축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海外投資資金支援 主要投資事業

當行이 創立後 支援한 海外投資事業中 대표적인 主要「프로젝트」는 1976년부터 1979년에 걸쳐 大韓造船公社의 노르웨이 「스톨트·넬슨·그룹」(Stolt Nielsen Group)에 대한 6隻의 貸与船舶 建造資金條로 81,869천「달러」를 支援한 것과, 1978년 大宇實業(株)의 수단에 대한 「타이어」製造 「플랜트」輸出과 併行하여 現地合作法人의 資本金 出資條로 5,600천「달러」를 支援한 「프로젝트」 1979년 浦項綜合製鐵(株)의 美國「타노마」(Tanoma) 鉅山開發事業에 대한 51,748천「달러」의 資金支援事業을 들 수 있다. 특히 「타노마」 鉅山開發事業은 重化學基幹産業의 基礎資源인 製鐵用 原料炭의 長期安定的確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本格的인 海外資源開發事業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現地開發会社를 形式上 第三國 法人으로 함으로써 租稅피난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점과 美國「시티뱅크」(Citibank) 등 世界一流銀行이 共同支援 參與한 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海外資源開發投資事業에 대한 支援方式에 있

어 新紀元을 이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以下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로서 그 重要性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海外資源開發投資事業 가운데 當行이 資金支援기로 한 2個 「프로젝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美國의 「타노마」炭鐵開發事業

國內 最大의 製鐵工場인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鐵鉍石, 原料炭 등의 製鐵에 필요한 主原料를 주로 長期供給契約方式에 의한 單純輸入으로 충족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3년 第1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世界各國에서 資源民族主義가 대두되고 主要資源의 國際間 需給 및 價格도 크게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重化學工業의 發展과 더불어 鐵鋼의 國內需要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浦項綜合製鐵株은 海外投資를 통한 開發輸入으로 製鐵原料의 長期安定的인 調達基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浦項綜合製鐵株은 製鐵原料중 國內에 賦存되어 있지 않은 製鐵用 有煙炭의 開發輸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76 ~ 1985년간 開發될 計劃인 美國內 炭鉍 76個所 가운데 9個所를 대상으로 1976년도부터 同社의 開發 參與可能性을 타진했다. 그후 同社는 마침내 1977년 7월 美國 有數의 綜合商社인 「알코·스탠다드」社 (Alco Standard Corp.)의 子會社로서 石炭開發業務를 專担하고 있는 「반스·터커」社 (Barnes & Tucker Company)로부터 「펜실베이니아」州 「인디애나·카운티」 (Indiana County)에 위치한 「타노마」 (Tanoma) 炭鉍의 開發을 提議받았다. 이에 따라 浦項綜合製鐵株은 現地試錐作業, 技術調査 등을 거쳐 「타노마」炭鉍開發事業의 妥當性을 확인하고, 이 炭鉍開發事業을 專担시키기 위하여 「텍스·헤이븐」 (Tax Heaven) 地域인 「네델란드·안틸레스」 (Netherland Antilles)에 1978년 11월 現地法人인 「타노

마」石炭会社 (Tanoma Coal Company) 를 設立하였다.

本件 「프로젝트」의 妥当性調査結果에 의하면 「타노마」炭鉱의 炭種은 高流动性 良質의 中揮発性粉炭이며 埋藏量은 精炭基準 22 백만톤으로 34 년간에 걸쳐 年平均 646 천톤을 生産할 수 있는 中規模의 炭田으로 判明되었다. 그리고 開発事業이 계획대로 進展되는 경우 1982 年 10 月 이후에는 本格的인 出荷가 가능하며 이에따라 浦項綜合製鉄株은 1983 年 이후 毎年 同社の 所要原料炭의 約 11.7 %를 「타노마」炭鉱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炭鉱開發計劃을 확정한 후 「타노마」石炭会社는 鉱山主인 「반스·터커」社가 全額出資하여 設立한 「인디애나·랜드」社 (Indiana Land Company)와 租鉱契約을 正식으로 체결하는 한편 「반스·터커」社와는 管理運営契約을 체결하여 採炭作業을 「반스·터커」社가 委任運営토록 하고 1980 年 7 月 9 日 現地에서 「타노마」炭鉱開發을 위한 着工式을 挙行하였다.

한편 이 炭鉱開發事業에는 總 73,499 천 「달러」가 所要되는데 이러한 投資資金의 約 70 %에 해당하는 51,748 천 「달러」를 当行이 支援키로 하였고 1,320 천 「달러」는 美国의 「시티뱅크」가 融資하고 나머지 855 천 「달러」는 浦項綜合製鉄株의 自己資金으로 充당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当行은 貸出金利 年 7 %, 貸出期間 20 年으로 51,748 천 「달러」의 融資金을 開發着手後 5 년간에 걸쳐 分割引出해 주고 貸出元金は 据置期間 3 年, 据置後 17 년간에 걸쳐 分割償還받는 条件으로 1979 年 9 月 이 「프로젝트」에 대한 貸出을 正식 承認하였다. 그후 当行은 本件 鉱山開發事業이 進展되는데 따라 1979 年에 1,000 천 「달러」, 1980 年에 1,209 천 「달러」, 그리고 1981 년에는 3 월현재까지 877 천 「달러」의 貸出을 執行하였다.

浦項製鉄株의 이 「프로젝트」의 成事は 外国企業과의 合作投資가 아닌 우리나라

企業의 全額投資 事業인 동시에 우리나라 最初의 海外鉍山開發事業으로서 今後 海外鉍山開發의 試金石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큰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當行의 立場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資金支援은 創立以來 最大規模의 海外投資資金貸出인 동시에 最初의 海外鉍物資源開發 支援金融으로서 海外投資支援分野에 있어서의 當行의 金融支援 經驗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意義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濠洲의 「드레이톤」(Drayton) 炭鑛 開發事業

1970 년대 중반이후 政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石油依存度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에너지資源의 長期安定的인 확보를 위해 民間「레벨」의 海外에너지資源開發 輸入을 적극 권장하여 왔다. 이러한 政府의 方針에 호응하여 國內石炭開發会社인 大成炭座開發株式會社와 綜合貿易商社인 現代綜合商事株式會社は 海外의 石炭開發 輸入地域을 調査하던 중 濠洲의 「뉴·사우스·웨일즈」洲 (New South Wales) 「드레이톤」炭鑛開發을 위하여 開發될 有煙炭의 長期販賣처를 물색하고 있던 濠洲의 「셸·오스트레일리아」社 (The Shell Company of Australia Ltd.) 및 「디스·브로스」社 (Thiess Bros, Pty. Ltd.) 와 이에 관한 商談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韓國電力株式會社は 1983 년 竣工稼動될 高亭火力發電所의 發電用 有煙炭의 長期供給源을 찾고 있었다. 이에 의거 大成炭座社와 現代綜合商事社는 「셸·오스트레일리아」 및 「디스·브로스」社와의 교섭결과 1979 년 2 월 韓國에 대한 「드레이톤」炭의 販賣를 責任진다는 條件으로 本件 炭鑛開發事業에 直接参与한다는 基本原則에 合意하였다.

그후 現代綜合商事社와 大成炭座社는 韓國電力社側과 開發輸入될 有煙炭의 長期供給契約 締結을 추진하는 한편 現地踏査, 開發事業에 대한 参与比率의 決定, 當局으로 부터의 海外投資許可取得 등 開發事業参与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炭鉍開發「프로젝트」의 概要를 살펴보면, 濠洲의 鉍業專門会社인 「디스·홀딩」社 (Thiess Holding Ltd.)의 子会社인 「디스·브로스」社가 總投資額의 51%, 「로얄·더치·셸·그룹」 (The Royal Dutch Shell Group)의 「셸·오스트레일리아」社가 39%, 日本의 三井海外鉍業株式会社 (Mitsui Mining Overseas Co. Ltd.) 및 三井物産株式会社 (Mitsui & Co. Ltd)가 각각 3% 및 2%, 그리고 우리나라의 現代綜合商事(株) 및 大成炭座(株)가 각각 2.5%씩을 投資하여 推定埋藏量 218.7백만톤의 「드레이톤」炭鉍을 非法人同業組合 (Co - venture)形式으로 開發하고 各參加当事者は 参与持分率에 따라 生産物を 現物로 分与받는 事業이다. 이 「프로젝트」의 總投資計劃規模는 138.4백만「달러」이며 事業豫定期間은 1980 - 2002년간에 걸친 23년간이며 生産된 有煙炭의 80~90%는 韓國, 日本, 유럽 등에 長期供給契約으로 販売되고, 残余分은 濠洲内에서 自体消費 또는 東南亞 現物市場에 販売키로 되어있다.

이 開發事業의 基本計劃이 확정됨에 따라 現代綜合商事(株) 및 大成炭座(株)는 濠洲에 現地法人을 設立하여 각각 4,558천「달러」를 이 炭鉍開發事業에 投資키로 하고, 兩社가 分配받을 石炭을 1983년 150천톤, 1984년 300천톤, 1985 - 92년간 每年 500천톤을 韓電(株) 高亭火力發電所에 供給하기로 1980년 7월 韓電(株)과 正식으로 長期供給契約을 체결하였다.

한편 当行은 위 兩社の 이러한 開發輸入計劃을 효율적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開發着手에 필요한 開發参与社間의 正式共同開發契約이 체결되어 兩社の 開發参与가 실시 될 때에는 위 兩社에 대하여 投資資金을 貸出해 줄 것을 1980년 8월에 豫備承認하였다. 따라서 兩社の 開發計劃이 計劃대로 진척되는 경우, 各社는 投資計劃額의 約62.5%에 該當하는 2,847천「달러」를 貸出期間 10年, 年利率 8%의 条件으로 支援받을 수 있을 것이다.

現在 兩社は 現地法人設立을 완료하고 共同投資者들과의 正式 開發計劃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따라 1981년부터는 投資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民間企業이 少額의 資本으로 이러한 「드레이톤」炭鉍開發事業에 參與함으로써 우리나라는 国内埋藏量이 전혀 없는 發電用 燃料炭의 상당량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民間企業도 世界的인 資源開發專門企業과 資源開發事業을 共同遂行케 됨으로써 資源開發經驗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本件 「프로젝트」는 今後 資源富國인 濠洲에서의 資源開發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進出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 할 것이다.

5. 其他 附帶業務

当行은 各種 資金의 貸出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附帶業務로서 先受金還給保證, 契約履行保證 및 對外支給保證業務등을 取扱하고 있는데 이는 当行法 第18条 第3項의 規定에 의거 法 第18条 第1項 및 第2項의 업무에 附帶되는 것으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취급하고 있다.

가. 先受金還給保證

外國의 契約当事者が 우리나라의 輸出契約者에게 先受金を 지급할 경우 先受金を 받은 輸出契約者가 当該 契約書대로 契約履行을 못하게 될 때 輸出目的物の 引渡前에 受領된 先受金を 当行이 外國의 契約当事者에게 환급할 것을 保證하는 制度이다. 이의 取扱根拠로는 財務部長官으로부터 이 業務取扱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1977년 5월 2일 第16次 当行의 業務方法書改正時 포괄적으로 承

認받았다.

나. 契約履行保證

当行이 當行法 第18条 資金取扱時 当該契約書대로의 履行 및 關係契約書에서 요구하고 있는 諸般保證事項에 대하여 当行이 外國의 輸入者에게 保證하는 制度이다. 이의 取扱根拠도 先受金還給保證業務의 取扱承認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1977년 7월 1일 第19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이를 包含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취급하게 되었다. 중전에는 同一한 延払去來에 대하여 이러한 契約履行保證과 先受金還給保證을 市中銀行이 하고 当行은 資金支援만을 하던 것을 当行도 이를 取扱하게 됨에 따라 当行은 輸出資金支援業務에 대하여 一元化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다.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債務保證

최근 延払輸出支援資金의 需要가 급증됨에 따라 제한된 当行資金만으로는 効率的이고 충분한 輸出支援資金을 供給하기에는 부족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資金負擔이 없는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對外支給保證業務를 취급하여 이들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融資토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当行이 이러한 對外支給保證業務를 취급하기 위한 法的根拠를 마련키 위해서는 当行法을 改正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이를 위한 改正節次가 번잡하고 상당한 時日을 요하게 되어 있어 當行法 第13条 第3項에 의한 附帶業務로서 이를 취급코자 第28次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이를 반영하여 1981년 2월 6일에 財務部長官承認을 받아 취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當行은 外國金融機關에 支給保證을 할 수 있으므로, 美國의 「레버리지」

리즈」 (Leveraged Lease) 制度를 利用하여 美国銀行에 当行이 支給保証해 주고 同銀行으로 하여금 資金을 支援케 하여 船舶 등 重化学製品輸出을 추진할 수도 있고, 英国등의 租税節減制度(Tax Sparing Scheme) 등을 활용하여 外国金融機關으로 부터 低金利로 協調融資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며, 또한 当行이 外国購買者에게 直接貸出時 外国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를 提供할 수도 있게 되었다.

라. 外國換 및 事後管理

(1) 外國換

(가) 甲類外國換銀行으로서의 機能

当行은 当行法 第30条에 의거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적용에 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当行은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規定에 따른 外國換業務를 영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한편 外國換銀行으로서의 区分에 있어서는 1976년 10월 5일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甲類外國換銀行으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다.

다만 그 業務의 範圍에 관하여는 当行은 다른 外國換銀行과의 競争을 피하기 위하여 当行의 輸出支援金融에 부대되는 外國換業務만을 提供하도록 하고 있다.

(나) 取扱業務

当行이 提供하는 外國換業務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① 輸出入業務 및 同 附帶業務

輸出入承認, 輸入信用狀開設 및 船積書類引渡, 輸出信用狀通知, 協調金融機關에 대한 支給保証등이 이에 속한다.

② 当行 内國信用狀業務

当行은 内國信用狀業務를 提供하기 위하여 1978년 5월 16일에 “ 韓國輸出

入銀行内国信用狀取扱規程”을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다. 이 規程에 의하여 當行은 當行所定内国信用狀의 開設과 그 어음의 買入業務를 취급하고 있다.

同業務를 取扱함으로써 當行이 支援하는 輸出契約書 또는 輸出信用狀에 의한 輸出用原資材의 国内調達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輸出物資의 生産供給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③ 産業設備輸出促進法上の 委託業務

當行은 産業設備輸出促進法(第15條)과 同施行令(第18條)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그 權限을 當行에 委託한 国内生産機資材의 搬出確認 및 産業設備設置地域으로 直接 船積되는 外國機資材의 輸入承認業務를 취급하고 있다.

(2) 事後管理

當行의 貸出債權에 대한 事後管理은 이를 引渡前金融과 引渡後金融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兩者는 그 目的, 対象과 手段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前者의 경우에는 当該「프로젝트」가 所定期日內에 計劃대로 引渡되도록 유도하는 側面에서 이루어지고, 後者の 경우에는 當行의 債權에 대한 적절한 保全措置와 貸出金の 回收가 主眼點이 되고있다.

그런데 當行의 債權은 다음과 같은 管理上の 特別한 面貌를 가지고 있다.

즉 當行의 貸出債權은 그 債務者가 内外國에 걸쳐 다양한 人格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管理対象地域은 全世界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対象去來에 적용되는 法規도 다양하여, 많은 나라의 實體法과 節次法이 準拠法으로 指定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債權의 保全, 行使를 위하여 또는 債務不履行이 발생된 債權의 回收를 위하여 多角的이고 專門的인 管理方法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가) 引渡前金融

支援「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当行은 「프로젝트」遂行上の 工程에 의거 適正한 資金이 投入되도록 하기 위하여 資金執行基準(例: 船舶建造資金執行基準)을 設定하고 이에 의거 資金執行計劃을 樹立, 所要 内外資를 適期에 支援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工程管理, 「프로젝트」의 管理, 資金管理 등을 통하여, 支援資金의 使用關係를 点檢, 規制함으로써 所定期日內에 当該 「프로젝트」가 完工・引渡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 引渡後金融

引渡後金融의 事後管理는, 当行의 債權이 約定된대로 回收되도록 하고, 또한 完工 또는 引渡된 「프로젝트」가 正常運營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적정하게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中長期延払債權을 保有하거나 또는 担保로서 讓受하고 있는 当行으로서는 当該 約束어음과 支給保証書등이 差跌없이 支給, 履行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延払代錢에 의하여 当行의 債權이 계획대로 回收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当行은 事後管理에 필요한 資料를 綜合적으로 蒐集, 作成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債權推尋을 위한 國際間의 所定節次를 適期에 履行하고 있다.

그리고 支援「프로젝트」의 正常的運營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当行의 職員을 現地에 派遣하여 全面的 또는 部分的 管理를 담당케 할 수 있다.

특히 開發途上國에 많은 与信이 供給되고 있는 当行으로서는, 그 나라의 政治, 經濟狀況이나 對外政策 또는 그 變動에 따라 直接・間接으로 많은 影響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對處한 檢討와 措置를 多角的

으로 취함으로써, 債權의 回收不能事態를 事前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6. 主要 延拂輸出支援制度의 變遷

가. 概觀

우리나라는 延払輸出과 海外投資에 관한 重要政策을 樹立 내지 審議하기 위한 制度的인 裝置로서 政府內에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를 設置하고 있으며 當行內에는 業務與信運營등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하는 運營委員會를 두고 있다. 한편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에 關聯된 基本的인 規程으로서는 當行法 第29條에 의거한 業務方法書를 들 수 있다.

특히 業務方法書는 當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 融資比率, 利率, 料率, 貸出期限등의 業務方法을 記載한 規程으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1969년 10월 27일 制定되어 當行設立 以前 韓國外換銀行의 業務代行期에 12차 改正하였고, 또한 當行設立이후 1981년 5월말현재까지 17차의 改正(總 29次 改正)을 거치는 동안 그때 그때의 延払輸出支援 및 資金供給方向을 반영하여 왔다.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는 外國에 대한 無償援助, 延払輸出, 投資등에 관한 政府의 基本方向과 重要政策 및 年間計劃의 樹立·調整을 目的으로 1976년 11월 24일 大統領令 第8284號로 設置되었으며 종전의 經濟長官懇談會나 經濟長官協議會를 代替하여 法的으로 設置된 機構이다.

同委員會는 當行業務와 關聯하여 同委員會規程 第2條 및 同 運營細則 第3條에 의거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을 樹立하고 있는바, 1977년과 1978년에는 輸出入銀行 運營方針을 議決하여 當行運營에 대한 基本方向과 支援基準 및 方法, 資金

別 支援指針 및 方法등을 規定하였고, 1979년, 1980년 및 1981년에는 延払輸出 및 海外投資計劃을 議決하여 延払輸出支援政策의 運用方向등을 결정하였다.

그밖에 主要指針으로는 1978년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船舶延払輸出과 관련한 資金支援指針과 1979년의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 1980년의 協調融資에 대한 基本運營方針, 등으로 業務方法書의 規定을 보완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선하여 시행되기도 하였다.

나. 延拂輸出 去來要件의 變遷

(1) 先受金

先受金の 일반적인 概念은 當該去來의 確실한 이행을 위하여 契約發注者로 부터 一定金額을 契約初期에 受領하여 製作資金의 一部로 充당하는 金額을 말하며 한편 이에 의거 契約受注者는 契約發注者에 의한 契約取消의 억제효과를 얻게도 된다. 當行設立初期에는 中長期 信用供与라는 生소한 當行業務때문인지 短期 輸出金融만을 취급하여온 輸出業體의 實務者들은 當行의 契約書上 具備要件의 하나인 先受金を 信用狀上的 「레드·크로스」(red clause)나 着手金등과 혼동하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31일 業務方法書 改正時에 이를 반영하여, 先受金の 定義를 “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受領되는 金額” 이라고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當行設立初의 用語의 혼동은 先受金에만 한하지 않고 一覽払去來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一覽払去來의 定義도 1979년 1월 12일 業務方法書改正時 “去來目的物の 引渡完了時까지 當該輸出契約金額중 瑕疵保証 등의 事由로 未回収되는 分을 除外한 全額이 入金되는 去來” 라고 規定하였다.

船舶 延払輸出契約의 경우 先受金은 契約時, 竜骨配置時, 進水時, 引渡時 各各 輸

出契約金額의 5%씩 約 20%정도를 내는 것이 國際商去來의 一般的인 慣習으로 나타났다.

當行設立初期에는 支援対象品目の 区分없이 輸出価額の 20%를 先受金으로 受領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이를 適用하여 왔으나, 1977년 1월 1일 業務方法書의 同 条件을 變更시킴에 따라 이를 品目別로 区分하였는 바 技術蓄積이 미약한 「플랜트」輸出을 장려하기 위하여 「플랜트」輸出去來에 대하여는 15%로 引下하였고, 船舶輸出은 當時 造船景氣의 好況을 반영하고 양호한 去來를 選別支援하기 위하여 去來慣例에 비주어 25%로 引上하였다.

그러나 그후 船舶輸出의 先受金率은 造船景氣의 沈滯 및 受注競争上 先受金率이 낮아지고 있는 実情을 감안하여 1980년 1월 1일자 改正으로 종전 계약금액의 25%에서 20%로 낮춤으로써 「플랜트」輸出의 15%를 除外하고는 모든 品目에 대하여 先受金率은 20%로 調整하였는 바, 同 比率에 의한 金額을 各各 “基準先受金” 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基準先受金을 受領하지 못하는 去來라도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및 開拓과 國際収支 改善에 현저히 寄与하는 것으로서 金融支援이 특히 緊要하다고 運営委員会(1979년 8월 31일 부터는 理事会)가 認定하는 경우에는 例外取扱이 可能하다.

當行 資金支援実績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船舶延払輸出 실제거래의 先受金率의 推移를 보면 當行設立 當時는 우리나라 造船産業이 草創期로서 船舶受注競争上 先受金率을 낮게 提示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1979년 말까지 當行支援 延払輸出去來의 總承認 31件 가운데 基準先受金率 25%이상 金額을 受領한 去來는 단지 2件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例外取扱하였으나, 1980년 1월 18일부터 基準先受金率을 20%以上으로 調整한 결과, 1980년 1월부터 1981년 3월 말까지 總承認 18件 모두 이에 符合되고 있다.

(2) 延拂金利

延払輸出契約에 의해 輸出者が 去來相手方으로부터 延払期間동안 徴収하는 延払金利는 当行 貸出金利이상으로 하도록 業務方法書에 規定하여 우리나라의 輸出者가 外國의 輸入者로 부터 徴収하는 延払金利와 当行에 支払하는 貸出金利間の 逆金利로 인한 輸出者の 資金負擔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当行設立初期에는 当行의 貸出金利와 外國輸入者로 부터 徴収하는 延払金利를 各各 별도로 規定하였으나 1979년 1월 12일 부터는 当行 貸出利率의 變動에 따라 延払金利의 變動을 可能케 하기 위하여 外國輸入者로 부터 輸出者가 徴収하는 引渡後金融의 貸出利率이상으로 하도록 規定하였다.

(3) 延拂期間

延払期間은 輸出目的物の 引渡完了後 先受金を 除外한 残額の 償還期間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当行 設立時에는 支援対象品目에 대한 区分없이 10년 이내로 한정하였고, 輸出資金貸出 및 技術提供資金貸出의 引渡前後 金融期間을 通산하여 運営委員會의 議決이 없이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977년 1월 1일 부터는 部品類등이 支援対象品目으로 추가됨에 따라 輸出価額 백만 「달러」를 基準으로 하여 輸出価額別, 品目別로 구분하여 延払期間에 差等を 두었다. 즉, 輸出価額 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플랜트」는 10년 이내, 船舶은 8년 이내, 機械類・電氣機器・鐵道車輛・其他製品은 5년 이내, 버스를 包含한 自動車는 3년 이내, 部品類는 3년 이내로 各各 規定하였다.

그러나 鐵道車輛의 경우는 当初 最長 5년으로 정하였으나, 耐久年數가 15년이며 과거 当行支援実績도 8년~13년으로 例外取扱하였으며, 平均10~15년의 延払期間을 허용하는 先進國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1979년 5월 15일부터는 「플랜트」 輸出과 같이 10년까지로 延払期間을 연장하였다.

重化学工業製品の 国際競争力強化를 위한 方針의 一環으로 1979년 1월 1일 부터는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 機械類 및 電氣機器의 경우 5년 이상의 長期延 払輸出去來에 대하여는 引渡後 2년 이내의 据置期間을 認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船舶이나 鐵道車輛등의 경우에는 引渡後 곧 바로 收入이 발생하여 延払代錢의 償 還이 가능하므로 1981 년도부터는 当行 貸出金の 早期償還을 위하여 「플랜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資金支援業務運營上 据置期間을 認定하지 아니하고 있다.

1979년 5월에는 据置期間에 대한 概念을 定立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業務方 法書에 그 定義를 規定化하려는 試圖가 實務者級線에서 檢討된 바도 있었다.

즉 輸出資金貸出의 据置期間은 引渡後金融의 貸出取扱日로 부터 当該去來의 最初 分割償還前日까지의 期間으로 보며, 한편 海外投資資金貸出은 当該投資에 소요되 는 資金의 貸出이 완료된 날로부터 最初 分割償還前日까지의 期間으로 정하려 하 였다. 그러나 据置期間의 定義는 細部 技術的인 문제점등에 관하여 再檢討後 정 하기로 하고 保留되어 결국은 종전과 같이 引渡後金融取扱 또는 海外投資資金 貸出 日로 부터 起算하여 所定の 据置期間을 두고, 据置期間 完了日로 부터 每 6개월 또는 1년마다 分割償還한다는 表現方式을 계속 적용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라 現行 据置期間算定方式은 理論上으로는 異論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支給保證

当行支援 延払輸出去來의 延払輸出代錢은 当行의 立場에서 볼 때 一次的으로 또 한 直接的으로 当行 貸出金에 대한 償還財源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當行設立時 부터 延払代錢 回収에 대한 債權 保全策으로는 輸入国の 政府機關이 直接 支給 保証하거나 外国 一流銀行의 支給保証書 또는 信用狀을 徵求하는 것을 要件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처럼 對外支給保証書의 發給이 国家政策的으로 금지된 경우의 延払輸出去來에 대한 金融支援은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例外取扱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1977년에 들어와 当行 資金支援을 받는 延払輸出去來의 대부분이 開發途上國에 이루어짐에 따라 輸入者가 外國 一流銀行의 支給保證書를 提供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輸入國 金融機關의 支給保證書도 1977년 1월 1일부터 延払債權의 確保手段으로서 追加로 認定되었고 또한 運營委員會(1979년 8월 31일부터는 理事会)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例外取扱도 가능하게 되었다.

對필리핀의 通信「케이블」輸出, 對케냐의 管い음쇠 제조시설輸出, 對수단의 建設工事, 對가나의 船舶 및 機械類 輸出에 대한 金融支援은 債權保全策으로서 外國의 一流銀行의 支給保證이 아닌 當該國金融機關의 支給保證에 의거 이루어졌다. 1979년 11월에는 輸入者의 母企業이 支給保證한 事例도 있는 데 이것은 當該企業이 世界有數 大企業인 英國의 「셸」그룹으로 다른 一流銀行의 支給保證 못지 않게 높은 公信力을 認定받았기 때문이다.

外國 一流銀行의 基準에 대하여는 外國銀行과의 換去來 契約時 納入 또는 發行資本金, 準備金, 剰余金 및 未配当金の 合計額인 純資産額이 1억「달러」 이상인 銀行을 A級銀行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準用하여 왔다.

当行은 貸出金을 早期回収하여 延払輸出支援資金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1977년 6월에는 船舶輸出去來에 대한 当行貸出과 관련하여 担保로서 当行이 保有하고 있는 141백만「달러」 및 72백만 「스웨덴·크로나」輸出어음을 國際金融市場에서 売却한 実績이 있다. 이와같은 事例에 따라 1980년 7월부터는 當該去來의 어음이 國際金融市場에서 売却이 容易하도록 純資産額 2억「달러」이상 또는 OECD 國이나 香港에 主事務所를 두고 있는 純資産 50백만「달러」이상의 金融機關의 支給保證이나 國別信用度評價基準으로 C級이상인 國家의 政府 또는 中央銀行의 支給保證이 있는 去來를 우선 支援하고 있다.

(5) 外資材依存率

当行의 輸出資金支援対象品目を 製造時 国産機資材의 使用率을 높혀 나감으로써 産業聯関効果を 提高시키기 위하여 一定率의 外資材依存率을 정하고 一定率以上の 外資材의 使用을 억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12월 22일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議決한 “1977년도 韓國輸出入銀行의 資金支援基準”이 마련된 때부터 이며, 이에 의거 船舶의 경우에는 外資材依存率(外資材輸入金額의 輸出金額에 對한 比率)이 40%이하, 其他品目は 30%이하로 규정되었다.

한편 1977년 5월에는 部品類가 支援対象品目으로 추가됨으로써 部品類에 對한 外資材依存率은 25%이하로 정하였다.

同委員會가 “1978년 輸出入銀行 運營指針”에 의거 이에 관한 사항을 運營委員會에 委任함에 따라 1978년 5월 16일에는 輸出資金 支援對象品目에 對한 基準外資材依存率을 運營委員會에서 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外資材依存率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전의 基準外資材依存率의 算出根拠가 불명확하였고, 우리나라의 延拓輸出이 아직도 初期段階로서 外國輸入者가 使用資材를 外國産으로 指定하는 등 購買者市場에 의하여 主導되고 있으며, 또한 關聯工業의 落後性 및 치열한 國際競爭을 고려하여 合理的인 外資材依存率을 設定해서 輸出도 増大시킴과 아울러 輸出品目的 國産化 促進을 유도하는 등 延拓輸出의 基盤充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이 마련된 外資材 依存率은 契約金額(FOB 價格)에서 外資材 輸入額(CIF 價格)이 차지하는 百分比로 表示되며 船舶은 56%이하, 「플랜트」 50%이하, 部品類 25%이하, 其他製品 50%이하로 정하였고, 國內生産이 불가능하여 外資材使用이 불가피하거나 輸入者가 契約書上에서 特定시킨 경우등 부득이한 事由로 同比率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취급하도록 하였다.

「플랜트」는 所要機資材를 国内에서 輸出하거나 第3国에서 輸入하여 現地에서 直接製作되는 것이 일반적인 形態이므로 소요되는 輸入機資材를 国内에서 規制하여 外資材依存率을 算定하기에는 実務上 어려움이 있고, 또한 50 %이하로 「플랜트」 業種の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함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1979년 6월 15일 運営委員會에서 정한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에서 国産機資材가 海外로 輸出되는 側面에서 파악하여 「플랜트」에 대하여는 業種에 따라 15 % ~ 37 %까지 差等算定한 国産機資材率을 별도로 적용하게 되었다.

(6) 決濟通貨

輸出資金貸出을 支援받는 輸出去來의 輸出代錢은 外国換管理規程에 정한 指定通貨로 償還하도록 業務方法書에 規定되어 있다. 그런데 海外投資開發을 위한 海外投資事業의 경우에는 当該事業에서 生産되는 資源등의 現物로 償還코자 하는 事例도 발생하였다.

1979년 11월 10일의 業務方法書改正으로 중전 償還通貨로 규정된 指定通貨를 指定領收通貨로 文言을 整理하였고, 동년 11월 16일에는 貸出取扱規程 第99条에 따라 當時 当行이 韓國外換銀行에 当座口座로 開設하고 있는 通貨인 美「달러」, 「도이치·마르크」, 「스웨덴·크로나」 및 「사우디·리알」을 輸出代錢의 決濟通貨로 指定하였다.

上記 4個国 通貨이외에 決濟通貨의 追加選定은 融資申請去來에 대한 貸出審査時 國際經濟与件등을 감안하여 市場率이 揭示되는 OECD 国 通貨中에서 필요한 경우 每件別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7) 例外取扱 去來要件 承認機關

앞에서 言及한 延払輸出契約上の 具備要件인 先受金率, 延払金利, 延払期間,

支給保証 등에 대하여 当行設立初에는 当該 輸出이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開拓, 또는 海外經濟協力の 増進과 國際収支 改善에 現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金融支援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어 運営委員會의 議決을 얻은 경우에는 業務方法書에 規定된 各各의 去來要件에 대한 例外取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輸出資金貸出 및 技術提供資金貸出時의 主要 去來要件에 미달되는 例外取扱의 承認機關이 1979년 8월 31일 第24次 業務方法書改正으로 運営委員會에서 理事會로 변경되었다.

이는 運営委員會가 원래 当行의 業務運營 및 管理에 관한 基本方針을 수립하는 機關이므로 個別 「프로젝트」에 대한 貸出審査는 当行 業務의 基本方針 樹立機關인 運営委員會에서 決定하기 보다는 当行의 重要業務執行機關인 理事會에서 決定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理事會는 延払輸出去來要件이 当行法, 施行令 및 業務方法書에서 정하고 있는 支援基準에 符合与否를 檢討한 후 규정범위 내에서 이를 必要에 따라 彈力的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当行은 自體의 책임감 있는 業務處理와 承認節次의 간소화로 与信支援制度의 効率化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로써 理事會는 대부분의 与信에 대한 支援与否를 결정하는 承認機關으로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融資條件의 變遷

(1) 融資對象品目

当行 資金의 支援對象品目は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인 船舶 및 車輛을 포함한 産業施設과 이를 위한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附屬品과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現저히 기여하는 商品으로서 外貨稼得率이 높

은 品目과 一般輸出去來秩序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中에서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製品이다. (當行法施行令 第13條).

財務部長官의 指定品目은 當行 設立前인 1975년 11월 13일 一般機械 및 機械製品, 裁縫機, 有線通信機器와 開發途上國에 대한 6월이상 2년이내의 短期延 払輸出促進을 위한 잠정적인 支援策으로 指定된 品目으로서 시멘트, 타이어類, 魚 網 및 綿絲類등이 指定되었으며 1977년 1월 5일에는 自動車製品 및 建設重機 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輸出製品의 多樣化로 多種의 重化學工業製品의 品 目指定을 하나 하나 열거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기에는 實務上 번잡하여 어 려움이 많아 1977년 5월 2일부터 施行된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支援対象品目的 명칭변경 및 部品類의 品目追加와 함께 財務部長官으로부터 當行法施行令 第13 條 2號의 規定에 의한 品目指定으로서 包括적으로 이를 承認받게 되었다.

이 當時는 當行設立이후 1년미만의 業務 草創期였으므로 支援実績品目은 주로 船舶에 한정되어 있었고, 重化學工業 全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앞으로 當行 資金支援이 필요한 重化學工業製品을 미리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解決方案으로서 關稅行政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關稅協力理 事會 品目分類集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CCCN) 을 援用하여 家庭用, 事務用, 娛樂用을 除外한 CCCN 第84類 및 第85類의 機械類 와 電氣機器, CCCN 第87類의 鐵道用以外的 車輛을 중심으로 財務部長官의 指定 品目を 폭넓게 정하였고, 다만 國際競爭入札에 있어서 延払條件에 의한 輸出이 불 가피하다고 認定되는 資本財에 대하여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支援対象品目を 定하도록 하였다.

한편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支援対象品目으로서 즉 “當該 去來의 輸入者

가 外國政府인 경우로서 그 去來의 海外市場 開拓度 및 對外經濟協力 寄與度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支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 支援키로 議決된 去來品目”이란 표현으로 1978년 4월 26일에 品目이 追加指定되기도 하였으며 동년 5월 23일에는 CCCN 7321號의 鐵構造物과 CCCN 8608號의 「콘테이너」가 支援對象品目으로 財務部長官의 追加指定品目이 되었다. 그동안 業務取扱過程에서 産業施設과 「플랜트」의 用語가 혼동되어 産業施設은 「플랜트」, 船舶, 鐵道車輛등을 포함하는 概念으로 使用하고 있었는데 1979년 11월 10일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業務方法書上의 支援對象品目중의 産業施設이란 用語를 「플랜트」로 변경하였다.

支援對象品目으로 防衛産業系統의 品目도 새로이 追加해 줄 것을 要請하는 事例가 그 후에도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當行의 支援去來는 基本的으로 戰略的의 去來가 아닌 商業的 去來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國際間의 政治的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品目の 去來에 대하여는, 當該去來의 支援으로 말미암아 餘他支援去來의 一部地域에 대한 進出이 制約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品目指定에 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融資比率

當行設立初期의 輸出資金貸出의 融資比率은 品目에 따라 區別하지 아니하였으며, 輸出目的物의 引渡前製作에 필요한 引渡前金融(限度)은 輸出代錢中 融資実行前에 90% 範圍內에서 實際所要되는 資金으로 하였고, 이를 生産集荷등에 필요한 原料資金과 外資材 輸入을 위한 外貨資金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에서 실제 소요되는 金額의 全額으로 하였다. 貸出形式에 있어서 引渡後金融도 創立初에는 原料表示證書貸出로 하였으나 1976년 8월 2일 부터는 延払期間동안의 換「리스크」를 배제하여 當行 資産의 健全

化를 도모코자 外貨表示証券貸出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77년 1월 1일부터는 融資比率을 品目別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 바 引渡前後金融에 따른 구분없이 「플랜트」 및 船舶은 殘額에 대하여 80%, 一般機械 및 鐵道車輛과 其他製品은 75%로 하였고, 동년 5월 部品類를 融資対象品目으로 追加指定함에 따라 이에 대한 融資比率은 70%로 정하였다.

融資金額의 算定方法의 變更推移에 대하여 살펴보면, 1977년에는 “1977년 輸銀業務運營指針”에 따라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基準先受金率 該當額을 控除한 殘額에 대하여 所定 融資比率을 適用하여 融資金額을 算定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重化学工業製品의 國際競爭力이 약해 輸出이 부진하였고 實際의 延払輸出에 있어서의 先受金率도 業務方法書에서 정한 基準先受金率에 미달되는 것이 대부분인 관계로 實際 受領하는 先受金이 아닌 基準先受金을 控除하는 방식에 의한 融資金額算定方法에 따르는 경우에는 輸出者가 受惠할 수 있는 實際 融資比率이 결과적으로 낮게 됨으로써 自己資金 負擔率이 커지게 되어 輸出業界로 부터 이에 대한 改善要請을 받게되었다.

이와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1978년 9월 1일부터는 當該 輸出契約金額에서 實際: 受領한 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에 대하여 融資比率을 적용하여 融資金額을 算定하도록 理事会議決에 의거 融資金額 算定方法을 변경시행하였다.

한편 1979년 1월 1일부터는 重化学工業製品輸出基盤을 확충하고 輸出者의 自己資金 負擔을 경감하기 위하여 引渡前金融에 있어 「플랜트」, 船舶은 融資比率을 80%에서 90%로, 鐵道車輛, 機械類, 電氣機器는 75%에서 90%로 各各比率을 인상 하였다.

또한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輸出者의 自己資金 負擔率을 낮추어 國際競爭力이 強化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所定融資比率을 초과하여 資金을 支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동년 9월 3일에 議決된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의 “船舶輸出에 대한 資金支援 指針”에 의하면 船舶輸出增大에 따른 輸出者의 自己資金 負擔輕減을 위하여 船舶輸出에 대한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을 100 %까지 높여 船舶輸出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當行은 동년 11월 10일 業務方法書를 改正함으로써, 主要 先進國의 延払輸出支援機關이 一般商業銀行과의 協調融資로써 所要資金의 100 %까지 融資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當行도 延払輸出去來에 대한 協調融資實施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船舶뿐만 아니고 全品目的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도 延払輸出去來의 所要資金 全額을 支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當行은 協調融資實施의 基盤을 造成하고 한편 輸出者에 대하여는 自己資金負擔이 없어짐으로써 資金力이 강화되는 效果를 주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背景에 따라 1980년 1월 18일 業務方法書가 改正됨으로써 外國換銀行과의 協調融資制度가 正式으로 導入되어 輸出資金의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輸出契約金額에서 先受金을 공제한 殘額을 協調融資로서 全額輸出者에게 支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우 當行의 融資比率은 品目区分없이 80 %로 하고, 한편 先受金 및 當行融資金額을 除外한 殘余金額은 協調融資 金融機關에서 貸出하는 것으로 되었다.

한편 1979년 말경부터 1980년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輸出船受注의 增加에 따라 當行의 延払輸出資金에 대한 需要가 급격히 增加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財源調達이 여의치 못하여 制限된 當行 資金을 効率的으로 配分하여 많은 延払輸出去來를 支援하고 또한 當行資金에 대한 需要를 節減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에만 適用實施하던 協調融資制度를 1980년 7월 10일 第

27次 業務方法書 改正으로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前金融과 技術提供資金貸出에 까지 擴大適用기로 하였다.

協調融資에 따라 當行의 融資金額은 引渡前金融에서는 所定融資比率內에서 元貨所要資金에 한정되고, 引渡後金融에서는 종전 80%에서 70%比率로 引下한 融資比率를 適用한 金額이 되며, 반면 協調融資 金融機關은 引渡前金融에서는 外貨所要資金을, 그리고 引渡後金融에서는 先受金과 當行支援分을 제외한 殘額을 貸出하도록 하였다.

또한 協調金融의 取扱對象機關도 범위를 넓혀 종래의 國內金融機關에 추가하여 綜合金融會社, 外國銀行 등으로 擴大하였으나, 市中銀行들은 協調融資의 外貨貸出이 各行의 與信限度外로 許容되지 않음으로써 自行 高 유업 務의 與信限度가 축소되므로 當行과의 協調融資 參與를 忌避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81년 5월 말 현재 長期信用銀行과 6個 綜合金融會社 全部 및 16個 外國銀行 國內支店이 當行과 協調融資에 관한 基本協定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技術提供資金貸出의 融資比率는 종전에는 輸出資金 貸出의 「플랜트」에 준하여 80%로 하였으나 1979년 1월 1일 부터는 「플랜트」의 融資比率이 90%로 引上되는데 반하여, 技術提供資金은 技術用役 專門企業의 技術水準이 미약하여 單純勞務가 차지하는 比重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協調融資의 경우에 當行의 融資比率는 技術提供後金融에서는 70%로 정하였다.

海外投資資金貸出의 경우는 當行設立時 부터 所要資金總額의 80%範圍內로 當行 融資比率를 정하였으나 協調融資制度의 擴大實施에 따라 1980년 7월 10일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海外投資資金貸出의 當行融資比率도 引渡後金融의 融資比率에 맞추어 70%範圍內로 引下하였다.

(3) 融資期限

當行資金의 貸出期限은 當行設立初期에는 當該去來의 支給保證書, 信用狀 또는

關係契約書에 約定된 分割償還計劃의 分割償還日에 30 일을 가산한 期間內로 하되 引渡前後金融을 통산하여 10 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었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에 長期間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득이 例外取扱을 해야 될 경우에는 運営委員會의 議決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限定된 當行財源의 效率的인 運用과 協調融資制度의 活性化를 위하여 1980 년 7 월 10 일 業務方法書를 改正함으로써 協調金融機關의 融資期限은 當行의 融資期間과 동일하게 되도록 協調融資에 대한 基本運營方針에 規定하였으나, 協調金融機關인 一般商業金融機關이 當行 融資期間과 동일하게 引渡前金融 2 년, 引渡後金融 8 년의 長期金融을 融資取扱하기에는 財源調達의 確保등 資金負擔面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와같은 融資期間에 대하여 協調金融機關, 특히 市中銀行들은 改善을 要請해왔다.

이에 따라 1980 년 12 월 26 일에는 同 基本運營方針을 변경하여 引渡後金融에서 協調金融機關의 融資期限을 5 년이상으로 단축하여 協調融資制度의 보다 圓滑한 시행과 制度定着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한편 當行은 1 個의 延払輸出去來에 대하여 通常 引渡前 및 引渡後金融으로 구분하여 融資하므로 이들의 融資期間은 別個로 봐야 한다는 뜻에서 1979 년 5 월 15 일 第 23 次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當行의 融資期間 制限規定(10 년)을 引渡前後金融에 별개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1 個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引渡前後金融으로 区分하여 資金을 支援한다 하더라도 이는 同一去來에 대한 연속적인 금융이라는 취지에서 當該 輸出去來에 대한 融資期間은 引渡前後 金融期間을 通算하여 원칙적으로 10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1981 년 2 월 6 일 第 28 次 業務方法書 改正으로 다시 明文化한 바 있다.

(4) 貸出金利

各種 資本財 및 重工業製品의 輸出 및 海外投資를 支援하기 위한 當行의 貸出金利은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政策支援資金으로서의 特性인 長期低利의 固定金利였다.

當行 設立時부터 引渡前金融에 대하여는 生産集荷資金인 元貨所要資金의 貸出金利은 年 8%였으며, 外資材 輸入資金인 外貨所有資金의 金利은 外貨獲得用 原資材 輸入金利에 적용하는 利率로서 韓銀總裁가 告示하는 率인 $LIBOR + 2.5\%$ 였고, 한편 1977년 1월 1일 부터는 外國換管理規程上의 基準金利를 基準으로 當行 銀行長이 決定하도록 함에 따라 $LIBOR + 2\%$ 로 정하여 短期輸出金融의 外貨獲得用, 輸出用原資材輸入金融의 外貨貸出金利 水準과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外國換規程上의 基準金利가 변경될 때마다 引渡前金融의 外貨貸出金利을 理事會에서 정하였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外國換管理規程의 基準金利中 中長期 外貨資金融資의 基準金利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引渡前金融의 外貨資金貸出이 協調金融機關의 融資로서 대체되기 까지 元貨資金貸出과 外貨資金貸出間의 金利差는 현격했었다.

當行設立當時의 $LIBOR$ 는 6%線으로 元貨貸出과 外貨貸出의 金利差가 크지 않았으나, $LIBOR$ 의 계속적인 上昇으로 1979년 부터는 $LIBOR$ 가 11%를 넘어서서 固定金利인 元貨所要資金의 貸出金利과 $LIBOR$ 에 連動된 外貨所要資金의 貸出金利과의 金利差가 현격해 지자 輸出業體에서는 金利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外資材依存率을 낮추고 國產機資材를 더 많이 활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引渡前金融의 元貨所要資金의 貸出利率에 있어서는 當行設立以前の 韓國外換銀行에서의 業務代行期에는 年 7%를 적용하였으나, 1976년 7월 31일 貯蓄増大와

資金支援의 効率化를 위해 政府가 시행한 与受信金利 一部調整과 金利構造의 全般的인 改編措置에 当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貸出金利을 年 8%로 引上하였으나 1977년 2월 9일의 業務方法書改正으로 1977년중에 融資承認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重化學製品支援을 積極화 하기 위하여 業務方法書 附則의 暫定 規定으로 年 7%로 引下하였고, 同 貸出金利은 이후 1978년 1979년 동안 계속시행되어왔다.

重化學製品輸出支援을 위한 政策金融으로서 3년동안 年 7%의 金利을 暫定的으로 維持하여 왔으나 國際金融市場의 高金利 추세와 当行資金 調達費用의 增加 등으로 1980년 1월 18일 業務方法書의 改正으로 貸出金利을 年 8%로 引上하였다.

또한 이와함께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의 貸出金利을 準用하던 技術提供資金貸出의 技術提供後金融 및 海外投資資金의 貸出金利을 外國換管理規程에서 定한 中長期 外貨資金融資의 基本金利로 引上하였다.

다만, 重要物資 및 主要資源의 確保에 寄与하는 海外投資의 경우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年 8%로 하였다.

한편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의 外貨貸出金利의 변천주이를 살펴보면, 当行 設立時에는 3년~10년 사이의 期間別로 年 8%~9%의 差等金利을 釐定함으로써 延払期間의 長期化에 따라 高金利을 적용하여 延払輸出의 短期化를 유도코자 하였으나 실제로 그 実績이 극히 低조하였으며, 또한 重化學製品輸出의 主宗인 船舶輸出의 촉진을 위하여 船舶輸出支援金融에 대하여는 延払期間에 關係없이 引渡前 元貨貸出과 같이 引渡後金融의 경우에도 年 8%의 固定金利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1977년 2월 9일의 業務方法書改正으로 品目 및 期間에 關係없이 輸出資金貸出의 引渡後金融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年 7%의 固定金利을 적용하였고 이후 引渡前金融의 元貨貸出 金利과 동일하게 運用하여왔다.

한편 1979년 1월 1일부터 施行된 第22次 業務方法書 改正으로 貸出金利은

運営委員会 또는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会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년 7%이상을 適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해 6월 15일 運営委員会에서 議決한 “「플랜트」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指針”에서 外国下請参与分에 대한 貸出金利와 또한 같은해 9월 3일자 海
外經濟技術協力委員会에서 議決한 “船舶輸出에 대한 資金支援方針”에서 所定融
資比率 超過支援分에 대한 貸出金利를 当行이 國際金融市場에서 조달하는 金利水
準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船舶輸出支援金融 가운데 所定融資比率 超過分에 대한 貸出金利는
LIBOR + 1%로 정하여 運用 실시하였고, 「플랜트」輸出의 外国下請分の 貸
出金利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輸出去來가 發生된 것이 없어 실제로 實施된 事例는 없다.

延払輸出의 所要外資材를 外国延払輸出支援金融機關의 支援을 받아 延払輸入함으
로써 國際収支改善 및 한정된 当行 財源의 効率性 提高와 輸出者の 利子負担輕減
을 기하기 위한 転貸借款 導入制度가 1980년 7월 10일의 業務方法書改正으로
根拠規定이 마련되었다.

原資材 延払輸入을 위한 外国調達資金을 財源으로 하는 貸出은 当行 및 다른 外
国換銀行이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資金에 대한 当行의 貸出金利는 借入
実質金利에 연 0.5%를 加算한 金利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은 外資材의 延払輸入을 위해서 1981년 5월말 현재 当行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延払輸出支援金融機關과 總 82.1백만「달러」규모의 転貸借款
導入契約을 締結한 바 있다.

(5) 約定手数料

当行 貸出承認日로부터 實際与信이 執行되는 날까지의 未執行 貸出殘額에 대하
여 賦課되는 約定手数料는 輸出者가 製品製作을 위한 실제 所要期間이전에 受注한

후 미리 財源을 確保코자 함에 따라 야기되는 當行資金需要의 增大를 抑制하기 위한 한 方策으로 1976년 8월 2일부터 연 0.25%를 徵收하였다.

約定手数料 適用對象金額은 引渡後金融의 融資承認金額을 基準으로 하였으나 引渡前金融의 融資承認金額이 引渡後金融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基準으로 하도록 補完하여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輸出者는 約定手数料를 負擔케됨에 따라 延払契約金額이 클수록 資金負擔이 增大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延払輸出会社들 범위는 限定되어 있는 관계로 이는 一面 延払輸出의 競爭力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전반적으로 財務構造가 취약한 우리나라 輸出会社의 입장에서 볼 때 不足資金의 대부분을 市中銀行의 一般運轉資金貸出 또는 綜合金融会社로 부터 借入하고 있음에 따라 상당한 金利負擔을 지고 있는데에다 約定手数料의 徵收는 더욱 資金負擔을 加重시키게 됨을 고려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供給者信用에 대하여는 約定手数料를 免除하고 購買者信用에 대하여만 當該契約書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0년 世界造船景氣의 回復勢에 따라 船舶延払輸出의 경우 受注量確保 및 受注競争上 實際所要工程期間에 앞서 미리 輸出契約를 締結하여 當行 資金支援을 要請하는 事例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그러나 船舶延払輸出 契約書上에는 일반적으로 「에스칼레이션」 条項 (Escalation Clause)이 없는 반면, 1~2년의 建造期間동안 國際原資材價格의 昂騰으로 실제 建造費用이 대폭 引上될 경우 受注契約時의 契約金額으로는 引渡時에 赤字를 보게 되므로 國家的인 損失을 가져올 소지가 있어 이러한 先契約締結에 制動을 걸 수 있는 制度的 裝置의 必要性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1981년 2월 6일 業務方法書改正으로 供給者信用에 대하여도 다시 연 0.5%의 約定手数料를 徵求기로 하였다.

第3節 資金의 調達

1. 概 觀

當行 支援資金의 調達財源은 資本金出資, 借入金, 輸出入金融債券發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當行의 資本金은 當行法 第4條에 의거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및 韓國外換銀行과 銀行法 第3條 第1項에서 정한 金融機關 그리고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當行法 第19條에 의거 當行은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과 銀行法 第3條 第1項에서 정한 金融機關 以外에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總借入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 合計額의 10倍以內로 되어 있다.

세째, 當行法 第20條는 當行이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계속되어 온 國內의 高金利現象등 對內外的인 與件 未成熟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發行을 保留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2. 資本金

1976년 7월 1일 當行 設立時 法定資本金은 1,500 억원이었고, 納入資本金은

553.55 억원이었다. 그러나 延拂輸出支援規模의 급격한 신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19일 當行法の 改正을 통하여 援權資本金은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후 當行은 꾸준한 資本金 増資에 진력한 결과 1981년 5월말 현재 納入資本金은 2,448.55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를 出資機關別로 나누어 보면 政府가 648.55억원, 韓國銀行이 1,200억원, 韓國外換銀行이 600억원을 각각 納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중 政府出資는 1976년도에 153.55억원, 1977년도에 200억원, 1978년도에 50억원 및 1979년도에 45억원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1980년도에는 당초 當行의 業務計劃上 政府出資가 50억원으로 計上되었으나 그중 7.5억원이 財政緊縮의 一環으로 納入留保됨에 따라 1980년도에는 42.5억원만이 納入되었다. 한편 1981년도에 들어 전년도 留保分 7.5억원과 당년도 出資計劃分 150억원이 5월말로 全額 出資됨으로써 지금까지의 政府出資金이 現 納入資本金 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6.5%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出資는 1976년도에 200억원, 1977년도에 200억원, 1980년도에 300억원 그리고 1981년도에 들어와서는 500억원이 각각 이루어져 納入資本金總額의 49.0%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外換銀行의 出資累計額은 600억원으로서 1976년도에 300억원, 1978년도에 300억원이 出資되었으며, 現 納入資本金 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4.5%가 되고 있다.

한편 當行의 調達 財源總額 중에서 資本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創立年度인 1976년에 50.9%이던 것이 毎年 그 比重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1980년도에 와서는 11.1%로 낮아졌다.

3. 國內借入

當行의 調達財源中 國內機關으로부터의 借入은 주로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外貨受託金과 國民投資基金 그리고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元貨借入金에 依存하고 있는 바 이를 위의 財源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外貨受託金은 당초부터 그 사용이 用途別로 제한되어 當行의 延拂輸出資金 支援과 轉貸借款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外貨受託金中 延拂輸出支援用 借入限度는 1977년 1월 25일 2억「달러」로 配定받았으나 1981년 4월말 현재 約 35백만「달러」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政府保有外貨를 사용하는 것보다 當行이 直接 海外市場에서 「뱅크·론」을 導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韓國銀行의 견해로 인하여 현재 그 사용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轉貸借款用 借入限度 50백만「달러」는 그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는 바 1981년 4월말 현재 借入殘額은 6,860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當行의 轉貸借款 供與期間이 평균 5년인데 비하여 外貨受託金의 使用期間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2년간은 當行資金으로 充당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같이 延拂輸出用 借入限度 및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高金利의 海外借款資金 借入依存度가 증대됨으로서 逆「마진」으로 인한 利差損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當行의 國內財源 調達에 있어 主要借入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國民投資基金인 바, 이는 輸出資金, 直接貸出, 轉貸借款, 重要物資輸入資金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國民投資基金은 當行의 國內借入源 中,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項目이나, 當行의 總資金調達 財源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以外에 當行은 海外資金 調達을 위하여 保有延拂어음을 賣却하고

있는 데, 이 경우 借主의 貸出金を 相計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國民投資基金은 早期 償還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保有延拂어음을 賣却하여 財源을 調達하는 效果가 半減되고 있었으나 1981년 4월 6일 政府當局의 特別배려로 이와같은 종래의 國民投資基金 運用基準이 緩和되었다.

세째,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은 1977년 7월 6일부터 1978년 4월 7일까지 4 차례에 걸쳐 期間 5年 年利率 5%로 200억원을 借入하여 왔는 바 이는 과거 韓國銀行이 韓國外換銀行에 納入하였던 出資金 중에서 當行 設立時 韓國外換銀行이 出資한 30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이는 當行의 餘裕資金이 부족하거나 貸出資金이 필요한 때 借入使用한 것이다. 한편 同 借入金은 앞으로 出資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상환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4. 海外資金의 調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된 國內財源規模로서는 급증하는 當行의 資金需要를 충당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當行은 創立 初期부터 불가피하게 國際金融市場으로 눈을 돌려 長期安定的 海外資金을 調達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創立 이후 지금까지 當行의 海外資金 調達源으로서는 當行 保有延拂어음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賣却과 「신디케이트」銀行借款 (Syndicated Bank Loan)의 導入, 外國의 公的輸出金融機關으로부터의 轉貸借款導入 및 短期外貨資金借入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海外資金調達을 위하여 當行이 처음으로 國際金

融市場을 「노크」한 것은 1977년 6월의 延拂어음 賣却이 그 始初인 바 당시 當行은「런던」소재 「스칸디나비아」銀行 (Scandinavian Bank) 등을 비롯한 11個의 國際金融機關에 總額 158백만「달러」에 달하는 當行保有 延拂어음을 買入者의 當行에 대한 遡求權 行使 不能條件으로 賣却하는 契約을 締結하였던 것이다. 同 延拂어음 賣却條件은 當行이 지니고 있는 法的 地位와 資本金 構成(資本金 出資比率: 政府 23.5%, 韓國銀行 30.6%, 韓國外換銀行 45.9%) 그리고 賣却

〈表Ⅳ-15〉

年度別 資金調達 內譯

(단위: 백만원)

年度別 調達財源	1976		1977		1978		1979		1980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金額	構成比 %
納入資本金	38,850 ¹⁾	50.9	40,000	25.9	35,000	15.6	4,500	1.9	34,250	11.1
國民投資基金	10,000	13.1	30,000	19.4	29,684	13.3	30,000	12.3	30,000	9.7
外換銀借入金			5,000	3.2	15,000	6.7				
韓銀保有外換			16,732	10.8	85	0	964	0.4	1,700	0.6
海外資金調達			19,873	12.9	52,189	23.3	48,400	19.9	74,296	24.1
貸出金回收	27,132	35.6	20,290	13.1	35,205	15.8	89,633	36.8	63,911	20.8
前期移越金	310	0.4	22,658	14.7	56,523	25.3	69,996	28.7	95,272	30.9
其他調達									8,736	2.8
合計	76,292	100	154,553	100	223,686	100	243,493	100	308,165	100

1) 1976년도 納入資本金總額 65,355백만원에는 政府貸下金 5,355백만원 및 韓國外換銀行借入金 21,150백만원의 出資轉換額이 포함되어 있음.

對象인 延拂어음이 世界 一流銀行들이 支給保證한 것이라는 利點 때문에 당시로서는 當行에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同延拂어음의 賣却代錢은 1977년부터 1978년 사이에 當行의 外貨貸出財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同資金이 消盡되어 가는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外換保有高 硬塞으로 인하여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外貨受託金 使用도 제한받게 되자 當行은 급증하는 延拂輸出 資金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의「신디케이트」銀行借款 (Syndicated Bank Loan)의 導入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이에 따라 1978년초부터 國際金融 중심지의 유력한 金融機關들과 借款導入 交渉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當行은 1978년 12월 7일「파리」소재 「유바프」銀行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çaises, Paris)「홍콩」소재 「퍼스트 시카고 아시아 머천트 뱅크」 (First Chicago Asia Merchant Bank, Hong Kong) 및 日本의 長期信用銀行 (The Long-Term Credit Bank of Japan Ltd., Tokyo) 등 3個銀行을 共同主幹事銀行 (Joint Lead Managers)으로 하는 46個 國際金融機關으로부터 2억「달러」에 달하는 「신디케이트」銀行借款의 導入契約을 체결하였는 바, 이 借款의 主要條件은 다음과 같다.

○借款形態 : 「신디케이트」銀行借款 (Syndicated Bank Loan)

○金 額 : 2억「달러」

○貸主銀行 : 「유바프」 (U. B. A. F) 銀行을 포함한 46個의 國際商業銀行

○期 間 : 10년 (거치기간 3년 포함)

○金 利 : 最初 2년간 연 Libor + $5/8\%$, 그 이후 연 Libor + $3/4\%$

○手 數 料 : ① 管理手數料 (Management Fee) $7/8\%$

② 約定手數料 (Commitment Fee) 연 $1/2\%$

同借款契約의 署名式은 1978년 12월 7일 서울世宗文化會館에서 行되였는 데 借款當事者中 當行側에서는 당시의 宋仁相 銀行長, 그리고 貸主側에서 各 貸主 銀行의 代表 36名이 참석하였으며 그외에 財務部 關係者 및 關聯 顧問辨護士 등이 배석하였다.

이 借款은 當行 發足후 처음으로 들어 온 銀行借款이었던 점에서 큰 意義가 있었으며 借款條件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었던 바, 이로 인하여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韓國의 信認度를 높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예컨대 같은 해 5월에 韓國産業銀行과 韓國外換銀行이 共同으로 導入한 5억「달러」의 이른바 「점보 론」(Jumbo Loan)의 경우, 加算金利가 全期間을 통하여 연 7/8%이었던 바 이와 비교하여 보면 當行의 2억「달러」 借款은 그보다 훨씬 개선된 條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借款代錢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2년간에 걸쳐 全額 引出되어 當行의 輸出支援을 위한 貸出財源으로 사용되었다.

그후에도 當行은 外貨調達源의 多樣化와 보다 유리한 조건의 長期安定的 外貨財源의 確保를 위하여 그 方案을 꾸준히 연구·점토하여 왔으며 그 일환책으로서 當行은 外國의 公的輸出金融機關이 우리나라의 資本財 輸入者에게 供與하는 購買者信用(Buyer Credit)을 當行이 주선 導入하여 이를 國內의 輸入者에게 轉貸하여 주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形態의 購買者信用은 輸入者가 直接 借主가 되어 導入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當行이 供與銀行과 「크레디트·라인」을 設定하여 直接 導入한 후 이를 輸入者에게 轉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다.

첫째, 公的金融機關인 當行이 借主가 되면 國內의 輸入業體가 借主가 될 경우에 필요로 하는 銀行支給保證義務가 면제되어 輸入者 借主의 借入 「코스트」가

절감되는 利點이 있고 둘째, 輸入者가 個別 輸入契約 締結時마다 政府로부터 借款導入 承認을 얻는 것보다는 當行이 包括적으로 承認을 얻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셋째, 當行이 이와 같은 轉貸用 借款資金を 確保하면 그와 같은 借款을 導入할 能力이 없는 国内輸入者들도 當行을 통하여 同資金を 이용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利點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當行은 1980 년초부터 우선 北歐諸國의 公的輸出金融機關으로부터의 原資材 延拂輸入代錢 決濟用 轉貸借款의 導入을 추진한 결과 1981 년 5월 말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의 公的輸出金融機關으로부터 總額 82.1 백만「달러」에 달하는 轉貸用「크레디트·라인」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借款의 主要内容은 다음 <表Ⅳ-16>과 같다.

한편, 同借款의 導入은 當行 外貨資金調達源의 多邊화와 유리한 조건의 長期安定的 財源確保라는 面 이외에도 国家的으로 볼 때 一覽拂輸入이 中長期延拂輸入으로 전환됨으로써 國際收支 改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當行은 이미 確保한 轉貸用「크레디트·라인」이외에도 앞으로 계속하여 이와 같은 轉貸借款의 導入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며 현재에도 英國의 ECGD를 비롯한 數個의 外國公的輸出金融機關과 이와 같은 性格의 轉貸借款導入 交渉을 활발히 進行中에 있다.

當行은 貸出資産이 대부분 그 內容에 있어 中長期 延拂債權임을 감안할 때 長期安定的 資金調達에 주력하는 것이 基本方針이나 1980 년도 하반기에는 이미 확보한 長期外貨資金財源이 消盡되어가는 한편 1979 년 10.26事態 이후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金借入이 불리하여진 데다 國際金利의 상승으로 長期資金의 導入을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한때는 滿期 1년 이내의 短期外貨資金を 借入

<表Ⅳ-15>

轉貸用「크레디트·라인」確保現況

(1981 년 5 월말 현재)

区 分 \ 国 名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供 与 機 関	Skandinavi- ska Enski- lda Banken	Den Danske Bank	Eksport fi- nans	Skandinavi- ska Enskilda Banken
金 額 (백만달러)	18.1	3.0	41.0	20.0
期 間	輸出物品製作 完了後 5 年	借款總額 1/2 引出後 5 年	3 ~ 10 年	3 ~ 8.5 年
金 利 (固 定 金 利)	年 7.65 %	年 8.75 %	年 8.5 ~ 8.7%	年 7.75~8.0%
償 還 条 件	年 2 回均等 分 割 償 還	左 同	左 同	左 同
契 約 締 結 日	1980. 8.20	1980. 9.30	1980.12.15	1981. 2. 6

使用하는 方案을 강구한 때도 있었다.

이에 따라 當行은 1980 년 중반부터 「파리」國立銀行 (Banque Nationale de Paris) 등을 비롯한 10 餘個의 國內外金融機關들과 短期外貨資金의 借入交渉을 추진하여 같은 해 12 월부터 短期外貨資金調達을 시작하였으며 1980 년 4 월말 현재 當行은 總額 102 백만「달러」에 달하는 短期外貨資金을 借入 使用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의 國內政治・經濟가 安定回復勢로 접어듬과 동시에 國際金融市場에서의 高金利現象이 누그러지자 當行은 1981 년도 業務計劃에 따라 所

要되는 外貨資金中 일부를 國際金融市場에서 調達하고자 1981 년초부터 優手한 國際金融機關과 4 億「달러」 상당의 外貨資金 導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당시의 우리나라의 海外資金 借入條件은 결코 양호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當行이 평소에 當行의 海外資金 借入에 関心을 表明하여 온 銀行들에게 2 億「달러」의 「뱅크·론」과 2 億「달러」의 延拂어음 賣却을 複合한 方式의 資金供與에 대하여 그 意思를 타진하자 대부분의 銀行들이 즉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美国, 英国, 日本 등의 大規模 銀行들이 경쟁적으로 同 資金을 主薦하겠다는 意思를 표시하여 왔다.

그 결과 借款團 參與銀行 募集過程에서 借款供與 應募額이 目標額보다 약 50 백만「달러」가 초과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當行의 4 億「달러」 借款導入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그 借入條件에 있어서도 「뱅크·론」의 경우는 借入金利가 全 借入期間 동안 연 $\text{Libor} + 3/4\%$ 로 決定되었고, 延拂어음 賣却에 있어서는 연 $\text{Libor} + 3/8\%$ 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決定되었다. 특히 「뱅크·론」의 경우는 1979 년말 이후 우리나라가 들어 온 主要 海外借款中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同 資金導入을 위한 契約署名式은 1981 년 6월 1 일 파리에서 거행되었는 바, 이 借款의 内容 및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신디케이트」銀行借款 (Syndicated Bank Loan)

o 金 額 : 2 億「달러」

o 貨主銀行 : 「케미컬 아시아」 (Chemical Asia Ltd), 「웰스파고 아시아」 (Wells Fargo Asia Ltd), 「유바프」 (Union de Banques Arabes et Françaises), 「바크레이즈 아시아」 (Barclays Asia Ltd), 「크레디트 컴머

셀 드 프랑스」(Credit Commercial de France), 「수미토모 파이낸스 아시아
(Sumitomo Finance Asia Ltd), 「아랍 बैंक 코퍼레이션」(Arab Banking
Corp) 등 8個 主幹事銀行(Lead Manager)을 포함한 40個 金融機関.

○期 間: 8년 (居置期間 3년 포함)

○金 利: 연 Libor + $3/4$ %

○手 數 料: ① 管理手数料 (Management Fee) $7/8$ %

② 約定手数料 (Commitment Fee) 연 $1/2$ %

(2) 延拂어음 賣却

○金 額: 2억「달러」

○買入者: 「신디케이트」銀行借款의 8個 主幹事銀行을 포함한 24個 金融機関

○期 間: 最長 9.5년

○金 利: 연 Libor + $3/8$ %

○手 數 料: 管理手数料 (Management Fee) - $3/4$ %

이와 같은 4억「달러」의 外貨調達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은 調達方式에 있어 「신디케이트」銀行借款과 延拂어음 賣却을 復合한 새로운 形態의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과거 國際金融市場에서도 前例가 없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同外貨調達は 당시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國際金融市場에서의 當行에 대한 높은 信認度가 과거 1978년 당시 第1次 2억「달러」借款에 이어 재차 立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그후 우리나라가 導入한 餘他 借款에 있어 「스프레드」(spread) 등 借入條件을 改善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는 점에서도 한층 그 意義가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當行은 國際間 中長期 資本移動에 있어서 「유로」 金融市場과 더불어 2大 主流를 이루고 있는 國際債 (International Bond) 發行市場에 진출하여 貸出財源으로 필요한 長期安定的 外貨資金을 調達할 時期가 올 것인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當行 職員을 「런던」, 「뉴욕」등 國際金融 中心地에 파견하여 「유로본드」 (Euro Bond) 및 「양키본드」 (Yankee Bond)의 발행에 의한 海外資金調達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5. 資金 調達의 問題點과 長期的 調達方向

當行은 다른 金融機關이 일반적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重工業製品의 中長期延拂輸出 및 海外資源開發投資를 支援하기 때문에 巨額의 長期低利資金을 필요로 하므로 資金調達費用이 없는 資本金 出資가 더욱 소망스러우나 當行의 資金支援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出資比重은 점차 감소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表Ⅳ - 17 >

年度別 資本金 比重

(단위 : 백만원)

	1976	1977	1978	1979	1980
資 本 金	65,355	105,355	140,355	144,855	179,105
資本金/總資産	80.9 %	58.1 %	58.8 %	44.7 %	29.4 %

또한 當行法上으로는 韓國銀行으로부터 借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韓國法上으로는 當行資金은 融資對象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資金管理特別會計 規模도 축소되어 財政借入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다.

<表Ⅳ-18> 年度別 國民投資基金 造成額 및 當行 貸下 內譯

(단위: 억원)

	1977	1978	1979	1980
國民投資基金造成額(A)	2,150	2,870	4,180	5,380
當行貸下內譯(B)	300	300	300	300
B / A (%)	13.9	10.4	7.2	5.6

이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國銀行 外貨受託金 中 延拂輸出支援用 限度 2억「달러」와 轉貸借款用 限度 50백만「달러」를 配定받은 바 있으나 經常收支 惡化로 인한 可用保有外換의 使用 制約으로 1979년부터는 轉貸借款

<表Ⅳ-19> 年度別 外貨受託金 借入內譯

(단위: 백만「달러」)

	1977	1978	1979	1980
限 度	200	200	250	250
借 入 額	34.5	0.2	2.0	2.7
借 入 殘 額	34.5	34.7	36.7	39.4

用으로만 借入하는 등 国内借入 財源의 限界性 때문에 海外借入 比重의 증가가 불가피하여 當行 收支上 壓迫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授權資本金의 納入이 조속히 실현되고 韓國外換銀行의 200억원 借入金이 出資로 전환되어 資本金比重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國民投資基金 造成額 中 一定比率의 貸下가 制度化되고 韓國銀行 外貨受託金の 使用 擴大로 国内借入 規模가 시급히 확대되는 등 일련의 조치도 취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海外借入增大에 따른 利差의 自動補填裝置도 강구되어야 하겠고 外資材延拂輸入用 轉貸借款 導入의 확대로 現地 輸出金融制度를 적극 활용하는등 보다 유리한 海外借入先 및 借入方法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保有延拂어음의 適正活用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資産調達上의 問題點을 점진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한 方案의 一環으로 當行은 「인플레이」要因의인 資金調達을 가급적 止揚하고 国内貯蓄財源의 吸收를 통한 長期安定的인 資金源을 確保하고자 當行法 第20條에 根據한 圓貨表示 輸出入金融 債券發行을 檢討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81년도중에는 事前調査, 諸般法規의 制·改正, 國家保證을 위한 政府豫算上의 反映, 專擔機構의 新設 등 債券發行을 위한 基盤造成을 마무리 한다음 1982년도부터는 既存 金融機關의 發行債券과 거의 동일한 條件으로 小規模의 債券(約 1,000억원)을 發行한 후, 市況과 發行市場與件 등을 보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方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債券發行에 따른 利差損을 自動補填 할 수 있는 制度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當行法 改正作業도 關係當局과 協議, 檢討中에 있다.

第4節 調査 및 法規業務

1. 概 觀

當行의 海外投資調査部는 발족당시 企劃調査部로 출발하였다가 1977년 1월 제3차 職制改編에 의하여 業務部가 분리되는 것을 계기로 經濟調査機能만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로 되면서, 国別信用度評價業務와 中長期延拂輸出·海外投資 등 當行의 주요 支援業務에 대한 政策樹立과 支援方向 제시를 위한 国内外經濟調査의 研究機能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當行은 業務의 國際的 性格上 設立當初부터 當行이 中長期信用을 供與하는 나라에 대한 国別信用度 評價業務와, 아울러 當行의 支援政策 및 制度에 관한 調査研究가 절실히 요청되었으며 이와 같은 業務는 国内에서는 처음으로 試圖되는 分野이었다. 海外投資調査部 發足당시 5명에 불과한 調査要員과 資料의 未備, 이 分野에 대한 기초 知識조차 축적되지 못한 狀況下에서도 그러한 새로운 評價技法의 開發과 先進諸國의 延拂輸出, 海外投資 등 中長期延拂 輸出入 支援政策 및 制度에 대한 研究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努力의 첫 결실로 1977년 4~7월사이에 當行은 「對外債務能力評價技法」 및 「County risk 分析技法開發概要」등 国別信用度評價를 위한 최초의 試案을 마련함으로써 国内에서는 처음으로 同技法을 導入한 것을 비롯하여, 先進諸國의 中長期延拂輸出, 海外投資 分野에 대한 支援制度를 比較研究하고 當行 業務와 관련이 깊은 각종 對内外經濟分野에 대한 經濟調査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간 當行은 國別信用度評價技法을 3 차에 걸쳐 改善함으로써 評價體制의 質的 向上을 기하고 이러한 技法으로 每年 60 ~ 80 餘 開發途上國의 國別信用度評價資料를 작성하여 當行審査業務에 활용하여 왔음은 물론 主要 關係機關에 의해 參考資料로 利用되고 있다. 아울러 發足當時만 하더라도 거의 未開拓分野이던 延拂輸出, 海外投資에 대한 制度研究, 當行 支援事業의 國民經濟的 效果分析, 當行 支援資金의 産業別 支援優先順位등에 대한 研究를 계속하여 當行의 支援政策方向을 提示하여 왔음은 물론 關係機關의 政策立案에 있어서의 參考資料로서, 또한 關係産業界에 대한 啓導資料로서 활용하여 왔다.

그 결과 當行은 創立以來 불과 5 年만에 國別信用度評價技法의 開發·定着과 延拂輸出, 海外投資 등의 中長期支援制度의 研究部門에서는 國內 唯一의 獨보적 調査研究機關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當行業務의 擴充과 國際化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러한 經濟調査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當行의 海外投資調査部는 발족당시 5 名の 調査役을 포함 9 名の 人員으로 출발하여 1981 年 現在 18 名の 各 職級別 調査役을 포함 48 名の 人員을 거느린 機構로 팽창하였다. 현재 調査部の 운영은 國別信用度評價 및 海外投資環境調査 등을 담당하는 地域經濟調査部門과 各種中長期支援制度, 國內外經濟調査, 當行支援事業의 國民經濟的 效果分析 및 定期刊行物 發刊業務를 수행하는 一般經濟調査部門으로 크게 大別하여 運營되고 있다.

한편 法規室은 1978 年 2 月 5 次 職制改編時 業務部の 法規課를 擴大改編하여 發足하였는 바 當行의 業務가 國際的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當行 去來와 관련된 國際契約書의 各種 法的危險을 事前에 研究하여 이를 豫防함으로써 當行의 貸出業務를 法規的側面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當行의 經濟調查業務 및 法規調查業務가 國內의 餘他金融機關의 그것과 性格面에서의 特徵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中長期延拂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輸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中長期金融을 供與함에 있어서는 대상 「프로젝트」(project)가 財務的, 國民經濟的 및 技術的인 側面에서 妥當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一次的인 審査分析課題라 하겠다. 그러나 當行과 같이 信用供與의 最終 受惠對象이 주로 外國政府나 外國法人이고 貸出規模가 巨額이며, 貸出金의 償還期間 또한 長期인 金融을 供與하는 경우, 融資對象國의 政治情勢와 國內經濟, 對外債務償還能力 및 投資與件등을 종합분석하여 決定되는 國別信用度評價를 도외시하고는 特定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妥當性 評價는 不可能하다. 따라서 國別信用度評價는 當行의 延拂輸出金融에 있어 필수적인 過程의 하나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去來는 그 自體가 國際去來의 性格을 띠 만큼 去來對象國의 貿易, 外換, 關稅 및 投資法上的 問題點有無檢討와 當該去來契約書 自體의 法的瑕疵有無에 대한 法的 검토가 아울러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延拂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輸入을 위한 中長期信用供與에 대한 歷史가 日淺한 만큼 이에 관한 先進諸國制度에 대한 比較研究를 통하여 새로운 金融技法을 導入하고 이들 나라의 延拂金融支援動向을 調査分析하므로써 當行의 支援政策方向設定 및 業務基盤 擴充을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國別信用度 評價 業務

가. 概 觀

國別信用度評價란 金融機關이 海外에 信用을 供與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危險度 즉 借主國家의 政治·經濟의 推移와 展望에 따라 現在 혹은 將來에 債務償還業務의 不履行 혹은 償還遲滯를 惹起시킬 潛在性 또는 可能性의 程度를 評價함을 意味한다.

일반적으로 國別信用度 評價는 當該國의 債務償還能力과 償還意思의 有無등을 판단함으로써 與信元利金이나 投資元本, 果實을 適期에 回收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려는 순수한 意味의 信用度를 評價하는 以外에 어느 國家, 어느 産業에의 投融資가 長期的으로 投融資國의 經濟的 利益의 增大와 經濟協力の 側面에서 相對國의 經濟開發에 기여하는가를 評價하는 市場性的 評價도 포함하고 있다.

國別信用度の 問題는 2次大戰後 世界銀行 등 主要國際金融機構 및 資本供與國인 先進工業諸國의 金融機關이 開途國에 投融資를 본격화하면서 대두된 것이나, 특히 최근에 와서 問題가 重要視 된 것은 第1次 石油波動以後 非產油開途國의 對外債務累增現象이 심화되면서부터이다. 한 때 「오일·머니」의 還流過程에서 발생한 國際流動性的 過剩現象으로 非產油開途國의 經常収支 黑字가 증대됨에 따라 先進工業諸國의 특히 國際商業金融機關들은 國別信用度の 問題를 等閑視하고 與信規模를 확대시키기도 하였으나, 이란事態와 아프카니스탄事態 등은 이 問題의 重要性을 새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國別信用度の 評價業務는 國際機構를 비롯한 主要國의 延拂輸出擔當 金融機關에 있어서는 물론 世界各金融機關이 海外投融資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決定要素가 되고 있다.

當行에서도 國別 與信偏重의 排除와 與信의 危險分散등 金融資産의 効率的 運用과 當行 投融資資金의 安全性을 기하며 아울러 効果적인 經濟協力の 增進을 도모한다는 것을 基本目的으로 하여 國別信用度 評價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나. 當行의 國別信用度 評價方法

IMF, 世界銀行등 國際金融機構와 先進工業國의 延拂輸出金融擔當機關 및 國際商業金融機關등은 그들 銀行의 特殊性이나 經營方針에 따라 혹은 借入國의 事情에 따라 제각기 그들나름의 信用度 評價方法을 開發·採擇하여 왔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評價方法을 類型別로 크게 분류하면 ① 自由敘述法(Fully Qualitative System) ② 體系的敘述法(Structured Qualitative System) ③ 指數加重平均法(Check List System), ④ 計量經濟學的方法(Highly Qualitative System)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으며 評價機關은 이상의 類型中 特定한 하나의 方法에 의하지 않고 한 두가지 類型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상의 評價方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自由敘述法은 一國의 信用度を 評價함에 있어 體系化된 形式에 의하지 않고 評價對象國의 經濟的 社會的 特性에 따라 評價要素를 선정하여 信用度を 評價하는 것으로서 評價對象國의 特性을 잘 나타내는 長點이 있긴하나 評價要素가 國家別로 상이하기 때문에 國別相互比較가 곤란하고 評價者의 主觀이 개재할 素地가 많다는 것이 短點이다.

둘째 體系的敘述法은 各評價對象國家에 대하여 공통적인 經濟指標로 구성된 體系化된 樣式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공통적인 經濟指標와 體系化된 樣式을 사용함으로써 國別比較가 가능하며 未來豫測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한다는 長點이 있어 有數 國際商業銀行들이 대부분 이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세째 指數加重平均法은 미리 선정한 主要經濟指標에 따라 評點을 賦與한 후 이를 加重平均하여 綜合評點을 算出하는 方法으로서 주로 短期債務償還能力을 測定하는데 이용된다.

네째 計量經濟學的方法은 計量經濟學的 模型을 이용하는 方法이나 模型設定에 이용되는 各種變數의 선정이 어렵고 그 結果值가 現實經濟와 遊離된 面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短點때문에 이 方法만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機關은 거의 없다.

現在 當行은 이와같은 네가지 方法中 體系的敘述法을 채택하고 있다.

當行은 國別信用度 評價業務를 開發하기 始作한 이래 評價方法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担当調査役의 海外研修 및 國內外 專門家의 招請研修, 調査部自體研修에 의한 內實化를 기하였으며, 세차례에 걸친 評價方法 및 節次의 改善으로 信用度評價業務의 質的強化를 이룩해왔다.

이와같이 세차례에 걸쳐 改正된 現行 當行의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을 보면, 一國의 信用度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선 5개의 評價分野 즉 ① 國內經濟, ② 對外去來, ③ 開發政策, ④ 政治·社會, ⑤ 其他(우리나라와의 關係포함)등으로 구분하여 各 評價分野마다 信用度의 狀態와 展望을 고려하여 等級(A,B,C,D,E)을 賦與한다. 또한 等級에 따른 評點(A:1點, B:2點, C:4點, D:8點, E:16點)과 各 評價分野에 대한 加重值(國內經濟, 對外去來, 開發政策, 政治·社會, 其他 등의 5個分野別로 相異한 加重值 적용)에 의하여 綜合評點을 算出하고 算出된 評點에 따라 綜合等級이 算定되는 것이다. 評價分野中 對外去來의 加重值를 다른 評價分野에 비하여 높게 適用하고 있는 바 이는 債務償還能力을 評價하는데 있어서 國際收支, 對外支給準備, 外國人投資環境 등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各 評價分野에 대한 信用度 評價時 考慮되는 事項으로는;

- ① 国内經濟에 대하여는 經濟規模 및 成長, 賦存資源, 物価, 財政, 金融, 産業構造 등의 推移와 展望,
- ② 對外去來에 있어서는 國際収支, 對外支給準備, 對外債務 및 外國人投資環境 등의 推移와 展望,
- ③ 開發政策은 經濟政策, 外資政策 등을 포함하는 經濟開發計劃과 開發展望,
- ④ 政治・社会는 国内外政治安定度, 失業率, 文盲率등 社会環境,
- ⑤ 其他, 우리나라와의 外交通商關係와 特記事項 등이다.

이상과 같은 等級算定結果는 第3章에서 紹介한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銀行長의 決裁를 받음으로써 確定된다.

다. 國別信用度 評價結果의 活用

이상과 같은 方法과 節次에 의하여 算定된 綜合評點은 우선 前述한 本 評價業務의 基本目的을 위하여 國別與信限度의 策定에 이용됨은 물론이다.

綜合評點의 等級에 따라 미리 정한 與信限度를 적용하는데 E級의 경우에는 與信取扱을 하지 않는다.

與信限度에 適用對象이 되는 與信은 當行의 貸出額(引渡前金融 또는 技術提供前金融 除外)과 債務保證額, 當行의 債務保證없이 取扱한 協調融資機關의 貸出額 등이며 어음 売却이 가능한 一流銀行의 支給保證書가 있는 경우에는 本 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다.

國別與信限度는 원칙적으로 豫備承認時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海外進出業體의 對外去來推進 初期段階에서 부터 危險을 豫防토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國別與信限度의 設定과 運營의 重要性에 비추어 1978년 5월 17일 第8次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에서는 “韓國輸出入銀行 國別與信限度 設定 및 그 活用方案”을 議決하여 當行의 國別與信限度 策定結果를 6個月마다 同委員會에 報告토록하는 한편 國別與信이 當該國 與信限度의 200%以下인 경우에는 同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取扱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 2월 7일 第17次 同委員會에서는 當行 融資支援節次의 合理的 效率的 運營을 圖謀하고자 當行 自體의 國別信用度 評價技能을 강화할 수 있도록 上記 方案을 폐지하고 當行이 자율적으로 評價業務를 수행토록 議決하였다. 또한 等級別 與信限度를 超過하는 去來에 대하여도 同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韓國輸出入銀行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토록 하였는데 이는 그간 當行의 國別信用度評價能力이 提高되었음을 반영하여 취하여진 措置라고 하겠다.

國別信用度 評價結果는 國別與信限度 策定以外에 當行의 選別優先支援의 基準으로도 活用되고 있다. 특히 “1981년도 輸銀融資 選別支援指針”에서는 國別信用度評價結果가 優先支援與否를 決定하는 데 중요한 要素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國別信用度 評價를 위하여 作成·發刊되는 國別評價資料(Country paper)에는 対象國의 諸般 經濟現況과 展望, 海外投資環境은 물론 政治的狀況까지를 綜合的으로 調査 評價하고 있으므로 政府와 關係機關의 対象國에 대한 政策方向 그리고 個別企業의 海外進出을 위한 判斷參考資料로서도 유용하게 活用되고 있다. 따라서 當行은 同 資料가 發刊되는 대로 政府關係機關이나 海外進出 業界에서의 活用이 이루어지도록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라. 當行의 國別信用度 評價實績

當行이 國別信用度 評價業務를 開始한 것은 1977년 1월 종전의 企劃調查部가 擴大改編되어 海外投資調查部가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동년 상반기까지의 國

別信用度 評價方法 樹立과 이에 관한 海外經濟技術協力委員會의 議決過程을 거쳐 동년 하반기부터 國別信用度 評價資料作成에 착수하였는 바, 동년중에는 우선 아시아, 中東, 아프리카, 中南美 諸地域中 當行 去來実績과 展望에 비추어 가장 評價가 시급한 3 國씩만을 엄선하여 總 12 國에 대하여 評價資料를 作成한 바 있다.

그 이래 1978 년부터 본격적인 國別信用度 評價業務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1978 년에 71 國, 1979 년에 80 國, 1980 년에 57 國에 대하여 評價資料를 作成하였는 바, 當行의 國別信用度 評價業務 開始後 1980 年 말까지의 評價資料를 作成한 對象國家數는 累計로는 延 220 國이며 純國家數로는 93 國에 달하고 있다.

한편 國別信用度評價委員會는 1978 年 2 월에 처음 개최되어 동년중 54 國, 1979 년에 22 國, 1980 년에 49 國을 評價完了함으로서 1980 年 말까지 延 125 國에 대하여 評價를 행하였으며 1980 年 말까지 評價가 이루어진 總 對象國家數는 68 國에 이르렀다.

當行의 國別信用度評價 對象國은 원칙적으로 開途國에 한하고 그 중 이미 當行과 去來가 이루어진 國家나 去來推進中인 國家는 물론 向後 去來가 예상되는 國家를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去來가 활발하거나 去來可能性이 큰 國家이면서 經濟 政治狀況의 變動이 잦은 國家는 그 필요시마다 수 차례에 걸쳐 評價를 행하고 있다. 또한 1979 년부터는 先進工業國이더라도 資本受入國이거나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상대적으로 높은 國家는 石油波動以後의 國際經濟環境을 감

<表Ⅳ - 20>

當行의 年度別 國別信用度評價實績

	1977	1978	1979	1980	計
評價資料發刊	12	71	80	57	延 220 國
評價	-	54	22	49	延 125 國

안하여 評價對象에 포함시키고 있다.

国別信用度 評價業務 開始以來 1980 년 말까지 1 회以上 評價資料가 作成 되었거나 評價가 完了된 國家는 <表Ⅳ - 21>과 같다.

<表Ⅳ - 21> 国別信用度 評價對象 國家 一覽表
(評價業務開始後 1980 년 말까지)

評 價 資 料 發 刊 國 家	評 價 完 了 國 家
Afghanistan, Algeria, Argentina, Australi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enin, Bermuda, Bolivia, Botswana, Brazil, Burma, Cameroon, Chile, Colombia, Costa Rica, Cyprus, Domini- can Rep., Ecuador, Egypt, El Salvador, Ethiopia, Fiji, Finland, Gabon, Gambia Ghana, Greece, Guatemala, Guinea, Haiti, Honduras, Hong Kong, India, Indonesia, Iran, Iraq, Ivory Coast, Jamaica, Jordan, Kenya, Kuwait, Lebanon, Liber- ia, Liby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rocco, Nepal, Netherlands Antille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 P.N.G., Portugal, Qatar, Saudi Arabia, Senegal,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 Taiwan, Tanzania, Thailand, Tunisia, Turkey, U.A.E., Upper Volta Uruguay, Venezuela, W. Samoa, Yemen, Zaire, Zambia	Afghanistan, Argentina, Australi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ermuda, Bolivia, Brazil, Burma, Cameroon,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 Ecuador, Egypt, El Salvador, Fiji, Gabon, Ghana, Greece, Guatemala, Guinea, Haiti, Honduras, Hong Kong, India, Indonesia, Iran, Ivory Coast, Jamaica, Jordan, Kenya, Liberia, Libya, Malawi, Malaysia, Mauritania, Mexico, Morocco, Nepal,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 P.N.G., Qatar, Saudi Arabia, Senegal, Sierra Leone, Singa- pore, Sri Lanka, Sudan, Syria, Taiwan, Thailand, Tunisia, Turkey, U.A.E., Uruguay, Venezuela, W. Samoa, Yemen, Zambia
總 93 個 國	總 68 個 國

3. 經濟調查 業務

政府의 重化学立国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重化学工業製品의 延拂輸出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 등의 業務를 專担하는 特殊金融機關으로 設立된 當行은 創立이래 어려운 國內外的 金融与件속에서도 中長期延払金融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經濟調查業務를 當行의 中樞的인 業務의 하나로 育成하여 왔다.

이러한 業務를 수행하는 當行의 海外投資調查部는 每年 60~80餘 開發途上國에 대한 政治・經濟 및 投資環境調查 등을 主內容으로 하여 國別信用度評價資料를 작성하고 이를 當行 支援「프로젝트」의 妥當性檢討와 貸出承認決定에 반영하여 왔다. 또한 그때까지 거의 未開拓分野이던 延拂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輸入등을 支援하는 각종 中長期信用制度를 本格的으로 연구하고, 海外經濟調查, 當行支援事業에 대한 國民經濟的 效果分析에 관한 研究, 「프로젝트」의 評價 (Project appraisal), 國內의 造船 등 關聯産業調查分析 등에 대한 研究를 계속함으로써 當行의 業務基盤의 拡充과 國際化를 뒷받침하여 왔다.

當行의 經濟調查業務의 主要內容을 大別하여 보면, 國別信用度評價業務, 中長期延払輸出, 海外投資 등에 대한 先進諸國의 制度와 延払金融動向調查, 一般的인 海外經濟動向調查, 當行支援事業의 國民經濟的 效果分析에 관한 研究 등의 業務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國別信用度評價業務에 관해서는 本節 第2項에서 상술하였다.

가. 經濟調查

(1) 延拂輸出金融支援制度 및 海外投資에 대한 調查研究

中長期延払輸出, 海外投資, 海外資源開發輸入 등에 대한 中長期延払金融支援制

度에 관한 調査·研究은 国別信用度評價業務와 더불어 当行의 가장 중요한 經濟 調査業務의 하나라 하겠다. 그간 主要国이 運用하고 있는 이들 制度를 比較研究함과 동시에 先進 各国의 支援動向, 延拓金融金利政策 등을 分析하여 当行의 支援政策方向을 提示하여 왔으며 이를 単行本の 冊子로서 혹은 当行 機關誌인 「週間 輸銀뉴스」 등에 掲載하여 關係機關의 政策樹立에 대한 參考와 業界에 대한 啓導에 앞장서 왔다. 또한 OECD諸国의 輸出信用을 規律하는 紳士協定인 OECD 「가이드 라인」의 内容 및 問題点과 最近에는 同 「가이드 라인」의 改正을 위 요한 先進諸国의 動向과 改正協商에 임하는 各国의 立場을 調査하여 발표하여 왔다.

(2) 海外經濟調査

地域別 投資環境 및 主要国의 資源現況, 그리고 國際金融市場動向 등의 調査, 開發途上国의 對外債務問題, 國際造船·海運動向, 多国籍企業의 海外投資動向 등에 대한 調査·研究活動도 계속하여 왔다.

또한 美洲開發銀行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阿洲開發銀行 및 基金 (African Development Bank and Fund) 등의 國際金融機構와 아세안 (ASEAN), LAFTA, ANCOM, CACM 등 主要地域經濟協力體에 대한 調査研究資料도 계속 발간하여 왔다.

(3) 當行支援事業의 國民經濟的 效果分析

當行支援事業의 國民經濟效果分析和 「프로젝트」評價 (project appraisal) 등의 調査業務를 꾸준히 發展시켜 왔으며 한편 同技法의 深層研究에도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調査研究의 結果로 1980 년에 「長期프로젝트의 經濟性分析 事例研究」 및 「當行輸出資金支援프로젝트에 대한 産業別構造檢討」, 1981 년에 「當行資金의 選別支援強化를 위한 産業別 優先順位에 관한 研究」 등의 調査研究資料를 발간하였다.

나. 經濟調査 관련 主要刊行物

(1) 定期調査資料

当行은 定期調査資料로서 週刊紙인 「週間 輸銀뉴스」, 季刊紙인 Exim Bulletin 외에 英文年次報告書인 Annual Report 를 發刊하고 있다.

・ 「週間 輸銀뉴스」

当行은 発足직후인 1976년 7월 13일부터 主要国内外經濟短信과 当行의 活動을 실은 「EXIM NEWS」를 毎日 發刊하여 行内に 배포하였다. 그후 「EXIM NEWS」는 1977년 6월 13일 第288호를 끝으로 停刊하고 經濟解説記事 1편을 실는 등 内容を 보강하여 1977년 7월 7일부터 週報 「EXIM WEEKLY」를 發刊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8년 1월 7일부터는 그때까지 行内用으로만 發刊하여오던 「EXIM WEEKLY」 第25號를 끝으로 終刊하고, 그 体制를 擴大改編함과 동시에 題號를 「週間 輸銀뉴스」로 바꾸어 国内的 關聯機關 및 産業界까지 配布處를 擴大하였다. 또한 1980년 1월 1일부터는 「週間 輸銀뉴스」의 經濟解説記事의 증편, 地域別 海外經濟欄 新設, 國際機構動向, 國際金融市場動向, 当行業務活動動向 등 当行機關 紙로서 그 体制를 더욱 一新하였으며 그간 182호를 發刊하여 關係 政府機關, 經濟界, 金融界, 産業界, 言論界, 学界, 研究機關 등에 配布하여 오고 있다.

・ Exim Bulletin

1977년 1·4分期부터 우리나라 對外去來와 關聯된 主要經濟動向, 造船, 「플랜트」, 機械 등 重化学工業關聯 産業의 調査分析, 当行의 業務内容 및 業務実績을 실은 英文 季刊紙를 發刊하기 시작하여 国内外에 配布함으로써 当行支援事業의 擴大와 對外 經濟協力增進에 기여케 하고 있다.

・ 英文年次報告書

1976년 이래 毎年 当行의 支援実績을 실은 英文 「Annual Report」를 發刊하

여 国内外에 配布하고 있다.

(2) 國別信用度評價資料 및 各種 調查研究資料 發刊

當行은 創立 이래 매년 60~80餘 開發途上國에 대한 國別信用度評價資料를 發刊하여온 것을 비롯하여, 延拓輸出, 海外投資, 國別信用度評價技法, 一般經濟動向, 産業調査分析, 國際機構, 國際金融, 輸出保險, 法規調査, 審査資料 등 여러 部門에 걸쳐 150余件의 研究資料를 發刊함으로써 當行 業務의 領域擴大와 質的改善을 뒷받침하여 왔다.

4. 國際契約書의 法的檢討

가. 法的檢討의 必要性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支援을 함에 있어서는 融資實行에 앞서서 事前에 當該 去來가 元利金償還 및 收益性에 있어서 財務的으로 妥當性이 있는지 (財務的 妥當性 檢討), 또 이러한 投資事業에 대하여 巨視的인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効率性이 있는지 (經濟的 妥當性 檢討)를 검토하고, 또한 技術的인 側面에서 妥當性이 있는지 (技術的 妥當性 檢討)를 검토함과 아울러 當該 去來와 관련된 國際契約書의 法的瑕疵 내지 法的危險을 事前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國際契約書의 法的檢討業務가 貸出審査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當行 貸出關係規定에서도 審査担当部署長은 當該 去來에 관한 契約書案 또는 本契約書의 法的瑕疵有無에 대하여 法規担当部署長의 法的審査意見을 원칙적으로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나. 法的檢討의 基本方向

國際去來에 대한 法的妥當性を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선 當該 去來가 國內法規, 다

시 말하면, 貿易, 外換 関稅 및 延払輸出, 海外投資 등과 關聯된 諸国内法規 (韓國 輸出入銀行法, 同法施行令 및 業務方法書 등을 포함) 에 抵触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當該去來가 去來相對國에 있어서도 法的環境이 양호하고 또한 適法性을 갖는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相對國의 貿易, 外換 및 関稅 등의 管理制度, 外資導入制限 또는 特典, 對外支給保證制度 등에 관한 法律, 慣習 또는 慣行 등을 調査・把握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相對國弁護士의 法律意見을 徵求하게 하는 등의 多角的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當該 去來에 關連된 契約書는 法的瑕疵가 없는지, 關聯條項 相互間에 矛盾 또는 抵触되는 條項은 없는지, 當該契約書가 用語의 統一性和 論理의 一貫性을 欠缺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國際契約書의 法的審査業務는 貸出審査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될 基本業務로서 當行은 同業務를 1977년 1월 27일 業務部 法規課의 発足과 함께 担当해 오다가 1978년 2월 28일 當行 職制改編으로 종래 業務部 法規課가 法規室로 分離 獨立하게 됨에 따라 法規室에서 國際契約書의 法的審査業務를 수행해오고 있다.

<表Ⅳ-22>

年度別 國際契約書法的審査實績

區 分 \ 年 度	1977	1978	1979	1980	合 計
商 品 輸 出	8	4	6	5	23
플랜트輸出	3	6	7	8	24
船 舶 輸 出	5	4	21	30	60
合 作 投 資 (海 外 投 資)	2	4	3	5	14
技 術 ・ 用 役	2	3		1	6
建 設 ・ 都 給	1				1
Credit/Loan Agreement	1	3	12	14	30
其 他	2		2	1	5
計	24	24	51	64	163

第5節 輸出保險 業務

1. 輸出保險制度의 沿革

가. 設立背景 및 經緯

經濟開發을 통한 自立經濟의 確立은 1960년대초 우리나라 經濟가 당면하였던 國民的 念願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經濟開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投資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내에 축적된 資金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不足資本의 供給源을 外資導入과 輸出増大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借款에 의한 外資導入은 元利金償還이라는 문제가 있어 그것이 오히려 經濟開發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輸出増大를 통하여 필요한 外貨를 自力으로 調達하는 것이 보다 소망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시작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서는 輸出에 대하여 높은 比重을 두어 經濟政策의 最優先目標로 設定함으로써 各種 輸出振興策이 잇달아 마련되었음은 물론 모든 經濟政策의 焦點이 여기에 두어지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輸出은 우리나라經濟의 高度成長을 위한 戰略部門으로 選定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經濟는 1960년대의 輸出主導型的 成長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輸出増大推移를 보면 第1次 5個年計劃 期間中 輸出伸張率은 年平均 42.9%에 이르렀으며 第2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前期보다 약간 낮은 39.6%의 伸張率을 보였는 바 1960년대 우리나라의 輸出伸張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하겠다. 그러나 輸出規模面에서 보면 輸出保險法

을 制定한 1968년도만하더라도 불과 6억「달러」를 약간 上廻하는 정도였는데다가 年度別成長率 역시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政府는 經濟開發이나 高度成長을 위하여는 戰略的要素인 輸出増大를 더욱 加速化하는 데에 온갖 努力을 傾注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金融, 稅制등 面에서 가능한 모든 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1969년에는 輸出増大를 위한 資金支援方法으로서 輸出支援金融制度가 대폭 強化되었으며, 輸出保險制度도 또한 當時 이와같은 總量輸出支援政策의 一環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치열한 國際競爭속에서 先進諸國과 대응하여 지속적인 輸出増大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信用狀 條件의 一覽拂去來와 같은 안전한 決濟形態의 輸出以外에 D/A 또는 D/P와 같은 短期延拂輸出 및 中・長期延拂輸出로 輸出形態를 擴大하여 보다 과감하게 輸出을 촉진하는 한편 限定的으로 進出하여 오던 輸出市場도 더욱 多邊化하기 위하여 政治的 危險度가 높은 開發途上國家는 물론 非敵性國家까지도 擴大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政府는 이러한 과감한 輸出振興政策을 수행함에 있어서 輸出去來 및 其他 對外去來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諸危險(risk)中 海上保險 및 其他 通常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곤란한 輸出不能, 輸出代金回收不能 등의 危險으로 부터 輸出者를 保護하고, 이들 輸出者에게 輸出金融을 支援한 金融機關이 입는 損失을 補償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先進諸國에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채택하여 輸出振興에 크게 기여해 온 輸出保險制度의 導入을 構想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政治, 經濟的 諸般與件을 背景으로 한 輸出保險制度의 設立經緯를 살펴보면, 1968년초에 輸出主務部處인 商工部商易局에서 貿易業界, 金融機關, 學界 및 其他 經濟團體의 意見을 종합하여 同制度를 研究하던 중 이 保險制度

가 갖는 特殊性때문에 高度의 保險技術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貿易을 主管하는 商工部보다 保險을 管掌하고 있는 財務部가 運營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는 데에 意見이 일치되어 當時 國內에서 保險을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政府投資機關인 「大韓再保險公社」가 政府를 대항하여 이 保險을 運營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 6월에 개최된 經濟長官會議에서 輸出保險의 運營主體는 政府가 되고, 實質적인 業務와 基金의 管理는 大韓再保險公社가 政府代行機關으로서 수행하도록 하는 案에 原則적인 合意를 보게 되었다.

마침내 政府는 1968년 12월 31일 法律 第2063號로 「輸出保險法」을 制定, 公布하였고 1969년 1월 22일에는 大統領令 第3743號로 「輸出保險法施行令」이 制定 公布된 한편 1월 30일에는 財務部令 第562號로 「輸出保險法施行規則」이 制定되었고, 2월 13일에는 財務部訓令 第236號로 輸出保險의 事務處理節次를 規定한 「輸出保險事務處理規程」이 마련되어 1969년 2월 18일부터 大韓再保險公社는 政府代行機關으로서 輸出保險業務를 개시하였다.

나. 輸出保險의 機能과 特性

(1) 輸出保險의 機能

輸出去來는 國內去來와는 달리 많은 危險이 따르고 있다. 이것은 輸出去來가 法律, 言語, 通貨, 商慣習 등을 달리하는 遠隔地에 있는 相對方을 대상으로 하는 去來인 만큼 당연하다고 하겠다. 최초 그 危險에 대한 對策이 國內去來와 거의 다를바 없는 貨物自體의 毀損, 價格 및 外換變動에 대한 對抗手段에 국한되었다. 이는 國際私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발생하는 당연한 危險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第2次世界大戰以後 各國마다 종래의 國際金本位制度가 管理通貨制度로 移行되고, 貿易政策도 關稅政策에서 外換管理 위주의 政策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戰爭, 內亂의 危險 이외에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形態의 危險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各國마다 自國의 輸出者를 保護하는데 腐心하여 國際間的 協定에 의해 이것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결국 當該國 政府가 自國의 輸出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해주는 救濟策을 講究하기 시작하였는바 이것이 輸出保險이라는 形態로 具體化 되었다.

輸出去來에서 발생하는 危險은 크게 輸出契約의 相對方에게 商品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危險과 代金決濟面에서 발생하는 危險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商品의 운송도중에 船舶의 沈沒, 火災등에 의한 輸出商品 自體의 滅失, 훼손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海上保險에서 이를 담보하고 있으며 後者의 경우는 輸出契約相對國에 의한 契約의 破棄, 輸出契約相對方의 破産, 代金支給遲延에서 기인하는 輸出代金の 回收不能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輸出保險에서 이러한 危險을 담보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輸出者가 輸出契約을 締結하였다 하더라도 他國에 所在하고 있는 契約相對方인 輸入者가 契約成立後에 一方的으로 契約을 破棄하지 않을런지, 또는 約定된 期日內에 代金決濟를 이행해 줄 것인지, 또는 輸出契約에 정한 諸般 約定事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輸出者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國際情勢下에서는 언제 輸入國에서 戰爭이 일어날지 또는 輸入制限, 換去來制限 등의 措置를 취하게 될지 전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輸出者의 불안은 더욱 加重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러가지 危險을 무릅쓰고 商去來를 하는 경우 별도의 保護措置가 없이는 輸出者나 輸出

商品을 生産하는 生産者가 그들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不意의 損失을 도저히 전디어 내기가 어렵고 동시에 輸出者나 生産者에게 輸出資金을 融資해준 金融機關으로서도 融資金回收에 대한 불안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과감한 融資를 주저하게 된다.

이와같이 貿易去來上에 수반되는 諸危險 즉 輸入國에서의 戰爭, 內亂, 換去來의 制限 및 禁止 등의 非常危險 (political risk) 과 輸出契約相對方의 破産 또는 代金支給遲延 및 拒絶등의 信用危險 (commercial risk) 으로 인하여 輸出者 또는 輸出資金을 融資한 金融機關 등이 입는 損失을 補償해 줌으로써 輸出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非營利政策保險이 바로 輸出保險制度인 것이다.

輸出保險의 일반적인 機能으로서는 輸出上의 不安除去機能, 金融的機能,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 輸出振興政策上의 機能, 海外輸入商社의 信用調査機能 등을 들 수 있는데 機能別로 그 특징적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輸出上의 不安除去機能

輸出保險은 輸入國에서 발생하는 非常危險 또는 信用危險등으로 인하여 輸出不能 또는 輸出代金 回收不能으로 부터 輸出者가 입는 損失을 補償해 줌으로써 輸出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여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貿易去來의 環境條件을 國內去來의 環境條件과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만드는데 一次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다.

(나) 金融的機能 (信用手段의 提高)

輸出保險은 輸出代金の 未回收危險을 담보하므로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輸出金融支援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企業이 입는 損失을 補償함으로써 資金面の 流動性を 提高시켜주어 事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信用手段을 공여한다.

(다)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

輸出保險은 保險의 引受條件 즉 담보하는 危險의 範圍, 補償率, 保險料率 등을 調整함으로써 輸出業者의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 貿易管理政策手段으로서의 貿易去來法과 外換管理法등에 의한 直接統制方式은 輸出保險과 金融을 관련시킨 間接統制方式으로 전환될 部分이 많이 있을 것으로 豫상됨으로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 역시 상당히 중요한 機能中の 하나이다.

(라) 輸出振興政策上的 機能

輸出保險은 政府의 輸出振興政策의 一環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輸出者는 低廉한 保險料負擔으로 유리한 實損補償을 받을 수 있게 되어 輸出競爭力強化 등 輸出補助의 機能을 가지게 된다.

(마) 海外輸入商社의 信用調査機能

海外輸入者의 信用狀態를 잘 파악하는 것이 保險事故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關鍵이 되므로 輸出保險 取扱機關은 이러한 信用調査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2) 輸出保險의 特性

輸出保險은 통상의 保險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다.

(가) 民間信用保險形態로서는 업무운영이 곤란하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擔保危險의 性質上 保險의 原理인 大數의 法則을 적용하여 保險事故發生의 確率算定이 곤란하므로 적정한 保險料 算定이 어렵고, 둘째, 戰爭, 貿易 및 換去來의 禁止 또는 制限 등의 非常危險은 多數의 輸出契約에 대하여 동시에 保險事故가 발생하므로 保險經營主體인 保險者의 막대한 擔保力이 保障되지 않는 한 保險事業을 운영하기 어렵고, 셋째, 保險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事前에 충분히 輸入商社의 信用狀態와 非常危險에 대한 情勢判斷 등의 調査가 필요한 데, 이와같은 調査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調査機構가 필요

함은 물론 막대한 經費가 소요되므로 民間企業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비껴, 民間企業으로서는 輸出支援의 見地에서 보다는 利潤追求의 입장에서 收支打算이 맞는 危險類型만을 선택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危險擔保範圍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政府의 責任下에 운영된다.

輸出保險의 運營形態는 첫째, 政府에 의한 直營方式, 둘째, 政府管掌에 의한 公企業體에의 代行方式, 셋째, 民間企業에 대한 委任經營方式으로 大別된다.

이 경우 民間企業으로 하여금 委任經營을 시킨다 하더라도 特定危險에 대하여는 政府가 全額 再保險으로 引受하는 方法 등을 취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政府가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前項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輸出保險을 民間保險企業이 運營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政府가 運營의 責任을 지게 됨으로써 무한한 擔保力과 信用力을 제공하여 擔保範圍를 최대한 넓히고 또한 危險의 同時多發性에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가 低率의 保險料로서 政府의 輸出振興政策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 獨立採算制를 채택하고 있다.

輸出保險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民間企業에 委任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政府의 責任下에 운영되므로 民間企業의 資本金과는 別途의 政府出捐基金으로 獨立會計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保險事業의 收入으로 支出을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 輸出保險制度의 變遷過程

· (1) 輸出保險法の 改定

輸出保險法은 1969년 12월 31일 制定된 이래 1981년 4월 30일까지 5

次に 걸쳐 改正되었는데 이중 1970년 1월 1일 第1次改正으로 信用危險의 擔保範圍를 擴大하였으며, 1972년 12월 30일의 第2次改正에서는 各種保險種目の 補償率을 인상하였고 海外投資保險을 신설하여 輸出保險制度를 확대·개편하였다.

1976년 12월 31일의 第3次改正에서는 海外建設工事に 따르는 危險을 擔保하기 위하여 海外建設工事保險을 추가하는 한편 輸出保險事業의 代行機關도 「大韓再保險公社」에서 「韓國輸出入銀行」으로 변경하였다. 1978년 12월 5일의 第4次改正은 輸出保險에 대한 管掌主務部の 變更과 輸出保證保險의 新設 및 擔保力の 強化를 주된 內容으로 하는 것이었다.

1981년 3월 27일의 第5次改正에서는 輸出保險의 運營主體를 現行法上 當行에 의한 代行體制로 부터 韓國輸出保險公社의 專擔體制로 이행하기 위하여 韓國輸出保險公社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內容으로 하고 있다.

(가) 第4次改正의 主要内容

첫째, 그동안 財務部가 管掌하여 오던 輸出保險事業을 商工部가 管掌하도록 하여 적극적이고 탄력성있는 輸出支援政策을 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둘째, 政府가 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總額 즉 輸出保險最高引受限度를 從前 輸出保險基金의 20倍에서 30倍까지로 확대하여 擔保力を 강화하였다.

셋째, 「플랜트」, 海外建設工事 및 用役輸出에 필요한 保證書(bond)를 발급하는 銀行의 危險을 擔保하기 위하여 輸出保證保險을 신설하였다.

넷째, 輸出保險의 危險分散을 위하여 再保險制度의 實施根據를 마련함으로써 政府가 체결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의 一部를 外國輸出保險者에게 出再(再保險에 붙여 責任轉嫁)할 수 있고, 또한 外國인이 주된 契約者가 되어 內國人과

共同으로 輸出하는 경우에 그 外國인이 체결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中 內國人參與分에 관한 責任의 一部 또는 全部에 대하여 外國輸出保險者로부터 受再(再保險을 받아 責任 負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종래에는 決算上 利益金이 발생하였을 경우 利益金 全額을 輸出保險基金에 轉入시켰던 것이나 이번의 變更으로 利益金을 別途計定에 積立함으로써 決算後 損失이 발생할 경우 이 積立金으로 우선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政府가 補填하도록 하여 基金의 소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輸出保險最高議決機關인 「輸出保險審議會」를 「韓國輸出入銀行」에서 「商工部」로 移管하여 輸出保險에 관한 重要問題를 政府의 政策的 次元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나) 第5次改正의 主要内容

첫째, 輸出保險業務를 効率的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現行 韓國輸出入銀行에 의한 代行體制로 부터 韓國輸出保險公社의 專營體制로 改編하기 위한 法的根拠를 마련 하였다.

둘째, 保險金을 지급한 경우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의 目的 또는 第三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取得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째, 輸出保險引受限度가 輸出保險基金의 30 倍로 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輸出保險引受를 위하여 種目別 輸出保險引受限度를 매년 商工部長官이 정하여 國會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다.

네째,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轉貸借款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直接貸出의 元利金 回收不能危險을 擔保하기 위하여 保險의 種目에 輸出代金金融保險을 신설하였다.

끝으로 輸出保險需要의 增加趨勢에 따라 원활한 保險引受를 기하기 위하여 輸

出保險基金財源의 범위를 政府 및 政府이외의 者の 出捐金,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으로 多元化하였다.

(2) 輸出保險管掌主務部署 및 代行機關의 變更

輸出保險은 그 特殊性에 의해 高度의 保險技術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政府는 當初 大韓再保險公社에 輸出保險部를 설치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켜 왔었다.

즉 大韓再保險公社는 1969년 2월 그 專擔部署로서 輸出保險部를 신설하고 政府로부터 1억원의 基金을 出捐받아 이를 財源으로 하여 동년 2월 19일부터 輸出保險業務를 개시하였다.

한편 輸出의 급속한 伸張으로 輸出保險의 이용이 점차 활발해짐과 병행하여 輸出商品 構造面에서도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이 증대하자 이에대한 과감한 資金支援을 통하여 重化學工業을 育成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政府는 1976년 7월 1일 韓國輸出入銀行을 發足시켜 1969년부터 韓國外換銀行에 의하여 代행되어 오던 中長期延拂輸出 및 海外投資支援 등의 業務를 전담케 하였다. 이를契機로 政府는 輸出保險業務도 延拂輸出支援金融을 담당하는 當行에 代행시켜 輸出業者에 대한 支援을 強化시키자는 政策的인 의도에서 1976년 12월 31일 輸出保險法을 改正하여 종래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여 오던 輸出保險業務를 1977년 1월 1일부터 當行으로 移管하였다.

輸出保險은 法制定 當時 同保險의 特殊性和 運營上 最高의 保險技術이 요구된다는 觀點에서 一般保險業務를 管掌하는 財務部가 이를 管掌하여 왔다. 그러나 그후 輸出保險은 輸出 및 其他 對外去來에서 발생하는 危險을 擔保함으로써 輸出者를 保護하고, 輸出등 對外去來의 振興을 圖謀한다는 本來의 목적과 같이 同制度는 輸出支援政策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그 機能面에 있어서도 輸出上의 不安除去機能, 金融的機能, 貿易管理制度로서의 機能 및 輸出振興政策上的의

機能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輸出保險을 商工部の 輸出「드라이브」政策과 密着시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論議가 대두되었다. 더욱이 政府의 重化學輸出振興政策에 따라 「플랜트」 등 重化學製品의 中・長期延拂輸出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同輸出에 대한 輸出保險側面에서의 적극적인 支援을 위하여는 이러한 輸出政策을 專擔하는 商工部에서 輸出保險業務를 管掌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새로운 見解가 支配的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政府는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1978년 12월 5일 輸出保險法을 改正하여 그동안 財務部에서 管掌하여 오던 保險事務를 商工部가 管掌케 함으로써 保險面에서 積極的이고 彈力性있는 輸出支援政策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輸出保險의 運營

가. 運營主體 및 代行機關

현재 世界各國의 輸出保險運營機關을 보면 예외없이 政府가 直接・間接으로 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政府의 責任下에 非營利的으로 운영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同事業을 政府(商工部)가 直接 管掌하고 다만 그 業務를 현재 當行에 대행시키고 있다.

當行은 保險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은 「輸出保險審議會」라는 諮問機關의 議決을 거쳐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商工部長官은 代行業務에 관하여 當行을 監督하며 그 業務 또는 會計狀況을 檢査하거나 當行으로 하여금 필요한 事項을 報告토록 하고 있다. 當行은 다만 政

府가 정하는 代行範圍와 代行節次에 따라 業務를 수행할 따름이며 實質的인 保險者는 政府로서 保險事故發生時 保險金の 支給義務 역시 政府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代行機關인 當行內에는 1981년 5월말 현재 輸出保險業務를 擔當하는 2個 部署가 설치되어 있으며 輸出保險 1部에 統轄課, 業務課, 補償課를 그리고 輸出保險 2部에 管理課, 信用調査課 및 制度調査課를 두고 있다.

한편 嶺南地域의 輸出者 또는 一般銀行등에 輸出保險 付保便宜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釜山에 出張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美國 「로스엔젤레스」와 「홍콩」의 2個地域에 輸出保險擔當 海外事務所를 設置하여 罹災調査, 信用調査 등의 業務를 취급하고 있다.

나. 輸出保險의 擔保危險

우리나라의 輸出保險은 그 種目에 따라 다음과 같은 危險을 擔保하고 있다. 이러한 危險의 발생으로 인하여 輸出者나 生産者가 代金決濟面에서 입는 損失 또는 金融機關이 融資金 回收不能으로 인하여 입는 損失을 補償해 주고 있다.

(1) 非常危險 (political risk)

非常危險이란 輸入國에서 輸入禁止 또는 制限措置, 外國에서의 戰爭, 內亂, 「스트라이크」와 같은 非常事態 등 輸出契約當事者에게 責任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輸出不能 또는 輸出商品代金の 回收不能危險을 말한다.

(2) 信用危險 (commercial risk)

信用危險은 輸出契約相對方인 輸入者の 一方的인 契約破棄 또는 輸出契約 相對方の 破産 등으로 인한 輸出不能 및 代金回收不能, 輸入者の 財務狀態惡化로 인한 代金支給遲延 등 輸入者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債務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危險을 말한다.

(3) 企業危險 (management risk)

企業危險이란 企業의 活動過程에서 발생하는 危險으로서 企業家の 販賣豫測 또는 經營豫測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危險을 말한다.

다. 輸出保險의 種類

現行 우리나라의 輸出保險 運營種目は 다음 8가지가 있는데, 各 種目別 特性에 대하여는 3項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一般輸出保險

- 輸出者保險
- 生産者保險
- 增加費用保險

② 輸出金融保險

③ 輸出어음保險

④ 中・長期延拂輸出保險

⑤ 委託販賣輸出保險

⑥ 海外投資保險

- 株式 등
- 貸付金債權등
-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
- 社債등

⑦ 海外建設工事保險

⑧ 輸出保證保險

라. 輸出保險의 施行方法

輸出保險은 付保對象去來를 去來件別로 하느냐 一定 條件에 따라 包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個別保險引受方式 또는 包括保險引受方式의 두가지로 運營되고 있다. 個別保險引受方式이란 保險契約者가 保險請約을 하면 保險者가 每件마다 內容을 審査하여 引受與否를 결정하는 方法이며, 包括保險引受方式은 保險契約者가 保險者와 特約을 맺고 保險契約者는 特定商品 및 特定決濟條件의 輸出去來 모두를 자동적으로 保險에 付保하고 또한 保險者는 이에대하여 의무적으로 保險引受를 하는 制度로서 施設方法上 組合別, 商社別, 商品別로 구분하여 運營하는 것이 통례이다. 輸出保險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包括保險制度를 實施하는 理由로는

첫째, 包括保險에 의하면 保險契約者(輸出者)의 負擔이 輕減되기 때문이다. 즉 保險料率이 個別保險인 경우보다 50%가 割引됨으로써 輸出者の「코스트」가 인하되어 國際競爭力이 강화되는 效果를 주기 때문이다.

둘째, 低率의 保險料로써 輸出代金未回收危險을 擔保받을 수 있기 때문에 輸出者는 金融機關으로부터 金融의 受惠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輸出者가 과감한 市場開拓을 시도할 수 있으며,

셋째, 對象輸出物品 全部를 의무적으로 保險에 付保하게 함으로써 保險의 逆選擇(危險物件만의 集中付保)을 排除할 수 있으므로 危險의 平準化를 기할 수 있으며

넷째, 保險關係成立에 있어서 保險契約者가 該當 延拂輸出契約에 따라 原則적으로 保險者에게 保險請約書만 提出하게 되면 保險關係가 자동적으로 成立되기 때문에 保險契約節次上 保險契約者의 付保節次 事務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保險料率

일반적으로 통상의 輸出保險이 아닌 一般保險은 과거의 付保實績과 收入保險料 그리고 損害率에 관한 統計資料 등 保險事業運營의 經驗을 토대로 한 確率計算에 의거 適正保險料率을 算定함으로써 大數의 法則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輸出保險은 우리나라의 輸出振興을 도모하기 위한 非營利 政策保險이기 때문에 輸出保險法에서도 保險事業의 收入과 支出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保險料率을 政府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輸出保險은 특히 非常危險의 경우에 保險事故의 발생이 동시에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輸出保險의 運營經驗이 짧은 우리나라로서는 事故發生의 예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確率의 算定도 거의 불가능하여 危險의 정도에 따라 保險料率을 策定하는 一般原則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輸出保險料率은 1969년 業務開始以來 현재까지 5회에 걸쳐 改正하였는데 우리나라와 輸出構造와 그 類型이 비슷한 自由中國 등과 先進國輸出保險機關에서 실시하고 있는 基本料率을 참고로 하여 輸出競爭力提高라는 점을 감안 先進諸國의 경우보다는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保險料率을 引下調整하여 왔다.

특히 1979년 12월 18일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第5次 輸出保險料率의 改正은 基金의 收支均衡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오히려 輸出競爭力強化를 통한 輸出振興이라는 면에 중점을 두어 정비하는 등 料率體系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는데 그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基本料率의 體系를 危險의 類型에 따라 綜合危險料率, 非常危險料率 및 信用危險料率로 細分化하여 각각 料率을 인하하는 한편, 保險契約者가 擔保받고자하는 危險을 선택하여 保險에 付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國家의 信用度等級에 따라 一定料率을 割増하거나 割引하도록 되어있는 從來의 料率體系를 保險引受可能한 最下位等級을 基準料率로 하고 國別信用度評價에 따라 5 % 내지 20 %를 割引하는 소위 國別割引率로 體系를 변경하였고,

셋째, 代金決濟에 따른 支給保證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一率的으로 一定率을 割引해오던 方式을 支給保證銀行이나 政府의 信用度에 따라 保證書發給者의 等級을 4等級으로 細分化하여 割引率을 差等適用하도록 하였다.

네째, 輸出保險의 利用率을 提高시키기 위한 方案으로서 輸出어음保險의 경우 이른바 「인센티브」 割引制를 신설하였는데 그 內容은 本・支社間去來에 대하여는 원래 本・支社가 공히 破産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非常危險만을 擔保하기 때문에 綜合危險料率을 그대로 적용하여온 종래의 料率體系를 개선하여 一定率을 割引토록 하였으며, 특히 同一輸入者와 5回以上 50 만「달러」이상 사고없이 結제한 實績이 있는 國內輸出者에 대하여는 一定率을 割引해 주도록 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者로 하여금 良質의 輸出契約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로부터 商品을 輸入하는 輸入者가 相對國의 政府이거나 또는 이에 準하는 地方自治團體 등 公共機關인 경우에는 民間輸入者에 비하여 信用危險이 적기 때문에 그에 相應하는 保險料를 割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公共輸入者割引率을 신설하게 되었다.

여섯째, 종전에는 保險契約者가 同一去來物件을 船積前과 船積後에 연속적으로 付保할 경우 特別割引의 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이번 料率改正에서 支給保證割引, 國別割引, 또는 「인센티브」 割引 등 料率의 割引體系를 합리적으로 細分化함에 따라 料率適用의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連續保險割引率을 폐지하였다.

끝으로 保險料率을 실제로 特定去來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基本料率에다 다시

特別料率을 할인하여 算定하게 되는데 이 特別料率은 그중 어떤 것이든 條件만 갖추면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銀行保證割引, 公共輸入者割引, 政府保證割引, 本・支社間割引 및 無事故割引은 모두 輸入者の 信用危險이 적다는 데 共通事由가 있으므로 이들이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保險契約者에게 가장 유리할 割引率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國別割引率이나 包括保險割引率은 其他 特別割引率과는 그 輕減事由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其他 割引率과 중복하여 적용된다.

바. 輸出保險審議會 및 其他委員會

(1) 輸出保險審議會

輸出保險의 운영상 重要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商工部內에 輸出保險審議會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審議會는 保險料率, 保險契約, 保險關係成立의 制限, 保險責任時期의 制限, 包括保險의 實施, 保險種目別 契約締結限度, 輸出保險基金의 豫算 및 決算, 當行이 被保險利益의 受益者가 되는 輸出保險契約의 締結에 관한 事項, 再保險契約의 締結 및 其他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事項에 대하여 審議議決하고 輸出保險에 관하여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고 있다.

審議會의 設置 및 委員의 構成에 관하여는 1978년 12월 5일 第4次 輸出保險法改正 이전에는 輸出保險政府代行機關인 當行에 審議會가 設置・運營되어 왔는바 그 構成委員은 輸出保險法施行令에서 韓國輸出入銀行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11인 이내에서 다음 각호의 者를 委員으로 定하였다.

- ① 經濟企劃院 豫算局長
- ② 外務部 通商局長
- ③ 財務部 證券保險局長

④ 商工部 商易局長
 ⑤ 建設部 海外局長
 ⑥ 韓國銀行 理事중 財務部長官이 위촉한 者 1인
 ⑦ 大韓貿易振興公社 理事중 財務部長官이 위촉한 者 1인
 ⑧ 기타 輸出保險에 關하여 學識・經驗이 풍부한 者중 財務部長官이 위촉한 者
 그후 第4次 輸出保險法改正으로 현재는 輸出保險審議會가 商工部內에 設置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構成員은 輸出保險法施行令에서 商工部次官을 委員長으
 로 하고 11인 이내에서 다음 各號의 者를 委員으로 정하고 있다.

- ①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
- ② 外務部 經濟次官補
- ③ 財務部 財政次官補
- ④ 商工部 商易次官補
- ⑤ 動力資源部 企劃管理室長
- ⑥ 建設部 企劃管理室長
- ⑦ 韓國輸出入銀行長
- ⑧ 韓國銀行 副總裁
- ⑨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 ⑩ 기타 輸出保險에 關하여 學識・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商工部長官이 위촉
한 者

한편 審議會의 운영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輸出保險審議會規程에서 정하고 있
다.

(2) 輸出保險引受審査委員會

輸出保險引受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當行에 輸出保險引受審査委員會를 設置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첫째, 當行이 保險受益者가 되는 保險契約에 관한 事項 및 所定 C급이상 등급의 銀行支給保證이 없는 去來로서 國別信用度 D급이하인 國家에 대한 輸出어음 保險을 제외한 其他 種目 保險契約에 관한 事項. 다만, 包括保險의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保險金額 1,500 천「달러」 상당액 이상의 輸出어음保險去來當事者の 引受限度策定. 다만, 包括保險의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地域別, 輸入國別, 輸入者別 및 商品別 引受限度 策定

나째, 기타 輸出保險引受에 관한 重要事項

한편 이 委員會는 當行의 專務理事를 委員長으로 하여 다음의 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商工部 輸出保險課長
- ② 建設部 海外政策課長 (海外建設工事保險에 관한 事項인 경우)
- ③ 動力資源部 海外資源課長 (海外投資保險에 관한 事項인 경우)
- ④ 大韓貿易振興公社 地域調査部長
- ⑤ 輸出入銀行 海外投資調査部長
- ⑥ 輸出入銀行 輸出保險部長
- ⑦ 輸出入銀行 輸出保險擔當 顧問辯護士

(3) 輸出保險補償審議委員會

한편 輸出保險事故補償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當行에 輸出保險補償審議委員會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첫째, 20 천「달러」 相當額을 초과하는 保險事故의 支給保險金에 관한 事項

둘째, 保險金額 50 % 範圍內的 假渡保險金 支給에 관한 事項

세째, 補償에 관한 法令 및 約款의 解釋에 관한 事項

네째, 기타 補償에 관한 重要事項

한편 이 委員會는 當行 專務理事를 委員長으로 하여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되어 있다.

- ① 商工部 輸出保險課長
- ② 韓國銀行 外換管理部長
- ③ 大韓貿易振興公社 市場開拓部長
- ④ 輸出入銀行 輸出保險部長
- ⑤ 輸出入銀行 輸出保險擔當 顧問辯護士
- ⑥ 輸出入銀行長이 위촉하는 若干名の 保險專門家

3. 輸出保險의 業績

가. 營業實績

(1) 一般輸出保險

一般輸出保險은 輸出契約을 締結한 후 輸入國政府의 輸入制限, 換去來의 制限 또는 戰爭의 勃發등 非常危險 (political risk) 과 輸出契約 相對方의 破産 또는 一方的인 契約破棄 (輸出契約 相對方이 政府나 地方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公共團體인 경우에 한함) 등 信用危險 (commercial risk) 으로 인하여 輸出이 不可能하거나 代金回收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輸出者 또는 生産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이다.

또한 同保險은 輸出契約에 이미 정해진 航海 또는 航路가 非常危險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輸出者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海上運賃 또는 海上保險料에 대한 損失도 補償한다.

이와같이 一般輸出保險은 극히 제한된 信用危險을 제외하고는 주로 非常危險으로 인한 損失을 擔保하며 또한 擔保期間도 契約締結後 代金決濟時까지의 全期間에 발생한 危險을 擔保하지만 主擔保對象은 信用前危險 (pre-credit risk) 이 존재하는 船積時까지가 된다.

〈表 Ⅳ - 23 〉

一般輸出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69	60	721.6	-
1970	21	533.2	-
1971	7	16.5	-
1972	1	48.4	-
1973	-	-	-
1974	6	791.7	-
1975	-	-	-
1976	1	1,076.1	-
1977	2	15,362.2	-
1978	2	717.8	-
1979	1	869.4	-
1980	-	-	-
合 計	101	20,136.9	-

(2) 輸出金融保險

輸出金融保險은 輸出을 위한 生産, 加工, 集荷資金을 融資한 銀行의 代金未回收로 인한 損失을 補償하는 制度이다. 輸出金融保險은 다음에 記述하는 輸出어음保險이 D/P, D/A條件의 荷換어음을 買入한 外國換銀行의 代金未回收를 保險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는 주로 船積前 輸出金融의 未回收를 保險의 대상으로 하

고 있다는 점이 兩保險의 機能上의 差異點이다.

따라서 銀行이 輸出者에게 輸出金融을 貸出한 후, 融資金의 未回收 또는 回收不能으로 인하여 銀行이 입는 損失을 補償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保險은 金融機關이 輸出業者, 生産者, 軍納業者 또는 海外建設業을 營爲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에게 生産, 集荷, 加工에 필요한 資金을 貸出 또는 貸引의 形式으로 融資한 후 融資받은 輸出者등이 輸出不能, 引渡不能 또는 代金回收不能 등의 事由가 발생함으로써 金融機關이 融資金을 滿期에 回收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

<表Ⅳ-24>

輸出金融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料
1969	58	491.7	-
1970	18	1,177.1	-
1971	2	18.3	-
1972	-	-	-
1973	1	7.2	-
1974	-	-	-
1975	1	23.4	-
1976	5	855.3	-
1977	60	2,171.7	-
1978	17	1,458.0	-
1979	37	1,160.1	-
1980	8	244.7	-
合計	270	7,607.5	-

(3) 輸出어음保險

輸出어음保險은 D/A, D/P 등 無信用狀「베이스」의 輸出去來를 保護하기 위한 保險으로 輸出者가 輸出한 후 輸入者를 支給人으로 하는 荷換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外國換銀行이 買入하였을 때 滿期에 어음支給人(輸入者)으로부터 代金を支給받을 수 없게 되거나 荷換어음을 買入한 外國換銀行이 同어음을 他外國換銀行에 再買入시켰을 경우에 再買入銀行이 滿期에 어음金額을 支給人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制度이다.

우리나라의 貿易去來는 中전에는 取消不能信用狀에 의한 輸出이 主宗을 이루어 왔으나 國際間의 輸出競爭이 점차 격화 되어감에 따라 1974년 이후 D/P, D/A 등 無信用狀「베이스」의 輸出比率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특히 中南美諸國에 대한 輸出에 있어서는 D/P, D/A 등의 短期延拂輸出條件의 去來가 慣習化되어 있다.

〈表Ⅳ-25〉

輸出어음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69	2	12.1	—
1970	150	863.6	—
1971	525	4,371.0	—
1972	671	11,478.9	—
1973	356	3,635.0	12.5
1974	397	5,172.3	21.7
1975	1,390	16,072.8	207.4
1976	2,625	40,899.0	157.6
1977	2,642	28,439.8	469.4
1978	1,586	19,545.7	371.2
1979	1,152	16,546.4	361.7
1980	863	17,090.2	286.7
合 計	12,359	164,126.8	1,888.2

그러나 이와같은 信用狀을 수반하지 않는 輸出去來에 있어서는 輸入者가 輸出代金を 톨림없이 決済하여 줄것인지 불안이 따르게 되고, 荷換어음을 買入하는 外國換銀行도 同어음이 決済되지 않음으로써 損失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 買入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음買入銀行이 입은 損失을 補償해 줌으로써 銀行으로 하여금 D/P, D/A 條件의 荷換어음의 買入을 원활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輸出者의 金融負擔을 경감케 함과 더불어 어음이 不渡가 된 경우에도 不渡의 原因이 輸出者의 歸責事由가 아닌 한 支給保險金에 해당되는 金額만큼은 銀行이 輸出者에게 遡求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輸出者를 保護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오늘날 輸出市場이 점차적으로 供給者市場에서 購買者市場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輸出去來方式도 外上去來方式으로 決済形態가 轉換되어 가고 있고 決済期間도 短期에서 中長期로 長期化되어 가고 있다.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은 6월以上 10年以内(商工部長官이 認定하면 20年以内)의 「플랜트」등 資本財를 延拂로 輸出하였을 경우 代金回收不能 또는 貨務의 履行遲滯에 의해서 輸出者가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여 주는 制度이다.

특히 第2次大戰 이후 先進國들은 그들의 輸出市場을 확대하기 위하여 延拂輸出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中長期低利金融支援을 하여 輸出者의 資金負擔을 완화해 주는 동시에 延拂輸出保險制度를 創案하여 延拂輸出에 수반된 危險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資本財의 中長期延拂輸出을 촉진하여 輸出市場을 확대하기 위한 資金面의 支援을 當行이 擔當하고 있는데, 이러한 中長期債權 回收面의 危險을 이 中長期延拂輸出保險制度로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先進國의 輸出業者와 경쟁하며 輸出市場을 開拓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保險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表 IV - 26〉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72	1	491.1	-
1975	1	201.2	-
1976	5	2,078.1	-
1977	4	3,036.8	16.3
1978	7	31,795.7	98.1
1979	4	29,269.7	43.2
1980	11	50,793.7	25.5
合 計	33	117,594.3	183.1

(5) 委託販賣輸出保險

委託販賣輸出이란 物品을 無換으로 輸出하여 當該 物品이 販賣된 範圍 안에서 代
金을 決濟하는條件의 輸出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輸出은 輸出者(委託
者)가 自己의 計算 및 危險下에서 海外에 있는 他人(受託者)에게 物品販賣를
委託하는 것으로서 海外의 需要者가 直接 現物을 購入할 수 있다는 점에서 新市
場의 開拓에는 상당히 適合한 방식이나 販賣의 成敗에는 많은 不安이 隨伴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不安으로부터 輸出者를 救濟하기 위하여 설정된 制度가 同保險
이다.

즉 委託販賣(consignment sale)의 形式으로 輸出한 경우에 輸出者가 당
초에 충분히 販賣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商品이 예정대로 販賣되지 않기 때문에 그
商品의 輸出과 販賣를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回收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이다.

英國에서는 이 保險과 유사한 制度로서 「在庫維持保證制度」가 있는 바, 이른바 「트레이드·라이프」(Trade life) 保證이라 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2~3년의 中期에 걸친 계속적인 販賣活動의 保證에 적합한 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委託販賣輸出保險은 短期的인 去來를 單位로 하여 擔保하는 것이다.

〈表 IV-27〉

委託販賣輸出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71	13	23.6	-
1972	3	4.5	-
1974	-	-	2.5
合 計	16	28.1	2.5

(6) 海外投資保險

최근 開發途上國家들은 自國産業의 育成 및 發展을 위하여 資本財의 輸入을 長期延拂方式의 形態와 아울러 海外資本導入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 따라 各國은 輸出增進策의 一環으로 輸出去來方式에 의한 輸出과 병행하여 海外投資의 方式으로 輸出市場을 확장내지는 유지하는데 노력을 傾注하고 있다.

특히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經濟는 앞으로 더욱 장기에 걸쳐 안정적 성장과 對外經濟活動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海外投資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즉

첫째, 海外資源開發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저렴하고도 안정적인 資源供給源을 확보하며,

둘째, 우리나라 資本技術을 資本輸入國의 勞動力이나 기타의 諸資源과 결합시키므로써 被投資國의 經濟發展에 공헌하는 동시에,

세계, 外貨의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民間資本에 의한 적극적인 海外投資의 촉진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海外投資에는 여러가지 危險이 수반되고 그 가운데서도 戰爭, 革命, 內亂 등에 의한 事業의 繼續不能, 投資受入國政府에 의한 收用등의 危險은 當事者에 있어서 不可抗力의 事態일 뿐만아니라 損失의 補償을 相對方에게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海外投資者의 投資意慾을 저해하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海外投資促進策의 一環으로 이와같은 危險에서 民間海外投資家를 保護하기 위하여 海外投資保險制度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保險은 1948년 英國이 世界에서 제일 먼저 창설하였으며 그후 世界各國이 同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 表Ⅳ - 28 >

海外投資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76	2	2,159.6	—
1977	2	1,173.0	—
1978	1	2,434.3	—
1979	5	6,380.9	—
1980	7	7,614.5	—
合 計	17	19,798.3	—

(7) 海外建設工事保險

開發途上國에서는 經濟開發 또는 社會開發을 推進시킴에 있어 우선 道路, 港灣, 堤防, 上下水道등과 같은 社會間接資本의 整備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같은 대규모의 建設에는 상당한 資金과 高度의 技術을 요하게 되므로 先進國의 協力없이 는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開發途上國家의 요청에 호응하는 적절한 經濟協力手段이 곧 海外建設工事이다. 특히 최근에는 中東地域의 產油國들이 建設, 土木(도로, 항만) 등에 의욕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世界各國의 先進國들이 다투어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建設業體들도 同地域에 대한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 建設會社가 추진하고 있는 海外建設工事의 대부분이 이들 開發途上國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政治的, 經濟的 危險이 수반되고 있다. 특히 海外工事發注國에서의 戰爭, 內亂, 政變 또는 外國에서 실시되는 換去來의 制限, 禁止 등의 危險은 當事者에 있어 不可抗力인 事態일 뿐만 아니라 損失의 補償을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海外建設促進策의 一環으로 이와같은 危險에서 民間海外建設業者를 保護하기 위해 海外建設保險制度를 신설하여 197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表 IV-29〉

海外建設工事保險의 營業實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78	2	10,085.9	—
1979	3	204,913.6	—
1980	4	82,100.1	—
合 計	9	297,099.6	—

(8) 輸出保證保險

輸出振興政策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輸出市場構造도 급진적으로 多邊化하였으며, 최근에는 「플랜트」輸出과 海外建設輸出이 활발하게 展開되는 등 品目도 多邊化되어 가고 있고 그 實績도 괄목할 만한 伸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플랜트」輸出을 하거나 海外建設工事を 행할 경우에 輸出者나 海外建設業者는 海外發注者

로 부터 銀行 또는 保險會社가 발행하는 保證書의 提出을 요구받는 것이 通례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海外發注者가 保證書를 요구하는 理由는 受注者가 과연 약속한 대로 契約을 締結할 것인지 또는 契約期間內에 工事を 完工할 것인지에 대하여 保證을 받기 위하여 公信力있는 銀行이나 保險會社의 保證書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保證書가 「본드」(Bond)이다. 만약 受注者가 契約에 정한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드」를 발행한 銀行이 保證人으로서 發注者の 請求에 따라 保證金을 支給하게 된다.

근년의 「플랜트」輸出과 海外建設工事は 그 規模가 大型化됨에 따라 보증서발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본드」의 金額이 巨額化되고 또 無條件附保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發注者에 대한 「본드」의 提出은 國際入札의 參加, 輸出契約 또는 技術提供契約의 締結등에 必須條件으로 되어있어 「본드」發給을 얻지 못하면 「플랜트」輸出이나 海外建設工事は 受注를 단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플랜트」輸出이나 海外建設工事は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에 기여함과 아울러 自國의 産業發展에도 큰 도움을 주므로 금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분야이기도

〈表Ⅳ-30〉

輸出保證保險의 營業実績

(단위: 백만원)

年 度 別	件 數	保 險 金 額	支 給 保 險 金
1979	-	-	-
1980	338	333,538.9	-
合 計	338	333,538.9	-

하다. 이에따라 「본드」를 발행한 銀行이 海外発注者로부터 부당한 請求를 받아 입게되는 損失을 補償하여 줌으로써 輸出者나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본드」發給을 용이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同輸出을 支援하기 위하여 輸出保證保險制度를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 信用調査實績

輸出保險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는 非常危險뿐만 아니라 信用危險까지도 擔保하기 때문에 契約相手方 즉 海外輸入者の 信用狀態에 대한 調査는 輸出保險運營上 필수불가결한 事業中の 하나이다.

輸入者の 信用調査는 美國의 D & B (Dun & Bradstreet Int'l Ltd.)英國의 A TP (Amalgamated Trades Protections Ltd) 홍콩의 AMA (Asia Mercantile Agency)등 世界 各地域에 소재한 13 個 信用調査專門機關과의 業務提携를 통하여 신속한 調査가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輸出保險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海外輸入者에 대한 信用調査가 선행되어야하므로 輸出者는 사전에 충분한 時日을 두고 信用調査를 의뢰하여 保險加入時點에서는 調査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調査対象은 輸出保險에 付保된 事實이 있거나 앞으로 付保할 輸入者이며 調査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은 当行 自體經費로 충당된다.

1981년 5월 현재 調査가 완료된 海外輸入者 「화일」(File)數는 107 個 國에 9,282 個社에 달하고 있다.

信用調査는 위와같은 個別輸入者の 信用調査業務 이외에도 保險料率의 差等適用과 引受対象國의 非常危險程度 즉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수행하고 있다. 同業務는 政治 社會 經濟 各分野에 대하여 各種 刊行物 및 「번·유니온」(Berne Union)

會員機關과 情報交換을 통하여 調査하고 있으며 앞으로 保險料率의 差等適用뿐만 아니라 國別 保險引受의 適正化 및 保險責任의 효율적인 管理라는 面에서 더욱 연구 발전 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表Ⅳ-31〉 海外輸入商社 信用調査現況 (1981.5.31 현재)

地 域 名	國 名	商 社 數
아	日 本	315
	홍 콩	187
	기 타 28 個國	1,601
유 럽	西 獨	655
	英 國	328
	其 他 17 個國	1,533
아 메 리 카	美 國	2,209
	카 나 다	278
	其 他 25 個國	3,367
오 세 아 니 아	오 스 트 레 일 리 아	242
	뉴 질 랜 드	11
	其 他 1 個國	36
아 프 리 카	나 이 제 리 아	456
	수 단	42
	其 他 25 個國	509
計	107 個國	9,282 社

4. 輸出保險基金

가. 基金의 造成

政府는 輸出保險事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을 設

置하여 運營하고 있는데 이 輸出保險基金은 政府豫算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造成되도록 輸出保險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基金은 他會計計定으로 부터의 轉入金, 保險料, 回收金, 利子, 其他 基金의 運用으로 발생하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하고, 保險金, 保險事業費, 利子, 其他 基金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하고 있는데, 1976 년 까지는 基金이 政府出捐金과 決算上利益金の 轉入으로 造成되었고, 基金의 決算上損失이 생긴 때에는 물론 基金에서 補填토록 되었다. 그러나 輸出保險法이 改正되어 1977 년 부터는 政府出捐金만으로 基金이 造成되도록 하고, 基金의 決算上利益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별도로 全額 積立하도록 規定하였다. 그리고 만일 基金의 決算上損失이 생긴 때에는 우선 積立金에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補填토록 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基金造成內譯을 살펴보면, 輸出保險業務開始年度인 1969 년에 政府에서 3 억원을 輸出保險基金으로 出捐하였으며, 1970 년도에는 1969 년도 基金의 決算上利益金 33 백만원이 처음으로 基金에 轉入되고, 다시 政府에서 2 억원을 추가로 出捐하여 1970 년말에는 基金이 533 백만원으로 造成되었다.

그후 1975 년까지는 政府의 出捐금이 없이 매년도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만 계속 基金에 轉入되었으나, 1976 년도에 10 억원, 1977 년도에 20 억원, 1978 년도에 30 억원의 基金이 各各 政府에서 出捐되었고, 여기에 1975 년도 및 1977 년도에 발생한 基金의 決算上利益금이 加算되고 1976 년도에 처음으로 발생한 基金의 決算上損失金 360 백만원이 差減됨으로써 1978 년도 말에는 總基金이 7,140 백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79 년도 부터는 基金의 決算上利益金を 全額 별도로 積立하게 되었으며, 1979 년도에 25 억원과 1980 년도에 30 억원을 政府에서 出捐받음으로써 1980 년도 말에는 總 126 억 40 백만원의 輸出保險基金이 造成되었다.

< 表 W - 32 >

年度別 輸出保險基金造成 內譯

(單位 : 百萬元)

年 度 別	基 金 內 譯		計
	政府出捐	利益金轉入	
1969	300	—	300
1970	200	33	533
1971	—	71	604
1972	—	130	734
1973	—	254	988
1974	—	6	994
1975	—	194	1,188
1976	1,000	101	2,289
1977	2,000	△ 361	3,928
1978	3,000	212	7,140
1979	2,500	—	9,640
1980	3,000	—	12,640

나. 引受限度

政府가 輸出保險事業을 운영함에 있어서 保險契約으로 체결할 수 있는 保險金額의 總額을 輸出保險의 引受限度라 하는데, 이 保險引受限度가 輸出保險法 制定當時에는 輸出保險基金의 20 倍範圍內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977 년도부터는 輸出保險法이 改正되어 引受限度가 基金의 30 倍로 확대되었다. 이와같이 그 限度를 확대시킨 이유는 輸出保險이 政策保險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政府에서 保險責任을 진다는 理由도 있으나 輸出保險需要의 급증에 따른 保險引受의 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引受限度倍數의 擴大에도 불구하고 1980 년도 후반기에는 輸出保證保險에 대한 包括保險의 시행 등으로 輸出保險의 運營歷史上 처음으로 基金限度의 不足現象이 일어나 保險引受를 일시 留保하는 事態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輸出保險의 管掌主務部인 商工部에서는 1978 年 부터 별도로 積立해

오던 基金의 決算上利益金을 輸出保險基金에 合算한 金額의 30 倍範圍內에서 保險引受가 가능하도록 引受限度의 擴大 措置를 취하게 되어 1978년도 및 1979년도의 利益積立金 30 억원을 輸出保險의 引受限度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基金 및 利益積立金에 의한 引受限度倍數制로도 최근 급증되고 있는 輸出保險需要를 원활히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은 1981년 3월 第5次 輸出保險法の 改正으로 保險基金에 의한 引受限度倍數制를 철폐하고 輸出保險種目別 引受限度를 매년 商工部長官이 정하여 國會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다.

한편, 政府는 輸出등 對外去來에 있어서 危險이 增大되었거나 기타 輸出保險業務의 經營에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를 거쳐 輸出金融保險關係, 輸出어음保險關係, 또는 輸出保證保險關係를 장래에 成立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輸出保險運營에 彈力性을 부여하고 있다.

다. 輸出保險基金의 運用 및 會計

輸出保險基金은 政府가 輸出保險事業의 수행을 위하여 出捐한 財貨로서 廣義로는 輸出保險事業의 수행을 위한 組織 및 운영단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狹義로는 단순히 財務諸表의 資本項目에 기재되는 基金의 총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輸出保險法에서는 이 基金에 대한 명확한 定義를 규정하지 않고 다만, 輸出保險事業의 管掌과 基金의 管理는 商工部長官이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當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商工部長官은 每 會計年度마다 輸出保險基金의 運用方針, 基金의 造成 및 輸出保險引受計劃등 輸出保險事業의 전반에 대한 이른바 「輸出保險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基金運用計劃은 會計年度마다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친 후 豫算會計法 제 89 조(特別基金의 設置)에 의거 國務會

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확정되며, 會計年度開始 90 일전 까지 國會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輸出保險基金運用計劃에 의거 政府로 부터 出捐받는 基金은 輸出保險法에서

첫째, 金融機關에의 預入

둘째, 國債, 地方債 또는 証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証券의 買入

셋째, 기타 商工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정하는 方法에 의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輸出保險基金의 會計는 歲入歲出豫算에 의하지 아니하고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운용하고, 基金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르도록 輸出保險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當行은 輸出保險政府代行機關으로서, 會計年度마다 會計年度 開始 1월전에 輸出保險基金 豫算案을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商工部長官은 同豫算案을 검토하여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基金豫算을 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基金의 決算에 대하여도 每 會計年度마다 當行은 輸出保險基金決算書를 작성하여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輸出保險基金은 輸出保險 代行業務部門 以外の 當行 自體의 豫算과는 完全히 區分計理되며 政策保險으로서 收入과 支出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도록 獨立採算制를 채택하고 있다.

5. 輸出保險業務의 國際化

가. 當行 과 Berne Union

(1) Berne Union의 沿革 및 組織

當行이 會員으로 加入하고 있는 Berne Union 은 세계 각국의 수출 보험기관이 기관상호간의 유대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34 년에 설립된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 (The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을 약칭한 말이다. 同聯盟은 스위스民法에 의한 社團法人으로 스위스의 「베른」 (Berne) 에서 設立된 후 同聯盟의 事務局은 현재 영국의 「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設立初期의 同聯盟은 民間購買者와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信用危險 (Commercial Risk) 에 대한 보험만을 취급하였으나, 제 2 차 세계 대전 후 非常危險 (Political Risk) 에 대한 보험까지 취급하게 되었고, 그후 1970 년 海外投資保險의 分野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海外投資保險을 운영하는 特定非會員機關까지 聯盟의 위원회에 참가토록 권유하여 1974 년 6 월에는 결국 聯盟의 規約을 개정하여 投資保險機關의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聯盟의 명칭을 현재의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으로 채택한 것이다.

同聯盟에는 회장, 부회장이 있고, 모든 決議를 행하는 總會 (General Meeting) 가 있으며, 聯盟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諮問에 응하는 運營委員會 (Management Committee) 가 있다. 그리고 聯盟의 통상적인 업무관리 는 事務局에서 수행된다. 한편 總會의 결의에 따라 輸出信用去來에 대한 保險 또는 保証의 업무를 취급하는 輸出信用保險委員會 (Export Credit Insurance Committee : EIC) 와 海外投資에 대한 保險 또는 保証의 업무를 취급하는 投

資保險委員會 (Investment Insurance Committee : IIC) 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 同聯盟에는 準會員機關인 世界銀行 (IBRD), 國際通貨基金 (IMF), 美洲開發銀行 (IDB) 외에 28 개국, 36 개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2) 當行의 聯盟加入經緯

Berne Union 의 會員이 되기 위하여는 현재 同聯盟의 規約에 의거 申請機關이 최소한 2 년이상 輸出信用保險 또는 海外投資保險의 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옵서버」로서 4 회의 총회 (정기총회이든 임시총회이든 상관없음) 에 참가한 후 次期總會에서 正會員加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Berne Union 회원의 가입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大韓再保險公社에서 輸出保險業務를 대행할 당시인 1976 년 2 월 서독 「뮌헨」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옵서버」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때부터 이다. 그 다음 해에는 輸出保險代行機關이 大韓再保險公社에서 當行으로 이관되면서 1977 년 1 월 스위스 「쾰른」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韓國輸出人銀行의 「옵서버」회원 승계자격을 인정받아 同聯盟의 총회에 2 회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의 聯盟規約에 의거 2 회의 총회참석으로 정회원가입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1977 년 6 월 7 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 34 차 정기총회에서 韓國輸出入銀行의 명의로 聯盟의 正會員이 되었고, 동시에 信用保險委員會의 가입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當行은 1978 년 5 월 서독 「베르린」에서 개최된 제 35 차 정기총회에서 投資保險委員會의 가입을 승인받아 현재는 명실공히 Berne Union 의 正會員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3) Berne Union 의 活動內容

同聯盟은 그 설립취지에 따라 회원기관이 회원상호간 또는 연맹과 정보를 교환하

며 기타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하고 있다. 즉 輸出保險信用委員會의 활동내용으로는 각 회원기간이 경험한 민간구매자 및 공공구매자의 債務不履行 내지는 契約不履行에 관한 現況과 換去來中止등의 발생사실을 연맹의 사무국에 통지하고 사무국이 전회원기간에 同情報內容을 통지해 주고 있으며, 회의시의 討議議題로는 保險引受決定에 관한 사항, 수입시장에 대한 規制事項 및 商品別 代金決済條件의 추세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리고 保險引受方法 및 事故補償技法에 관한 의견과 경험을 상호교환하는 「워크샵」등도 개최하고 있다.

한편 投資險保委員會에서는 양호한 投資環境의 造成과 건전한 海外投資保險의 원칙개발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위하여 保險金支給現況, 特定國에 대한 引受制度 및 投資保障條約등의 내용에 관한 정보자료를 상호교환하고 있다. 그리고 投資保險의 分野에서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技術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共同保險協約締結

최근 우리나라 輸出者들이 重化學工業輸出振興政策에 힘입어 「플랜트」輸出과 海外建設工事輸出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 輸出規模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히 국제간에 資本 또는 技術의 協力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協力該當國間の 資本支援에 대한 對外去來危險을 輸出保險에서 共同保險의 형식으로 担保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該當國輸出者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즉 제3국의 輸入者와 輸出契約를 체결한 主契約者가 그 계약의 일부를 다른나라의 下請契約者에게 下請을 준 경우 主契約者가 체결한 輸出契約에 따른 對外債權 未回收 危險을 主契約者와 下請契約者가 속하는 국가의 輸出保險機關이 각기 自國輸出者의 對外債權 未回收危險持分을 担保하기로 約定하는 것이 共同保

險協約이 된다.

當行이 이와같은 共同保險協約을 처음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1월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된 Berne Union 임시총회에 참가하여 벨지움 信用保證公社(OND)의 관계자와 만나 共同保險協定에 대한 協議를 한 때부터이다. 그후 當行은 벨지움 信用保證公社가 제시한 共同保險協定書案의 내용을 檢討修正하여 1978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韓·벨지움 通商長官會談時 兩機關이 共同保險協定에 대한 調印式을 갖기로 하였으나, 벨지움 信用保證公社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결국에는 서독 「베르린」에서 개최된 제 35차 Berne Union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회의가 끝난 후 1978년 5월 30일 當行 宋仁相銀行長과 벨지움 信用保證公社長間에 共同保險協約에 대한 調印式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된 共同保險協約이다.

그후 네델란드輸出保險機關인 輸出信用保險會社(NCM)에서도 1978년 10월 제 4차 韓·和共同委員會를 통하여 當行과 共同保險協約의 체결을 우리나라에提起하여 왔다. 이에 따라 當行은 벨지움의 信用保證公社와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共同保險協約案을 네델란드輸出信用保險會社에 提示하고 同社가 다시 當行에 정식으로 제의한 共同保險協約案을 1980년 6월 5일 當行會議室에서 李泰浩銀行長과 네델란드輸出信用保險會社長間的 調印式을 갖고 當行으로서는 두번째 共同保險協約을 체결하였다.

다. 制度의 研究開發 및 改善

輸出保險業務開始初年度인 1969년부터 大韓再保險公社에서 輸出保險業務를 代行해 온 1976년까지 同公社에서는 새로운 保險種目으로 海外投資保險의 신설과 2차에 걸친 輸出保險料率의 改正외에도 關係法令 및 規程 등의 改善으로 輸出

保險業務의 基盤을 굳혀왔다.

그후 1977년 1월 1일부터 當行이 輸出保險業務를 대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輸出伸張과 더불어 새로운 輸出保險需要에 대비하기 위하여 制度의 研究 및 改善이 여러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첫째, 新種保險商品의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建設業體들이 中東地域 등에 建設工事を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工事代金回收不能危險을 담보해 주기위한 保險種目으로서 海外建設工事保險이 신설되어 1977년부터 운영하게 되었으며, 海外建設工事契約 또는 「플랜트」輸出契約등의 受注와 관련하여 外國換銀行등이 발행하는 「본드」에 대하여 兪注者의 保証債務履行請求로 外國換銀行이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해 주기위한 保險種目으로서 輸出保証保險이 신설되어 1979년부터 운영되었다.

둘째, 保險事故의 逆選擇을 방지하고 저렴한 保險料로서 對外輸出競爭力強化등 輸出保險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包括保險制度에 대하여는 中・短期延拂輸出에 따른 輸出어음保險包括保險을 1977년 6월 1일부터 輸出保險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그후 1980년 7월 4일자 商工部告示로 공포된 輸出保証保險 包括保險 實施要領 및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保險 實施要領에 의거 輸出保証保險은 1980년 7월 1일부터 包括保險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包括保險은 그 付保対象品目중 특히 船舶에 대하여는 造船業界의 반대도 있었으나, 1980년 12월 그 實施를 위한 준비로서 該當輸出者들과 包括保險特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셋째, 輸出保險의 保險料率을 1980년 1월 1일자로 개정하여 担保危險別料率適用方式의 신설과 特別料率의 細分化 및 保險引受擴大를 위한 特別誘因制度로서의 無事故割引率등을 도입함으로써 保險料率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政策保險으로서 對外輸出競爭力強化를 위해 保險料率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비록, 輸出保險事務處理를 위한 關係規程의 制定 및 改正에 있어서는 保險引受業務를 合理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0일 輸出保險引受規程을 制定하고 同規程에 의거 1980년 8월 4일 輸出保險引受要綱과 輸出保險引受審査委員會要綱을 새로이 制定하게 되었다. 그리고 事故補償業務를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77년 1월 19일 輸出保險補償審議委員會要綱을 제정하였고, 1980년 5월 10일 事故調查業務와 損害査定業務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事故補償規程을 制定하게 되었다. 또한 輸入者에 대한 信用調查業務만 취급해 오다가 1977년 6월 1일 信用調查規程을 개정하여 國內輸出商社에 대한 信用調查도 실시하게 되었고, 外國情勢調查業務를 強化하기 위해 1979년 11월 8일 信用調查規程을 다시 개정하여 國別信用度評價業務를 실시하였고, 이에 관한 細部方法과 節次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9년 11월 24일 輸出保險信用調查規程 施行要綱을 제정하고 1980년 1월 23일 國別信用度評價方法을 設定하게 되었다. 그외에도 輸出保險基金代行會計處理에 관한 細部節次를 규정하기 위하여 1979년 9월 25일 輸出保險基金會計處理規程을 제정하였다.

끝으로, 先進外國의 輸出保險運營技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를 연구개선하기 위하여 영국의 ECGD, 미국의 FCIA 및 OPIC, 일본의 MITI 벨지움의 OND, 인도의 ECGC, 네덜란드의 NCM 등 外國輸出保險機關에 職員の 해외연수를 매년 강화하여 왔고, 영국의 ATP, 美國의 D & B, 홍콩의 AMA 등 主要外國信用調查機關에도 職원을 파견하여 새로운 信用調查內容을 연수하였다.

6. 向 後 展 望

輸出保險事業에 대한 앞으로의 주요計劃 및 展望을 몇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輸出保險事業의 担当機關에 관하여는 현재의 代行體制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輸出保險專担機關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 또는 當行의 固有業務로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여러해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1981년초 輸出保險法改正作業과 관련하여 當行은 日本의 通商産業省(MITI)이나 英國의 輸出信用保証局(ECGD)과 같이 政府에서 직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美國의 輸出入銀行(U.S. EXIM)이나 캐나다의 輸出開發公社(EDC)와 같이 金融과 表裏關係에 있는 輸出保險業務를 延拂輸出金融의 專担機構인 當行이 政府代行體制가 아닌 高유의 업무로서 직영토록하는 方案을 제의하였고 輸出保險監督機關인 商工部에서는 輸出保險專担機構로서 假稱「韓國輸出保險公社」의 설립을 제의하였는데, 결국은 1981년 3월 27일 立法會議에서 韓國輸出保險公社의 新設根拠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輸出保險法을 改正・公布하였다. 그러나 同公社의 設立時期에 대하여는 輸出保險法施行令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현재 확실한 設立時期는 예측할 수 없으나, 輸出保險需要 및 業務量의 擴大등이 고려되어 政策的으로 적정시기가 판단되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輸出保險制度의 개선에 관하여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中・長期延拂輸出保險包括保險制度외에 앞으로도 保險種目別로 包括保險制度의 시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 협의중에 있는 캐나다의 輸出開發公社(EDC)외에 기타 관련있는 外國輸出保險機關과도 共同保險協約의 締結을 계속 추

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輸出保險需要에 대비하고 輸出保險業務의 機能을 擴大・強化시키기 위하여 新種保險의 개발, 예를들면 輸出者의 換差損危險을 担保해 줄 수 있는 이른바 「換變動保險」등 새로운 保險商品의 개발은 물론 輸出信用保証業務 및 再保險業務등의 실시도 연구・검토될 것이다.

끝으로 輸出保險基金의 造成에 관하여는 1981년 3월 第5次 輸出保險法の 改正으로 保險引受限度倍數制가 철폐되어 輸出保險基金과 保險契約으로 체결할 수 있는 引受限度와는 관련이 없게 되었으나, 同基金은 保險事故에 대비한 担保金으로서의 機能을 하기 때문에 急増하는 輸出保險需要에 원활히 대처하고 輸出保險事業에 대한 公信力을 양양시키기 위하여도 保險基金은 계속 造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억「달러」 내지 2억「달러」의 大型事故가 발생할 경우 이를 一時에 補償할 수 있는 財源으로 최저 1천억원의 基金은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年次的으로 基金을 出捐하여 1986년까지는 輸出保險基金으로 1천억원 이상은 造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第五章 韓國輸出入銀行의 運營

第1節 業務計劃

第2節 綜合運營計劃

第3節 財務管理

第4節 人事管理

第5節 事務合理化

第6節 金融淨化 및 其他

第五章 韓國輸出入銀行의 運營

第1節 業 務 計 劃

當行은 重化學製品의 延拂輸出과 海外投資 등을 金融面에서 보다 計劃性있게 支援하기 위하여 每年度別로 業務計劃을 樹立 運營하고 있다.

業務計劃은 1년간의 當行 基本業務活動인 資金供給과 資金調達에 관한 計劃으로서 모든 業務活動이 同計劃에 基礎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當行은 國內 唯一의 重化學製品의 中長期延拂輸出 및 海外投資등을 支援하기 위한 政策金融 機關임에 비추어 同計劃은 政府의 重化學輸出政策에 관한 直接的인 實行計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業務計劃은 當該年度の 支援指針등 總則과 資金別供給計劃 및 財源別調達計劃으로 構成되며 分期別 資金供給 및 調達計劃도 포함되어 있다.

業務計劃은 當行法 第21條에 의거하여 每事業年度마다 該當年度가 개시되기 1개월전에 樹立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財務部長官은 當行의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 國務會議의 審議와 議決을 거쳐 大統領의 裁可를 받도록 當行法 第22條에 明示되어 있으므로 業務計劃의 確定過程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政策的 配慮가 요구되고 있다.

業務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當行資金에 대한 需要豫測과 所要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간 當行에 대한 資金需要는 그간의 우리나라의 産業高度化 進展과 이에 따르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擴大를 반영하여 毎年 증대되어 왔다. 이에 當行에서는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增加 趨勢, 支援對象品目の 輸出推移, 重化學業體의 輸出計劃, 과거의 支援實績 등을 기초로 하여 毎年 適正規模의 資金供給計劃을 수립하고 調達可能한 최대한의 財源範圍內에서 業務計劃을 調整 確定하고 있다. 특히 資金調達에 있어서는 當行支援資金의 特殊性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이를 政府出資 등 財政資金에 의하여 支援하는 것이 소망스러우나 우리나라의 현 財政與件上的 限界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當行支援資金의 相當額을 海外借入으로 충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創立以後 5년 동안, 當行의 每年度 業務計劃을 實際 運用함에 있어서는 國內外 經濟與件의 急變 등 예측하기 어려운 變數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計劃目標의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當行의 資金供給實績은 毎年 急増現象을 보여왔다.

먼저 資金供給計劃의 推移를 보면 全體 供給規模는 當行業務開始年度인 1976년의 80,343백만원에서 1980년의 358,000백만원으로 年平均 45.3%의 높은 伸張率을 나타내었다. 同期間의 貸出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船舶, 「플랜트」 등으로서 供給者信用方式에 의한 輸出資金貸出이 主宗을 이루었으며, 技術提供資金, 海外投資資金은 對象去來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支援額이 配分되어 왔다.

한편 購買者信用制度의 導入, 定着으로 1979년부터는 外國入에 대한 直接貸出 및 轉貸借款用 資金을 別途 反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同期間中 資金供給實績은 計劃目標에 전체적으로 미달되는 現象을 나타내었는데 資金供給計劃對

〈表V-1〉 資金供給計劃對實績

(單位: 백만원)											
	計					實績					
	1976	1977	1978	1979	1980	1976	1977	1978	1979	1980	
輸出資金	59,643	198,800	150,000	175,000	291,000	47,312	73,479	105,091	126,596	272,001	
技術提供資金	10,000	10,000	15,000	7,000	2,000		6,990	6,012	404	171	
海外投資資金	6,700	41,200	30,000	15,000	15,000	6,066	15,561	16,066	10,985	2,058	
外國人에 대한貸出	3,000			35,000	40,000				19,602	24,279	
轉貸借款				10,000	9,000				964	1,702	
豫備費	1,000	10,000	10,000	3,000	1,000						
合計	80,343	260,000	205,000	245,000	358,000	53,378	96,030	127,169	158,551	300,211	

(單位: 韓元)

註 1) '77年計劃은 承認基準이며, '77년 承認實績은 134,164 韓元임.

2) 計劃變更이 있는 年度는 變更後 最終 業務計劃 金額임.

實績은 〈表 V - 1〉과 같다.

한편 資金調達面을 보면, 當行의 主要財源은 出資金, 國民投資基金, 海外借入 資金등으로 되어 있다.

資本金出資는 비교적 적은 規模이지만은 政府의 直接出資와 韓國銀行, 韓國外換銀行 으로부터의 出資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低利의 國民投資基金借入은 1977 년 이후 1980 년까지 毎年 300 억원이 計上, 全額使用됨으로써 期間中 財源調達에 있어서 중요한 部分을 차지하였다. 한편 海外借入은 1978 년에 최초로 150 백 만「달러」 相當額과 1979 ~ 1980 년의 3 억「달러」 相當額이 計劃되었으나 實際 導入額은 2 억「달러」 相當額에 그쳤다. 期間中 資金調達は 언제나 資金供給額을 상회하였으며, 이로인한 相當額의 移越은 次期年度에 있어 안정적인 貸出執行을 이룩하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볼때 資金調達は 創立以後의 調達財源의 多邊化 努力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로운 成果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創立이래 1980 년까지 5 년간을 業務基盤의 造成 및 擴充段階로 본다면 當行의 資金供給은 毎年 확대되었으며 이의 支援을 위한 資金調達は 비교적 순조롭게 이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80 년을 轉換點으로 하여 향후 當行에 대한 資金需要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 전망되고 있는바, 이의 支援을 위한 資金調達面에 있어서는 資本金 出資規模의 過少, 海外借入의 限界 등 애로에 직면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當行支援資金의 特殊性에 비추어 出資金 및 財政資金借入 등 長期低利의 財源調達로 늘어나는 需要에 適宜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支援資金의 効率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表 V-2〉

資 金 調 達 計 劃 對 實 績

(單位: 萬圓)

	計 劃						實 績					
	1976	1977	1978	1979	1980		1976	1977	1978	1979	1980	
資 本 金		100,000	35,000	35,000	35,000		38,850	40,000	35,000	4,500	34,250	
(政 府)		(50,000)	(5,000)	(5,000)	(5,000)		(10,000)	(20,000)	(5,000)	(4,500)	(4,250)	
(韓 國 銀 行)		(50,000)		(30,000)	(30,000)		(28,850)		(30,000)	(-)	(30,000)	
(韓國外換銀行)			(30,000)				(20,000)					
國 民 投 資 基 金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0,000	30,000	29,684	30,000	30,000	
韓 銀 保 有 外 換		97,000		24,250	9,000			16,732	85	964	1,700	
海 外 借 入 資 金			72,700	97,000	118,000			19,873	52,189	48,400	74,296	
貸 出 金 回 收	22,258	6,000	13,800	38,750	62,700		27,132	20,290	35,205	89,633	63,911	
前 期 移 越 金	46	27,000	53,500	20,000	95,300		310	12,658	56,523	69,996	95,272	
金 融 機 關 借 入								5,000	15,000			
其 他											782	
合 計	80,343	260,000	205,000	245,000	385,000		76,292	144,553	223,686	243,493	300,211	

註 1) '75년도 對外銀借入金中 未使用額 27,950萬圓與 '75년도 利益積立金 89萬圓 포함.

2) 77,78년의 海外資金 調達實績은 P/N賣却分

第2節 綜合運營計劃

1. 綜合運營計劃의 樹立

當行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政府의 重化學製品輸出振興政策에 부응하여 支援體制를 整備, 擴充하는 한편 經營의 能率提高를 위하여 每年 綜合運營計劃을 樹立 運營하고 있다.

綜合運營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企劃部長은 同計劃期間中の 國內外經濟與件을 예측하고 同計劃 樹立에 필요한 指針을 작성하여 每會計年度 開始 3개월전까지 銀行長의 承認을 얻어 各部署長앞으로 通知한다.

各部署長은 同指針에 따라 所管部署의 業務를 基本事業과 特別事業 그리고 基本事業中 主要事業과 細部事業을 분류하여 實行計劃書를 作成, 전년도 10월20일까지 企劃部長에게 提出한다.

企劃部長은 各部署의 運營計劃을 檢討調整한 후 綜合運營計劃(案)을 樹立하여 전년도 11월 20일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확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2. 審 查 分 析

綜合運營計劃의 實施結果를 분석하여 問題點을 早期 導出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함으로써 綜合運營計劃目標의 효율적인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分期

別 審査分析을 실시하고 있다.

各部署長은 每分期마다 對象事業의 概要, 進度 또는 推進狀況, 評價, 問題點 및 對策, 展望, 是正 또는 建議事項의 順序로 計劃된 事業의 進度를 측정하고 目標 對比 實績에 관한 差異 및 原因分析을 통하여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에 대한 對 應策을 講究토록 한다.

이상과 같이 部署別 自體審査分析이 끝나면 各部署別로 審査分析報告書를 작성하여 每分期 終了後 10 일 以內에 企劃部에 提出하게 된다.

企劃部長은 各部署의 審査分析報告內容을 토대로 綜合意見과 評價結果를 略述하고 部署別 審査分析報告書를 綜合하여 每分期 終了後 25 日 以內에 銀行長에게 報告한다. 그리고 別途 期日을 정하여 任員 및 課長級 以上の 職員이 참석한 가운데 審査分析 發表會를 개최하며 審査分析結果 指摘된 是正事項에 대하여는 所管部署에서 對策을 樹立, 改善措置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綜合運營計劃의 合理的인 樹立과 審査分析의 効率性 提高를 위하여「審査分析에 對한 部署評價基準」을 마련하고 1981 년부터 優秀部署에 대해 褒賞을 실시하고 있다.

第3節 財 務 管 理

1. 資產과 負債

當行의 財務構造는 다른 銀行과는 特異한 面이 있는바 資產面에서는 물론 貸 出金이 거의 全부를 차지하고 있으나, 負債面에서 보면 借入金이 큰 比重을 占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借入金中에서는 國內財源의 限界로 인하여 國內借入의 比重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海外借入依存度는 높아지고 있다.

創立以後 지금까지 當行의 資産 및 負債의 規模와 그 變動推移를 主要計定別 年末計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總資産은 1976 년말의 80,744 백만원에서 1980 년말에는 596,373 백만원으로 5년간 約 7 倍가 넘는 急伸張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政府의 강력한 輸出主導政策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輸出構造가 重化學製品 위주로 轉換됨에 따라 船舶을 중심으로 하는 延拂輸出 規模가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金및 預置金의 規模는 1976 년말의 903 백만원에서 1977 년말 25,476 백만원으로 28.2 倍가 증가했으나 그 以後부터는 資金供給規模가 증가하는 한편 有價證券 買入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規模가 축소되었으며, 1976 년에는 當座預置金 및 別段預置金 두 計定만 운용했으나 1977 년부터는 外國換 決濟를 위하여 外貨他店預置金計定과 餘裕資金의 効率的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海外外貨定期預置金및 1978 년에는 通知預置金計定을 추가하였다.

有價證券은 資金運用의 주요한 部門으로 1976 년에는 通貨安定證券을 年利 7 %로 買入하였으며, 점차 그 種類도 多樣하여져 還買條件附 國民投資債券, 財政證券, 糧穀基金證券等を 買入하였으며 최근에는 出資金으로 無利子인 通貨安定證券을 買入하고 있다.

貸出金은 1976 년말 현재 56,171 백만원이던 것이 1980 년말에는 511,456 백만원에 달함으로써, 지난 5년간 約 9 倍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重化學 輸出額中 當行이 支援한 輸出額이 차지하는 比重 또한 매년 급격히 늘어나 1977 년의 1.6 %에서 1980 년 현재 4.7 %에 이르고 있다.

한편 支給代充은 當行에서 支援하는 品目에 대하여 信用狀開設 支給保證 등 被保證人에 대한 當行의 求償權을 表示하는 債權計定인바, 1976년에는 實績이 없었으나 1980년말에는 39,677백만원으로 總資産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負債規模는 1976년말현재 13,908백만원에서 1980년말에는 381,018백만원으로 27.4배가 증가하였는데 初期에는 國民投資基金 借入金뿐이었으나 점차 資金供給規模가 늘어남에 따라 調達源도 다양하게 되어 1977년에 와서는 韓國外換銀行으로 부터의 借入과 韓國銀行의 外貨受託金 借入이 있었다.

韓國外換銀行 借入은 1977년에 50억원, 1978년에 150억원을 각각 年 5%로 借入하였으며, 1980년말 현재 總借入金에 대한 比重은 7.1%가 되고 있다.

韓國銀行으로부터 配定받은 外貨受託金 借入限度는 2억「달러」였는데 이 중 延拂輸出資金및 其他 外貨表示貸出資金으로 1978년에 34.5백만「달러」를 借入했으며, 開發途上國의 金融機關에 대한 對韓延拂輸入決濟用 轉貸借款資金으로 配當받은 50백만「달러」중에서 1980년말 현재 借入한 殘額은 4.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海外借入實績을 보면 1978년 12월 7일 U.B.A.F를 幹事銀行으로 한 46個 國際商業銀行과 2억「달러」의 「신디케이트 뱅크·론」 借款契約을 締結, 1979년에 1억「달러」, 나머지 1억「달러」는 1980년중에 전부 引出하였다. 이외에 같은 해 短期外貨借入도 있었으며, 이로서 1980년말현재 當行의 總借入金中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46.7%로 증가되었다.

그 결과 當行의 資本金 및 積立金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감소되고, 借入金의 比重이 1976년의 16.1%에서 1980년의 52.5%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곧 當行의 營業收支를 壓迫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別段預金計定은 當行의 借主인 輸出業者가 當行에 發行한 延拂輸出어음을 賣却하

여 同 代金を 借主社앞 精算支給時까지 計理하는 計定이다. 즉 船舶輸出關聯어음의 表示通貨가 「스웨덴 크로네」인 것을 「달러」로 換算하여 賣却하였으나 同 어음買入銀行에 대한 當行과의 債務는 「달러」인 반면 借主社와 當行과의 債權・債務關係는 「스웨덴 크로네」로 表示되어있어 어음賣却代錢으로 關係貸出金を 相計하게 되면 「스웨덴 크로네」와 「달러」사이에서 발생하는 換「리스크」를 當行이 負擔하게 된다. 따라서 同延拂어음賣却代錢으로 일시에 關聯貸出金を 相計하지 않고 어음滿期到來時마다 借主社앞으로 精算支給하고 있는데, 점차 그 金額은 감소되고 있다.

受入保證金은 大部分이 當行의 賃借保證金으로 1980년말 905백만원을 示顯하고 있는데 이는 當行에서 賃借保證金を 建物主앞으로 支給한 것이다.

以上에서 5년간 變貌한 當行 資産과 負債의 推移를 概觀하여 보았는데, 이를 年度別로 賃借對照表의 變動內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表 V - 3> 과 같다.

2. 利益과 그 處分

가. 收益과 費用

當行은 創立初期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効率的인 資金調達과 運用을 통하여 營業初年度인 1976년도에 總收益 2,923백만원, 總費用 1,543백만원으로 1,380백만원의 當期純利益을 示顯하게 되었다. 그후 貸出金 利子 및 有價證券 利子の 증가로 收益이 증가함과 아울러 借入金利子, 經費등 費用 또한 每年 증가하여 1980년에는 總收益 66,913백만원, 總費用 47,218백만원을 기록하여 19,695백만원의 當期純利益을 示顯하므로써 創立年度에 비해

14.3 배에 달하는 收益實績을 나타내었다.

1976 년 이후 1980 년까지의 損益現況을 主要 項目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收益部門에서는, 預置金利子が 1977 년도의 84 백만원에서 1980 년도의 1,863 백만원으로 약 22.2 倍의 成長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資金運用方法을 종래에는 海外定期預置金이나 國內當座預置金 또는 別段預置金중심으로 하던 것을 1978 년 3 월부터 通知預置金으로 운용함으로써 當行收益 増大에 기여한데 있다.

한편, 有價證券利子は 1976 년도에 64 백만원에 지나지 않던것이 1980 년도에는 6,815 백만원을 記錄하였으며 初期에는 通貨安定證券을 年利率 7 %로 買入하였으나 1977 년도부터는 還買條件附國民投資債券, 糧穀基金證券 및 財政證券등을 중점 買入함으로써 그 構成比에 있어서도 1976 년의 2.2 %에서 1980 년에는 10.2 %로 변동되었다. 貸出金利子에 있어서는 1976 년도의 경속 2,848 백만원으로서 總收益중 97.5 %를 차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는 59.2 %, 다시 1980 년도에 와서는 39.9 %로 점차 그 比重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絶對金額面에서보면 1980 년도의 總貸出利子額이 26,307 백만원으로서 이는 1976 년도의 2,848 백만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收入雜利子は 대부분이 延拂어음賣却에 따른 收取利子로서 延拂어음상의 金利를 當行이 받는 것인데 1977 년도에 242 백만원이던 것이 1980 년도에 4,759 백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어음賣却時의 金利 즉 $LIBOR + 1\frac{1}{8} \sim 1\frac{1}{4} \%$ 는 별도로 支給하고 있다.

支給利子 또한 1977 년도에 508 백만원에서 1980 년도 10,486 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收入手數料 規模는 1976 년도의 10 백만원에서 輸出入去來가 증가하고 貸出約定手數料의 발생으로 1980 년도에 206 백만원으로 늘어났다. 保證

〈表 V-4〉

年 度 別 損 益 計 算 書

(단위 : 백만원)

구 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収 益)										
매출금이자	2,848	97.4	6,476	70.4	8,752	38.8	14,955	50.8	26,307	39.3
유가증권이자	64	2.2	2,240	24.3	3,689	16.4	4,702	16.0	6,815	10.2
예치금이자	-	-	84	0.9	3,436	15.3	1,666	5.7	1,863	2.8
수입이자	-	-	242	2.6	2,891	12.8	4,499	15.3	4,759	7.1
수입수수료	10	0.4	160	1.8	288	1.3	134	0.4	206	0.3
보통증	-	-	3	0	14	0	20	0	25	0
외환매입익	1	0	-	-	1,052	4.7	187	0.6	22,422	33.5
대손충당금환입	-	-	-	-	2,413	10.7	3,292	11.2	4,510	6.8
기타	-	-	-	-	2	0	-	-	6	0
총수익	2,923	100%	9,205	100%	22,537	100%	29,455	100%	66,913	100%
(費 用)										
차입금이자	901	58.4	2,050	29.5	4,072	25.1	6,943	30.2	20,691	43.8
정부대하금이자	185	11.9	-	-	-	-	-	-	-	-
지급이자	-	-	508	7.3	5,713	35.2	7,683	33.5	10,486	22.2
지급수수료	4	0.3	679	9.8	1,025	6.3	508	2.2	237	0.5
외환손	-	-	107	1.6	-	-	-	-	-	-
관리업무비	205	13.3	886	12.8	1,524	9.4	1	0	3,068	6.5
대손상	-	-	2,413	34.8	3,292	20.3	4,510	19.7	10,229	21.7
방위	100	6.5	164	2.3	457	2.8	732	3.2	2,219	4.7
기타	148	9.6	135	1.9	142	0.9	299	1.3	228	0.6
총비용	1,543	100%	6,942	100%	16,225	100%	22,956	100%	47,218	100%
常 期 純 利 益	1,380		2,263		6,312		6,499		19,695	

料는 1977 년도에 3 백만원에서 1980 년도에는 25 백만원으로 8.3 배가 증가하여 當行에서 保證業務가 증가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外換賣買損益은 1977 년도에 107 백만원의 賣買損이 발생했으나 1980 년도에는 1 월 12 일 換率引上으로 11,000 백만원의 外換評價益이 發生하게 되었으며 그후 계속적인 換率引上和 外換賣買에 따른 「마진」으로 22,422 백만원의 外換賣買益이 발생하여 總收益중 33.5 %의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다.

特別利益規模는 1978 년도의 2,415 백만원에서 1980 년도에 4,514 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여 왔는데 이는 初期에는 없었던 前年度 年末貸出殘額에 대해 2 %로 설정한 貸損充當金還入額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한편, 費用面을 살펴보면 借入金利子는 1976 년도에 1,085 백만원에서 1980 년도 20,691 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初期에는 費用率이 낮은 國民投資基金과 外貨受託金を 借入하였지만 그후 계속 증가하는 貸出財源의 충당을 위하여 海外金融市場으로 부터 높은 金利의 資金을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支給手數料는 初期에는 미미하였으나 1978 년도에는 앞서 언급한 「뱅크·론」 2 억 「달러」 契約締結에 따른 諸 手數料支給額이 1,025 백만원에 달하므로써 總費用의 5.5 %를 차지하게 되었다.

管理業務費는 1976 年度の 205 백만원에서 1980 년의 3,068 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人員의 증가 및 職員의 處遇改善과 業務量 증대에 의한 諸經費의 증가 때문이었으나 構成面에서는 1976 년의 13.3 %에서 1980 년에는 6.5 %로 감소하였다.

나. 利益金の 處分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当行은 収支狀況의 好調에 힘입어 毎年 相当額의 當期純利益을 示顯하여 왔는데, 1976 년도의 1,380 백만원에서 1980 년도에는 19,695 백만원으로 純收益을 記錄하므로서 약 14.3 倍의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純利益의 處分은 當行法에는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相當한 후에 決算純利益金은 資本의 總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の 100 分の 20 을 法定積立하고 政府以外の 出資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を 配當하며, 法定積立金 및 配當金을 공제한 殘餘利益金を 運営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토록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当行은 1980 년도까지 이를 出資者에 配當하지 않고 全額 任意積立金으로 留保하여 資本充實을 기하여 왔다.

3. 綜 合 豫 算

豫算은 經營上の 모든 面に 걸친 業務執行計劃을 貨幣価値에 의하여 綜合的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經營過程의 價値의 흐름에 관한 綜合的인 計劃을 數字로 표시하여 計算의 體系를 成立시킨 經營制度이며, 經常的・反復的으로 每會計年度別로 設定 運營된다. 이러한 意味의 豫算은 豫算總則, 推定貸借對照表 및 推定損益計算書로 표시되는 綜合豫算과, 推定損益計算書上的 管理業務費와 推定貸借對照表上的 業務用固定資産, 즉 經費 및 資本 豫算으로 표시되는 狹意의 豫算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豫算이라 하면 보통 後者を 意味하며, 이를 제외한 推定貸借對照

表와 推定損益計算書의 나머지 項目은 機能別 또는 部門別로 추출되어 1會計年度의 短期計劃의 概念으로 把握되어서 資金供給計劃・資金調達計劃 등과 같이 ××計劃의 名稱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 豫算體系

當行의 豫算體系는 豫算總則, 推定損益計算書 및 推定貸借對照表로 構成되는 綜合豫算體系를 따르도록 會計規程에 明示되어 있다. 同規程에서 推定損益計算書와 推定貸借對照表에 관한 總括的인 事項과 其他 豫算執行에 관한 필요한 事項은 豫算總則에, 當該年度에 發生할 것으로 推定되는 모든 收益과 費用은 推定損益計算書에, 當該年度末 現在에 推定되는 財政狀態는 推定貸借對照表上에 표시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當行의 豫算은 每會計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한 후 當該年度 開始 1개월전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음으로써 成立된다.

나. 當行豫算의 特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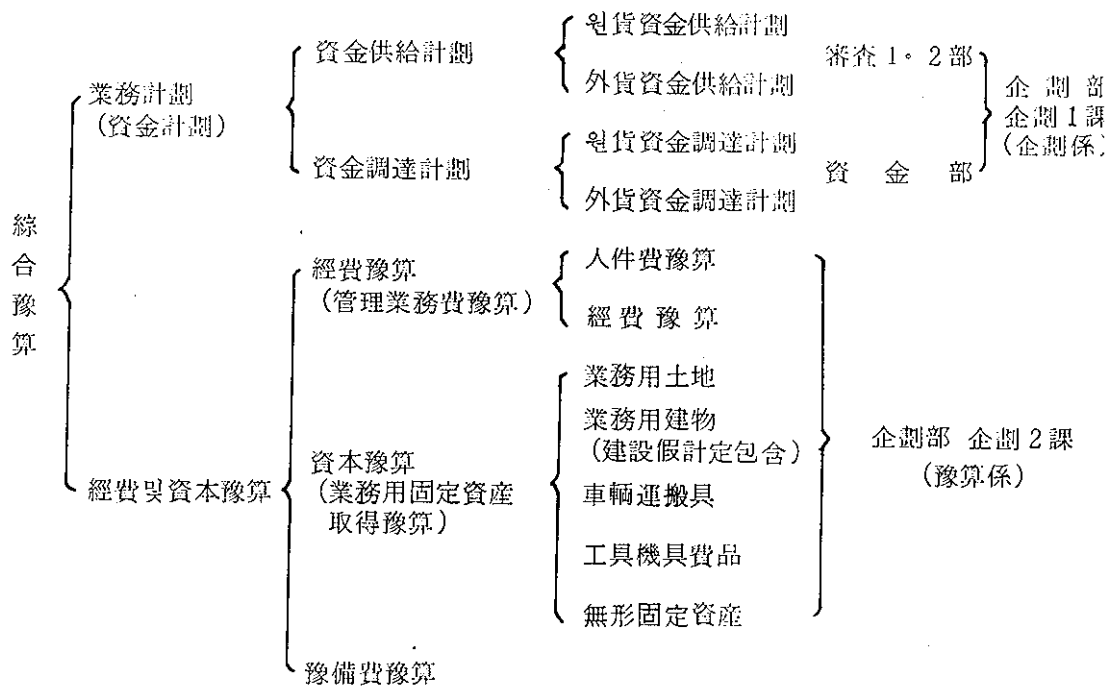
中長期 信用에 의한 延拂輸出,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 등에 대한 金融支援을 목적으로 설립된 當行의 設立趣旨와 機能에 비추어 資金供給計劃의 달성이 當行 最高 經營目標라 할 수 있으며, 그결과 當行 豫算編成方法에 있어서도 特色을 갖게 된다. 當行의 設立趣旨와 業務의 特殊性때문에 一般企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와 같이 經營目標로써 目標利益을 設定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損益豫算(推定損益計算書)을 편성하거나 資金豫算(推定貸借對照表)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金融支援을 위한 資金供給計劃과 資金調達計劃을 수립하고, 부수적으로 損益豫算을 편성함으로써, 目標利益이 결정된다. 이때 編成되는 損益

豫算은 그 統制可能性 여부의 觀點에서 볼 때, 營業損益과 營業外損益은 資金供給計劃과 資金調達計劃의 結果에 따라 附隨的으로 發生하는 것으로, 事業上 豫算統制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豫算統制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문은 一般管理費 즉 經費에 국한된다.

따라서 當行豫算體系는 실질적인 豫算統制目的의 觀點에서 그 주대상이 되는 것은 經費 및 資本豫算이며 實務上 別表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와같이 當行의 豫算體系는 業務計劃과 資本豫算은 推定貸借對照表에, 經費豫算은 推定損益計算書에 計上하므로서 會計的 豫算體系를 유지하면서 部門別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다.

當 行 的 豫 算 體 系



第4節 人 事 管 理

1. 人 事 管 理

가. 人事管理의 變遷과 現況

當行이 우리나라의 中長期延拂輸出金融專擔機關으로 발족하여 國內의 他金融機關에서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분야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국제적 금융지식이 뛰어난 專門 金融人의 確保와 養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機構 및 人員의 擴大・増加와 業務伸張에 副應할 수 있는 효율적인 人事管理體制의 定立이 요청되어 왔다.

當行은 이러한 人事管理上의 특수한 必要性에 맞추어 창립 이래 합리적 人事管理體制의 確立과 職員 專門化에 주력하여 왔으며, 특히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當行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經歷職員의 特採와 行員級 職員의 公採를 併行하여 실시하여 왔다. 또한 昇進管理를 위하여 綜合勤務評定制도를 실시함으로써 年功序列 위주의 傳統的 人事管理에서 탈피하여 經歷과 勤務成績 및 業務訓練成績의 綜合的 評價에 의한 합리적 昇進管理體制를 구축하였고, 정기적인 自己申告制의 실시로 직원 개개인의 隘路 및 希望事項을 파악하여 人事管理에 반영하여 왔다.

특히 1979년 10월에는 職員士氣調査를 실시하여 직원의 공통적 불만과 의사소재를 파악하는 등 制度의 改善과 組織內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1980년 2월에는 長期的 眼目에서 當行의 與件에 맞는 人事管理體制를 갖추기 위하여 「80年代 人事管理 基本指針」을 수립하였고 그

1 차적 사업으로 1980년 3월부터 職務分析 및 職員 1人當 業務量調査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當行의 諸般 人事管理狀況을 항목별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定員 및 人力管理

當行의 定員體制는 監督官廳인 財務部가 시달한 「金融機關 組織 및 人事管理 基本指針」에 의거한 職級別 基準定員制로서 매년 財務部로 부터 職級別 定員을 승인받아 同 定員範圍內에서 각 部署別로 職級別 定員을 책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창립이후 人事 및 企劃部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부서별 業務量 및 所要人力의 調査, 確認作業은 아직 職務分析에 의한 직무내용 및 職務遂行要件이 확정되지 아니한 段階에서나마 既存人力의 知識, 經驗水準에 상응하는 部室間의 균형있는 人員配置를 위한 수단으로 活用되었다.

當行은 창립 이래 11 차에 걸쳐 職制와 基準定員의 변경을 실시하였는바 창립 당시의 基準定員 78 명에서 1980년 말에는 443 명(임원 및 별정직원제외)으로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人力管理手段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하여 1980년 2월부터 자체인력에 의한 職務分析 및 業務量調査에 착수하여 1980년 말 현재 審査, 金融部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1981년도중에 은행 전체의 職務分析이 완료되면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人力需給計劃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職員의 採用

當行의 직원 채용은 每年度마다 充員計劃을 수립, 職種別로 定期的인 公募銓衡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다만 資格 또는 免許를 필요로 하는 技術職 또는 勞務職에 종사할 직원이나, 기타 法定 雇傭義務者 및 責任者를 채용하는

경우 등 公募銓衡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公募銓衡은 일정한 資格要件을 갖춘 자 중에서 書類銓衡, 筆記考試, 面接試驗 및 身體檢查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公募銓衡에 의한 中堅行員의 채용인원은 당행의 업무신장과 더불어 매년 증가하여 1980년말 현재 총채용인원은 134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女行員은 1977년 9월부터 女子商業高等學校 졸업자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實習生制를 채택, 운영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3) 昇進

창립당시부터 當行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人事考課를 실시하여 이를 年功序列과 함께 昇進管理에 반영하여 왔으나 金融機關의 전통적인 年功爲主 昇進管理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977년 8월 綜合勤務評定制度가 도입되면서 부터 종래의 年功主義와 能力 또는 業績主義를 적절히 調和하므로서 제도적으로 昇進管理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綜合勤務評定制度란 직원의 經歷, 勤務成績, 研修成績 및 賞罰事項을 종합적으로 評點化하는 제도로써 綜合評定要素중 勤務成績評定은 다른 어느 항목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인간의 인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評價結果의 合理性과 客觀性유지가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當行은 창립당시부터 「人事考課要綱」을 制定하여 考課의 原則과 方法을 명시하고 不誠實 또는 不公正한 考課에 대하여 再考課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과시마다 事前的으로 考課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결과의 合理性 및 誠實性維持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뿐만아니라, 當行은 他金融機關에 비하여 中間管理者가 많고 개인별 직무가 複合的이며 그 遂行基準이 相異한 점 등을 감안하여 考課者및 考課要素를 점진적

으로 조정하고 當行의 여건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評定制度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人事管理의 今後 方向

當行은 창립 이래 重化學輸出支援金融業務의 量的 擴大와 質的 深化에 주력하여 왔으며 人事管理面에서도 이에 필요한 所要人力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타기관에서 그 先例를 찾기 힘든 새로운 업무분야를 담당 한 當行으로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自己啓發과 職務를 통한 自己實現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職務管理體制의 확립이 필요하며, 단조로운 組織構造와 제한적인 국내외 店舖網등 특수한 業務環境에서 오는 직원들의 倦怠感을 해소하는 동시에 職員 專門化를 추진할 體制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今後 當行의 人事管理方向은 當行의 이러한 特殊性에 입각하여 직원 모두가 조직내에서 自己啓發과 自己實現 (self actualization) 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이 아울러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같이 當行은 이미 1980 년도에 그 핵심기능인 審査, 金融部門에 대한 職務分析및 業務量調査를 완료하였고, 1981 년도중 은행전체의 職務分析을 완료할 예정인바, 同 作業이 완료되면,

- ① 효율적인 職務管理體制의 확립
- ② 합리적 循環配置體制의 구축
- ③ 業務機能別 組織機能의 再編成
- ④ 長期人力需給計劃의 수립
- ⑤ 직원의 機能別 再編성과 교육강화

⑥ 합리적인 能力評價 및 勤務環境 改善

등을 목표로 장기적인 人事管理改善計劃을 수립하여 이의 연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研 修

當行은 職員의 業務修行에 필요한 知識函養과 能力向上을 위하여 總務部內에 研修課를 두어 人事業務와 긴밀한 관계하에 職員研修業務를 전담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人事管理에 역점을 두어 왔다.

當行이 담당하고 있는 業務의 專門性등을 감안해 볼 때 어느 機關보다도 職務研修에 대한 重要性이 認識되고 있다. 따라서 當行業務와 관련된 國際金融機關에서의 研修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先進金融制度 및 經營管理技法의 研究, 導入 및 運用을 위한 國外業務派遣研修에 주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國外業務研修를 擴大強化하는 한편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各種語學訓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현재 當行의 研修業務는 크게 나누어 國內研修와 國外研修로 구분된다. 國內研修는 行內에서의 職級別研修, 職能別研修와 外部機關派遣研修 등으로 나눌 수 있고, 國外研修는 業務研修, 學術研修, 視察研修, 勤務研修로 나눌 수 있다. 國內研修中 職級別研修는 研修對象을 各階層職級別로 구분하여 그 職級에 필요한 知識과 機能을 습득케 하기 위한 研修로서 여기에는 新入行員研修, 女行員研修, 一般行員研修, 管理者研修 등이 있고, 職能別研修는 研修對象이 職級과는 관련없이 一定職能에 종사하는 職員을 대상으로 該當職務의 遂行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예컨대 貸出審査, 外國換業務, 資金業務, 調查業務, 電子計算業務等에 대한 專門的인 研修로 나눌수 있다. 이밖에도 部署內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精神, 保安業務를 중심으로 自體研修와 其他敎養研修등도 있다.

한편 國外研修는 當行業務의 特殊性을 반영한 職能別研修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外國의 金融機關을 비롯한 專門機關에 파견하여, 필요한 金融制度를 研究하거나 또는 業務處理技法을 습득케 하는 業務研修와 外國의 優秀한 大學院에서 學術을 研究케 함으로서 長期的인 視点에서의 專門要員養成을 위한 學術研修가 있다. 國際金融人과의 紐帶強化및 새로운 金融技法, 經營方式의 復習機會를 部署長級에 부여하기 위한 視察研修, 其他 海外事務所에서의 實勤務를 통하여 研修課題의 履修와 國際金融社會의 감각을 체득케 하기 위한 勤務研修로 구분, 실시하여 왔다.

研修派遣對象職員은 原則的으로 當行實務經歷이 3년이상인 者로서 外國語에 능통하고 勤務成績이 우수한 該當業務關聯者를 대상으로 選定派遣하며 主要派遣對象國으로는 英國, 西獨, 日本등을 들 수 있다.

한편, 當行은 職員의 語學實力培養을 위하여 行内外國語講座의 常設, 大學 등 外國語研修機關에 의 派遣研修와 함께 行外外國語學院受講支援등 多角的인 面에서 支援하고 있으며, 當行創立 이듬해인 1977년부터 語學實習室을 設置하여 自體計劃下에 行内語學研修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語學訓練은 英語뿐만 아니라 佛語, 西班牙語, 獨語, 日語등의 第2外國語도 包含하고 있는데 이들 科目에 대하여 每年 定期的으로 外國語考試를 實施함으로써 職員들에게 自己實力의 向上度를 測定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各種研修의 履修狀況은 職員研修記錄카드에 記錄하고 考試, 研修報告書의 提出등 적절한 方法에 의하여 그 效果를 測定하고 있으며 業務改善에도

職 員 研 修 現 況

〈表 V-5〉

研修區分	年度別 回數 人員	1976		1977		1978		1979		1980		合 計	
		回數	人員	回數	人員	回數	人員	回數	人員	回數	人員	回數	人員
國內研修	1. 業務研修	-	-	-	-	5	185	3	189	4	330	12	704
	2. 語學研修												
	(行 內)	1	10	2	10	3	60	4	80	3	70	13	240
	(行 外)	1	1	3	4	4	11	5	8	4	5	17	29
	3. 學術研修	-	-	-	-	1	2	1	3	-	-	2	5
國外研修	4. 外部機關派遣												
	(金融研修院)	-	-	3	3	6	6	12	15	14	15	35	39
	(輸出學校)	-	-	3	2	2	9	1	4	3	10	7	26
國外研修	1. 學術研修	-	-	-	-	-	-	1	1	3	4	4	5
	2. 業務研修	3	5	6	8	10	14	13	16	11	15	43	58
	3. 視察研修	-	-	-	-	2	2	3	3	1	1	6	6
	4. 勤務研修	-	-	-	-	1	1	3	6	2	3	6	11
合 計		5	16	17	27	34	291	46	325	45	453	145	1,123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職員研修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適正研修處 및 研修技法의 開發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當行은 1979 년도에 外國換, 輸出入, 金融, 審査, 法規, 資金, 計理, 豫算, 庶務, 調査 등 主要業務에 관한 敎本을 發刊, 職員研修 및 業務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當行의 主要研修實績을 보면 <表Ⅴ-5> 와 같다.

以上과 같이 當行은 職員의 創意的인 自己啓發은 물론 國際經濟與件에 항상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研修機會를 賦與하고 이를 支援함으로써 當行의 業務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材養成을 꾀하고 있다.

3. 福祉・厚生

當行은 1976 년 창립과 동시에 制定한 「福祉規程」에 의거 職員의 복리증진과 保健向上을 위한 제반조치의 施行과 아울러 업무수행중 발생한 災害의 補償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醫療惠澤

(1) 綜合健康診斷

職員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결과에 따라 健康管理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職員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綜合健康診斷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2) 醫務室運營

職員의 健康管理과 함께 간이치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行内に 内科醫務室

과 齒科醫務室을 운영하고 있다. 内科는 1977년 12월 6일, 치과는 1980년 1월 26일 각각 관제기관으로부터 許可를 받음으로써 설치되었으며, 1981.6.1 현재 内科醫師 1名, 藥師 1名, 看護員 1名을 두고 있으며, 치과에 醫師 1名, 衛生士 1名을 두고 있다.

(3) 醫療保險實施

當行은 1979년 7월 1일 醫療保險法에 의거 서울鍾路所在 「第1地區醫療保險組合」에 가입함으로써 醫療保險 惠澤을 받고있다. 月保險料는 職員의 표준보수 月額의 3%의 該當額을 組合에 納付하고 있으며, 이중 1.5%는 銀行이, 1.5%는 職員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

나. 身體鍛鍊

(1) 體育行事

職員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國民體育振興法等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體育行事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과 가을로 나누어 연 2회 綜合體育大會를 개최하고 있으며, 「테니스」大會, 登山大會, 낚시大會, 야구大會 등을 年2회이상 실시함으로써 職員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에 기여하고 있다.

(2) 夏季鍛鍊

매년 여름마다 海水浴場에 휴게시설을 賃借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4일 정도의 夏季鍛鍊을 實施하여 오고 있는바 지금까지 夏季鍛鍊地는 경포대, 만리포, 대천 等地의 海水浴場을 利用하였다.

(3) 體育施設

職員體力鍛鍊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當行은 현재 市内 各地域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賃借하여 利用하고 있다.

다. 厚 生

(1) 學資金支給

직원의 學資金 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職員子女에 대하여 他金融機關과 同等한 水準의 學資補助金を 支給하고 있다.

(2) 構內食堂設置

직원의 中食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行內에 構內食堂을 設置 運營하고 있다.

(3) 住宅貸與

本店 所在地를 제외한 地域에 勤務하는 自宅이 없는 가족동반 직원에 대하여는 當行 賃借住宅을 대여하고 있으며 임차주택에 대한 保證金은 無利子로 하고 있다.

(4) 災害補償

직원이 業務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國內他金融機關과 同一한 기준으로 災害補償을 실시하고 있다.

라. 各種 「서클」 활동

當行職員의 自發的인 親睦團體로서는 輸銀야구회, 輸銀꽃꽃이회, 輸銀女子行員會, 輸銀山岳會가 조직되어 있다.

마. 其 他

(1) 行友會

1977년 9월 1일 全職員을 會員으로 하여 行友會를 運營하고 있으며 會員이 每月納付(任員:本俸의 0.6% 職員:本俸의 0.5%)하는 會費로 기금을 조성하여 職員退職 및 各種 慶弔時 경조금을 支給하고 있다.

(2) 信用協同組合

職員相互간의 利益增進과 協同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11월 18일 信用協同組合 設立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同組合이 設立되었으며 組合員의 最初出資가 1981년 1월에 實施됨에 따라 業務가 開始되었다.

(3) 勞使協議會設置

使用者와 勤勞者간의 協同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勞使協議會法에 의거 當行 勞使協議會가 1980년 12월 20일 設置되었다. 특히 同協議會內에 勤勞者の 苦情事項을 처리하기 위한 苦情處理委員會가 設置되어 勤勞者の 권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第5節 事務合理化

事務改善業務는 業務의 研究開發과 事務의 機械化를 통하여 職員의 事務能率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經營의 合理化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業務活動을 말한다.

當行의 經營合理化를 위한 業務改善의 추진은 1976년 7월 1일 當行設立과 동시에 行內에 「提案審議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77년 8월 17일 機構改編으로 이를 전담할 독립부서인 業務改善室이 設置되어 舊 業務部에서 담당하던 事務改善에 관한 업무가 移轉됨으로써 事務合理化를 위한 制度的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當行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事務合理化 노력과 함께 장차 業務의 復雜化 및 量的인 擴大에 대비키 위하여 業務의 電算化 및 事務機械化를 추진키로 하고 1979년 4월 27일자로 이 업무를 業務改善室이 管掌하도록 하였다.

當行은 이를 추진키 위하여 「事務合理化 委員會」를 두고 있는바 同委員會는 ①業務提案 ②事務機械化計劃의 樹立 ③事務機械의 機種選定 및 購入臺數의 査定 ④職務 發明 및 기타 事務合理化에 관한 사항을 密議 檢討하고 그 결과 採擇된 事項은 銀行長에게 이의 실시를 건의하는 機能을 맡고있다.

1. 事 務 改 善

事務合理化를 위한 當行의 事務改善業務는 업무처리의 능률화와 표준화 및 용이화에 입각한 업무개선제안, 양식 및 서식의 개선과 기타 「파일링 시스템」(Filing System) 도입에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業務提案制度

當行의 業務提案制度는 當行設立과 함께 실시되어 다수 직원의 참여로 1980년 12월말 현재로 91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이중 10건이 채택되어 사무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는 바 年度別 提案件數 및 採擇件數는 〈表Ⅴ-6〉과 같다.

나. 帳票管理制度

當行은 1979년 12월 6일 帳票管理要綱을 제정하므로서 帳票管理의 合理化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 노력하여 각종 보고서식 및 장표의 제정·개폐에 관한 종합심사와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서식류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부터 帳票登錄制를

<表 V - 6 >

業務提案 및 採擇件數

(단위: 건)

年度別 \ 區分	提案件數	採擇件數	備 考
1977	42	6	
1978	12	2	노력상 1
1979	15	2	노력상 3
1980	22	-	노력상 5
計	91	10	노력상 9

실시함으로써 帳票登錄臺帳을 발간하고 530 건의 當行 사용장표의 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파일링 시스템 (Filing System)

當行은 문서의 분류, 보관, 보존, 소산 및 폐기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8년 3월 銀行長의 특별 지시에 따라 「파일링·시스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년 9월에는 일본 이도끼 (Itoki) 研究所長인 「아즈마·마사오」 氏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고 當行 직원 1명을 일본에 파견하여 「파일링·시스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같은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12월 「파일링·시스템」綜合改善案이 提案審議委員會에서 채택되었는바 이로서 능률적인 문서관리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事務電算化 및 事務機械化

1979년 4월 27일 當行 직제개편에 의거 事務電算化 및 事務機械化 업무가 업

무개선실의 分掌業務로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1980년 2월 관련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된 업무전산화 추진실무반이 설치되었다. 또한 1980년 5월23일 과거 업무제안심사에 중점을 두던 提案審議委員會가 事務合理化委員會로 개편되고 同委員會에서 事務電算化 및 事務機械化에 관한 사항을 銀行長에게 전의실시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사무전산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1979년 4월 27일 전문요원 2명으로 시작된 전산업무는 현재 7명으로 그 인원이 보강되어 當行의 사무전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반사무기계의 기종 선정 등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1년도 중에는 당행 업무처리에 적합한 「하드·웨어 시스템」(Hard Ware System)의 도입을 위하여 그 기종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當行의 단계적인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第6節 金融淨化 및 其他

1. 金融淨化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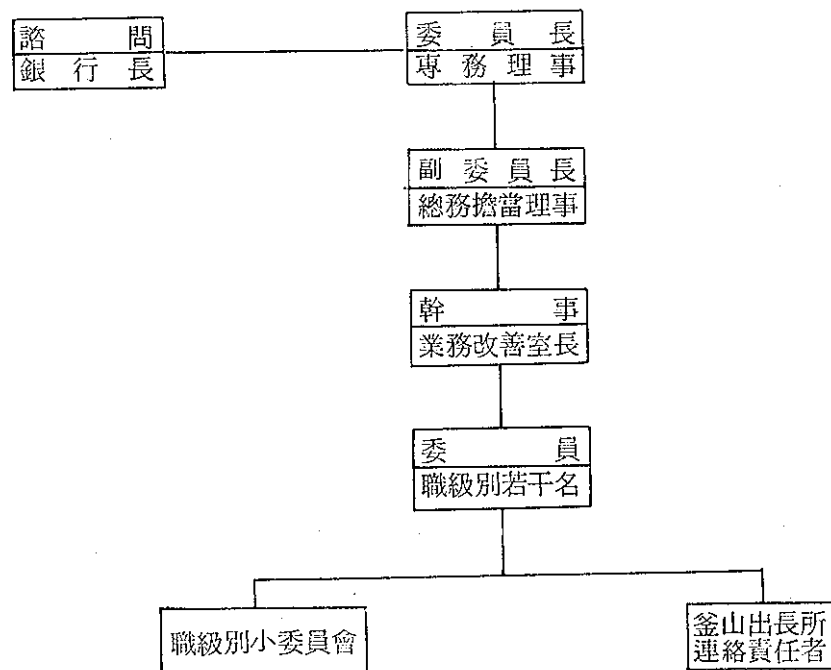
1975년 3월부터 政府가 庶政刷新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金融機關에서도 이에 호응, 자체 庶政刷新 즉 金融刷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꾸준히 추진한 결과 當行의 金融刷新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當行에서는 창립초기 監査室에서 金融刷新業務를 담당하여 왔으나 1977년 8월 어의 전담부서인 業務改善室이 신설됨에 따라 當行의 金融刷新業務는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1980년 8월부터 國民精神改革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汎國民 運動으로 社會淨化運動의 일환으로 흡수되게 되었으며 이에 의거 當行은 국민정신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있다.

當行의 金融淨化 推進目標는 民主 福祉國家 建設을 위하여 全任職員의 투철한 國家觀, 使命感, 倫理觀을 확립하여 비리병폐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금융풍토를 구현하는데 있다.

職場淨化委員會 推進體制



2. 새마을運動

當行의 새마을運動은 1976년 7월 새마을정신을 고취하고 효율적인 새마을運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運動 推進協議會를 구성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창립초기 當行의 새마을運動에 관한 업무는 總務部에서 관장하였으나 1979년 11월 同 業務는 業務改善室로 이관되었다. 또한 當行은 全 任職員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새마을精神을 定着化하고 근검, 절약 및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적극 참여한 결과 197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 주최 “職場 새마을運動 比較評價大會”에서 協同價를 수상하였으며 1980년 4월 優秀 새마을運動 機關으로 선정되어 서울特別市長賞을 수상하였다.

當行의 새마을運動은 當行 設立初期 環境미화, 자연보호, 물자절약 등 작은 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점차 확산되어 自助와 協同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精神에 입각하여 지역의 환경개선과 농촌부락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1977년중에는 自助部落(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외리 사기막마을) 및 軍部隊(第1976部隊)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1980년 한해동안 一日茶室 運營, 職員誠金, 廢休紙賣却代金 등으로 895,730원의 새마을基金을 조성하여 일선장병 위문, 양노원 방문,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對民支援事業으로는 연 4회 연인원 200명을 동원하여 국민식수, 모내기, 벼베기, 옥립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3. 安 全 管 理

當行은 非常計劃, 保安, 豫備軍 및 民防衛隊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1977년 1월 27일 總務部內에 安全計劃課를 設置, 運營하여 왔으며 1980년 3월 15일 機構改編에 의하여 專擔部署인 安全管理室을 別途로 設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非常計劃

當行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 事態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7년 이래 每年 戰時對備計劃인 忠武計劃을 樹立 發展시켜 왔으며 1979년부터는 政府主管下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乙支演習과 財務部가 主管하는 乙支財務演習에 參加하여 왔다.

또한 當行은 1978년 7월 31일 國家動員指定機關으로 선정됨에 따라 非常時 豫備軍의 兵力動員이 있을시 부족하게 되는 人力을 平時에 豫則 判斷하고 戰時에 當行의 金融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職種과 技術人力 現況을 把握함으로써 非常時 신속한 充員에 대비하기 위한 動員資源管理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保 安

當行은 中長期 延拂輸出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하는 特殊業務를 遂行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保安上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各部署의 職能別 業務遂行 過程에서 야기될 수 있는 保安事故를 豫測하고 이의 事前豫防을 위한 職能別 保安對策을 樹立 實施하고 있다. 또한 保安管理의 徹底와 保安意識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每年 상·하반기에 2회이

상 정기적으로 保安指導監査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80년도부터 保安業務 履行狀態에 대한 各部署別 評價制度를 마련, 실시하고 있으며 年度中 最優秀部署를 選拔 褒賞함으로써 保安意識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全任職員에 대하여 투철한 國家安保觀을 확립시키고 反共意識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年2회이상 定期的으로 社會 著名人士를 초빙하여 保安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다. 豫備軍

當行의 職場豫備軍은 郷土豫備軍設置의 基本 理念에 입각하여 1977년 4월 9일 職場豫備軍小隊로 發足하였다. 그후 機構擴張으로 編成人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년 11월 10일 中隊로 增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豫備軍의 건전한 育成發展과 効率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銀行長을 議長으로 하는 防衛協議會를 設置・運營하고 있다.

그간 當行의 職場豫備軍中隊는 各種 教育訓練에 적극적으로 參與함으로써 1979년도 豫備軍 定期監査時 優秀部隊로 評價받아 歩兵 第60訓練團長으로부터 表彰을 受賞하였으며, 1980년 4월 12일 豫備軍의 날에는 財務部長官으로부터 模範豫備軍 表彰을 受賞하는 등 優秀豫備軍部隊로서의 面貌을 다져가고 있다.

라. 民防衛

當行의 職場民防衛隊는 民防衛基本法 및 同施行令에 의거 1976년 8월 19일 韓國輸出入銀行 職場民防衛隊로 發足하였다.

敵의 侵攻이나 各種 災難으로부터 우리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防空, 消

防, 救助, 復舊 등 自衛的 活動을 遂行하기 위하여 發足된 當行 職場民防衛隊는 銀行長을 隊長으로 하여 그 산하에 本部小隊를 비롯한 消水防, 防護復舊, 醫療救助의 4개 小隊로 編成되어 있다.

當行의 民防衛隊는 發足後 지금까지 全隊員이 渾然一體가 되어 各種教育訓練에 적극 參與함으로써 民防衛隊의 任務를 착실히 遂行하여 왔는바 1980년도 民防衛隊 定期檢閱 결과 優秀民防衛隊로 선정되어 表彰을 受賞하는 등 模範職場民防衛隊로서 民防衛態勢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附 錄

-
1. 銀行日誌 및 主要經濟措置年表
 2.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3. 歷代 部署長
 4. 機構 및 組織
 5. 主要 統計
 6. 法 令
-

1. 銀行日誌 및 主要經濟措置年表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69. 7. 28	△韓國輸出入銀行法 (法律第 2122 號) 制定公布	
10. 6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 (大統領令 第 4099 號) 制定公布	
10. 16		△金通委: 5 個市中銀行의 資本 金을 倍增하는 增資申請을 承認
10. 27	△韓國輸出入銀行 業務方法書 制定	
10. 29	△韓國輸出入銀行業務를 韓國外 換銀行이 代行하게 됨에 따라 中長期信用部 業務代行開始	
12. 22		△ IMF: 우리나라를 SDR 供與 國으로 指定
1970. 4. 2		△金通委: 市銀에 年 3.5 % 支準 附利 議決
6. 24		△企劃院: 重工業綜合育成施策마 련
8. 6		△政府: 輸出入通關 및 關稅業務 에 있어서 商品分類方式을 BTN 方式으로 統一하기로 決定
1971. 6. 28		△財務部: 換率을 13 % 引上하여 對顧客電信換賣渡率을 1 달려當 371.60 원으로 表示
7. 22	△業務方法書 改正 (第 1, 2 次)	
10. 1	△業務方法書 改正 (第 3 次)	
11. 30		△商工部: 石油化學工業育成 5 個年計劃을 確定 發表
1972. 2. 8		△政府: 外務部로 하여금 經濟外 交를 專擔키로 決定
3. 23	△業務方法書 改正 (第 4 次)	
5. 24	△業務方法書 改正 (第 5 次)	
8. 3		△政府: 企業私債의 調整, 特別金 融債券의 發行, 信用保證制度 의 擴充, 產業合理化審議會의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2. 12. 28		設置運營, 金利引下, 物價 및 財政運營의 効率化, 換率의 安定化등을 主內容으로 하는 經濟安定과 成長에 관한 大統領 緊急命令을 公布하고 3日부터 施行 △非常國務會議: 企業公開促進法案, 資本市場 育成法案 議決
1973. 1. 13 2. 10	△業務方法書 改正(第6次)	△金通委: 輸出產業設備金融規定을 制定
5. 31 1974. 1. 14	△業務方法書 改正(第7次)	△大統領緊急措置: 勤勞所得稅의 免除 및 輕減, 奢侈性入場稅 및 住宅등의 重課稅를 內容으로 하는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大統領 緊急措置」 第3號 宣布
4. 10 5. 15 9. 14	△業務方法書 改正(第8次) △業務方法書 改正(第9次)	△國務會議: 綜合所得稅制의 全面實施, 附加價值稅制度에로의 移行을 위한 토대 마련, 1. 14 措置의 法制化 등을 內容으로 하는 1975年度 稅制改革案 議決 △換率引上(1달러當 480원)
12. 7 12. 20 12. 26	△業務方法書 改正(第10次) △韓國輸出入銀行法 改正(法律 第2736號) 公布(第1次) △韓國輸出入銀行 臨時運營委員會 開催	
1975. 2. 20	- 臨時運營委 規定 制定 - 韓國輸出入銀行 業務代行 準則 制定	
2. 28	△韓國輸出入銀行法施行令 改正(大統領令第7561號) 公布(第1次)	
3. 7		△財務部: 各外國換銀行이 誘致한 外貨預金을 財源으로 한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5. 3.19	△業務方法書 改正(第 11 次)	원貨貸出을 無制限으로 許容
4.17	△業務方法書 改正(第 12 次)	
4.29		△商工部:綜合貿易商社 選定基準 發表
6.27		△國務會議:「防衛稅法(案)」議決
1976. 4. 8	△財務部, 韓國輸出入銀行 獨立設立키로 決定	△財務部:서울銀行과 信託銀行을 合併하여 8月初 大型銀行을 發足키로 決定
4.10	△韓國輸出入銀行 設立委員會 構成 및 設立事務局 發足 - 設立委員名單 委 員 長: 南相晉 財務部次官 副委員長: 河永基 韓銀副總裁 委 員: 高炳佑 財務部財政次官補 委 員: 朴弼秀 商工部商易次官補 委 員: 河東善 財務部理財局長 委 員: 鄭寅用 財務部國際金融局長 委 員: 洪完模 外換銀專務理事 - 事務局 構成 第 1 班~第 4 班으로 組織 事務局長: 崔鍾岳	
4.12	△第 1 次設立委員會開催	
5. 6		△韓銀: 輸出金融의 과다팽창 억제를 위해 융자기간 135 일을 초과할 경우 5월 1일부터 貸出의 20%를 의무적으로 納入토록 輸出金融條件을 強化
5.12	△當行初代 宋仁相行長 任命	
5.14	△設立委員變更 - 南相晉委員長을 해촉하고 趙忠勲財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위촉 - 宋仁相韓國輸出入銀行長을 委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6. 6. 1	員으로 위촉 - 李泰浩外換銀行理事를 委員 으로 위촉 △第2次 設立委員會 開催 △任員任命 - 監事 朴鼎在 - 理事 李泰浩 - 理事 元裕敏	
6.10		△財務部 :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 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企業 資金의 원활한 용통을 돕기위 해 278억원의 基金으로 信 用保證基金을 獨立 發足시킴
6.17	△韓國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200 億원을 當行出資로 轉換 △韓國外換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300 億원을 出資로 轉換	
6.18		△政府 : 第4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 確定 發表
6.21	△韓國輸出入銀行 設立 登記 - 銀行長 : 宋仁相 - 資本金 : 法定資本金 : 1,500 億원 納入資本金 500 億원 △政府貸下金 53 億 55 百萬원 出 資로 轉換	
6.23	△設立委員會, 韓國輸出入銀行長 에게 設立事務 引繼	
7. 1	△韓國輸出入銀行正式發足및業務 開始 - 銀行長 : 宋仁相 - 監 事 : 朴鼎在 - 理 事 : 李泰浩, 元裕敏 同日자로 대우「센터빌딩」을 賃 借하여 當行事務室을 設置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制定 △職制分課規程 制定 - 3 部 1 室 2 課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企劃調查部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6. 7.12 8. 2	業務部 監査室	△金融團, 主去來銀行制 實施 △政府: 銀行金利를 대폭 引上 1년 이상 滿期를 年 16.2 % (1.2 %인상), 6개월 만기를 15.6 % (1.8 %인상), 3개월 만기를 15 % (2.4 %인상)로, 대출금리는 年 17~19% 선으 로 引上措置
8. 3 8. 6	△業務方法書 改正 (第 13 次)	△財務部: 外換管理規定을 개정, 外貨貸付의 施設材輸入擔保金 적립시기를 B/L인수시점으로 늦추는 한편 延拂輸出用 原資 材를 對象에 추가
8.19 9.17	△職場民防衛隊 發隊 △宋仁相銀行長 第31次IMF/IBRD 年次 總會參席次出國 (필리핀)	
9.20 10. 4	△프랑스 經濟使節團 當行來訪 △職制分課規程 改正 (第1次) - 企劃調查部에 外換管理課 新設)	
11.18		△國務會議: 海外經濟協力과 技 術協力에 관한 중요한 정책심 의를 담당할 海外經濟技術協力 委員會를 신설토록 의결.
12. 7		△經企院: 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77~81年)을 확대 수 정, 당초 9%로 잡았던 계획 기간중의 年平均 目標 經濟成 長率을 9.2%로 上向 調整하 고 오는 81년의 1인당 GNP 를 당초 1,284 달러 (경상가 격 기준)에서 1,512 달러로, 수출은 174 億 달러에서 202 億 달러로 각각 확대 조정한 최 종안을 확정 발표
12.30 1977. 1. 1	△政府出資 100 億원 納入 (政 府出資累計 153 億 55 百萬元) △韓國再保險公社로 부터 輸出保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7. 1. 14	險業務 引受 △職制分課規程 改正(第2次) - 輸出保險業務 引受에 따라 輸出保險部 設置 - 輸出保險部內 管理課, 業務課, 信用調查課 新設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改正 (第1次) - 國內, 國外事務所 設置 根 據 規程 △業務方法書 改正(第14次)	△政府: 經濟 10 個 部處 長官 合同記者會見을 갖고, 77 年度 政策基調를 高度成長持續, 安 定基盤鞏固化, 貯蓄増大와 物 資節約, 社會開發의 擴充등으 로 세우고, 主要 經濟指標 중 GNP 成長率을 10 %, 商品輸出 은 100 億 달러로 計劃發表함
1. 27	△職制分課 規程 改正(第3次) - 企劃調查部를 業務部와 海外 投資調查部로 분리·개편하 고 業務部內 企劃課, 法規課, 資金課 新設 - 總務部內 安全計劃課新設 - 業務部를 審査部와 金融部로 분리·개편	
1. 29		△韓銀: 輸出業體에 대한 資金支 拂의 迅速化 및 短期延拂輸出 의 促進을 위해 輸出換어음 擔 保貸出節次를 2 月 1 日부터 간 소화하기로 함 △銀行「지료」制度 實施
2. 1		
2. 3	△全石斗理事 就任	
2. 9	△業務方法書 改正(第15次)	
3. 31	△業務方法書 改正(第16次)	△財務部: 中東地域에 대한 交易 및 建設用役 輸出을 촉진하고 이 지역과의 外換去來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쿠웨이트의 더 나르貨, 바레인의 더나르貨,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7. 4. 2	△宋仁相銀行長 延拂輸出 및 合 作 投資 可能性 打診次 出國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日本)	아랍 연방 도후국의 더햄貨幣 을 外換管理法上 指定通貨로 추가 지정
4. 4		△商工部 : 工業構造高度化와 國 際競爭強化를 위한 「工業技術 革新事業細部推進計劃」을 確 定發表
4. 9	△職場豫備軍 小隊 發足	
5. 2	△業務方法書 改正 (第17次)	
5.11		△財務部 : 對外 債券構造改善과 海外部門의 通貨增發壓력을 줄이기 위해 短期外貨借入金利 의 引下調整 및 外貨貸與의 擴 大 등을 內容으로 하는 短期外 貨借入條件 改善對策을 실시키 로 發表
5.12	△李泰浩 專務理事 就任	
	△李鴻俊 理事 就任	
5.27	△Alfred Brittain III BTC會長 來訪	
5.31	△業務方法書 改正 (第18次)	
6. 3	△宋仁相銀行長 第34次 Berne Union 年次總會 參席次 出國 (핀란드)	
6. 7	△輸出保險業務의 國際機構인 Berne Union에 當行 正式 加入	
6.14		△政府 : 附加價值稅制를 7月1 일부터 실시하되 그 적용세율 을 당초 계획했던 13%에서 10%로 낮춰 적용키로 하고 물가에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7월1일 부터 銀行貸出金利를 現행 年 18%에서 17%로, 10월1일 부터 16%로 인하하고 預金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7. 6. 15	△延拂어음 (P note) 158 百萬 「달러」賣却契約 締結	金利率 現行 年 16.2 %에서 年 14.4 %로 낮추기로 함.
6. 22	△釜山事務所를 釜山出張所로 名稱 變更	
7. 1	△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改正 (第 2 次) - 輸出保險業務 取扱根據 規定 △業務方法書 改正 (第 19 次)	△政府 : 8 개 간접세를 통합한 새로운 稅制인 附加價値稅制 시행
7. 18	△ Satoshi Sumita (澄田 智) 日本輸出入銀行總裁來訪	
7. 21	△韓銀出資 200 億원 納入 (韓銀出資累計 400 億원)	
8. 17	△職制分課規程 改正 (第 4 次) - 總務部內 文書課, 研修課 新 設 - 業務改善室 新設 - 輸出保險部內 統轄課, 補償課 新設	
9. 1	△業務方法書 改正 (第 20 次)	
9. 7		△財務部 : 國濟金融社會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IMF에 대한 出資金을 현재 의 8,000 萬 SDR에서 연내 에 1 億 6,000 만 SDR로 증액 키로 함
9. 15	△ John L. Moore 美國輸出入銀 行總裁來訪 △ Buyer Credit 供與에 國別信 用 限度制 採擇	
9. 21		△財務部 : 10 月 1 日부터 金融 機關豫貸金利를 포함한 證券保 險 · 短資 등 第 2 金融圈의 金利 를 現行 1 年 만기 年 16.2 % 에서 14.4 %로, 대출금리는年 17 %에서 16 %로 인하키로 함
9. 22	△宋仁相 銀行長 第 32 次 IMF/ IBRD 總會參席次 出國 (美國)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7.10. 4		△金通委：輸出用原資材輸入金融의 最高金利를 年 16 %로 引下
10. 5	△政府出資 100 億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253 億 55 百萬원)	
11.10	△戰場豫備軍 中隊로 增編	
11.11	△農村部落과 자매결연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삼외리 사기막 마을)	
11.12	△ John R. Petty Marine Midland 銀行長來訪	
11.24	△李泰浩專務理事 韓·가百貨店 開店式參席 및 經濟狀況調査次出國 (가봉, 수단)	
11.25		△政府：우리나라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고 外國入의 對韓投資촉진을 위해 직접적인輸入規制를 완화하고 輸入自由化豫示制를 실시하는 한편 輸入限度制 및 허가제를 개편, 또는 간소화하기로 함
12.14		△財務部：輸出先受金 도입에 대한 國內銀行의 支給 보증을 불허하고 國內企業의 海外支社가 輸出先受金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外換管理規定을 일부 개정 △國會：動力資源部를 新設하는 等を 主要 골자로 하는 政府組職法 改正案을 通過시킴
12.19	△韓國輸出入銀行法 改正 (法律第 3022號)公布(第2次) -法定資本金을 1,500 億원에서 5,000 億원으로 增額.	
12.22		△商工部：100 億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朴正熙 大統領을 비롯 政府고위층과 輸出有功者·輸出業體 從業員등 7,400 여 명이 參석한 가운데 「輸出의 날」 기념식을 거행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7.12.29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改正 (第3次) - 法定資本金 增額(1,500 億 원→5,000 億원)	
12.31	△業務方法書 改正(第21次) △政府出資 100 億원 納入(政府 出資累計 353 億 55 百萬원)	
1978. 1. 6		△建設部: 重化學工業團地的 지 원시설 확충을 위해 모두 437 억 7,100 만원을 투입, 浦 項·昌原·北坪·溫山·麗川·玉 浦 및 安井 등 7 개 産業基地 의 항만시설·공업용수시설 및 도로 등 각종 開發事業을 추진 키로 함.
2.20	△李泰浩專務理事 國際金融市場 調査 및 벨기에 KEAF 開店式 參席次出國(가나, 가봉, 벨기 에)	
2.25		△財務部: 輸出産業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輸出原資材 에 대한 特別關稅適用을 擴大 키로 함
2.28	△職制分課規程 改正(第5次) - 資金課를 資金部로 확대 개 편하고 資金部內 資金1課와 資金2課를 新設 - 法規課를 法規室로 확대 개편	
3. 2		△政府: 지금까지 美國 달러貨와 西獨 마르크 및 스위스 프랑貨 등 지정 통화로만 실시해오던 施設財 導入을 위한 外貨貸付 를 日本 外貨表示貸付도 실시키 로함
4.19	△宋仁相銀行長 第11次 ADB 年 次 總會 및 外貨資金 調達協 議次出國(오스트리아, 덴마크)	
4.27		△商工部: 中小企業育成綜合對策 으로 3,000 億원의 特別基金을 造成, 中小企業振興公團을 設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8. 5. 1	△朴鼎在 監事 退任 △金 建 監事 就任	立키로 함
5. 9		△財務部：延拂輸出業者가 말행한 內國 L/C에 대해서도 輸出金融을 支援키로 함
5.13	△延拂輸出 로컬 L/C制 施行	
5.25	△宋仁相銀行長 第 35 次 Berne Union 總會參席次 出國(西獨)	
5.29	△Erick Hayden 아메리카 銀行 副行長 來訪	
6. 1	△뉴욕 및 런던 事務所 開所	
6. 6		△國務會議：環境保全法施行令案 議決
6.14		△政府：中小企業育成策의 一環으로 中小企業振興公團을 設立하고 1979~83 年까지 5,000 億원의 中小企業 特別基金을 造成할 方針
6.23		△大統領：「6.23 宣言」 5 月을 맞아 特別談話를 發表, 南北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民間協議 機構의 構成을 北韓側에 提案
8.14	△職制分課規程 改正(第 6 次) - 審査部를 審査 1 部와 審査 2 部로 분리·개편	
8.28	△로스앤젤레스事務所 開所	
8.29	△李泰浩專務理事 外貨資金 調達 協議次 出國(英國, 프랑스, 日本)	
9. 1	△홍콩事務所 開所	△財務部：企業資金 調達の 원활 화와 社債需要의 開發을 위하 여 保證社債利率의 上限을 철폐하는 中 社債發行條件을 自律化 시키기로 함
9.18	△宋仁相銀行長 第 33 次 IMF/IBRD 年次總會 參席次 出國(美國)	
9.20		△政府：12 海里 領海法施行令 公布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8.10. 2	△韓國外換銀行 出資 100 億원 納入(外換銀出資累計 400 億 원)	△商工部: 플랜트 國産化를 촉 진하기 위해 國內기술로 건설 이 가능한 시멘트·製紙 등 8 개업종에 대해 借款 및 外貨貸 付로 들어오는 資本財가 100 만달러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國內업자 주도하에 건설토록 지시
10. 4		
10.16	△ Jonas Gomes 칠레 Israel Lita 銀行長 來訪	
10.30	△政府出資 50 億원 納入(政府 出資累計 403 億 55 百萬원)	
11. 2	△韓國外換銀行 出資 100 億원 納入(外換銀出資累計 500 億 원)	△財務部: 79 年度 輸出支援策으 로 特別設備金融 2 千 4 百億 원을 支援하고, 特別關稅猶予期 間 延長實施, 原資材確保를 위 한 金融支援 擴大등 施策을 發表
11.17		
12. 1	△韓國外換銀行 出資 100 億원 納入(外換銀出資累計 600 億 원)	
12. 6	△Francois Djapon 카메룬 商工 會議所 會長 來訪	
12. 7	△Bank loan 2 億달러 導入契約 締結	△政府: 본격적인 海外資源開發 을 위해 10 여개 資源保有國과 의 각료회담 추진과 함께 7 개국 26 개 광산에 대한 예비 및 精製조차를 실시, 민간업체 진출을 지원할 계획
1979. 1. 6		
1.12	△業務方法書 改正(第 22 次)	
1.25	△李泰浩專務理事 Berne Union 臨時總會 및 對 칠레 轉貸借款供與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9. 2. 2	協定締結次 出國 (아르헨티나, 칠레, 자마йка)	△經濟企劃院 : 차관도입이 시작된 지난 59년 이후 78년 만까지 20년 동안 모두 176억 4,300만 달러의 차관이 도입되고 이 중 122억 1,100만 달러가 실제 도착한 것으로 집계 발표
2.14	△宋仁相銀行長 美洲公館長會議 參席次 出國	
2.22		△商工部 : 産業設備輸出을 10萬 달러이상등으로 정한 플랜트輸出促進法實施規則을 制定공포
3.16		△政府 : 韓國과 日本은 대륙붕개발 문제와 관련, 운영권자를 교대운영방식으로 추천키로 합의, 韓國이 제 7 광구의 시추권을 확보했으나 그 생산권은 일본에 넘어갔으며, 나머지 소광구는 韓國이 생산을, 일본이 시추를 맡기로 결정
3.21	△政府出資 6 億 50 百萬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410 億 5 百萬원)	
4. 9	△ R.R.Greene Citi Bank 專務理事 來訪	
4.24		△政府 : 앞으로 추진할 신규 중화학·기계공업에 참여할 실수요자 선정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기로 함
4.27	△職制分課規程 改正 (第 7 次) - 業務部를 企劃部로 명칭 변경 - 安全計劃課를 安全管理課로 명칭 변경 △事務電算化 및 機械化 業務追加	
4.29	△李泰浩專務理事 第 12 次 ADB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9. 5. 4	年次總會 參席次 出國 △ Jean Keutcha 「카메룬」 外相 來訪	
5. 7	△崔鍾岳理事 就任	△經濟企劃院：79~81년의 3 개년 經濟運用計劃 편성. ① 81년의 1인당 GNP를 2,150 달러로 ②80,81년의 경제성 장률을 9%로 ③80,81년의 소비자물가와 도매물가를 10 % 및 8%로 각각 책정
5.13	△宋仁相銀行長 退任	
5.14	△梁潤世銀行長 就任	
5.15	△業務方法書 改正(第23次)	
6. 4		△經濟企劃院：外國人 投資企業 體에 부과되어 있는 수출 의 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해제, 6월 1일부터 소급 실시키로 함
6. 5	△李泰浩專務理事 第36次 Be- rne Union 年次總會 參席次 出 國(벨기에)	
6.19	△동경事務所 開所	
6.20	△아비잔事務所 開所	
6.25		△經濟企劃院：수출부진현상의타 개를 위해 輸出支援金融의 달 려당 융자비율을 일률적으로 30원씩 인상하고 外國마이어 와 直去來하는 先輸出契約書 (D/A)에 의한 금융한도를 무 제한으로 허용하며 關稅징수유 예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키로 결 정
7.11	△豫備軍 定期監査結果 優秀部隊 表彰 受賞	
8.29	△政府出資 13億50百萬元 納入 (政府出資累計 423億55百萬 원)	
8.31	△業務方法書 改正(第24次)	
9. 8		△商工部：섬유제품의 품질고급 화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국제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79. 9.15	△延拂輸出支援方式을 Buyer Credit 方式으로 점차 轉換기로 決定	적인 유명메이커의 상표 및 기술도입을 허용키로 함
9.22	△金 建監事 中南美 通商使節團 一員으로 出國	
9.25		△商工部：對日貿易 逆調 개선책의 하나로 對韓 機械類 輸出實績이 전혀 없는 日本 기계류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일체 금지
9.26	△梁潤世銀行長 第34次 IMF 總會 參席次 出國(유고슬라비아)	
10. 2	△기니아經濟使節團 來訪	
10. 6		△企劃院：자본집약적이고 고도 기술을 요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최저한도액을 업종별 구분없이 20 만달러에서 50 만달러(해외 교로는 20 만달러)로 인상
10.11	△職制分課規程 改正(第8次) - 文書課를 任員附屬室로 확대 개편 - 企劃課를 企劃1課와 企劃2課로 분리 개편	
10.29		△政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재무, 농수산, 상공, 동자, 건설, 보사, 교통, 체신부의 8개 경제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特別經濟對策委를 구성
10.31	△Kodock AFDB 副總裁 來訪	
11.10	△業務方法書 改正(第25次) - 協調融資(Co-financing) 制度導入등	
11.15	△말레이시아 通商使節團 來訪	
12. 5	△가나 交通部長官一行 來訪	
12.17		△商工部：내년도 기계공업자금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국산화 용자대상품목을 면정방 기 등 160개 품목과 신규개 발기제로 하고 기계류 시작품 개발 보조금 지급요령도 확정 공고
1979.12.18	△政府出資 25 億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448 億 55 百萬 원)	
12.19	△梁潤世銀行長 退任	△財務部 : 資本市場育成法の 개 정에 따른 시행령을 일부 고 쳐 기업이 발행하는 社債의 元 利金 지급보증기관으로 금융 기관, 종합금융 등을 지정
12.24	△Ahmed Abou Ismail Cairo Far East Bank 銀行長 來訪	
12.29		△財務部 : 外換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무역 신용의 일종인 유전스 期間을 현행 120 일에 서 180 일로 연장 80년 1월 4일부터 실시기로 함
1980. 1. 8	△李泰浩 銀行長 就任 金 建 專務理事 就任 金鍾燮 監事 就任	
1.12		△政府 : 對美달러 基準換率을 19.8 % 인상, 달러당 현재 484 원에서 580 원으로 결정하는 한 편 金利도 受信金利 24 %, 與 信金利 24.5 %로 인상 조정
1.17	△金 建專務理事 Berne Union 臨時總會 參席次 出國	
1.18	△業務方法書 改正(第 26 次) - 延拂輸出支援資金金利引上 (年 7 % → 8 %) 등	
1.30		△商工部 : 對로메지아 交易禁止 조치를 해제
2.27		△換率流動化 實施 (SDR 및 獨 自바스켓制)
3.15	△職制分課規程 改正(第 9 次) - 安全管理課를 安全管理室로 확대 · 개편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80. 4. 12	△財務部長官으로 부터 模範 豫 備軍部隊 表彰 受賞	
4. 7		△財務部：重化學業體의 對外元利 金 상환, 商業借款導入 불가피 업체에 대해 브리지론을 허용 키로 결정
4. 8	△李泰浩銀行長 第21次 IDB 年 次總會 參席次出國(브라질)	
5. 24	△李泰浩銀行長 第37次 Berne Union 總會 參席次 出國 (日 本)	
6. 4	△J.L.Moore 美國輸出入銀行 總裁 來訪	△外換銀：5개市銀, 海外建設工 業支保의 50%를 輸出保證保 險에 의무적으로 付保 △政府：綜合經濟對策 發表
6. 5		
6. 16	△李泰浩銀行長 第16次 AFDB 및 第7次 AFDF 年次總會 參 席次 出國	
7. 1		△外國換銀行：先物換去來制를 첫 실시
7. 4	△金 建 專務理事 浦項製鐵의 美 國 Tanoma 鑛山開發 着工式 參席次 出國	
7. 5	△鄭勲沐理事 就任	
7. 9		△日本의 對韓輸出促進團 127 名 來韓
7. 10	△業務方法書 改正(第27次) - 協調融資制度 適用範圍 擴大 등	
7. 19	△金鍾燮監事 退任 元裕敏理事 退任	
7. 21		△財務部：重化學製品의 延拂輸 出을 뒷받침하기 위해 轉貸借 款 導入을 서둘도록 하는 한 편 輸出業者도 필요한 延拂輸 出用原資材를 物資借款으로 들 여올 수 있게 조치
7. 22		△韓銀：輸出金融융자 대상을 확 대 플랜트등 産業設備를 外貨 表示供給契約書에 의거 輸出할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80. 7. 30	△金 建 專務理事 退任	경우도 輸出金融을 지원케 조 치
8. 1	△河國煥 專務理事 就任	
8. 20	△全石斗 監事 就任 成旭基 理事 就任 朴炳植 理事 就任	△國保委：自動車，發電設備，建 設重裝備 등의 生産을 一元化 하는 內容의 重化學投資 調整 發表
	△스웨덴 Skandinaviska Enskil- da Banken 으로부터 18.1 百萬달리轉貸借款導入 契約 締結(스톡홀름)	
8. 25	△政府出資 42 億 50 百萬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491 億 5 百萬원)	
9. 5	△ I. S. Sun 臺灣輸出入銀行長一 行來訪 △職場淨化委員會 設置	
9. 16		△金通委：金利 및 預金支給準備 率 引下
9. 25	△李泰浩銀行長，第 35 次 IMF / IBRD 年次 總會參席次 出國	△企劃院：「外國人投資 誘致方 案」發表
9. 27		△政府：「企業體質 強化對策」 發表
9. 30	△덴마크 Den Danske Bank 로 부터 3 百萬달리轉貸借款導入 契約 締結(런던)	
10. 15		△韓銀：先物換制度 擴大 實施
10. 16	△韓國銀行出資 300 億원 納入 (韓銀出資累計 700 億원)	
10. 22		△商工部：系列企業整理對象으로 26 個 그룹을 確定
11. 8		△政府：「綜合景氣浮揚對策」發 表 -金利引下，特別消費稅率引下 需要者金融 500 億원 貸 出등
11. 11	△필리핀 經濟使節團 來訪	
11. 14		△商工部：「造船工業育成方案」 發表
11. 17	△優秀民防衛隊 表彰 受賞	△企劃院：「1981 年度 經濟運用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80.11.18	△職制分課規程 改正(第10次) -資金부에 資金總括課 新設	指針」發表
12.10	△河國煥專務理事 當行支援事業 現地調査次 出國(수단, 케냐)	
12.15	△노르웨이 Eksportifinans 로 부터 41百萬달러 轉貸借款導 入契約締結(서울)	
1981. 1.14	△李泰浩銀行長 Berne Union 臨 時總會 및 Egypt Cairo Far East Bank 와의 轉貸借款供與 協定 締結次 出國	△企劃院：第5次5個年計劃(1 982~86)總量指標 確定
1.16	△政府出資 7億50百萬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498億55百萬 원)	
1.17		
1.20	△延拂輸出支援資金擴大 (3,580 億원→5,050 億원)	
2. 6	△業務方法書 改正(第28次) △스웨덴 Skandinaviska Ens- kilda Banken 으로부터 20 百萬달러 轉貸借款導入契約 締 結(서울)	
2. 9	△職制分課規程 改正(第11次) -輸出保險部를 輸出保險1부와 輸出保險2部로 분리 개편 -輸出保險2부에 制度調査課新 設	△商工部：韓國重工業建設計劃發 表
2.12	△協調融資機關을 全 金融機關으 로 擴大	
3. 6		
3.21	△韓銀出資 300 億원 納入 (韓銀出資累計 1,000 億원)	△國務會議：「獨占規制 및 公正 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議決 △財務部：「產業合理化 및 投資 獎勵策」發表
3.27		
4. 3		

年 月 日	當 行	國 內 經 濟
1981. 4. 4	△李泰浩銀行長 第 22 次 IDB 年次總會 參席次 出國 (스페인)	
4.19	△全石斗監事 캐나다, 美國經濟資源協力使節團一員으로 出國	
4.24	△政府出資 110 億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608 億 55 百萬원)	
5.23	△韓銀出資 200 億원 納入 (韓銀出資累計 1,200 億원)	
5.28	△李泰浩銀行長 Bank loan 導入 및 延拂어음 賣却契約締結과 第 38 次 Berne Union 年次總會 參席次 出國 (프랑스, 스웨덴)	
5.30	△政府出資 40 億원 納入 (政府出資累計 648 億 55 百萬원)	
6. 1	△U.B.A.F 等 40 個國際金融機關과 Bank loan 2 億 달러 導入契約 및 Wells Fargo Bank 等 24 個國際金融機關과 延拂어음 (P note) 2 億 달러 賣却契約 締結 (파리)	
6.9	△李泰浩銀行長 Berne Union 運営委員會 委員으로 被選	

2. 歷代 運營委員 및 任員

가. 運 營 委 員

所屬 및 職位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經濟企劃院企劃次官補	徐 錫 俊	1976. 7. 1	1978. 2.12
"	姜 慶 植	1978. 2.13	
外務部經濟次官補	崔 浩 中	1977.12.19	1978. 6. 6
"	申 東 元	1978. 6. 7	1980.12.19
"	李 昌 洙	1980.12.20	
財務部財政次官補	高 炳 佑	1976. 7. 1	1977. 9.25
"	李 龍 萬	1977. 9.26	1978. 6.23
國際金融次官補	鄭 寅 用	1978. 6.24	1980. 9.19
"	朱 炳 國	1980. 9.20	
商工部商易次官補	朴 弼 秀	1976. 7. 1	1980. 9. 4
"	金 善 吉	1980. 9. 5	1980.10. 1
"	洪 性 佐	1980.10. 2	
韓國銀行理事	金 建	1976. 7. 1	1977. 3.15
"	秋 仁 錫	1977. 3.16	1978. 7.30
"	鄭 英 謨	1978. 7.31	1980. 8.25
"	高 光 直	1980. 8.26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洪 完 模	1976. 7. 1	1977. 4. 7
"	李 弼 善	1977. 4. 8	1979.10.23
"	鄭 憲 俊	1979.10.24	1980. 8.28
理 事	金 瓊 墩	1980. 8.29	
韓國貿易協會副會長	吳 範 植	1976. 7. 1	1978. 2.20
"	李 致 寧	1978. 2.21	1979. 3. 4
"	金 禹 根	1979. 3. 5	
動力資源部(參觀委員)			
企劃管理室長	李 鳳 瑞	1978. 7.26	1981. 2. 5
資源政策室長	許 南 薰	1981. 2. 6	

나. 任 員

銀行長

代 順	姓 名	就任年月日	退任年月日	備 考
初 代	宋 仁 相	1976. 7. 1	1979. 5.13	
2 代	梁 潤 世	1979. 5.14	1979.12.19	
3 代	李 泰 浩	1980. 1. 8		

專務理事

	李 泰 浩	1977. 5.12	1980. 1. 7	銀行長 就任
	金 建 煥	1980. 1. 8	1980. 7.30	
	河 國 煥	1980. 8. 1		

監 事

	朴 鼎 在	1976. 7. 1	1978. 5. 1	
	金 建 煥	1978. 5. 1	1980. 1. 7	
	金 鍾 燮	1980. 1. 8	1980. 7.19	
	全 石 斗	1980. 8.20		

理 事

	李 泰 浩	1976. 7. 1	1977. 5.11	專務理事로 昇格
	元 裕 敏	1976. 7. 1	1980. 7.19	
	全 石 斗	1977. 2. 3	1980. 8.20	監事로 昇格
	李 鴻 俊	1977. 5.12		
	崔 鍾 岳	1979. 5. 7		
	鄭 勲 沐	1980. 7. 5	1981. 6.20	
	成 旭 基	1980. 8.20		
	朴 炳 植	1980. 8.20		

3. 歷代 部署長

任員附屬室

職 名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任員附屬室長	李 鍾 桓 朴 春 義	1979.11. 8 1979.11.28	總務部長兼務

企劃調查部 (廢止)

企劃調查部長	全 石 斗	1976. 7. 1	1977. 1.27 企劃調查부가 業務部와 海外投資調查部로 改編
--------	-------	------------	------------------------------------

企劃部

業 務 部 長	李 鍾 桓	1977. 2.15	1978. 2.28 業務부가 業務部, 資金部, 法規室로 擴大改編
企 劃 部 長	陳 重 元 陳 重 元	1979. 3. 1 1979. 4.27	業務部를 企劃部로 改編

總務部

總 務 部 長	崔 鍾 岳 金 然 河 金 澤 李 鍾 桓	1976. 7. 1 1977. 5.12 1979. 3. 1 1979. 6. 5	1979.10.11 總務부가 總務部와 任員附屬室로 擴大 改編 1980. 3.15 總務부가 總務部와 安全管理室로 擴大改編.
總 務 部 長	金 東 均	1980.12. 1	

資金部

資 金 部 長	鮮于 潤	1979. 4.11	
---------	------	------------	--

海外投資調査部

職 名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海外投資調査部長	成 旭 基	1978. 4. 4	
	李 鍾 桓	1979. 3. 1	
	李 僊 九	1979. 6. 23	

業務部 (廢止)

業 務 部 長	李 鴻 俊	1976. 7. 1	1977. 1. 27 業務部が 審査部外 金融部로 改編.
---------	-------	------------	--------------------------------

審査部 (廢止)

審 査 部 長	李 鴻 俊	1977. 2. 15	1978. 8. 14 審査部가 審査1部外 審査2部로 改編.
	崔 鍾 岳	1977. 5. 12	

審査1部

審 査 1 部 長	崔 鍾 岳	1978. 9. 1	
	金 澤 澤	1979. 6. 5	

審査2部

審 査 2 部 長	金 澤 澤	1978. 9. 1	
	成 旭 基	1979. 3. 1	
	李 鍾 桓	1980. 12. 1	

金融部

金 融 部 長	金 澤 澤	1977. 2. 15	
	曹 永 采	1978. 9. 1	
	黃 在 元	1980. 12. 1	

法規室

職 名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法 規 室 長	鄭 炳 武	1978. 3. 1	
	金 然 河	1979. 3. 1	
	曹 永 采	1980.12. 1	

業務改善室

業務改善室長	高 永 鎬	1977. 9.17	
	鄭 炳 武	1979. 3. 1	
	鄭 東 豪	1979. 6. 5	
	金 然 河	1980.12. 1	

安全管理室

安全管理室長	韓 永 洙	1980. 4. 1	
--------	-------	------------	--

監査室

首 席 檢 査 役	曹 永 采	1976. 3. 1	
	黃 在 元	1978. 9. 1	
監 査 室 長	黃 在 元	1979.11. 7	
	鄭 炳 武	1980.12. 1	

輸出保險部 (廢止)

輸出保險部長	黃 相 信	1977. 1. 1	1981. 2. 9.輸出保險部가 輸出保險 1 部와 輸出保險 2 部로 改編.
--------	-------	------------	---

輸出保險 1 部

輸出保險 1 部長	黃 相 信	1981. 3. 1	
-----------	-------	------------	--

輸出保險 2 部

輸出保險 2 部長	申 甲 澈	1981. 3. 1	
-----------	-------	------------	--

4. 機構 및 組織

가. 本部機構 變動 推移

1976. 7. 1 (開 設)	1976.10. 4 (第1次 改正)	1977. 1. 1 (第2次 改正)
總 務 部 總務課, 庶務課 企劃調查部 業 務 部 監 查 室	總 務 部 總務課, 庶務課 企劃調查部 外換管理課 業 務 部 監 查 室	總 務 部 總務課, 庶務課 企劃調查部 外換管理課 業 務 部 輸出保險部 管理課, 業務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3 部 1 室 2 課	3 部 1 室 3 課	4 部 1 室 6 課

1977. 1.27 (第3次改正)	1977. 8.17 (第4次改正)	1978. 2.28 (第5次改正)
總務部 總務課, 庶務課 安全計劃課 業務部 企劃課, 法規課 資金課, 外換管理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查部 金融部 輸出保險部 管理課, 業務課 信用調查課 監查室	總務部 總務課, 文書課, 研修課 庶務課, 安全計劃課 業務部 企劃課, 法規課 資金課, 外換管理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查部 金融部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查室	總務部 總務課, 文書課, 研修課 庶務課, 安全計劃課 業務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資金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查部 金融部 法規室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補償課, 保險業務課, 信用調查課 監查室
6部 1室 10課	6部 2室 14課	7部 3室 14課

1978. 8. 14 (第6次改正)	1979. 4. 27 (第7次改正)	1979. 10. 11 (第8次改正)
總 務 部 總務課, 文書課, 研修課, 庶務課, 安全計劃課 業 務 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資 金 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總 務 部 總務課, 文書課, 研修課, 庶務課, 安全管理課 企 劃 部 企劃課, 外換管理課 資 金 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任 員 附 屬 室 企 劃 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總 務 部 總務課, 研修課, 庶務課, 安全管理課 資 金 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務改善室 輸出保險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8部 3室 14課	8部 3室 14課(名稱變更)	8部 4室 14課

1980. 3. 15 (第9次改正)	1980. 11. 18 (第10次改正)	1981. 2. 9 (第11次改正)
任 員 附 屬 室 企 劃 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總 務 部 總務課, 研修課, 庶務課 資 金 部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 務 改 善 室 安 全 管 理 室 輸 出 保 險 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任 員 附 屬 室 企 劃 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總 務 部 總務課, 研修課, 庶務課 資 金 部 資金總括課,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 務 改 善 室 安 全 管 理 室 輸 出 保 險 部 統轄課, 保險管理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信用調查課 監 查 室	任 員 附 屬 室 企 劃 部 企劃1課, 企劃2課 外換管理課 總 務 部 總務課, 研修課, 庶務課 資 金 部 資金總括課, 資金1課 資金2課 海外投資調查部 審 查 1 部 審 查 2 部 金 融 部 法 規 室 業 務 改 善 室 安 全 管 理 室 輸 出 保 險 1 部 統轄課, 保險業務課, 補償課 輸 出 保 險 2 部 保險管理課, 信用調查課, 制度調查課 監 查 室
8 部 5 室 13 課	8 部 5 室 14 課	9 部 5 室 15 課

나.出張所, 國外事務所

(1) 釜山出張所

△住所: 釜山市 中區 中央洞 4街 77 - 1

대한항공 부산지점 (KAL) 빌딩 6층

△沿革 1977. 1. 1 ○ 大韓再保險公社로부터 輸出保險業務引受와 함께 釜山事務所 引受

1977. 6. 22 ○ 釜山事務所를 釜山出張所로 명칭 변경.

1977. 11. 22 ○ 釜山市 中區 中央洞 4街 25 - 2 유창빌딩 10층 에서
釜山市 中區 中央洞 4街 77 - 1
대한항공 부산지점 (KAL) 빌딩으로 事務所 移轉

△出張所長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權 寧 喆	1977. 1. 1.	
李 成 浩	1978. 3. 1.	
鄭 炳 武	1979. 6. 5.	
蔡 弘 植	1980. 12. 1.	

(2) 國外事務所

② 뉴욕事務所

△住所: (Rm No. 2061 Hankuk Center Bldg)

460 Park Avenue New York, N.Y, 10022 U.S.A.

△沿革: 1977. 1. 15. 財務部 內認可

1978. 5. 25 財務部 本認可

1978. 6. 1 事務所 開所

△事務所長

姓 名	就任年月日	備 考
李 善 浩	1977. 10. 19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李 善 浩	1978. 6. 1	뉴욕事務所所長

㉔ 런던事務所

△ 住所：(Unit 13H Plantation House) 31-35 Fenchurch street London
EC 3M 3DX United Kingdom

△ 沿革：1977. 1.15. 財務部 内認可
1978. 5.25. 財務部 本認可
1978. 6. 1. 事務所 開所

△ 事務所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田 宗 培	1977. 8.20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田 宗 培	1978. 6. 1	事務所所長

㉕ 東京事務所

△ 住所：(Rm No. 552 Yurakucho Denki Bldg.) 7-1,
1-Chome, Yurakucho, Chiyoda-ku, Tokyo, Japan

△ 沿革：1978.11.16. 財務部 内認可
1979. 5.28. 財務部 本認可
1979. 6.19. 事務所 開所

△ 事務所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李 鶴 柱	1978.12.22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李 鶴 柱	1979. 6.19	事務所所長
鄭 東 豪	1980.12. 1	事務所所長

㉖ 아비잔事務所

△ 住所：04 B.P 674 Abidjan 04, Ivory Coast
(Côte d'Ivoire)

△ 沿革：1977.11. 4. 財務部 内認可
1979. 5.28. 財務部 本認可
1979. 6.20. 事務所 開所

△ 事務所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金 潤 培	1978. 3. 30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趙 昌 鎬	1979. 4. 27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趙 昌 鎬	1979. 6. 20	事務所所長
章 榮 孝	1981. 3. 1	事務所所長

㉔ 로스앤젤레스事務所

△ 住所 : 707 Wilshire Boulevard, Suite 4640
Los Angeles, CA 90017 U. S. A.

△ 沿革 : 1977.11. 4. 財務部 内認可
1978. 7.26. 財務部 本認可
1978. 8.28. 事務所 開所

△ 事務所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申 甲 澈	1977.11.11.	事務所開設準備委員長
申 甲 澈	1978. 8.28.	事務所所長
玉 正 煥	1980.12. 1.	事務所所長

㉕ 홍콩事務所

△ 住所 : Korea Center Building, 119-120 Connaught
Road C, Hong Kong

△ 沿革 : 1977.11. 4. 財務部 内認可
1978. 7.26. 財務部 本認可
1978. 9. 1. 事務所 開所

△ 事務所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金 松 雄	1978. 3. 1.	事務所 開設準備委員長
金 松 雄	1978. 9. 1.	事務所 所長

㉔ 산티아고事務所 (1981 年中 開設豫定)

△ 沿革 : 1980. 11. 28. 財務部 内認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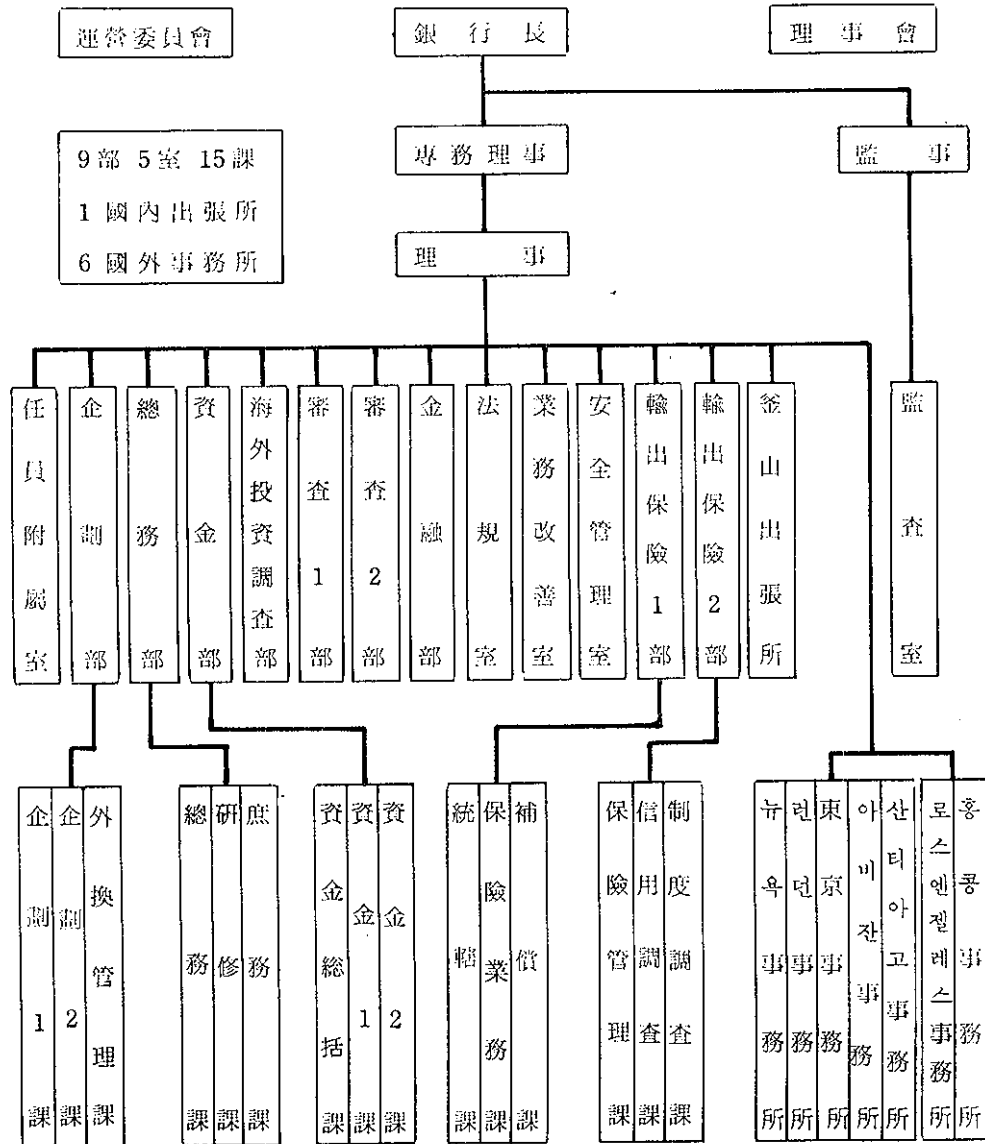
1981. 6. 16. 財務部 本認可

△ 開設準備委員長

姓 名	就 任 年 月 日	備 考
姜 承 求	1981. 3. 1	

다. 組 織 圖

(1981. 6. 1. 현재)



※ 산티아고事務所는 81 년중 개설예정

5. 主 要 統 計

가. 資本金 納入 推移

(단 위 : 백 만 원)

出資金納入日	出 資 機 關	出 資 機 關	納入資本金
1976. 6. 17	韓 國 銀 行	20,000	20,000
1976. 6. 17	韓國外換銀行	30,000	50,000
1976. 6. 21	政 府	5,355	55,355
1976. 12. 30	政 府	10,000	65,355
1977. 7. 21	韓 國 銀 行	20,000	85,355
1977. 10. 5	政 府	10,000	95,355
1977. 12. 31	政 府	10,000	105,355
1978. 10. 2	韓國外換銀行	10,000	115,355
1978. 10. 30	政 府	5,000	120,355
1978. 11. 2	韓國外換銀行	10,000	130,355
1978. 12. 1	韓國外換銀行	10,000	140,355
1979. 3. 21	政 府	650	141,005
1979. 8. 29	政 府	1,350	142,355
1979. 12. 18	政 府	2,500	144,855
1980. 8. 25	政 府	4,250	149,105
1980. 10. 16	韓 國 銀 行	30,000	179,105
1981. 1. 16	政 府	750	179,855
1981. 3. 21	韓 國 銀 行	30,000	209,855
1981. 4. 24	政 府	11,000	220,855
1981. 5. 23	韓 國 銀 行	20,000	240,855
1981. 5. 30	政 府	4,000	244,855

나. 資金調達 및 供給実績

(1) 資金調達 및 供給実績總覽

(단위: 백만원)

區分	資本金	1976	1977	1978	1979	1980
供給	輸出資金	47,312	73,479	105,091	147,162	297,982
	(供給者信用)	(47,312)	(73,479)	(105,091)	(126,596)	(272,001)
	(購買者信用)				(19,602)	(24,279)
	(轉貸借款)				(964)	(1,702)
	技術提供資金		6,990	6,012	404	171
	海外投資資金	6,066	15,561	16,066	10,985	2,058
	合計	53,378	96,030	127,169	158,551	300,211
調達	資本金	38,850	40,000	35,000	4,500	34,250
	(政府)	(10,000)	(20,000)	(5,000)	(4,500)	(4,250)
	(韓銀, 外銀)	(28,850)	(20,000)	(30,000)		(30,000)
	國民投資基金借入	10,000	30,000	29,684	30,000	30,000
	銀行借入資金		24,873	67,189	48,400	74,296
	(外國銀行)		(19,873)	(52,189)	(48,400)	(74,296)
	(外換銀行)		(5,000)	(15,000)		
	韓銀保有外換		16,732	85	964	1,700
	貸出金回收	27,132	20,290	35,205	89,633	63,911
	前期移越金	310	22,658	56,523	69,996	95,272
	其他					8,736
	合計	76,292	154,553	223,686	243,493	308,165

(2) 資金別 品目別 貸出承認

(단위 : 백만원)

資金別	品目別	年度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輸 出 資 金	輪 船	트		374					3,345	84,182	5,348	48,148	141,397 (12.7)
	鐵 道 車 輛	船		1,047	2,145	476	33,126	78,097	100,865	22,946	359,648	197,106	795,456 (71.3)
	機 械 類 其 他	輪		30		486	809	1,133	1,351	12,664	1,747	2,570	12,394 (1.1)
	小 計			1,451	2,145	962	39,432	81,810	105,561	119,792	371,139	251,087	24,132 (2.2)
	小 計								7,266 (0.6)				973,379 (87.3)
技術提供資金	建設工事	事							7,266				7,266 (0.6)
	其他用役	役							2,355	3,786		230	6,371 (0.6)
	小 計								9,621	3,786		230	13,637 (1.2)
	資源開發	發	651		489		32		2,410		25,240		28,822 (2.6)
	海外投資資金	與 他						5,994	16,572	15,093	2,293		39,952 (3.6)
購買者信用	設備貸與	其 他						2,736		2,800	654	1,504	7,694 (0.7)
	小 計		651		489		32	8,730	18,982	17,893	28,187	1,504	76,468 (6.9)
	轉貸借款	信 用									39,204	1,541	40,745 (3.6)
	合 計		651	1,451	2,634	962	39,464	90,540	134,164	141,471	444,338	259,641	1,115,316 (100)
	小 計										5,808	5,279	11,087 (1.0)

註 : () 안을 構成比(%) 임.

(3) 資金別 品目別 貸出執行

(단위: 백만원)

資金別	年度別 品目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輸 出 資 金	트 렌 트		335		39			130	35,983	50,216	37,996	124,699 (16.2)
	船 舶		793	1,563	1,312	21,500	42,913	71,730	58,397	70,866	228,201	497,275 (64.8)
	鐵 道 車 輛					4,943	2,802	332		1,085	2,982	12,144 (1.6)
	機 械 類 其 他		30		217	614	1,597	1,287	10,711	4,429	2,822	21,707 (2.8)
	小 計		1,158	1,563	1,568	27,057	47,312	73,479	105,091	126,596	272,001	655,825 (85.4)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4,640	2,224	404		7,268 (1.0)
	其 他 用 役							2,350	3,788		171	6,309 (0.8)
	小 計							6,990	6,012	404	171	13,577 (1.8)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388			752	32		2,395		678	779	5,024 (0.6)
	設 備 貸 與						3,617	12,879	13,311	9,725	55	39,587 (5.2)
	其 他						2,449	287	2,755	582	1,224	7,297 (1.0)
	小 計	388			752	32	6,066	15,561	16,066	10,985	2,058	51,908 (6.8)
	購 買 者 信 用									19,602	24,279	43,881 (5.7)
轉 貸 借 款										964	1,702	2,666 (0.3)
	合 計	388	1,158	1,563	2,320	27,089	53,378	96,030	127,169	158,551	300,211	767,857 (100.0)

註: () 안은 構成比 (%) 임

(4) 資金別 品目別 貸出残額

(단위 : 백만원)

年度別 品目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輸 出 資 金	船 隻		335	335	374	354	306	366	32,886	56,023	94,933 (18.6)
	船 隻		793	2,356	3,068	23,478	40,420	82,058	63,965	95,336	316,502 (61.9)
	鐵 道 車 輛					4,943	7,254	6,870	6,154	6,522	6,844 (1.3)
	機 械 類 其 他		30			345	1,603	2,531	12,121	8,975	12,013 (2.3)
	小 計		1,158	2,691	3,442	29,120	49,583	91,825	115,126	116,856	430,292 (84.1)
技 術 提 供 資 金								6,610	10,526	9,250	10,438 (2.1)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388	291	218	896	804	521	2,841	2,753	3,279	4,277 (0.8)
	設 備 貸 與						3,617	16,496	29,807	19,527	
	其 他						2,449	2,736	5,481	6,044	9,042 (1.8)
	小 計	388	291	218	896	804	6,587	22,073	38,041	28,850	13,319 (2.6)
購 買 者 信 用										19,602	54,333 (10.6)
轉 貸 借 款										964	3,074 (0.6)
合 計		388	1,449	2,909	4,338	29,924	56,170	120,508	163,693	225,522	511,456 (100.0)

註 : 1 / 各年度末現在基準
2 / () 안은 構成比 (%) 임

(5) 支援事業의 對象 契約額

資金別	年度別 品目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果 計
輸 出 資 金	輸 送		(1) 1,051					(2) 10,190	(2) 297,145	(4) 14,644	(6) 111,497	(13) 434,527
	船 舶		(1) 3,300	(2) 72,180	(1) 1,500	(3) 753,955	(5) 527,013	(7) 295,280	(2) 67,070	(25) 916,273	(13) 500,413	(39) 2,880,104
	鐵 道 車 輛					(1) 16,558	(3) 5,770	(1) 295,280	(1) 4,034	(1) 5,411	(1) 31,773	(6) 80,863
	機 械 類 其 他		(1) 101		(3) 1,831	(3) 2,135	(6) 2,980	(4) 4,935	(6) 46,363	(4) 14,040	(5) 7,978	(32) 80,863
	小 計		(3) 4,452	(2) 72,180	(4) 3,331	(7) 772,648	(14) 278,883	(13) 310,405	(10) 410,578	(34) 948,991	(25) 625,299	(112) 3,426,767
技 術 提 供 資 金	建 設 工 事							(1) 20,000				(4) 20,000
	其 他 用 役							(2) 11,140	(3) 12,203		(1) 990	(6) 24,333
	小 計							(3) 31,140	(3) 12,203		(1) 990	(7) 44,333
海 外 投 資 資 金	資 源 開 發	(1) 2,100		(1) 2,450		(2) 150	(1) 105,900	(3) 6,400		(2) 75,999		(9) 87,099
	設 備 貸 與						(1) 105,900			(1) 17,945		(2) 123,845
	其 他						(1) 12,500		(3) 7,234	(5) 1,690	(2) 2,879	(11) 24,303
	小 計	(1) 2,100		(1) 2,450		(2) 150	(2) 18,400	(3) 6,400	(3) 7,234	(8) 95,634	(2) 2,879	(22) 235,247
外 國 人 에 대 한 貸 出										(1) 144,000	(2) 2,820	(3) 146,820
轉 貸 借 款										(3) 12,000	(2) 3,000	(5) 20,000
合 計		(1) 2,100	(3) 4,452	(3) 74,630	(4) 3,331	(9) 772,798	(16) 397,283	(19) 347,945	(16) 430,015	(46) 1,200,625	(32) 639,988	(149) 3,873,167

註 : () 안은 件數임

(6) 地域別 貸出承認

(단위: 백만원)

지역별 年度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유 럽			1,194	103	33,126	68,756	46,165	18,567	226,795	4,749	399,455 (35.8)
北 美						15,335			69,655	111,832	196,822 (17.6)
中 南 美		1,047	951	476			8,481	4,049	43,352	37,403	95,759 (8.6)
東 南 亞	651	30	489	383	809	3,342	18,917	117	93,360	46,814	164,912 (14.8)
中 東		374					2,128	63,652	3,128	53,178	122,460 (11.0)
아 프 리 카					32	3,107	57,999	55,086	3,496	1,980	121,700 (10.9)
大 洋 洲					5,497		474		4,552	3,685	14,208 (1.3)
合 計	651	1,451	2,634	962	39,464	90,540	134,164	141,471	444,338	259,641	1,115,316 (100.0)

註: () 안은 構成比(%)임.

(7) 地域別 貸出執行

(단위: 백만원)

年度別 地域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累 計
유 럽			1,194	103	21,500	40,280	62,030	34,640	34,737	119,136	313,620 (40.8)
北 美						6,250	9,017	68	14,236	39,483	69,054 (9.0)
中 南 美		793	369	1,312			6,344	4,909	2,047	23,566	39,340 (5.1)
東 南 亞	388	30		866	614	3,474	9,122	6,551	18,188	68,281	107,514 (14.0)
中 東		335		39			2,065	25,543	35,456	31,845	95,283 (12.4)
아 프 리 카					32	2,820	6,978	55,458	51,099	12,308	128,695 (16.8)
大 洋 洲					4,943	554	474		2,788	5,592	14,351 (1.9)
合 計	388	1,158	1,563	2,320	27,089	53,378	96,030	127,169	158,551	302,211	767,857 (100.0)

註: () 안은 構成比(%)임.

(8) 地域別 貸出残額

(단위 : 백만원)

地域別 年度別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유 럽			1,194	594	21,500	36,255	78,098	57,294	61,011	165,038 (32.3)
北 美						6,250	7,600		13,886	50,146 (9.8)
中 南 美		793	1,162	2,474	1,978	1,532	6,494	10,212	10,363	36,092 (7.1)
東 南 亞	388	321	218	896	1,117	3,478	10,935	16,782	32,715	101,614 (19.9)
中 東		335	335	374	354	306	2,301	23,116	24,635	50,273 (9.8)
아 프 리 카					32	2,852	9,797	51,694	76,664	96,918 (18.9)
大 洋 洲					4,943	5,497	5,283	4,595	6,248	11,375 (2.2)
合 計	388	1,449	2,909	4,338	29,924	56,170	120,508	163,693	225,522	511,456 (100.0)

註 : () 안은 構成比 (%) 임

(9) 地域別・品目別 貸金残額 (1980.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資 金	地 域 別	東 南 亞	中 東	아프리카	유 럽	北 美	中 南 美	大 洋 州	合 計
輸 出 資 金	플	11,218 (11.0)	44,007 (87.5)	39,708 (41.0)					94,933 (18.6)
	트								
	船	85,628 (84.3)	4,136 (8.2)	30,729 (31.7)	110,170 (66.0)	46,536 (92.8)	33,400 (92.5)	5,903 (51.9)	316,502 (61.9)
	鐵 道 車 輛	1,546 (1.5)		257 (0.3)				5,041 (44.3)	6,844 (1.3)
	機 械 類 ・ 其 他	486 (0.5)	813 (1.6)	8,588 (8.8)		2,098 (4.2)	28 (0.1)		12,013 (2.3)
	小 計	98,878 (97.3)	48,956 (97.4)	79,282 (81.8)	110,170 (66.7)	48,634 (97.0)	33,428 (92.6)	10,944 (92.6)	430,292 (84.1)
技 術 提 供 資 金			171 (0.3)	8,851 (9.1)	1,416 (0.9)				10,438 (2.1)
海 外 投 資 資 金		976 (1.0)	1,146 (2.3)	8,878 (9.1)		1,512 (3.0)	469 (1.3)	431 (3.8)	13,319 (2.6)
外 國 人 에 대 한 貸 出					53,452 (32.4)		881 (2.5)		54,333 (10.6)
転 貸 借 款		1,760 (1.7)					1,314 (3.6)		3,074 (0.6)
合 計		101,614 (100.0)	50,273 (100.0)	96,918 (100.0)	165,038 (100.0)	50,146 (100.0)	36,092 (100.0)	11,375 (100.0)	511,456 (100.0)

註 : () 안은 구성비(%)임.

다. 財 務 諸 表

(1) 年度別 要約 貸借對照表

(단위: 백만원)

年度別 科 目	1976	1977	1978	1979	1980
I. 資 產					
現金 및 預置金	903	25,476	23,494	18,132	5,954
有 價 證 券	21,945	31,047	46,502	74,600	32,000
貸 出 金	56,171	120,641	164,610	225,523	511,456
(國 貨)	(53,229)	(86,732)	(76,613)	(98,976)	(166,211)
(外 貨)	(2,942)	(33,909)	(87,997)	(126,547)	(345,245)
支給承諾代充	-	22,232	29,302	26,699	39,677
固 定 資 產	94	1,994	3,710	5,358	6,608
移 延 資 產	179	90	-	-	-
其 他 資 產	1,452	2,172	539	838	678
資 產 總 計	80,744	203,652	268,157	351,150	596,373
II. 負債 及 資 本					
外 國 換	-	-	-	-	439
借 入 金	13,000	60,357	74,116	145,877	312,790
(國內金融機關)	-	(5,000)	(20,000)	(20,000)	(56,599)
(國民投資基金)	(13,000)	(38,625)	(37,299)	(59,695)	(90,563)
(外貨受託金)	-	(16,732)	(16,817)	(17,782)	(26,003)
(國外金融機關)	-	-	-	(48,400)	(139,625)
別 段 預 金	-	7,870	6,397	5,677	6,383
支 給 承 諾	-	22,232	29,302	26,699	39,677
其 他 負 債	886	1,583	4,486	6,561	10,877
充 當 金	22	2,512	3,446	4,926	10,852
資 本 金	65,355	105,355	140,355	144,855	179,105
剩 餘 金	101	1,481	3,743	10,056	16,555
(法定積立金)	-	(276)	(761)	(2,115)	(3,561)
(任意積立金)	(101)	(1,205)	(2,982)	(7,941)	(12,994)
當 期 純 利 益	1,380	2,262	6,312	6,499	19,695
負債 及 資 本 總 計	80,744	203,652	267,157	351,150	596,373

註: 別段預金計定은 '81. 1. 1. 부터 延拂 어음 賣却代金計定으로 計理

(2) 貸借對照表 (1980年12月31日)

科 目		金 額	科 目	金 額
※ 資 産			※ 負 債	
I. 現 金	※ 金 貨	39,731	I. 外 債	438,757,611
1. 通 貨		39,731	1. 未 給 外 換	438,757,611
II. 預 置 金		5,953,792,644	II. 借 入 金	312,790,260,177
1. 當 座 預 置 金		127,774,757	1. 國內金融機關借入金	56,599,000,000
2. 外 貨 當 座 預 置 金		198,129,161	2. 國外金融機關借入金	139,625,368,105
3. 他 店 預 置 金		768,238,726	3. 國民投資基金借入金	90,563,192,472
4. 通 知 預 置 金		2,550,000,000	4. 外 貨 受 託 金	26,002,699,600
5. 定 期 預 置 金		2,309,650,000	III. 別 段 預 金	6,382,390,332
III. 有 價 證 券		32,000,010,000	IV. 支 給 承 諾	39,677,622,256
1. 國 債		32,000,010,000	1. 其他外貨支給承諾	39,574,997,552
IV. 貨 貸 出 金		166,210,504,587	2. 支 給 引 受	102,624,704
1. 輸 出 資 金 貸 出		124,134,187,587	V. 受 入 保 證 金	911,611,889
2. 輸 出 資 金 證 書 貸 出		6,291,600,000	1. 受入保證金(支保關係)	6,346,696
3. 技術提供資金貸出		171,307,000	2. " (他 他)	905,265,193
4. 海外投資資金證書貸出		209,760,000	VI. 其 他 負 債	9,964,871,578
5. 國民投資基金貸出		35,403,650,000	1. 受 入 諸 稅	12,095,297
V. 外 貨 貸 出 金		345,245,245,713	2. 假 受 金	2,810,739
1. 外貨表示輸出資金貸出		65,701,812,319	3. 未 支 給 利 子 其 他	4,577,784,157
2. 外貨表示輸出資金証書貸出		143,599,501,185	4. 未經過貸出金利子其他	3,519,514,462

(단위: 원)

科	目	金 額	科 目	金 額
3. 外表海外投資資金어음貸出		6,376,634,817	5. 未 支 給 防 衛 稅	1,852,666,923
4. 外表海外投資資金證書貸出		6,733,447,891	Ⅵ. 充 當 金	10,851,938,013
5. 外表技術提供資金證書貸出		10,266,943,947	1. 貸 損 充 當 金	10,229,115,006
6. 外表國民投資基金證書貸出		55,159,542,472	2. 減 價 償 却 充 當 金	215,904,672
7. 外國政府등에對한어음貸出		57,407,363,082	3. 退 職 給 與 充 當 金	406,918,335
Ⅵ. 支 給 承 諾 代 充		39,677,622,256	※ 負 債 總 計	381,017,451,856
1. 其他外貨支給承諾代充		39,574,997,552	Ⅶ. 資 本	179,105,000,000
2. 支 給 引 受 代 充		102,624,704	Ⅷ. 利 益 剩 餘 金	36,250,596,517
Ⅶ. 其 他 資 產		678,033,639	가. (法 定 積 立 金)	3,561,401,075
1. 假 支 出 保 證 金		47,816,671	나. (任 意 積 立 金)	12,993,677,420
2. 諸 支 入 金 利 子 其 他		3,274,568	다. (當 期 純 利 益)	19,695,518,022
3. 未 經 過 借 入 金 利 子 其 他		626,942,400		
Ⅷ. 業 務 用 固 定 資 產		6,607,799,803	資 本 總 計	215,355,596,517
1. 車 輛 運 搬 具		150,721,602	負 債 外 資 本 總 計	596,373,048,373
2. 工 具 器 具 備 品		265,930,708		
3. 無 形 固 定 資 產		17,373,500		
4. 業 務 用 不 動 產 賃 借 保 證 金		6,173,773,993		
資 產 總 計		596,373,048,373		

註：別段預金計定은 '81.1.1. 부터 延拂어음貸却代金 計定
으로 計理

(脚 註)

支 給 保 證	405,076,842,876
(信 用 狀 開 設 關 係)	404,900,152,078
(其 他)	176,690,798

(3) 年度別 要約 損益計算書

(단위: 백만원)

年度別 科目	1976	1977	1978	1979	1980
I. 收益					
貸出金利子	2,848	6,746	8,752	14,995	26,307
預置金利子	-	84	3,437	1,666	1,863
有價證券利子	64	2,240	3,689	4,702	6,815
受人利子	-	242	2,891	4,499	4,759
受入手數料	10	160	288	134	206
保證料	-	2	14	21	25
外換賣買益	1	-	1,052	187	22,422
貸損充當金換入	-	-	2,413	3,292	4,510
其他收益	-	-	2	1	6
收益總計	2,923	9,204	22,538	29,457	66,913
II. 費用					
借入金利子	1,085	2,050	4,072	6,944	20,691
支給利子	-	508	5,713	7,683	10,486
支給手數料	4	679	1,025	508	237
管理業務費	205	886	1,524	2,282	3,068
(人件費)	(105)	(461)	(828)	(1,225)	(1,660)
(經費)	(100)	(425)	(696)	(1,057)	(1,408)
外換賣買損	-	106	-	-	-
諸稅公課金	46	8	10	16	21
減價償却	13	38	43	59	67
貸損償却	-	2,413	3,292	4,510	10,229
創業費償却	90	90	90	-	-
退職給與金	-	-	-	224	196
其他費用	-	-	-	-	4
防衛稅	100	164	457	732	2,219
當期純利益	1,380	2,262	6,312	6,499	19,695
費用總計	2,923	9,204	22,538	29,457	66,913

註: 外換賣買損益金額은 相計한 殘額임.

(4) 1980 年 損益計算書 (1980. 1. 1~1980. 12. 31)

(단위: 원)

科 目	金	額
I. 營 業 收 益		62,397,557,884
1. 貸 出 金 利 子	9,094,548,694	
2. 外 貨 貸 出 利 子	17,212,396,341	
3. 預 置 金 利 子	1,862,862,766	
4. 有 價 證 券 利 子	6,815,189,248	
5. 受 入 雜 利 子	4,758,882,410	
6. 受 入 手 數 料	206,311,842	
7. 保 證 料	25,086,855	
8. 外 換 賣 買 益	22,422,279,728	
II. 營 業 費 用		44,995,114,882
1. 借 入 金 利 子	20,690,719,253	
2. 支 給 雜 利 子	10,486,289,460	
3. 支 給 手 數 料	237,519,522	
4. 管 理 業 務 費	3,068,232,748	
5. 貸 損 償 却	10,229,115,006	
6. 固 定 資 產 減 價 償 却	66,836,380	
7. 退 職 給 與 金	195,693,680	
8. 諸 稅 公 課 金	20,708,833	
III. 營 業 利 益		17,402,443,002
IV. 營 業 外 收 益		1,412,145
V. 營 業 外 費 用		0
VI. 經 常 利 益		17,403,855,147
VII. 特 別 利 益		4,513,893,437
VIII. 特 別 損 失		3,549,116
IX. 防 衛 稅 控 除 前 純 利 益		21,914,199,468
X. 防 衛 稅		2,218,681,446
XI. 當 期 純 利 益		19,695,518,022

라. 輸出保險業務實績

(1) 輸出保險基金現況

(단 위 : 백 만 원)

年 度 別	基 金 內 譯		合 計
	政 府 出 捐	利 益 金 轉 入	
1 9 6 9	300	-	300
1 9 7 0	200	33	533
1 9 7 1	-	71	604
1 9 7 2	-	130	734
1 9 7 3	-	254	988
1 9 7 4	-	6	994
1 9 7 5	-	194	1,188
1 9 7 6	1,000	101	2,289
1 9 7 7	2,000	△ 361	3,928
1 9 7 8	3,000	212	7,140
1 9 7 9	2,500	-	9,640
1 9 8 0	3,000	-	12,640

(2) 年度別 輸出保險引受 및 補償實績

(단위: 천원)

實 績 年度別	付 保 額			支 給 保 險 金		備 考
	件 數	保險金額	保險料	件 數	金 額	
1969	120	1,225,411	4,555			
1970	252	2,573,914	11,147			
1971	547	4,429,382	50,764			
1972	676	11,950,768	165,533			
1973	357	3,642,231	82,902	7	12,509	損害率 15.1 %
1974	403	5,963,988	69,493	2	24,134	〃 34.7 %
1975	1,392	16,297,426	147,927	18	207,429	〃 140.3 %
1976	2,638	47,104,179	390,605	13	157,574	〃 40.3 %
1977	2,710	50,183,689	460,963	25	485,778	〃 105.4 %
1978	1,615	66,037,335	628,718	40	469,363	〃 74.7 %
1979	1,202	259,140,089	744,950	30	404,921	〃 54.4 %
1980	1,231	491,382,197	1,923,920	23	312,108	〃 16.2 %
合 計	13,143	959,930,609	4,681,477	158	2,073,816	〃 21.6 %

6. 法 令

가. 韓國輸出入銀行法

制 定 : 法律 第 2122 號 1969. 7. 28 公 布

改 正 : 法律 第 2736 號 1974. 12. 26 公 布

改 正 : 法律 第 3022 號 1977. 12. 19 公 布

第 1 條 (目的)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以下 “輸出入銀行” 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과 對外經濟協力を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性格等) ① 輸出入銀行은 法人으로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이 法 및 이 法에 依한 命令과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運營한다.

③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의 規定은 輸出入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3 條 (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을 서울 特別市에 둔다.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必要한 곳에 支店 出張所 또는 代理店을 둘 수 있다.

第 4 條 (資本金)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5,000億원으로 하고,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 3 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 定한다.

條 5 第 (定款)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

地

4. 資本金에 關한 事項

5. 任員과 職員에 關한 事項

6. 運營委員會에 關한 事項

6의 2. 理事會 運營에 關한 事項

7. 業務와 그 執行에 關한 事項

8. 會計에 關한 事項

9. 公告의 方法

10. 債權發行에 關한 事項

11.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條 (登記)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 後가 아니면 第 3 者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 7 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 8 條 (任員) 輸出入銀行에 任員으로서 銀行長 1 人, 專務理事 1 人, 理事 5 人 以內와 監事 1 人을 둔다.

第 9 條 (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輸出入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

行한다.

③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에 依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監事는 輸出入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9條의2(理事會)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③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10條(運營委員會) ① 輸出入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內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職務를 遂行하기爲하여 必要한 規定을 定할 수 있다.

第10條의2(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1의2. 外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5. 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

名하는 者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 團體의 代表者中에서 指名하는 者1人

②第1項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10條의3(議長) ① 委員會의 議長은 輸出入銀行長이 된다.

②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의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0條의4(會議) ① 委員會의 會議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議長이 召集한다.

②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로부터 要求가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10條의5(會議參與의 制限)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境遇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第10條의6(委員會의 權限에 關한 特例)

①輸出入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輸出入銀行長은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1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11條(任員의 任免) ①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監事は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12條 (任員의 任期) ①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

②任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으로 한다.

第13條 (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條14條 (任員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①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輸出入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輸出入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輸出入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が 이를 代表한다.

條15條 (代理人의 選任) 銀行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6條 (職員의 任免) 輸出入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17條 (任員의 責任) 輸出入銀行의 任員은 刑法 其他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8條 (業務)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依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取扱할 수 없는 다음 名號의 業務를 行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 (以下 “製品” 이라 한다) 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 (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 (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 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 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에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 (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한 輸出用 原料, 材料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物資 (以下 “重要物資” 라 한다) 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 (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 를 新設 또는 擴充 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6.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 (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 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 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한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 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 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케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其他 權利의 取得에 必要한 資金, 其他 海外 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爲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爲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3.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項 및 第2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第19條 (資金의 借入)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한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 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20條 (輸出入金融債券)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入 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對하여 政府가 保證할 수 있으며 外國에서 發行하는 境遇에는 韓國外換銀行도 이를 保證할 수 있다.

第21條 (業務計劃의 承認申請) ① 輸出入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當該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18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9號 및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 第19條 및 前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 業務計劃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22條 (業務計劃의 承認) 財務部長官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3條 (借入金等の 限度額) 輸出入銀行이 第19條와 第20條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債券을 發行한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の 合計額의 10倍로 한다.

第24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輸出入銀行은 第18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第25條 (業務의 制限)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는 境遇에 限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또는 履行의 期間이 6月以上 10年 以下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限하여 그 期間을 20年까지 할 수 있다.

③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 以內로 한다.

④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 (國民投資基金으로 부터 貸下받은 金

額은 除外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26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行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数料, 借入金 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第27條 (財産所有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營業에 必要하여 取得하거나 債務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引受하거나 其他 業務遂行에 必要한 것 以外에는 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하지 못한다.

第28條 (業務의 代行) 輸出入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다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29條 (業務方法書) 輸出入銀行은 第18條 第1項 第1號 乃至 第9號 및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貸付,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과 元利金의 回收方法, 業務의 代行要領, 其他 業務方法을 記載한 業務方法書를 作成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0條 (他法令과의 關係) 輸出入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貿易去來法の 適用에 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본다.

第31條 (事業年度) 輸出入銀行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依한다.

第32條 (豫算)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3條 (追加更正豫算) 輸出入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의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4條 (豫備費) ①輸出入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前項의 豫備費를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35條 (決算) 輸出入銀行은 每事業年度 經過後 2月 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附屬書類를 添附하여 財務附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6條 (利益金의 處理)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後에 決算純利益金을 다음 各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の 20을 積立한다.

2.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外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적으로 利益金을 配當한다.

3. 第1號의 積立金 및 第2號의 配當金을 除한 殘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37條 (損失金의 補填) 輸出入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서 補填하고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38條 (餘裕金의 運營) 輸出入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餘裕金을 運營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第39條 (監督)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第40條 (任員의 解任事由) ① 大統領은 銀行長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이를 解任할 수 있다.

1.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4. 心身の 障碍로 因하여 職務遂行이 甚히 困難하게 된 때

② 財務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專務理事, 理事 또는 監事가 前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第41條 (報告와 檢査) ① 財務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에 對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出入銀行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 書類, 其他 必要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財務部長官은 前項의 檢査를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에게 委屬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은 前項의 委屬에 依한 檢査의 結果를 財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42條 (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第43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委員等) ① 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委屬하여 輸出入銀行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政府의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때에는 遲滯없이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이 前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를 銀行長에게 引繼 하여야 한다.

第3條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의 業

務代行) ①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 法에 依한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한다. 이 境遇에는 第23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代行的 輸出入銀行의 業務와 그 業務로 因하여 發生한 모든 權利, 義務는 輸出入銀行設立과 同時に 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③ 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서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に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民投資金으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臨時運營委員會) ① 韓國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하는 期間中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臨時運營委員會는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는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이 法中 輸出入銀行에 두는 委員會에 關한 規定은 臨時運營委員會에 關하여 準用한다. 이 境遇에 第10條의 2 第1項 第5號, 第10條의 3 第1項과 第10條의 第1項 및 第2項中 輸出入銀行長은 韓國外換銀行長으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나. 韓國輸出入銀行法 施行令

制 定: 大統領令第 4099號 1969. 10. 6. 公布

改 正: 大統領令第 7561號 1975. 2. 28. 公布

第1章 出 資

第1條(出資)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法”이라 한다)第4條의 規定에 依한 出資中 政府出資는 年次的으로 分割하여 現金으로 納入한다. 다만 必要에 따라 그 一部를 現物로 納入할 수 있다.

第2章 登 記

第2條(設立登記) ① 法 附則第2條의 規定에 依한 設立委員(以下“設立委員”이라 한다)은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날로 부터 2週日 以內에 本店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本 店
4. 資本金
5. 納入資本金의 總額
6. 出資方法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公告의 方法

第3條(新設登記) ① 韓國輸出入銀行(以下“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各各 該當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本店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以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
2. 當該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3週日 以內에 前條 第②項 各號의 事項

3. 新設 支店 또는 出張所 以外의 支店 또는 出張所에 있어서는 前號의 期間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

②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區域內에 새로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境遇에는 2週日 以內에 그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한 時를 登記하면 된다.

第4條(移轉登記) ① 輸出入銀行이 本店를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 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銀行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舊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以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 있어서는 4週日 以內에 第2條 第2項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③ 同一 登記所의 管轄區域 內에서 支店 또는 出張所를 移轉한 境遇에는 2週日 以內에 그 移轉의 登記를 하면 된다.

第5條(變更登記) 第2條 第2項 各號의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以內에, 求店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以內에 各各 變更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第6條(代理人選任登記) ① 輸出入銀行長이 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을 選任한 境遇에는 2週日 以內에 代理人을 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登記한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2. 代理人을 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
3. 代理人의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그 制限의 內容

第7條(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 ① 第23條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全額이 納入된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2週日 內에,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 內에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때에는 그 輸出入金融債券 賣出期間이 滿了한 날로 부터 登記期間을 計算한다.

② 前項의 登記에는 第20條 第2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內의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과 第20條 第2項 第3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③ 第5條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條(登記期間의 起算) 前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中 財務部長官의 認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할 事項이 있을 때에는 當該 認可書 또는 承認書가 到達한 날로 부터 登記期間을 起算한다.

第9條(登記所) ① 輸出入銀行의 登記는 本店,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그 支院 또는 登記所를 當該 登記의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 登記所에는 韓國輸出入銀行 登記簿를 備置한다.

第10條(登記의 申請人, 申請書添附書類)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는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하는 申請에 依하고 第3條 乃至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登記는 輸出入銀行長의 申請에 依하여야 하며, 그 申請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第2條의 設立의 登記에 있어서는 定款, 定款 認可書의 謄本, 財務部長官이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輸出入銀行長이 法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任命된

것을 證明하는 書面

2.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支店 또는 出張所의 設置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設置를 證明하는 書面

3.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支店 또는 出張所의 移轉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移轉을 證明하는 書面

4. 第5條의 規定에 依한 變更事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

5. 第6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人 選任의 登記에 있어서는 그 選任이 法第15條의 規定에 依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과 그 權限을 制限한 境遇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

6. 第7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融債券의 登記에 있어서는 輸出入金融債券 請約書, 其他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를 證明하는 書面과 各 輸出入金融債券에 對한 納入을 證明하는 書面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된 境遇에는 그 賣出期間 內의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總額을 證明하는 書面으로 한다.

第11條(登記에 關한 準用規定) 輸出入銀行의 登記에 關하여는 이 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非訟事件節次法 第192條 乃至 第2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에 同法 第200條 第2項 第1號, 第203條 및 第208條에서 支店이라 함은 支店 또는 出張所로 한다.

第12條(設立登記의 公告) 輸出入銀行은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3章 業 務

第13條(製品) 法第18條 第1項 第1號의 適用을 받는 製品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船舶 및 車輛을 包含한다.)
과 이를 爲한 原料, 予備品, 部分品 및 附屬品
2.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

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으로서 外貨稼得率이 높은 品目과 一般輸出去來秩序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는 品目, 다만,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의 議決을 거친 品目으로서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4條(重要物資)法 第18條 第1項 第4號의 適用을 받는 重要物資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鐵鑛, 古鐵
2. 銅鑛, 電氣銅, 銅屑
3. 亞鉛鑛, 亞鉛塊
4. 鉛鑛, 鉛塊
5. 아루미나, 알미늄塊
6. 原木, 木材屑
7. 生 고무
8. 其他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品目으로서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

第15條(海外投資) ①法 第18條 第1項 第6號의 適用을 받는 海外投資資金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法人에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하기 爲하여 必要한 資金
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外國人이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을 貸付하기 爲한 資金
3.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行하는 事業에 必要한 長期資金을 貸付하기 爲한 資金

②第1項의 海外投資 資金은 그 投資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이어야 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重要物資 또는 第15條의 2의 規定에 依한 主要資源의 確保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2. 外國과의 經濟協力 增進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3. 海外僑民의 經濟的 地位의 向上에 寄與한다고 認定되는 것

4. 其他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外貨獲得에 크게 寄與하는 것으로서 委員會의 議決을 거친 것

第15條의 2(主要資源)法 第18條 第2項의 適用을 받는 主要資源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石炭, 鐵鑛石, 銅鑛石, 原油 等 鑛產資源
2. 原木 等 林產資源
3. 糧穀, 原綿, 原糖, 生 고무 等 農業資源
4. 其他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 다만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6條(償還期間等의 特例)法 第25條 第2項 但書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것에 限한다.

第17條(決算)法 第35條의 規定에 依하여 報告하는 決算書(損益計算書, 貸借對照表 및 剩餘金處理計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1.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2. 財務諸表附屬書類
3. 其他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必要한 書類

第17條의 2(利益金の 配當) 財務部長官이 法 第36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한 配當을 承認함에 있어서 그 優先的인 配當率은 100分の 15를 超過하지 못한다.

第4章 輸出入金融債券

第18條(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承認)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每回 그 發行의 金額, 方法 및 條件과 償還의 方法을 定하여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9條(輸出入金融債券의 形式) 輸出入金融債券은 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應募者 또는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無記名

式을 記名式으로 記名式을 無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第20條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 ① 輸出入金融債券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 2通에 그 引受하고자 하는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記名捺印 하여야 한다.

② 輸出入金融債券請求書는 輸出入銀行長이 作成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銀行의 名稱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 總額
3. 輸出入金融債券의 券種別 額面 金額
4. 輸出入金融債券의 利率
5. 元金償還의 方法 및 時期
6. 利子支給의 方法 및 時期
7.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價額 또는 最低價額
8. 輸出入銀行의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
9. 輸出入金融債券의 未償還分이 있는 境遇에는 그 總額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最低價額을 定하여 發行하는 境遇에는 應募者는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應募價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21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總額引受) 前條의 規定은 契約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 總額을 引受하는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2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는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에 있어서 實地로 應募된 總額이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에 記載한 輸出入金融債券 發行總額에 未達할 때에도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한다는 表示를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應募總額으로써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總額으로 한다.

第23條 (輸出入金融債券 引受價額의 納入)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의 應募가 完了된 때에는 遲滯없이 名 輸出入金融債券의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

第24條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時期) 輸出入金融債券의 그 引受價額의 全額이 納入된 後가 아니면 이를 發行하지 못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25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記載事項) 輸出入金融債券에는 債券의 番號, 發行年月日과 第20條 第2項 第1號 乃至 第6號의 事項을 記載하고 輸出入銀行長이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26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賣出發行) ① 輸出入銀行은 輸出入金融債券을 그 賣出期間을 미리 定하여 賣出의 方法에 依하여 發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輸出入金融債券請約書는 이를 作成하지 아니한다.

③ 輸出入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發行하는 輸出入金融債券에는 第20條 第2項 第2號의 事項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④ 輸出入銀行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賣出期間과 第20條 第2項 第1號 乃至 第7號의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27條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備置)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에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을 備置하고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數와 番號
2. 輸出入金融債券의 發行年月日
3. 第20條 第2項 第2號 乃至 第6號의 事項

② 輸出入金融債券이 記名式인 境遇에는 前項 各號의 事項 以外에 다음 各號의 事項도 記載하여야 한다.

1.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의 姓名과 住所
2. 輸出入金融債券의 取得年月日

③ 輸出入金融債券의 權利者는 輸出入銀行의 營業時間內에 언제든지 輸出入金融債券原簿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第28條 (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 ① 記名

式 輸出入金融債券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는 質權者의 姓名과 住所를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輸出入銀行 其他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③輸出入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質權이 設定된 境遇에는 輸出入金融債券에 그 뜻을 表示하여야 한다.

第29條 (輸出入金融債券의 買入消却) 輸出入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輸出入金融債券을 買入하여 消却할 수 있다.

第30條 (利券欠缺의 境遇) ①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을 償還하는 境遇에 欠缺된 利券이 있을 때에는 이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償還額에서 控除한다.

②前項의 利券의 所持人은 언제든지 그 利券과 償還으로 控除한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第31條 (輸出入金融債券 應募者에 對한 通知書) ①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하기 前의 그 應募者 또는 權利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 請約書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輸出入金融債券原簿에 記載된 住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住所를 輸出入銀行에 通知한 境遇에는 그 住所로 하여야 한다.

③無記名式 輸出入金融債券의 所有者에 對한 通知 또는 催告는 公告의 方法에 依한다. 다만, 그 住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이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章 補 則

第32條 (設立委員) ①設立委員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者로 한다.

1. 財務部次官
2. 韓國銀行副總裁
3. 財務部財政次官補
4. 商工部商易次官補
5. 財務部理財局長
6. 財務部外換局長
7. 韓國外換銀行專務理事
8. 前各號 外에 財務部長官이 委囑하는 2人

②設立委員은 韓國輸出入銀行設立 委員會(以下 “設立委員會” 라 한다)를 構成하여 輸出入銀行設立事務의 處理에 關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③設立委員會에 委員長, 副委員長 各 1人을 두되 委員長은 財務部次官인 委員이 되고 副委員長은 韓國銀行副總裁인 委員이 된다.

④設立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⑤設立委員會의 會議는 設立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서 開議하고 出席委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設立委員會는 法 附則 第2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後 韓國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綜合經過報告書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⑦設立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이를 定한다.

第33條 (業務의 移管) ① 韓國外換銀行은 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業務를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에 移管하되 財務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에 限하여 移管의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②韓國外換銀行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移管되는 業務에 關聯된 資産과 負債를 輸出入銀行에 引繼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하는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韓國外換銀行 帳簿價額에 依한다. 다만 外換에 關聯된 資産과 負債의 價額은 財務部長

官의 承認을 얻어 決定한 評價額으로 한다.

④輸出入銀行은 前各項의 規定에 依한 引受引繼를 마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이 承繼한 權利中 權利者의 名義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것에 對하여는 遲滯없이 그 名義를 輸出入銀行으로 變更하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⑥前項의 規定에 依한 名義變更에 所要되는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한다.

第34條(業務開始日) 輸出入銀行의 業務開始日은 設立登記를 한 날로부터 30日을 넘기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날로 한다.

第35條(設立費用) ①輸出入銀行 設立에 關한 諸費用은 設立委員會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韓國外換銀行으로 부터 借入하여 使用한다.

②前項의 費用은 輸出入銀行이 이를 負擔

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代行業務의 區分處理) 韓國外換銀行이 法 附則 第3條 第①項의 規定에 依하여 輸出入銀行業務를 代行하는 境遇에는 그 業務 및 會計處理에 있어서 韓國外換銀行法에 依한 業務 및 會計와는 區分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③(業務代行으로 因한 利益金의 積立) 韓國外換銀行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으로써 發生하는 各 事業年度의 利益金을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輸出入銀行의 計算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다. 韓國輸出入銀行 定款

制 定 : 1976. 7. 1.

改 正 : 1977. 1. 1.

改 正 : 1977. 7. 1.

改 正 : 1977. 12. 29.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銀行은 輸出入과 海外投資 및 海外資源開發에 必要한 金融의 供與業務를 營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 ① 이 銀行은 韓國輸出入銀行法(以下 “法” 이라 한다)에 依하여 設立되며 “韓國輸出入銀行” 이라 稱한다.

② 이 銀行의 英文名稱은 “The Export - Import Bank of Korea” 로 表記한다.

第3條(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의 所在地)

① 이 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 이 銀行은 國內外에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을 다음 곳에 둔다.

1. 釜山直轄市 : 出張所 1 個所

③ 이 銀行은 國內外의 必要한 處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事務所 및 駐在員을 둘 수 있다.

第4條(資本金) ① 이 銀行의 資本金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은행법 제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資하는 것으로 한다.

② 第①項의 出資는 設立登記前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제1회 납입금을 불입하고 정부는 설립동기의完了후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대행기관 한국외환은행에 연불수출지원자금으로 既貸下한 財政資金을 出資로 轉換한다.

③ 이 銀行은 設立의 登記 또는 資本金의 增額에 따른 出資의 納入이 있을 후에 出資機關에게 출자증서를 發行할 수 있다.

第5條(定款의 變更) 이 銀行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定款에 定하는 以外의 事項) 이 銀行의 業務를 營爲함에 있어 定款이 定하는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따로 定한다.

第2章 任員과 職員

第7條(任員) 이 銀行의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 以內와 監事 1人을 둔다.

第8條(任員의 職務) ① 銀行長은 이 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銀行長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를 分掌한다.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指定한 順位

에 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事는 銀行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9條(任員의 任免) ① 銀行長은 財務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는 財務部長官이 任免한다.

第10條(任員의 任期) ① 銀行長, 專務理事와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② 任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으로 한다.

第11條(任員의 報酬)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 및 監事の 報酬와 手當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銀行長이 定한다.

第12條(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한다.

第13條(任員의 代表權 制限) ①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이 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關하여는 當該 銀行長, 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이 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② 第①項의 境遇에 이 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가 이를 代表한다.

第14條(代理人 選任) 銀行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任員 또는 職員中에서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15條(職員의 任免) 이 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第3章 運營委員會

第16條(運營委員會) ① 이 銀行에 運營委員會(以下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構成

한다.

1. 經濟企劃院長官이 所屬 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1의 2. 外務部長官이 所屬 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2. 財務部長官이 所屬 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3. 商工部長官이 所屬 公務員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4. 韓國銀行總裁가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5. 韓國輸出入銀行長
6. 韓國外換銀行長이 그 理事中에서 指名하는 者 1人
7. 財務部長官이 商工部長官과 協議하여 輸出業者團體의 대표자중에서 指名하는 者 1人
- ③ 委員會는 이 銀行의 業務運用 및 管理에 關한 基本方針을 樹立하고 이 職務을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17條(運營委員會의 召集) ① 委員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미리 指定하는 順位の 委員이 그 職務을 代行한다.
③ 議長은 在籍委員 過半數 또는 監事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延滯없이 會議을 召集하여야 한다.

第18條(議決方法)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하는바에 따른다.

第19條(會議參與制限) 委員會의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과 利害關係가 있는 議案에 關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한다. 다만 全般的인 運營問題가 審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委員會의 權限에 關한 特例) ① 이 銀行長은 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인 行爲가 必要한 境遇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員會의 權限內에서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銀行長은 第①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延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①項의 措置를 確認, 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21條(會議參與) 專務理事, 理事, 監事は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理 事 會

第22條(理事會)

① 이 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銀行長, 專務理事, 理事로 構成한다.

③ 理事會는 이 銀行의 業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議決하고, 이 職務을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規程을 定할 수 있다.

第23條(會議召集)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24條(議決方法)

理事會는 構成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5條(監事の 會議參與)

監事は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5章 業務와 그 執行

第26條(業務의 範圍) ① 이 銀行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른 金融機關이 一般的인 條件으로는 취급할 수 없는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本財 其他 外貨獲得을 爲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商品(以下 “製品” 이라 한다)의 輸出을 促進하기 爲하여 그 輸出에

必要的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2. 外國에 對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行하는 建設工事を 包含한다. 以下 같다)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必要的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의 必要的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 公共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 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對한 貸出
4.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을 爲하여 必要的 輸出用原料, 材料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重要物資(以下 “重要物資” 라 한다.)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必要的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또는 이로 因하여 發行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對한 割引
5. 大韓民國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 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必要的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6.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設備의 貸與에 必要的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7. 大韓民國國民이 出資(株式의 取得을 包含한다) 하고자 하는 外國法人에 出資하기 위하여 必要的 資金의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對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製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因하여 發生된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上 顯著하게 困難한 境遇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必要的 資金의 當該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對한 貸出

9. 第1號, 第2號, 第4號 乃至 第6號의 規定에 依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境遇 그 債務의 保證

② 이 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國民經濟上 長期安定的인 確保를 要하는 資源中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이 定하는 資源(以下 “主要資源” 이라 한다)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外國經濟協力, 增進에 寄與케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必要的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其他權利의 取得에 必要的 資金 其他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產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必要的 資金의 大韓民國國民, 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對한 貸出 또는 當該 事業에 必要的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當該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發行하는 債券의 取得

③ 이 銀行은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①項 및 第②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할 수 있다.

④ 이 銀行은 輸出保險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의 輸出保險業務를 代行할 수 있다.

第27條(資金의 借入과 限度) ① 이 銀行은 그 業務를 行함에 必要的 資金의 財源에 充當하기 爲하여 政府,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 韓國外換銀行, 銀行法 第3條①項의 規定에 依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② 이 銀行이 第①項의 規定에 依한 資

金을 借入하거나 法 第 20 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 倍로 한다.

第 28 條 (業務計劃)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該當年度 開始 1 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第 ① 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法 第 18 條 第 ① 項 및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資金供給計劃과 法 第 4 條 第 19 條 第 20 條의 規定에 依한 資金 調達計劃을 區分하고 分期別 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 29 條 (業務方法書) ① 이 銀行은 輸出入, 技術提供, 海外投資 및 對外經濟協力等에 必要한 金融을 支援供與함에 있어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保證의 方法과 融資比率, 利率, 料率 期限, 債券의 取得方法, 元利金의 回收方法, 債券保證의 條件, 業務의 委託 等 業務處理의 基準이 되는 業務方法書를 制定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 第 ① 項의 業務方法書는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30 條 (貸出, 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이 銀行이 法 第 18 條의 規定에 따라 行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 債務保證의 料率을 定함에 있어서는 事務取扱費, 業務代行手数料, 借入金 利子 其他 諸費用과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第 31 條 (業務의 制限) ①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1 項에 依한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確實하게 認定되어야 하며, 償還 또는 履行期間이 6 個月以上 10 年 以內인 中長期 貸出에 限한다.

다만, 國際去來의 實態에 비추어 그 償還 또는 履行에 特히 長期間이 必要하

다고 委員會가 認定하는 경우에는 最長 20 年까지 할 수 있다.

②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資金의 貸出期間은 20 年以內로 한다.

③ 이 銀行이 法 第 18 條 第 ② 項의 規定에 依한 貸出을 行하는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 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除外)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第 32 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이 銀行은 法 第 18 條에 規定하는 業務을 營爲함에 있어서 他金融機關과 競爭하지 아니한다.

第 6 章 輸出入金融債券

第 33 條 (輸出入金融債券) 이 銀行은 法 第 20 條 및 同施行令 第 18 條 乃至 第 31 條의 定하는 바에 따라 輸出入金融債券을 發行할 수 있다.

第 7 章 會 計

第 34 條 (事業年度) 이 銀行의 事業年度는 每年 1 月 1 日부터 12 月 31 日까지로 한다.

第 35 條 (豫算)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當該 事業年度가 開始되기 1 月前에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6 條 (追加更正豫算) 이 銀行은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7 條 (豫備費) ① 이 銀行은 豫則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여 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② 第 ① 項의 豫備費의 使用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 38 條 (退職慰勞金) 이 銀行은 退職하는 任員과 職員에게 退職慰勞金을 支給

할 수 있다.

第39條(賞與金) 이 銀行은 任員과 職員에게 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40條(研究費와 海外派遣費) 이 銀行은 優秀한 職員 또는 其他 適格者에게 研究費 또는 海外派遣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41條(決算) ① 이 銀行은 每事業年度의 決算을 當該 事業年度經過後 60 日 以內에 完結하고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理計算書 等の 決算書와 事業計劃實績分析報告書, 財務諸表附屬書類 및 決算內容에 必要한 書類를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이 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本店, 支店, 出張所와 代理店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42條(利益金の 處理) 이 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充當한 後에 決算總利益金を 다음 各號의 順位에 依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의 總額에 達한 때까지 利益金の 100 分の 20 을 積立한다.

2. 政府以外의 出資者에 對하여는 配當率이 100 分の 15 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を 配當한다.

3. 積立金과 配當金を 除外한 剩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處理한다.

第43條(損失金の 補填) 이 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8章 其 他

第44條(公告의 方法) 이 銀行의 公告는 官報와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1 以上の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45條(業務의 代行) 이 銀行은 그 當

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他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46條(余裕金の 運用) 이 銀行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依하는 外에는 業務上 余裕金を 運用하지 못한다.

1. 國債의 保有

2. 韓國銀行에의 預入

3. 其他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方法

第47條(外國換業務) 이 銀行은 外國換管理法和 貿易去來法の 規定에 따라 外國換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補 則

第48條(職制) 이 銀行의 職制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銀行長이 定한다. 다만 이 銀行이 設立當時 設立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確定한 職制는 이 定款에 依하여 確定한 것으로 본다.

第49條(顧問囑託) 이 銀行은 그 業務의 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大韓民國國民 또는 外國人을 顧問이나 囑託으로 雇傭할 수 있다.

第50條(適用範圍) 이 定款 第41條乃至 43條, 第45條, 第46條는 第26條 ④項의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定款은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이 銀行의 첫 事業年度는 이 銀行이 設立되는 날로부터 197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3條(設立委員會의 記名捺印) 設立委員一同은 韓國輸出入銀行法 附則 第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 定款을 作成하고 다음에 記名捺印한다.

1976. 5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 番地 財務部次官	조 중 훈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 番地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송 인 상
서울特別市中區南大門路 3 가 110 番地 韓國銀行 副總裁	하 영 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 番地 財務部財政次官補	고 명 우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77 番地 商工部商易次官補	박 필 수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 番地 財務部理財局長	하 동 선
서울特別市鍾路區世宗路 82 番地 財務部國際金融局長	정 인 용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 番地 韓國外換銀行 專務理事	홍 완 모
서울特別市鍾路區貫鐵洞 10 番地 韓國外換銀行 理事	이 태 호

附 則 (1)

이 定款은 1977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2)

이 定款은 1977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3)

이 定款은 1977 年 12 月 29 日부터 施行한다

라. 輸出保險法

制 定 : 法律 第 2063 號 1968. 12. 31. 公布
 改 正 : 法律 第 2167 號 1970. 1. 1. 公布
 改 正 : 法律 第 2422 號 1972. 12. 30. 公布
 改 正 : 法律 第 2952 號 1976. 12. 31. 公布
 改 正 : 法律 第 3107 號 1978. 12. 30. 公布
 改 正 : 法律 第 3399 號 1981. 3. 27. 公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은 輸出貿易 기타 對
 外去來에서 發生하고 通常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困難한 危險으로 인한 財産上的
 損失을 補償하는 保險制度를 確立함으로

써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의 振興을 圖
 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用語의 定義) ① 이 法에서 “輸
 出契約”이라 함은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된 貨物을 輸出하는 경우 大統
 領令이 정하는 事項이 約定되어 있는 契
 約을 말한다.

② 이 法에서 “輸出者”라 함은 第 1 項

- 의 規定에 의한 契約當事者로서 貨物을 輸出하는 者를 말한다.
- ③ 이 法에서 “供給契約”이라 함은 輸出契約에 의하여 輸出한 貨物을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하여 당해 輸出者에게 引渡하는 契約을 말한다.
- ④ 이 法에서 “生産者”라 함은 輸出을 目的으로 國內에서 貨物을 生産·加工 또는 集荷하는 者를 말한다.
- ⑤ 이 法에서 “中·長期延拂輸出契約”이라 함은 資本財 기타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貨物(이하 “資本財등”이라 한다)을 輸出하는 契約으로서 그 代金 또는 貨賃料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決済條件에 의하여 回收하는 契約을 말한다.
- ⑥ 이 法에서 “輸出代金金融契約”이라 함은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과 韓國輸出入銀行(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資本財 등의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の 支給에 必要한 資金을 外國의 政府·公共團體 또는 다른 外國法人이나 外國人에게 供與하는 契約을 말한다.
- ⑦ 이 法에서 “委託販賣輸出契約”이라 함은 國內에서 生産·加工 또는 集荷되는 貨物을 外國에서 販賣할 것을 委託하는 契約을 말한다.
- ⑧ 이 法에서 “海外投資”라 함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을 말한다.
1. 外國法人(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의 取得
 2. 大韓民國國民(法人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이 그 株式등을 取得하려 하거나 所有하는 外國法人의 株式등을 取得하려는 外國의 政府·公共團體 또는 다른 外國法人이나 外國人에 대한 당해 株式등의 取得에 要하는 資金에 充當되는 長期貸付金에 관한 債權(이하 “貸付金債權”이라 한다)의 取得

3. 大韓民國國民이 株式등의 所有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그 經營을 實質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外國法人의 社債 기타 이에 準하는 債權 또는 당해 外國法人에 대한 長期貸付金에 관한 債權(이하 “社債등”이라 한다.)의 取得
 4. 國外에서 營爲하는 事業에 使用되는 不動產 또는 設備에 관한 權利·業權·工業所有權 기타의 權利 또는 이들에 類似한 利益(이하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이라 한다)의 取得
 - ⑨ 이 法에서 “海外建設業者”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말한다.
 - ⑩ 이 法에서 “海外建設工事契約”이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工事に 관한 契約을 말한다.
 - ⑪ 이 法에서 “海外建設用役契約”이라 함은 海外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用役(海外技術用役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契約을 말한다.
 - ⑫ 이 法에서 “輸出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을 말한다.
 1. 海外建設工事契約, 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에 관한 入札(이하 “入札”이라 한다)의 條件에 포함된 保證條項에 따라 入札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당해 入札의 相對方에게 하는 保證(違約金 기타 이와 類似한 金錢을 支給하거나 그 支給에 갈음하여 主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主債務者를 代身하여 履行하는 保證)을 말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海外建設工事契約, 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의 保證條項에 따라 契約으로 인한 債務에 관하여 당해 契約의 相對方에게 하는 保證.
- 第3條(保險의 種類) 輸出保險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一般輸出保險
 2. 輸出金融保險

3. 輸出어음保險
4. 中・長期延拂輸出保險
5. 輸出代金金融保險
6. 委託販賣輸出保險
7. 海外投資保險
8. 海外建設工事保險
9. 輸出保證保險

第3條의 2 (共同保險 및 再保險)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그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의한 責任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保險 또는 再保險에 붙일 수 있다.

第4條 (保險料率) 輸出保險의 保險料率은 輸出保險事業의 收入과 支出의 均衡이 維持되도록 商工部長官이 미리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第5條 (契約의 解止등) 公社는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에 의한 保險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支給한 保險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하거나 그 保險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第5條의 2 (保險目的 또는 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 公社가 保險金을 支給한 경우에는 그 保險의 目的 또는 第三者에 대한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權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得할 수 있다.

第6條 (保險關係의 成立制限) ① 商工部長官은 輸出貿易 기타 對外去來에 있어서 危險이 增大되었거나 기타 輸出保險事業의 經營에 必要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金融保險關係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어음保險關係 또는 第29條의 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保證保險關係를 將來에 向하여 成立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

置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7條 (保險事故의 逆選擇의 防止) 商工部長官은 輸出保險의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의한 保險事故의 逆選擇을 防止하고 保險料의 平準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輸出保險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險에 붙일 수 있는 期間의 제한
2. 保險責任의 時期의 제한
3. 商品別・商社別 또는 組合別 包括保險의 實施

第8條 (保險契約締結限度) ① 輸出保險의 種類別 契約締結限度는 商工部長官이 이를 정한다.

② 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의 種類別 契約締結限度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8條의 2 (輸出保險審議會) ① 商工부에 輸出保險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는 이 法에 의한 議決事項을 決定하고, 輸出保險에 관하여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한다.

③ 審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一般輸出保險

第9條 (保險契約) 公社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한 損失이 發生할 때에 第10條 各號의 損失補償을 하기 위하여 一般輸出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輸入國에서 實施되는 輸入의 제한 또는 금지
3. 外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換去來의 不能

4.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當該國에 대한 輸出의 實行不能
5. 國外에서 發生한 事由로 인한 輸入國에의 輸送不能
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에 國外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輸出契約 當事자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7. 貿易去來法에 의한 輸出의 제한 또는 금지
8. 輸出契約의 相對方이 外國의 政府나 公共團體인 경우, 그 相對方에 의한 당해 輸出契約의 一方인 破棄 또는 相對方에게 責任지을 수 있는 相當한 事由로 인한 輸出者에 의한 당해 輸出契約의 解除
9. 輸出契約 相對方의 破産 또는 이에 準하는 支給不能 事由의 發生

第10條 (補償할 損失의 範圍) 一般輸出保險에 의하여 補償을 받을 수 있는 損失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輸出者가 保險契約를 締結한 후에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發生으로 輸出契約에 의한 貨物을 輸出할 수 없게 된 경우(第9條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으로 당해 貨物의 輸出이 顯著하게 困難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輸出契約에서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때를 包含한다)에 받은 損失, 다만 당해 輸出貨物에 發生한 損失은 除外한다.
2. 輸出者가 保險契約를 締結한 후에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發生으로 輸出契約에 의한 輸出貨物의 代金을 支給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다만 당해 輸出貨物에 發生한 損失은 除外한다.
3. 輸出者가 第1號 및 第2號의 損失을 받음으로써 供給契約 當事자인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貨物의 그 生産者가 그 供給契約에 의한 당해 貨物을 引渡할 수

없거나 代金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4. 輸出者가 保險契約를 締結한 후에 第9條 第1號 내지 第7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으로 航海 또는 航路를 變更함으로 海上運賃 또는 保險料를 追加하여 負擔하게 된 경우에 받은 損失

第11條 (保險金) ① 一般輸出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輸出者가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輸出할 수 없게 된 貨物(第9條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그 輸出이 顯著하게 困難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輸出契約에 정한 船積期日부터 2月이 경과된 날까지 輸出하지 못한 貨物을 包含한다)의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額 또는 輸出契約에 의한 代金額중 回收할 수 없게 된 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 또는 輸出者가 航海나 航路의 變更으로 인하여 追加하여 負擔하게 된 海上運賃이나 保險料의 增加額에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輸出貨物의 處分 기타 損失을 輕減하기 위한 措置에 의하여 回收된 金額 또는 回收할 수 있는 金額
2. 당해 事由의 發生으로 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3. 당해 貨物의 輸出에 의하여 取得하게 되었던 利益金額

② 第1項의 規定은 生産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一般輸出保險에 이를 準用한다.

第3章 輸出金融保險

第12條 (保險契約) ① 公社는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金融機關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金融保險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는 金融機關이 輸出者·外國에 駐屯하는 國軍 및 外國軍에 대한 軍納業者·生産者 또는 海外에서 建設業을 營爲하거나 用役을 提供하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資金을 融資하기 위하여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을 한 뜻을 政府에 통지하므로 公社와 金融機關間에 그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으로 融資받은 資金에 의하여 輸出하거나 輸出을 目的으로 引渡하고자 하였던 貨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輸出 또는 引渡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融資金에 의하여 輸出한 貨物의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와 당해 融資金에 의하여 海外에서 建設하거나 用役을 提供한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發生하는 金融機關의 未回收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1. 輸出契約이 締結된 후에 輸出者가 당해 輸出契約에 의한 貨物을 輸出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또는 生産者가 당해 貨物을 生産·加工하거나 集荷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貨物의 輸出契約이 締結될 것이라고 金融機關이 인정한 경우에 生産者가 당해 貨物을 生産·加工하거나 集荷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3. 外國政府·外國에 駐屯하는 國軍·外國軍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한 貨物의 供給·工事의 道급 또는 用役의 提供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

第13條(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는 保險價額は 어음金額으로 하고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 分の 90 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4條(保險金) 輸出金融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12條第2項에 規定하는 事由로 인하여 金融機關이 어음의 滿期에 回收할 수 없었던 金額에서 滿期후에 回收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 分の 90 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5條(資金의 回收)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金融機關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어음貸付 또는 어음割引에 의하여 融資한 資金을 回收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6條(回收金의 納付) 保險金을 支給 받은 金融機關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당해 어음의 滿期 이후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에 支給을 받은 保險金의 額의 第14條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4章 輸出어음保險

第17條(保險契約) ① 公社는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外國換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銀行(이하 “外國換銀行”이라 한다)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어음保險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어음保險에 있어서는 輸出貨物에 대하여 發行된 荷換어음을 外國換銀行이 그 發行人으로부터 買受한 뜻을 公社에 통지한 때에 政府와 外國換銀行間에 外國換銀行이 당해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金額 또는 당해 荷換어음에 대한 遡求를 받아 支給한 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第18條(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輸出어음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어음金額으로 하고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第19條(保險金) 輸出어음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外國換銀行이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을 받을 수 없게 된 金額 또는 荷換어음에 대하여 遡求를 받아 支給한 金額에서 다음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滿期후에 支給을 받은 金額
2. 貨物의 處分 기타 貨物에 관한 權利의 行使로 回收한 金額
3.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

第20條(어음에 의한 權利行使) ①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荷換어음에 의한 權利의 行使 및 貨物의 處分 기타 貨物에 관한 權利行使에 노력하여야 한다.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發行人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로 인하여 荷換어음의 滿期에 支給받을 수 없거나 遡求를 받은 경우에는 支給을 받을 保險金의 額에 相當하는 金額은 이를 除外하고 遡求하여야 한다.

第21條(回收金의 納付)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第20條 第2項에 規定하는 경우에 遡求하여 回收한 金額은 除外한다)에서 荷換어음의 滿期이후 保險金의 支給을 받은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의 額의 第19條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5章 中長期延拂輸出 保險

第22條(保險契約) 公社는 輸出者가 中・長期延拂輸出契約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本財 등을 輸出한 경우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당해 輸出貨物의 代金 또는 貨賃料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이에 의하여 받은 損失(당해 輸出貨物에 發生한 損失은 除外한다)을 補償하기 위하여 中・長期延拂輸出保險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2.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國外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輸出契約 當事者에게 責任을 지을 수 없는 事由
4. 輸出契約相對方의 破産
5. 輸出契約相對方에 의한 6月 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輸出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23條(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輸出契約에 의한 輸出貨物의 代金 또는 貨賃料로 한다. 다만, 2期 이상에 分割하여 決濟하기로 約定한 경우에는 各期마다 決濟받을 金額을 保險價額으로 한다.

② 中・長期延拂輸出保險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를 곱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超過部分은 無効로 한다.

第24條(保險金) 中・長期延拂輸出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輸出者가 決濟期(第22條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回收할 수 없는 代金 또는 貨賃料에서 다음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

額에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發生으로 支給을 요하
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決濟期후에 回收한 金額

第25條(代金の回收)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輸出者는 당해 輸出契約에 의한 輸
出貨物の 代金 또는 貨賃料의 回收에 노
력하여야 한다.

第26條(回收金の納付) 保險金の 支給
을 받은 輸出者는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決濟期이후 保險
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
子を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의
額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殘額에 대
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
야 한다.

第5章의 2 輸出代金金融保險

第26條의 2(保險契約) 公社는 金融機
關이 輸出代金金融契約에 의하여 資金을
供與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事由로 인하여 그 資金의 元金 및 利
子(이하 “元利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는 損失
을 補償하기 위하여 金融機關과 輸出代
金金融保險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
는 금지

2. 輸入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國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輸出代金金融契約 當
事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4. 輸出代金金融契約 相對方의 破産

5. 輸出代金金融契約 相對方에 의한 6
月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金
融機關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26條의 3(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 保險價額は

元利金の 額으로 한다. 다만, 2期이상
分割하여 償還하기로 約定한 경우에는 各
期마다 償還받을 金額을 保險價額으로 한
다.

② 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 保險金額은
保險價額の 100分の 90의 범위안에서 大
統領令이 정하는 比率를 곱한 金額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는 그
超過部分은 無効로 한다.

第26條의 4(保險金) 輸出代金金融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26條의 2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金融機關이 償還期
日(第26條의 2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償還期日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
한다. 이하 같다)까지 償還받을 수 없
는 元利金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
한 殘額에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
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발생으로 支出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償還期日후에 回收한 金額

第26條의 5(代金の回收) 保險金の 支
給을 받은 金融機關은 당해 輸出代金金融
契約에 의한 元利金の 回收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6條의 6(回收金の納付) 保險金の 支
給을 받은 金融機關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償還期日 이후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を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
의 額의 第26條의 4의 規定에 의한 殘額
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
하여야 한다.

第6章 委託販賣輸出保險

第27條(保險契約) 公社는 輸出者가 委
託販賣輸出契約에 의하여 貨物을 輸出한
경우에 당해 貨物의 販賣에 의하여 그 貨
物의 輸出 및 販賣를 위하여 支給한 費用
을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받는 損失을

補償하기 위하여 委託販賣輸出保險契約를締結할 수 있다.

第28條 (販賣價格) ① 委託販賣輸出保險契約에 있어서는 당해 貨物의 輸出 및 販賣을 위하여 支給한 費用額과 당해 輸出契約에 정하는 販賣期間(이하 “販賣期間”이라 한다)내에 販賣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貨物의 販賣價格(이하 “販賣價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販賣價格은 당해 貨物에 대한 費用額에 100분의 105를 곱한 金額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第29條 (保險金) ① 委託販賣輸出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第28條第1項의 費用額중 당해 貨物의 輸出 및 販賣을 위하여 支給한 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분의 90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販賣期間內에 販賣된 당해 貨物의 販賣價格에 의하여 計算한 代金額
2. 貨物의 處分 기타 損失의 輕減을 위한 措置에 의하여 回收한 金額 또는 또는 回收할 수 있는 金額

② 販賣期間內에 販賣되지 아니한 貨物로서 販賣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3月內에 返送을 위하여 船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第28條第1項의 費用額 중 당해 貨物의 輸出 또는 販賣을 위하여 支給한 金額을 第1項第2號에 規定한 回收한 金額 또는 回收할 수 있는 金額으로 본다. 다만, 公社의 承認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는 例外로 한다.

第6章의 2 海外投資保險

第29條의 2 (保險契約) ① 公社는 海外投資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 補償하기 위하여 海外投資保險契約를締結할 수 있다.

1. 株式등 貸付金 債權 또는 社債등의 元金(이하 “元金”이라 한다) 株式등에 대한 配當金支給請求權 또는 貸付金債權이나 社債등의 利子支給請求

權(이하 “配當金請求權”이라 한다) 또는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의 外國政府등에 의한 剝奪

2. 海外投資(第2條第8項第4號에 揭記하는 것을 除外한다.)의 相對方이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하여 損害를 받거나, 不動產·設備·原資材 기타의 物件에 관한 權利·礦業權·工業所有權 기타의 權利 또는 利益으로서 事業의 遂行上 특히 重要な 것이 外國政府등에 의하여 侵害됨으로써 損害를 받아 당해 海外投資의 相對方(第2條第8項第2號에 揭記하는 海外投資에 있어서는 株式등의 取得의 相對方을 除外한다)에 있어서의 事業繼續의 不能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의 發生

3.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하여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에 대하여 損害를 받음으로써 당해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의 事業用으로서의 使用不能

4. 元金の 喪失(第1號 또는 第2號의 事由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 株式등에 대한 配當金, 貸付金債權이나 社債등의 利子(이하 “配當金등”이라 한다) 또는 不動產에 관한 權利등의 喪失(第1號 또는 第3號의 事由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이하 “取得金등”이라 한다)을 다음에 揭記하는 事由로 인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國內에의 送金不能

가.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제한 또는 금지

나. 外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으로 인한 換去來의 杜絶

다. 外國政府등에 의한 당해 取得金の 管理

라. 당해 取得金등의 送金許可의 取消 또는 外國政府등이 그 許可를 할 것을 미리 約定하고 있었던 경우에 그 許可의 拒否

마.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發生후에 있어서의 外國政府

등에 의한 取得金의 沒收

② 海外投資保險의 保險期間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의 3 (保險金) ① 海外投資保險에 있어서 第29條의 2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元金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元金(이하 “事故元金”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1項第1號의 事由 또는 第2號의 損害의 發生 直前に 評價한 額과 당해 事故元金の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적은 金額에서 配當金請求權등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配當金請求權등(이하 “事故配當金請求權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1項第1號의 事由 또는 第2號의 損害의 發生 直前に 評價한 額에서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당해 事由에 관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이하 “事故權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29條의 2 第1項第1號의 事由 또는 第3號의 損害發生 直前に 評價한 額과 당해 事故權利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적은 金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를 곱하여 얻은 金額으로 한다.

1. 事故元金·事故配當金請求權등 또는 事故權利등에 대하여 자기 당해 事故發生 直後に 評價한 額
2. 당해 事由의 發生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
3. 損失을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 回收한 金額

② 第29條의 2 第1項第4號의 事由로 인하여 받은 損失에 대하여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元金 또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등(이하 “元金등”이라 한다)의

喪失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第29條의 2 第1項 第4號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同號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國內로 送金한 수 없었던 金額(당해 事故의 發生前에 國內로 送金할 수 있었던 金額을 除外한다. 이하 “送金不能額”이라 한다)과 당해 元金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中 적은 金額에서 配當金에 관한 損失에 있어서는 送金不能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100分の 90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를 곱하여 얻은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發生으로 인하여 支給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당해 送金不能額으로 支給한 金額
3. 損失을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 回收한 金額

③ 元金등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 또는 그 累計額이 당해 元金等の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에서 다음 各號에 掲記하는 金額을 控除한 殘額을 초과할 때에는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殘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發生前에 있어서의 당해 元金등의 喪失(前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送金不能額이 包含된 경우에는 그 金額에서 당해 送金不能額이 包含된 경우에는 그 金額에서 당해 送金不能額을 控除한 殘額)과 그 喪失한 元金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의 額중 많은 金額
2. 당해 事由의 發生前에 있어서의 第29條의 2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의 發生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

3. 第1項 各號 또는 第2項 各號에서 정하는 金額

④ 公社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29條의 2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으로 인하여 取得한 金額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國內로 送金할 수 없는 金額 (당해 事由의 發生前에 國內로 送金할 수 있었던 金額을 除外한다. 이하 “送金不能取得額”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의에 당해 金額과 第1項 第2號 또는 第3項 第2號에 規定하는 金額에서 送金不能取得額을 控除한 殘額을 各各 第1項 第2號 또는 第3項 第2號에 規定하는 金額으로 보아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算定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金額과의 差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1. 外國政府등에 의한 沒收

2. 外國政府등에 의한 管理(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 이상의 期間 繼續하여 管理된 경우에 限한다.)

3. 第1號 및 第2號에 準하는 事由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由

第29條의 4 (回收)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者는 事故元金 또는 事故權利등의 取得을 위한 對價나 取得金등에 관한 送金不能額의 回收 또는 事故 配當金請求權등에 관한 權利의 行使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29條의 5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者는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이 있을 때에는 回收한 때 마다 그 金額에 公社로부터 支給을 받은 保險金の 額의 第29條의 3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하여 얻은 金額 (支給을 받은 保險金の 額을 초과할 때에는 그 保險金の 額) 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6章의 3 海外建設工事保險

第29條의 6 (保險契約) 公社는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建設促進法에 規定된 海外建設用役 (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행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함으로써 당해 海外工事의 代價를 回收할 수 없게 된 때에 이로 인하여 받은 損失을 補償하기 위하여 海外建設工事保險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制限 또는 금지

2. 海外建設工事發注國에서의 戰爭・內亂 또는 政變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國外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海外工事의 契約當事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事由

4. 海外工事發注者의 破産

5. 海外工事發注者에 의한 6月 이상의 債務의 履行遲滯 다만, 海外建設業者에게 責任지을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第29條의 7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당해 海外工事의 代價로 한다. 다만, 당해 海外工事契約上 그 代價를 2回이상에 걸쳐 分割決濟하기로 約定된 경우에는 그 決濟받을 一部代價를 保險金額으로 할 수 있다.

②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 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를 곱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部分은 無効로 한다.

第29條의 8 (保險金) 海外建設工事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할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第29條의 6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인하여 海外建設業者가 決濟期(第29條의 6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濟期후 6月이 경과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回收할 수 없는 代價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당해 事由의 發生으로 支給을 要하지 아니하게 된 金額

2. 決濟期후에 回收한 金額

第29條의 9 (回收)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海外建設業者는 당해 海外工事契約에 의한 代價의 回收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9條의 10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海外建設業者는 그 支給을 請求를 한 후에 回收한 金額에서 決濟日의 翌日부터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の 額의 第29條의 8의 規定에 의한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6章의 4 輸出保證保險

第29條의 11 (保險契約) ① 公社는 會計年度 또는 그 半期別로 外國換銀行을 相對方으로 하여 輸出保證保險契約를 締結할 수 있다.

② 輸出保證保險은 外國換銀行이 海外建設業者·海外建設用役提供者 또는 輸出者(이하 “入札者등”이라 한다)의 要請에 의하여 海外建設工事契約·海外建設用役契約 또는 輸出契約에 관한 輸出保證을 한 뜻을 公社에 통지한 때에 公社와 外國換銀行間에 外國換銀行이 당해 輸出保證의 相對方으로부터 請求를 받아 第2條 第1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債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당해 入札 또는 契約의 條件에 따라 支給한 金額을 補償하는 保險關係가 成立한다.

第29條의 12 (保險價額 및 保險金額)

①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價額은 輸出保證의 保證金額으로 한다.

②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의 保險金額은 保險價額에 100分の9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한 金額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때에 그 超過部分은 無効로 한다.

第29條의 13 (保險金) 輸出保證保險에

있어서 公社가 支給하여야 한 保險金은 保險價額중 外國換銀行이 輸出保證의 相對方으로부터 請求를 받아 당해 保證의 條件에 따라 支給한 金額에서 다음 各號의 金額을 控除한 殘額에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輸出保證 相對方으로부터 回收한 金額

2. 主債務者에게 求償하여 回收한 金額

第29條의 14 (權利의 行使) ①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輸出保證에 따른 債務를 履行함으로써 取得한 輸出保證의 相對方에 대한 財産上의 權利行使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主債務者인 入札者 등에 대한 求償權을 行使하여야 한다.

第29條의 15 (回收金の 納付)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外國換銀行은 그 支給의 請求를 한 후에 第29條의 14에 規定하는 權利를 行使하여 回收한 金額에서 輸出保證의 條件에 따라 保證債務를 履行한 날 이후 保險金の 支給을 받은 날의 前日까지의 利子를 控除한 殘額에 支給받은 保險金の 額의 第29條의 13에 規定하는 殘額에 대한 比率를 곱한 金額을 公社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7章 輸出保險基金

第30條 (基金의 設置)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効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輸出保險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1條 (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이외의 者の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 안에서 第1項第1號의 出捐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32條(基金의 管理) 基金은 公社가 이를 管理한다.

第33條(基金의 運用) 基金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運用한다.

1. 金融機關에의 預入
2. 國債·地方債 또는 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有價證券의 買入
3. 기타 商工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方法

第34條(基金의 借入) ① 公社는 保險金의 支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35條(基金의 收入과 支出) ① 基金은 第31條第1項의 財源과 保險料·回收金·利子 기타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을 그 收入으로 한다.

② 基金은 保險金·利子 및 公社의 運營經費 기타 基金의 運用에 필요한 經費를 그 支出로 한다.

第36條(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① 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 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填한다.

第8章 韓國輸出保險公社

第37條(設立) 이 法에 의한 輸出保險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韓國輸出保險公社를 設立한다.

第38條(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39條(定款)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에 관한 事項

4.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7. 會計에 관한 事項

8. 公告의 方法에 관한 事項

9.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② 公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0條(登記)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으며, 그 登記申請書에는 公社의 定款과 商工部長官의 公社設立認可書寫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公告의 方法

③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1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輸出保險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42條(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3條(運營委員會) ① 公社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公社의 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任員) ① 公社에 社長 및 副社長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社長은 商工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副社長과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任免한다.

③ 監事は 商工部長官이 任免한다.

第45條(任員의任期) 社長・副社長 및 理事의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46條(任員의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대표하고, 公社의業務를統理한다.

②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職務를代行한다.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業務를分掌하며, 社長 및 副社長이 모두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職務를代行한다.

④監事は 公社의業務 및 會計를監査한다.

第47條(任員의欠格事由)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8條(任員의身分保障) 公社의任員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任期중 本人의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命令이나 定款에違反한 때
2.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公社에損失을發生하게 한 때
3. 心身障礙로 인하여職務遂行이 심히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때
4. 第47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第49條(理事會) ①公社의重要事項을決議하기 위하여 公社에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構成한다.

③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贊成으로議決한다.

④理事會는 社長이召集하고, 그議長이된다.

⑤監事は 理事會에 출석하여發言할 수 있다.

第50條(職員의任免) 公社의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長이任免한다.

第51條(任員 및 職員의兼職制限) 公社의任員 및 職員은 그職務이외의營利를目的으로 하는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任員은 商工部長官의, 職員은 社長의許可없이 다른職務를兼할 수 없다.

第5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公務員疑制) 公社의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法律에 의한罰則의適用에 있어서公務員으로 본다.

第53條(業務) 公社는 다음各號의業務를 행한다.

1. 輸出保險에 관한 原保險・共同保險 및 再保險
2. 基金의管理 및 運用
3. 信用調査
4. 輸出信用保證
5. 第1號 내지 第4號의業務에附帶되는業務
6. 기타輸出保險業務의발전을 위하여 商工部長官이委託하는業務

第54條(會計年度) 公社의會計年度는 政府의會計年度에 따른다.

第55條(豫算과決算) 公社의豫算과決算은 商工部長官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56條(보고 및 調査) ①輸出保險의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公社가輸出契約 기타輸出保險關係에 관련되는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資料의제출을要求하거나, 關係帳簿・書類 또는輸出貨物을調査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規定에 의하여調査를행하는 者는 그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提示하여야 한다.

第57條(異議申請) ①公社가 이法에 의하여 행한處分에 대하여異議가 있는 者는 그處分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3月 이내에 公社에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公社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申請이 있을 때에는 1月 이내에 이를審議하여 그결과를 당해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異議申請人은 第2項의規定에 의한公

社의審議결과에 대하여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의 동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商工部長官에게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8條(關係機關등에 대한 信用調査 등의 依賴) ① 公社는 外國의 輸入制限·換制限 또는 國外商社의 信用·輸出保險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外國換銀行 또는 大韓貿易振興公社의 國外支店 기타 關係機關(이하 “關係機關”이라 한다)에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② 關係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받은 때에는 調査를 행한 후 지체없이 그 事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公社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調査를 外務部長官 또는 在外公館에 要請할 수 있다.

第59條(監督) 商工部長官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第60條(報告 및 檢査) ① 商工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社에 대하여 公社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公社의 業務 및 財産狀況과 帳簿·書類·施設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결과 違法 또는 부당한 事項을 발견한 경우에는 公社에 대하여 그 是正·注意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9章 補 則

第61條(罰則) ①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

2. 第6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때

3. 第6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第4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2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196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法律 第2167號 1970年 1月 1日 公布)
이 法은 1970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1條 第1項 및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再保險公社가 代行하고 있는 輸出保險事業 및 輸出保險基金會計事務는 이 法 施行日에 韓國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輸出入銀行이 代行하는 輸出保險業務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것으로 본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2項의 規定은 1982年1月1日로부터 施行하고, 公社에 관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輸出保險業務의 代行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第3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業務 및 基金會計의 代行은 이 법에 의한 公社가 設立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 公社는 輸出保險事業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를 包括 承繼한다.

第3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

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은 이 법에 의하여 政府가 出捐한 것으로 본다.

第4條(公社의 設立準備) ① 商工部長官은 5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嘱하여 設立委員會를 構成하고,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한다.

②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定款을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후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 設立委員會는 公社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公社의 社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設立委員은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 解職된 것으로 본다.

마. 輸出保險法 施行令

制定: 大統領令 第 3743 號, 1969. 1. 22. 公布
改正: 大統領令 第 4797 號, 1970. 3. 24. 公布
改正: 大統領令 第 6564 號, 1973. 3. 14. 公布
改正: 大統領令 第 8423 號, 1977. 1. 27. 公布
改正: 大統領令 第 9309 號, 1979. 2. 8. 公布

第1條(目的) 이 令은 輸出保險法(이하 “法”이라 한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輸出契約의 約定事項) ① 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契約에서 約定하여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貨物의 名稱, 規格 및 數量
2. 貨物의 價格 및 代金決濟 條件
3. 貨物의 輸入國 및 船積時期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定事項은 貿易去來法 기타 對外去來에 관한 法令에 低

觸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第3條(中·長期延拂輸出契約의 決濟條件) 法 第2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延拂輸出契約의 決濟條件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削除)
2. 輸出價額이 6月이상 10年이내에 決濟되는 것일것. 다만 商工部長官이 定하는것에 대해서는 當該 決濟期間을 6月이상 20年이내로 한다.
3. (削除)

4. 기타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條件

第3條의 2 (再保險) 法 第3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再保險에 붙일수 있는 경우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가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의 一部를 外國輸出保險者에게 出再하는 경우
2. 外國人이 主된 契約者가 되어 內國人과 共同으로 輸出 (海外建設工事, 海外建設用役提供 및 海外投資를 包含한다) 하는 경우에 그 外國人이 締結한 輸出保險契約에 따른 責任中 內國人 參與分의 責任의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여 該當國 輸出保險者로부터 受再받는 경우.

第4條 (供給貨物의 種類) 法 第10條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 (船舶 및 車輛을 包含한다) 과 그 部分品 및 部屬品
2. 特定國家에의 輸出을 위하여 生産된 貨物로서 當該 輸入國이외의 國家에 대한 輸出 또는 國內에서의 販賣가 顯著하게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것 중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貨物.

第5條 (一般輸出保險金의 支給率) 法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法 第9條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由로 인한 事故에 있어서는 實損害額의 100分の 90으로, 法 第9條 第9號의 事由로 인한 事故에 있어서는 實損害額의 100分の 60으로 한다.

第6條 (生産貨物 등의 種類) 法 第12條 第2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貨物의 種類는 農產物, 林產物, 畜產物, 工產物, 기타 貨物로서 輸出契約의 生産·加工 또는 集荷가 時期的으로 集中되는 것이나 輸出振興政策上 獎勵하여야 할 것 중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貨物로 한다.

第6條의 2 (貨物供給등의 相對方) 法 第12條 第2項 第3號에 規定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外國政府 또는 外國의 地方公共團體가 發注한 事業을 行하는

者로 한다.

第7條 (資本財등의 種類) 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등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産業施設 (船舶 車輛과 當該産業施設을 위한 原料, 豫備品, 部分品 및 部屬品등을 包含한다)과 이의 設置 또는 運營에 隨伴하는 技術등의 用役.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貨物 중 外貨獲得을 위한 海外輸出入市場의 確保 또는 開拓에 顯著히 寄與하는 貨物로서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것.

3. (削除)

第8條 (中·長期延拂輸出保險金額) 法 第23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價額에 곱한 比率은 100分の 90으로 한다.

第8條의 2 (海外投資保險事故) 法 第29條의 2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由는 다음과 같다.

1. 破産 기타 이에 準하는 事由
2. 銀行에 의한 去來의 停止 기타 이에 準하는 事由 (顯著하게 債務超過가 되고 있는 것에 限한다.)
3. 6月 이상의 事業에 休止

第8條의 3 (送金不能期間) 法 第29條의 2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2月로 한다.

第8條의 4 (海外投資保險의 保險期間) 法 第29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期間은 15年으로 한다.

다만 當該 外國法人이 그 事業의 全部를 開始할 때까지 相當한 期間을 要할 것으로 認定될 때에는 15年에 그 事業의 全部를 開始할 때까지에 要하는 期間內에서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期間을 加算한 期間으로 한다.

第8條의 5 (海外投資保險金의 支給率) 法 第29條의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은 各各 100分の 90으로 한다.

第8條의 6 (外國政府등에 의한 管理期間) 法 第29條의 3 第4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期間은 2月로 한다.

第8條의 7 (送金不能事由) 法 第29條의 3 第4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由는 다음과 같다.

1. 外國에서 實施되는 換去來의 制限 또는 禁止 (2月이상 繼續하여 行하여진 것에 限한다).
2. 外國에서의 戰爭, 革命 또는 內亂에 의한 換去來의 杜絕 (2月이상 繼續하여 行하여진 것에 限한다).
3. 法 第29條의 2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이 讓渡가 禁止된 國債·公債 기타 이에 準하는 有價證券으로 取得한 것인 경우 戰爭, 革命, 內亂 또는 外國政府等の 行爲에 의한 當該 有價證券의 償還 不能.
4. 第3號에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戰爭, 革命, 內亂 또는 外國政府等の 行爲에 의하여 法 第29條의 2 第1項 第1節 내지 第3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의 發生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 (金錢으로 取得한 것을 除外한다.) 또는 取得할 수 있는 金額의 金錢으로의 取得不能.

第8條의 8 (海外建設工事保險의 保險金額) 法 第29條의 7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比率은 100 分の 80 으로 한다.

第8條의 9 (輸出保證保險의 保險金額) 法 第29條의 12의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比率은 100 分の 70 으로 한다.

第9條 (輸出保險審議會의 附議事項) 法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審議會 (이하 “審議會” 라 한다) 의 議決을 거쳐야 할 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保險料率
2. 保險約款
3. 保險關係 成立의 制限
4. 付保期間의 制限
5. 保險責任時期의 制限
6. 包括保險의 實施
7. 保險種目別 契約締結 限度
8. 輸出保險基金의 運用指針

9. 輸出保險基金의 豫算 및 決算

10. 韓國輸出入銀行 (이하 “輸出入銀行” 이라 한다.) 이 被保險利益의 受益者가 되는 輸出保險契約의 체결에 관한 事項

11. 再保險契約의 체결

12. 기타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事項

② 輸出入銀行이 法 第31條 第2項 後段의 規定에 依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할 事項은 第1項 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6號 내지 第9號의 事項으로 한다.

第10條 (輸出保險基金豫算) ① 商工部長官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基金의 會計를 輸出入銀行에 代行하게 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은 會計年度마다 會計年度 開始 1月前에 輸出保險基金豫算 (이하 “基金豫算” 이라 한다.) 을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基金豫算을 追加하거나 更正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輸出入銀行이 第1項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基金豫算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商工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當該年度의 輸出保險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2. 前年度 및 當該年度의 推定損益計算書 및 推定貸借對照表
3. 前年度의 損益計算書, 貸借對照表 및 그 附屬書類

第11條 (輸出保險基金決算) ① 法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作成하여야 할 決算書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當該年度의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2. 輸出保險事業執行狀況表 및 基金運用狀況表
3. 기타 決算의 內容을 明白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② 商工部長官은 基金의 決算을 함에 있어서 輸出保險의 種類別로 保險業法 第98條에 準하는 責任準備金を 計上하여

야 한다.

- (3) 商工部長官이 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 基金의 會計를 輸出入 銀行에 代行하게 한 때에는 第1項의 決算書를 輸出入 銀行이 作成하여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2條 (審議會의 構成) ① 審議會는 委員長 1人과 11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商工部次官이 된다.

③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經濟企劃院 企劃次官補
2. 外務部 經濟次官補
3. 財務部 財政次官補
4. 商工部 商易次官補
5. 動力資源部 企劃管理室長
6. 建設部 企劃管理室長
7. 輸出入 銀行長
8. 韓國銀行 副總裁
9.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10. 其他 輸出保險에 관하여 學識, 經驗이 풍부한者 중에서 商工部 長官이 委嘱한 者

第13條 (委員長) ① 委員長은 審議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通理한다.

②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指命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條14條 (會議) ① 委員長은 審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 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15條 (幹事) ① 審議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 幹事는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議會의 庶務에 從事한다.

第16條 (手當) 審議會의 委員長 및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者에 대하여는 基

金豫算의 範圍안에서 手當을 支給한다.

第16條의 2 (關係機關에 對한 信用調査 등의 依頼) ① 法 第44條 規定에 依한 調査의 依頼를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所屬職員 中에서 調査를 專擔한 者를 指定하여 그 職位와 姓名을 商工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調査에 所要되는 費用은 基金豫算의 범위안에서 商工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이를 支給할 수 있다.

第17條 (運營細則) 이 令에 規定하는 事項 이외에 審議會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大統領令 第4797號 1970年 3月 24日 公布)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우리는 長久한 세월에 걸친 시련과 苦惱의 시대를 넘어서
서 이제야말로 「成長과 成熟」을 통해 自己完成의 시대를 형
성하여야 할 80년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80년대는 보다 더 성숙한 獨立國으로서의 近代的 産業民
主國家의 완성이란 벅찬 임무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각하 취임사 중에서 —

韓國輸出入銀行 五年史

1981年 6月 30日 印 刷

1981年 7月 1日 發 行

發 行 人 李 泰 浩

編 輯 人 李 僎 九

發 行 處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調查部

印 刷 處 新 新 文 化 社